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93-01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연구 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영규 교수
	동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이진규 교수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이지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이승훈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WTO/SPS 협정 개요 및 관련 현황	2
II. WTO/FTA/TPP 협정별 SPS 조항 분석 및 대응과제	6
1. 개요	6
2. WTO/SPS 협정문 분석	7
3. FTA/SPS chapter 분석	12
4. TPP/SPS chapter 분석	22
5. 소결 및 시사점	64
III. 국제동향 및 국제기준 분석	69
1. WTO/SPS 위원회 동향분석	69
2. OIE/IPPC/CODEX 동향분석	76
3. OIE/IPPC/CODEX 규정 분석	83
IV. 우리나라의 SPS 조치 관련 대응조직 및 운영 현황 분석	90
1. 우리나라의 SPS 관련 조직 및 시스템 현황	90
2. 우리나라의 SPS 대응 관련 법령 체계	100
V. 주요 국가의 SPS 대응사례 분석 및 시사점	150
1. 미국	150
2. 호주	160
3. 뉴질랜드	172
4. EU	181
5. 중국	191
6. 일본	197

VI. 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및 시사점	207
1. 미국	207
2. 호주	218
3. EU	232
4. 뉴질랜드	244
5. 중국	249
6. 일본	251
VII. SPS 대응역량 강화 방안	254
1. 배경 및 필요성	254
2. SPS 대응역량 강화 추진방향	255
3. SPS 조직체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 개선방향	262
VIII. SPS 대응역량 강화를 관계법령 정비 개선방안	268
1. 현행 국내 관계법령체계 종합정리 및 주요 시사점	268
2.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개선 방안	274
IX. 결론	287
* 참고문헌	290
* 참고사이트	292

- 표 차례 -

<표1-1> WTO/SPS 협정의 적용범위	2
<표1-2> 통보 목적(이유)에 따른 분류(1995~2014년 및 2015년)	4
<표1-3> WTO/SPS 특정무역현안으로 한국이 이익제기를 받은 내역	5
<표2-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12
<표2-2> WTO SPS 협정과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제7장)의 비교	22
<표2-3> WTO/SPS 협정과 TPP/SPS chapter 비교	24
<표2-4> WTO/SPS와 TPP/SPS의 ‘적용범위’ 규정 비교	25
<표2-5> WTO/SPS와 TPP/SPS의 ‘권리 및 의무’ 규정 비교	26
<표2-6> WTO/SPS와 TPP/SPS의 ‘조화’ 규정 비교	27
<표2-7> WTO/SPS와 TPP/SPS의 ‘동등성’ 규정 비교	30
<표2-8> WTO/SPS와 TPP/SPS의 ‘위험분석’ 규정 비교	33
<표2-9> WTO/SPS와 TPP/SPS의 ‘지역화’ 규정 비교	38
<표2-10> WTO/SPS와 TPP/SPS의 ‘투명성’ 규정 비교	42
<표2-11> WTO/SPS와 TPP/SPS의 ‘CTC 및 분쟁해결’ 규정 비교	49
<표2-12> WTO/SPS와 TPP/SPS의 ‘실사’ 규정 비교	52
<표2-13> ‘SPS위원회 및 접촉선’ 규정 비교	57
<표2-14> WTO/SPS와 TPP/SPS의 ‘기술지원 및 협력’ 규정 비교	61
<표2-15> WTO/SPS와 TPP/SPS의 ‘용어의 정의’ 규정 비교	62
<표2-16> WTO/SPS와 TPP/SPS의 ‘특별 및 차등대우’, ‘최종조항’ 규정	65
<표2-17> WTO/FTA/TPP SPS 규정 비교	66
<표3-1> 국가별 SPS 조치 통보 건수(1995~2016.9.15.)	70
<표3-2> 국가별 SPS 조치 통보 건수(2015.9.15.~2016.9.15.)	70
<표3-3> 통보 목적별 문서 종류별 통보건수 최근 동향	71
<표4-1> 우리나라 SPS 통보문 작성 및 WTO 통보절차	93
<표4-2> 우리나라 SPS 통보문 확인 및 상대국으로의 통보절차	93
<표4-3> 주요국 SPS 문의처 및 통보처	94

<표4-4>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 기관 간 업무분장	96
<표4-5> 식약처 해외실사업무 판정기준 및 조치사항	96
<표4-6> 우리나라의 SPS 대응기관 체계	98
<표4-7> SPS 관련 국내 주요 관계법령 현황	100
<표4-8> 검토·분석 대상 국내 주요 관계법령 개요	102
<표4-9> 연구·분석 대상 WTO·TPP SPS 의무화 조치 항목 및 해당 조항	103
<표4-10> 「식품위생법」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 사항	147
<표4-11>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 사항	149
<표5-1> 호주 농업수자원부 부서 및 주요업무	161
<표5-2>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BIRA) 진행 과정 및 협력 체계 도식	169
<표5-3>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 부서 및 주요업무(2016년 11월 기준)	173
<표5-4>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192
<표5-5>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 부서 및 주요업무	198
<표8-1> 미국의 SPS 대응 연방정부 부서/기관/기능체계 개요	269
<표8-2>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규정 현황 요약	27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계법령)	
<표8-3>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형식의 비교·검토	276
<표8-4> 기존 관계법령 정비·개정 방안의 경우 정비·개정·보완 수요	277

- 그림 차례 -

<그림1-1> WTO 회원국의 SPS 통보건수 변화 추이	3
<그림3-1> WTO/SPS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s)	72
<그림3-2> 주제별 특정무역현안(STCs)(1995-2015)	73
<그림3-3> 동물건강 및 동물질병 관련 특정무역현안(STCs)(1995-2015)	74
<그림3-4> 국제표준과 관련된 WTO/SPS 긴급통보(2015.09.15.-2016.09.15.)	77
<그림3-5> 국제표준과 관련된 WTO/SPS 일반통보(2015.09.15.-2016.09.15.)	81
<그림3-6> OIE 위험분석 과정	83
<그림3-7> IPPC 위험분석 과정	86
<그림3-8> CODEX 동등성 결정 과정	88
<그림 4-1> 위생약정 등록시설 현지 위생점검	96
<그림 4-2> 수산부산물 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96
<그림5-1> 식품안전 주무연방규제기구	151
<그림5-2> SPS 무역정책실무위원회 조직 체계	155
<그림5-3> 외국 SPS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 체계	156
<그림5-4> 호주 농업수산부 조직도(2016년 10월 현재)	162
<그림5-5> 호주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 체계	163
<그림5-6> 호주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 위원 명단	168
<그림5-7> 호주 농업수자원부 뉴스레터 페이지	170
<그림5-8> 뉴질랜드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 체계	174
<그림5-9> 뉴질랜드 1차산업부 이행조치국 산하 부서 주요 기능과 업무	175
<그림5-10> 퀸즈랜드 초파리 및 초파리 발생 지역(Auckland Grey Lynn)	176
<그림5-11> GIA 협정 가입 홈페이지	177
<그림5-12> 뉴질랜드 1차산업부 SPS Contact Point 안내 홈페이지	179
<그림5-13> EU TRACES 홈페이지의 뉴스레터(2016.6.21.)	182
<그림5-14>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 조직도(2016년 8월 현재)	184
<그림5-15> EU 식품수의국의 최근 3개년 업무계획	185
<그림5-16>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도	187
<그림5-17> EU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경보시스템 관련 포털 사이트	189
<그림5-18> 중국 WTO/TBT-SPS 통보상담네트워크 홈페이지	193

<그림5-19> 중국 동물 저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 현황	195
<그림5-20>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검역 체계 일반 절차도	200
<그림5-21>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수입 신고 처리 검역소 현황	200
<그림5-22>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위해분석 시스템	202
<그림5-23> 일본 농산물 및 식물 검역 시스템 분류	203
<그림5-24> 일본 농산물 및 식물 검역 시스템 분류	204
<그림7-1> SPS규범이행팀(과)과 SPS 지원전담센터 운영(안)	263
<그림7-2> SPS 관련 국내제도 도입 혹은 변경 시 사전검토절차	264
<그림7-3> 국내제도 도입 혹은 변경시 WTO 통보 절차	265
<그림7-4> 외국 통보문에 대한 대응 절차	265
<그림7-5> SPS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267
<그림8-1> 우리나라의 SPS 대응 관계법령 및 부서/기관/기능체계 개요	26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농식품 시장에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 비관세조치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TPP 협정이 체결되면서 기존 WTO/SPS 협정상의 의무 사항이 강화되거나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SPS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TPP/SPS chapter의 의무규정은 WTO/SPS 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된 것임.
- RCEP와 FTA 재협상 등 추후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협정문에서 TPP/SPS 규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따라서, 보다 강화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SPS 관련 조직·제도·법률 등 제반사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WTO,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및 TPP의 SPS 관련 현황 및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통상 정책에 미치는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SPS 관련 제도, 기관, 법 체계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SPS 대응전략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SPS 관련 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등을 통해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및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함.
- SPS 대응을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입법 초안 또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WTO/SPS 협정 개요 및 관련 현황

□ WTO/SPS 협정은 인간의 건강과 위생 및 동식물, 영토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의 근거와 함께 SPS 조치 도입의 기본 원칙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협정임.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면서 독립된 협정으로 발효됨.

－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되, 이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제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아야함을 원칙으로 함.

○ WTO/SPS 협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협정문 부속서(Annex A)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음.

－ 이러한 적용범위를 가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공문 등의 모든 절차와 요건, 기준 등을 포괄하여 'SPS 조치'라고 볼 수 있음.

<표1-1> WTO/SPS 협정의 적용범위

보호 대상	규제 대상	적용범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해충, 질병, 질병매개체,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발생하는 위험	동물위생, 동물성 전염병 및 식물위생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식품(사료)안전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	동물, 식물 또는 동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동물위생, 동물성 전염병, 식물위생, 식품안전
국가(지역)	병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피해	동물위생, 식물위생

자료 : WTO SPS 협정 Annex A

○ WTO SPS 협정은 다음과 같이 전문, 총 14개조 및 4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과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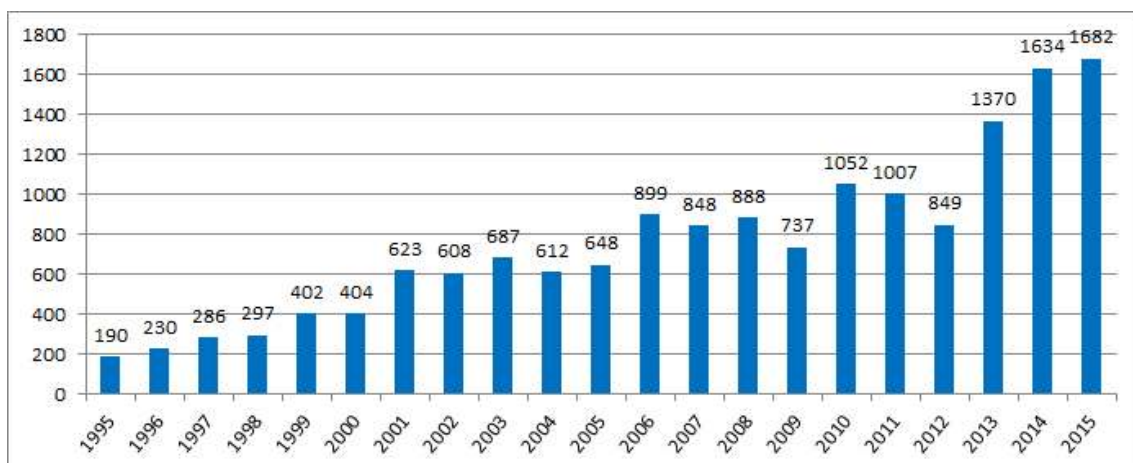
- 본문: 전문, 제1조(일반규정), 제2조(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3조(조화), 제4조(동등성),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제7조(투명성),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제9조(기술 지원), 제10조(특별 및 차등 대우), 제11조(협의 및 분쟁해결), 제12조(관리), 제13조(이행), 제14조(최종조항)
- 부속서: 부속서 A(정의), 부속서 B(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부속서 C(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협정문에 명시된 ‘통보의무’(제7조와 부속서 B)에 따라 WTO 회원국은 자국의 신규 및 개정 SPS 조치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해마다 그 통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TO체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SPS조치 통보건수는 15,953건으로 전체 비관세조치 통보건수의 4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그림1-1> 참조).

- 특히 2015년에는 1,682건으로 그전까지의 역대 최대 통보건수였던 직전 연도의 1,634건을 갱신하기에 이룸.

<그림1-1> WTO 회원국의 SPS 통보건수 변화 추이



자료: WTO Annual Review

- 통보된 SPS 조치들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목적이 미표기된 경우를 제외 시 '식품안전(Food Safety)'이 목적인 통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2015년의 경우 과반 수 이상(1,156건, 56%)의 SPS 조치가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삼을 만큼, 동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1-2> 통보 목적(이유)에 따른 분류(1995~2014년 및 2015년)

통보 목적	1999~2014년		2015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식품안전	6,439	26	1,156	56
동물건강	2,062	8	248	12
식물보호	2,587	10	350	17
동식물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 보호	6,004	24	150	7
병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	879	3	158	8
None(미표기)	7,230	29	0	0
합계	25,201	100	2,062	100

주 : 통보 목적은 중복 표기가 가능함. 따라서 이 표에서의 '건수'는 통보문 자체의 수가 아니라, 통보목적이 중복표기된 만큼의 수가 더해진 수치임에 주의를 요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SPS 지원서비스(www.koreasps.kr) 자료를 가공

- 한편, WTO SPS 위원회에 통보된 회원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대국은 이에 응해야만 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WTO/SPS 위원회에 총 613건의 SPS관련 조치를 통보하였으며, 이 중 13건이 특정무역현안화된 것으로 나타남.

- SPS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일반통보(regular notification)가 503건(82.1%)으로 가장 많고,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 SPS 조치를 통보하는 긴급통보(emergency notification)가 26건(4.2%), 법, 제도 등의 수정 사항(addenda/corrigenda)에 대한 통보가 84건(13.7%)임.
- 국가별로 분석하였을 때 SPS 조치 통보 7위(일반통보 기준)에 해당할 만큼 우리나라는 비교적 SPS 조치 통보건수가 많은 나라에 속함.

- 특정무역현안화된 13건 중 7건이 축산 품목과 관련된 사안이며, 주제별로는 식품안전 4건, 동물건강 5건, 식물건강 2건, 기타 2건임.

<표1-3> WTO/SPS 특정무역현안으로 한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내역

제기연도	대상 조치	제기국	해결여부
1995	유통기간문제(생수, UHT우유)	호주, 캐나다, 미국	부분해결
	수입절차 및 관행문제	미국	해결
1996	규정 번역문제(번역문 미제공: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미보고
1997	냉동 가금류 수입 금지(리스테리아균)	태국	해결
1999	쇠고기 수입 제한(아르헨티나 구제역)	아르헨티나	미보고
2001	광우병(BSE)청정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제한	불가리아 등	미보고
2003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국경이동 통보	호주	미보고
	최대허용잔류수준(MRL)에 대한 지침(수입업자 비용부담)	미국	미보고
2004	원예 작물에 대한 셉토리아(<i>septoria</i>) 통제(캘리포니아 감귤 수입제한)	미국	해결
2007	쇠고기 가공품에 대한 광우병(BSE) 관련 조치	캐나다	해결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품의 지역주의 적용문제	브라질	미보고
2008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금지)	캐나다	미보고
2013	방사능 유출에 따른 어류가공품 수입제한강화	일본	미보고

주: WTO의 SPS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한국의 내용을 취합 및 가공함.

자료: WTO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WTO 출범 이래 SPS 관련 이슈는 양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식품 부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조치로도 대표적인 활용, 감시,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나날이 늘어가는 농식품 교역과 ‘충성 없는 전쟁’으로서의 국제 무역 양상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SPS 대응역량 강화는 긴급히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으로 사료됨.

II. WTO/FTA/TPP 협정별 SPS 조항 분석 및 대응과제

1. 개요

- SPS 조치의 원활한 이행 및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칙의 면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SPS 협정문의 각 규정을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으로 구분하고 이 중 의무규정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 법 이행 시 SPS 협정상의 의무와 일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성이 있음.
- SPS 조치에 관한 규정은 WTO/SPS 협정, TPP/SPS chapter 및 FTA/SPS chapter에 마련되어 있음. 이들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WTO/SPS 협정과 TPP/SPS chapter의 주요 조항에 대해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분류. 더 강화된 의무사항이 있는지 비교·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SPS chapter의 조문도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분류하여, 체결국 의무사항 범위와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TPP/SPS chapter는 WTO/SPS 협정에 비해 회원국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어 있음. 이는 WTO/SPS 위원회의 지침, 권고 또는 결정이 TPP/SPS chapter에 반영된 것임. RCEP의 SPS chapter는 TPP/SPS chapter와 유사한 의무사항을 규정 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재협상 시 TPP/SPS chapter의 의무규정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TPP/SPS chapter의 의무사항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우리나라는 '동등성' 관련 의무를 WTO/SPS 문서(G/SPS/19/Rev.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화 관련 의무 역시 관련 WTO/SPS 문서(G/SPS/48)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

- WTO/SPS에도 CTC(협력적 기술협약)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G/SPS/61), 상대국이 CTC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국가는 동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FTA 재협상 시 SPS 관련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협상중인 RCEP의 SPS chapter는 TPP/SPS chapter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강화될 SPS 의무사항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전략이 필요함.

2. WTO/SPS 협정문 분석

가.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제2조)

- WTO/SPS 협정문은 '비차별대우'와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의 사용 금지', 그리고 '최소한의 무역제한'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
 - 비차별대우 :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며(제 2조 3항), 이는 GATT와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조항(1994년 GATT 제1조)과 내국민대우조항(제3조)에 반영되어 있음.
 -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의 사용 금지 : 위생 및 검역 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제2조 제3항).
 - 최소한의 무역제한 : 회원국은 위생 및 검역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무역의 장애수단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제2조 제2항).
 - 과학적 근거 : SPS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함(제2조 제2항).

나. 조화(제3조)

- 위생 및 검역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여야 함(제3조 제1항).
- SPS 조치와 관련하여 WTO가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임.
- 다만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이 있거나, 특정 보호수준의 결과가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의한 보호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음.

다. 동등성(제4조)

- 다른 회원국의 SPS 조치가 본국의 조치와 다른 경우라도, 그 조치가 자국의 SPS 보호를 위한 적정보호수준에 적합하다면, 이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입회원국의 요청 시 합리적 접근(reasonable access)이 제공되어야 함(제4조 제1항).
 - 동등성에 관해 WTO DSB의 법률적(jurisprudence) 해석은 없음. 추가 논의와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동등성의 정의를 '중복(duplication) 또는 동일(sameness)한 것이 아니며, 수입국의 SPS 보호를 위한 적정보호수준에 적합한 다른 조치를 수락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¹⁾
-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제4조 제2항).

1) G/SPS/19(2001), G/SPS/19/Rev.2(2004)

라. 위험평가(제5조)

□ WTO 회원국은 위생 검역조치를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입각하여 시행해야 함.

-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SPS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해야 함(제5조 제1항).
-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가공 및 생산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제5조 제2항).
- 위험평가와 적정 보호수준의 SPS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등을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해야 함(제5조 제3항).
-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제5조 제4항) 위장된 무역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제5조 제5항).
-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SPS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5조 제6항).
-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 조치를 재검토해야 함(제5조 제7항).

마. 지역화(제6조)

□ 지역화란 가축 질병과 식물 병해충 청정지역을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 단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함. 가축 질병 및 식물 병해충 미 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의 판정은 지리적·생태학적·역학적 감시, 위생 및 검역 조치의 효율성 요인에 근거해야 하고, 지역화를 주장하는 수출국은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어느 지역(region)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상의 특징을 평가하는 경우, 회원국은 병해충 발생률 등의 자료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을 고려할 의무가 있음(제6조 제1항).
- 회원국은 병해충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6조 제2항).
 - 가축 질병 및 식물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의 판정은 지리적·생태학적·역학적 감시, SPS조치의 효율성 요인에 근거해야 함.
- 수출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함(제6조 제3항).

바. 투명성(제7조, 부속서B)

- 협정문 제7조 및 부속서B는 회원국이 SPS 조치와 관련된 모든 변동 사항 통보, 정보제공, 협의의무 등 투명성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SPS 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임.
- 협정문 제7조에서는, 부속서B 규정에 따라 자국의 SPS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SPS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문의처(enquiry point)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함(부속서B 제3항).
 -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등에 의해 SPS 조치가 새롭게 채택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이해당사국과 WTO 사무국에 신속히 통보해야 함(부속서B 제5항).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대해 국민 건강 및 국민보건을 위해 시급한 경우, 회원국은 부속서 B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부속서B 제6항).

사. 기타

- (검사 및 증명) 앞서 검토한 '비차별대우', '조화', '동등성', '투명성' 등의 원칙이 수입 및 유통 과정의 통제, 검사, 증명 등의 행위에 적용 되어야 함(제8조, 부속서C).

- (협약 및 분쟁해결) WTO SPS 협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사안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다루어지며, 기본적으로 WTO 분쟁해결양해(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절차가 적용됨(제11조).

-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WTO/SPS에 따른 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해 GATT 1994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제1조).

-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 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함(제2조).

- (실사) 적절한 경우 수입국은 병해충 비발생/저발생 지역 인정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G/SPS/48, G/SPS/19/Rev.2).

3. FTA/SPS chapter 분석

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 및 개요

□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현재 15건의 FTA를 체결 및 발효함.

- 15건의 FTA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일반적으로 SPS 규정은 상품무역 부분에 규정되어 있음.
-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일반적으로 총칙, 상품무역, 투자, 경쟁,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각 FTA 협정문 SPS chapter의 구조와 형식,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를 검토하여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분류 및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FTA 체결 시 우리나라가 적절한 협상기준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기 체결된 FTA의 SPS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2-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	발효시기	의의
칠레	2004년 4월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년 3월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2006년 9월	유럽 4개 국가와 FTA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	2009년 9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10년 1월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11년 7월 잠정발효 2015년 12월 전체발효	세계 최대 경제권(GDP기준)
페루	2011년 8월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12년 3월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3년 5월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상대국	발효시기	의의
호주	2014년 12월	자원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5년 1월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5년 12월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5년9월 기준)
뉴질랜드	2015년 12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년 12월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15년9월 기준)
콜롬비아	2016년 7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²⁾

* EFTA 4개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 10개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28개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나.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협정문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규정'(이하 'SPS 규정')은 제2부 상품무역 중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이 12개 조항으로 되어있음.

□ 적용범위: 한·칠레 FTA/SPS 규정의 적용범위는 WTO/SPS 협정의 적용범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 한·칠레 FTA의 SPS 조치의 체계는 WTO/SPS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함. 한·칠레 FTA/SPS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WTO/SPS 협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8.2조).

○ 한·칠레 FTA/SPS에 포함된 SPS 관련 규칙 및 규율의 체계는 WTO/SPS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하며(제3항), 동 협정문에 기술되지 않은 SPS 관련 사항은 WTO/SPS 협정에 따라 처리함(제4항).

2)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 권리 및 의무: WTO/SPS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수용하는 범위에서, 한국과 칠레의 SPS 조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

○ WTO/SPS 협정에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제8.3조).

○ 당사국은 자국의 SPS조치가 무역제한 수단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제8.4조).

— 당사국의 SPS 조치는 무역제한을 구성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또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조화: 당사국은 자국의 SPS 조치가 국제표준 등에 기초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 등의 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제8.5조).

○ 당사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1항). 이는 SPS 조치가 무역제한이나 무역장벽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국제표준 등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단, 그러한 조치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WTO/SPS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당사국은 국제표준 등의 개발에 협력할 것과 IPPC, OIE, CODEX의 표준, 지침 및 권고에 따를 의무가 있음(제3항).

○ 제4항은 권고사항임. IPPC OIE, CODEX가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 모두가 회원인 다른 국제기구의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할 수 있음.

□ 동등성: 수입회원국은 자국 동식물 위생의 적정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수출국의 조치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합리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제8.6조). FTA/SPS의 동등성 요건은 WTO/SPS의 동등성 요건과 유사함.

-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할 의무가 있음(제1항).
-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의 SPS 조치에 대해 수입국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2항).
- 위험평가: SPS조치는 위험평가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과학적 근거 등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제8.7조). WTO/SPS 제5조(위험평가)와 유사한 내용임.
- 지역화: 한·칠레 FTA에서는 지역화 인정 요청 및 거절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화된 의무가 제시됨(제8.8조).
 - 병해충 안전 또는 저발생 지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화 인정 요청 시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검사 등을 위해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부여해야 함(제4항). 지역화 인정 요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한 당사국은 그 결정의 기술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함(제5항).
 - WTO/SPS는 지역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수입국에게 '객관적 증명'을 제시할 의무를 규정함(WTO/SPS 제6조 제3항). 한·칠레 FTA에서는 지역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과학적·기술적 정보제공 의무'에 추가적으로 '검사 등을 위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
 - WTO SPS 지역화 규정에는 지역화 인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한·칠레 FTA에서는 이 경우 '기술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투명성: WTO/SPS의 투명성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제8.10조).
 - 한국과 칠레 정부는 WTO/SPS 부속서B에 따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SPS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분쟁해결: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FTA상의 절차가 적용됨.

다. 한·EU FTA

- SPS 규정은 한·EU FTA 협정문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용범위: WTO/SPS의 적용범위와 유사함(제52조).
 - 한·EU FTA 협정문 제5장(SPS 조치)은 당사자 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됨.
- 권리 및 의무: WTO/SPS의 권리 및 의무가 적용됨(제54조).
- 투명성: WTO/SPS의 투명성 규정 준용(제5.5조).
 - 양 당사자는 무역에 적용 가능한 SPS 조치에 관해 투명성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음.
- 분쟁해결: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제5.11조).
 - 어떠한 당사자도 제5장(SPS 조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제14장(분쟁 해결)을 이용할 수 없음. 즉, SPS 관련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
-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동물 복지에 관해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9조). 이는 WTO/SPS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 한·EU FTA의 독특한 의무사항임.
 - 양 당사자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또한, 양 당사자는 국제포럼에서 동물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

ARTICLE 5.9: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The Parties shall:

- (a) exchange information, expertis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animal welfare and adopt a working plan for such activities; and
- (b)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f animal welfare standards in international fora,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stunning and slaughter of animals.

라. 한·미 FTA

- SPS 규정은 한·미FTA 협정문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적용범위: WTO/SPS의 적용범위와 유사함(제8.1조).
 - 한·미 FTA 협정문 제8장(SPS 조치)은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됨.
- 권리 및 의무: WTO/SPS 협정의 권리 및 의무가 적용됨(제8.2조).
- 분쟁해결: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제8.4조).
 - 어떠한 당사국도 제8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음. 즉, SPS 관련 사안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

마. 한·중 FTA

- SPS 규정은 한·중 FTA 협정문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적용범위: WTO/SPS 협정의 적용범위와 유사함. 또한, 한·중 FTA/SPS 규정에 WTO/SPS 협정이 적용됨을 재확인함
 - 한·중 FTA 협정문 제5장(SPS 조치)은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됨(제5.2조 제1항).
 - 제5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SPS 협정은 양 당사국간에 적용하고,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됨(제5.3조).

□ 권리 및 의무: 제5.3조에 의해 WTO/SPS 협정의 권리 및 의무가 한·중 FTA/SPS chapter에도 적용됨.

□ 분쟁해결: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제5.6조).

○ 어떠한 당사국도 제5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음. 즉, SPS 관련 분쟁사안은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

바. 기타 한국이 체결 및 발효한 FTA

□ 한·싱가폴 FTA: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1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협정이 한·싱가폴 FTA 협정에 통합되어 적용됨(제7.1조 제3항).

□ 한·EFTA FTA: 제2장(상품무역)에 1개 조항으로 구성됨. SPS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WTO/SPS에 의해 규율됨(제2.7조 제1항).

□ 한·ASEAN FTA: 기본협정 부속서와 상품협정에 SPS 관련 규정이 있음. 기본협정 부속서에서는 한국과 ASEAN국가들의 상호협력을, 상품협정의 규정에서는 SPS 조치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분쟁해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SPS 관련 사안에 대해 한·ASEAN FTA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

기본협정 부속서(경제협력)

제14조(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2항

2. 당사국들은 농업, 수산업, 동물 및 식품 제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이라 한다)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혜택을 기초로 다음에서 협력한다.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사건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

다. 유통 및 포장 제도의 개선

라. 훈련 및 전문가 교류의 조직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당해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

마. 신기술의 개발 및 증진. 그리고

바.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8조(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3항

당사국들은 WTO SPS 협정상 SPS 조치와 관련된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대한 통고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은 이 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지정한다.

□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3절(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1개 조항으로 구성됨.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WTO SPS 협정상 규정이 적용됨. SPS 관련 사안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

- 당사국은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함(제2.28조 제1항)
- 한·인도 CEPA 제14.3조(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제2.28조에서 발생하는 SPS 사안에 대한 분쟁은 양 당사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지 않음(제2.28조 제4항).

□ **한·페루 FTA: 협정문 제6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서 9개 조항으로 구성됨. SPS 관련 사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

-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SPS 협정상의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제6.3조).
- SPS 관련 사안에 대해 한·페루 FTA 제23장(분쟁해결)을 적용하지 않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

□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제3절(비관세조치)에 1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상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며, 분쟁 발생 시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됨.**

- 양 당사국은 WTO/SPS 협정상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제2.10조 제1항).

- 어떠한 당사국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하는 SPS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음(제2.10조 제2항).
- 어떤 당사국도 이 조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기본협정 6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음(제2.10조 제3항). 즉, SPS 관련 분쟁사안은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
- 한·호주 FTA: 제5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제5.14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함(제5.18조).
- 한·뉴질랜드 FTA: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제5.3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함(제5.6조).
- 한·캐나다 FTA: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5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제5.3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함(제5.4조).
- 한·베트남 FTA: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제5.3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함(제5.6조).
- 한·콜롬비아 FTA: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됨. WTO SPS 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제5.3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함(제5.6조).
- 제5장(SPS조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20장(분쟁해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제20.2조).

사. SPS 위원회 및 접촉선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SPS 협정문에서는 ① SPS 이행 제고, ② SPS 사안에 대해 당사국 간의 원활한 협의 및 정보교환, ③ 상대국의 문의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 답변, ④ 당사국 간 무역 촉진 등을 목적으로 SPS 위원회 설치 또는 접촉선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 협정문에서 접촉처 또는 SPS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중 7개 협정문에서 접촉처 또는 SPS 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명시하고 있음.

- 한·싱가폴 FTA에서는 접촉선(contact point)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를 접촉선으로 지정하고 있음(제7.1조 제4항).
- 한·페루 FTA에서는 SPS위원회의 조정기관으로 한국의 농림수산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지정하고 있음(제6.7조 제5항).
- 한·호주 FTA에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접촉선으로 지정하고 있음(제5.15조 제1항).
- 한·중 FTA에 따르면, 당사국은 SPS 위원회 회의 등의 조율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접촉선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임을 밝히고 있음(제5.5조 제7항).
-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SPS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및 당사국 간 정보교환을 위해 접촉선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지정하고 있음(제5.4조 제5항).
- 한·베트남 FTA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SPS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정보교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촉선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제5.5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접촉선으로 지정됨(제5.5조 제7항).
-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 SPS 위원회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5조 제5항).

4. TPP/SPS chapter 분석

-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이하TPP)이 2015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타결됨. 향후 글로벌 교역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경우 TPP협정의 SPS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 TPP 협정의 위생검역챕터(제7장)는 기존의 WTO SPS 협정뿐만 아니라 국가별·지역별로 체결되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SPS 조치 관련 내용을 단순히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의무이던 내용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대폭 추가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의무에 WTO SPS 협정보다 의무 준수 수준이 강화된, 이른바 ‘WTO plus’ 성격의 절차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예컨대,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의 경우 지역화 개념은 물론 더욱 세분화된 개념인 구역화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음.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보호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수입국은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동등성 측면에서도 더욱 광범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SPS 관련 규율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는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2-2> WTO SPS 협정과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제7장)의 비교

구 분	WTO SPS 협정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
전문 (Preamble)	○	×
목 표	× (전문에서 목표 규정)	◎
정 의	○	◎

구 분	WTO SPS 협정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
일반규정 (적용범위 등)	○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
조 화	○	◎
동등성	○	◎
위해성평가 및 위생검역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
지역화	○	◎
투명성	○	◎
회계감사	×	◎ (신설)
수입점검	×	◎ (신설)
증명서	×	◎ (신설)
비상조치	×	◎ (신설)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	◎
기술지원	○	-
특별 및 차등대우	○	-
기술협의	×	◎ (신설)
협의 및 분쟁해결	○	○
관리 (SPS 위원회)	○	◎
협력 (무역원활화/기술지원)	× (기술지원 조문은 있음)	△ (신설)
정보교환	× (문의처 규정은 있음)	◎ (신설)
이행 (의무준수 책임 등)	○	◎
최종조항 (적용 연기)	○	×

◎는 WTO SPS + (플러스) 조항임.

○는 WTO SPS와 유사한 수준의 조항임.

×는 관련 규정이 없는 조항임.

△는 WTO SPS - (마이너스) 조항임.

-는 TPP 협정 위생검역챕터에는 없으나 WTO SPS 협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조항임.

□ WTO/SPS 협정 각 조항에 상응하는 TPP 협정문 SPS 조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2-3> WTO/SPS 협정과 TPP/SPS chapter 비교

WTO SPS 협정문	TPP 협정문 SPS chapter
서문	제2조 목적
제1조 일반규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일반규정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4조 일반규정
제3조 조화	제4조 일반규정
제4조 동등성	제8조 동등성
제5조 위험평가	제9조 위험분석
제6조 지역화	제7조 지역화
제7조 투명성(부속서 B)	제13조 투명성, 제14조 긴급조치, 제16조 정보교환
제8조 관리, 검사 및 승인(부속서 C)	제10조 실사, 제11조 수입검사, 제12조 증명
제9조 기술지원	제15조 협력
제10조 특별 및 차등대우	
제11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17조 협력적 기술협의, 제18조 분쟁해결
제12조 관리	제5조 SPS위원회
제13조 이행	제6조 관할기관 및 접촉선
제14조 최종조항	
부속서 A. 정의	제1조 정의

가. 적용범위

□ TPP/SPS는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 식품 요건을 채택·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됨(제3조). WTO/SPS 협정 및 기 체결 FTA/SPS에서는 할랄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TPP/SPS는 TPP 회원국 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조치에 적용됨(제1항). 이는 WTO/SPS 협정 및 기 체결 FTA/SPS 규정과 유사함.

- WTO/SPS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SPS에서는 SPS 적용 범위를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또는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 TPP/SPS 제3조 제2항에서 할랄 요건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해외 할랄 시장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규정으로 인해 할랄 요건들은 TPP/SPS의 범위에 포함되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할랄 식품에 대한 언급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이슬람 국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표2-4> WTO/SPS와 TPP/SPS의 '적용범위'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적용	제1조 제1항 (shall)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된다.	제3조 제1항 (shall)이 장은 회원국 간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회원국의 모든 SPS조치에 적용된다.
정의	제1조 제2항 (shall)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
TBT와의 관계	제1조 제4항 (shall)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할랄요건	-	<u>제3조 제2항</u> <u>이 장의 어떤 조항도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 식품 요건을 채택·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u>

나. 권리 및 의무(제4조)

□ WTO/SPS 협정 제2조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가 TPP/SPS에도 적용됨.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SPS의 권리 및 의무 규정에서도 유사함.

○ TPP 회원국에는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제1항). TPP/SPS의 어떤 규정도 WTO/SPS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음(제2항).

– WTO/SPS의 ‘비차별대우’,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의 사용금지’, ‘최소한의 무역제한’, ‘과학적 근거’ 원칙이 TPP/SPS에서도 적용됨.

<표2-5> WTO/SPS와 TPP/SPS의 ‘권리 및 의무’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과학적 증거	제2조 제2항 (shall)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
위장된 제한	제2조 제3항 (shall)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shall)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GATT (SPS 협정에	제2조 제4항 (shall)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따른 SPS 조치)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 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WTO/SPS	-	제4조 제1항 회원국은 WTO/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4조 제2항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 조화

□ TPP 협정에서는 WTO/SPS의 제3조(조화)에 해당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TPP/SPS 제4조에 의해, WTO/SPS의 '조화' 규정이 TPP 회원국에게도 적용됨.

○ TPP/SPS 제4조에 의하면,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가 TPP에서도 적용되며, TPP의 어떤 규정도 WTO/SPS 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음. 그러므로 TPP/SPS 규정에도 Codex 등의 국제기준이 적용되며, TPP회원국은 이 기준에 자국의 SPS 조치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표2-6> WTO/SPS와 TPP/SPS의 '조화'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국제기준에 기초	제3조 제1항 (shall)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GATT (국제표준 등에 합치하는 SPS 조치)	제3조 제2항 (shall)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높은 보호수준의 조치	제3조 제3항 (권고)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 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의무, shall)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 하지 아니한다.	-
국제기준의 개발 및 검토	제3조 제4항 (shall)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 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 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내에서 촉진 하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 에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
SPS 위원회	제3조 제5항 (shall)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	-

라. 동등성(제8조)

□ TPP/SPS의 동등성 규정에서는 WTO/SPS 및 기 체결된 FTA/SPS의 동등성 규정과 비교하여 한층 강화된 의무가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수입국의 SPS 조치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요청을 받고,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동등성 평가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항).

– TPP/SPS에서 언급하는 ‘동등성 평가를 반드시 개시해야 하는 의무’는 WTO/SPS의 의무사항을 재확인 및 강조한 것임.

○ 수출국이, 자국의 SPS조치가 수입국 SPS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동등성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6항).

– WTO/SPS 협정문에서는 동등성 요건에 대해 ‘수출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국의 SPS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국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만 언급하고 있음.³⁾

– 동등성 인정 요건을 ‘수입국 SPS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SPS 조치를 완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⁴⁾

3)

1. Members shall accept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other Members as equivalent, even if these measures differ from their own or from those used by other Members trading in the same product, if the exporting Member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its measures achieve the importing Member'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4)

6. The importing Party shall recognise the equivalence of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f the exporting Party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Party that **the exporting Party's measure:**

(a) achieves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the importing Party's measure; or

- 수입국이 동등성을 불인정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그 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9항).
- TPP에서 새로 도입된 내용임. OIE, IPPC, CODEX 등에서는 사유 통보가 아닌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 동등성 불인정 결정에 대한 근거제공 의무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에 해당함. 그러나 동등성 불인정 시 수입국은 과학적 근거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분석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인력과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2-7> WTO/SPS와 TPP/SPS의 '동등성'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동등성 인정	제4조 제1항 (shall)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제8조 제6항 (shall) 수출회원국이 다음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해당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 ①수입회원국의 조치와 동일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거나; 또는 ②목적은 달성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합리적 접근	제4조 제1항 (shall)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
협이개시	제4조 제2항 (shall)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

(b) has the same effect in achieving the objective as the importing Party's measure.

- 5) -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5. Article 5.3.8 : 당사국이 동등성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OIE의 자발적인 중재가 가능함.
- IPPC, ISPM 24, 2005 : 동등성 요청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함.
- CODEX, CAC/GL 34-1999 : 당사국은 조치와 요건의 차이에 대해 함께 고려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WTO/SPS 적용	-	<p>제8조 제1항</p> <p>회원국은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역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p> <p>(shall) SPS 협정 제4조에 덧붙여, 회원국은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일단의 조치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의 전(全) 제도적 기반 하에서 동등성을 적용해야 한다.</p> <p>(shall) 특정 SPS 조치, 일단의 SPS 조치들 또는 하나의 전(全) 제도적 기반의 동등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WTO/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기준·지침·권고를 고려해야 한다.</p>
목적 설명	-	<p>제8조 제2항</p> <p><u>(shall) 수출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 회원국은 SPS 조치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고 해당 조치가 다루고자 하는 위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u></p>
평가개시	-	<p>제8조 제3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수출회원국으로부터 동등성 인정요청을 받고, 수출회원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u>합리적 기간 내에 동등성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u></p>
즉각적 설명	-	<p>제8조 제4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동등성 평가를 시작할 때, 수출국이 요청하면 해당 수입국은 <u>즉각적으로 동등성 평가 과정과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u></p>
수출국 고려	-	<p>제8조 제5항</p> <p>(shall) SPS 조치의 동등성 결정에서 수입국은 수출국의 지식, 정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p>
통보 및 이행	-	<p>제8조 제7항</p> <p><u>(shall) 수입회원국이 수출국 동등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이를 서면으로 알리고 합리적 기간 내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u></p>
근거제공	-	<p>제8조 제9항</p> <p><u>(shall) 수입회원국이 동등성을 불인정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 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u></p>

다. 위험분석(제9조)

□ TPP/SPS 제9조는 WTO/SPS 제5조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보다 상위 개념인 '위험 분석(risk analysis)'에 대해 다름으로써 그 의무 범위가 확대됨.

- 당사국의 SPS 조치는 국제기준 등에 부합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문서화 돼 있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할 것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2항).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SPS 조치로 인해 문서화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면, 해당 당사국은 모든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인과관계를 기록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포함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항).
 - 현재 우리나라의 SPS 관련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마저도 한정된 인력과 시설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TPP/SPS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위험관리 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WTO/SPS에서는 SPS 조치의 적정수준 결정 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고려해야 하며(제4항), SPS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제6항)만을 제시함.
 - TPP/SPS에서는 위험관리 방안의 선택지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이 선택될 수 있음. 이 경우 국민과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수입국과 무역 촉진에 치중하는 수출국의 의견충돌이 예상되며, 수입국의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수입국은 법령과 절차, 정책 및 자원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허용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일정 조율과 허용을 위한 수입평가를 촉진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7항).

- 수입국이 TPP 회원국의 수입허용 요청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 이 규정으로 인해, TPP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차별대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은 위험분석 절차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지연 요소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8항).
 - 위험분석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연요소를 수출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는 수입국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위험분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합리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 한 회원국의 특정물품에 대해 SPS조치를 검토하는 경우, 제3국 상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면,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입을 금지할 수 없음(제10항).
 - SPS 조치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관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그러나 본 규정에서는 제14조의 비상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국에서 이미 허용된 품목에 대해 SPS 조치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강제함. 이는 검역·검사와 관련된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규정임.

<표2-8> WTO/SPS와 TPP/SPS의 '위험분석'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위험평가에 기초	제5조 제1항 (shall)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
위험평가/ 위험분석 시 고려사항	제5조 제2항 (shall)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한다.	제9조 제6항 (shall) 위험분석을 수행할 때 회원국은: ①관련 WTO/SPS 위원회의 지침과 국제 기준·지침·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②회원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관리(RM)방안에는 어떠한 조치도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p>취하지 않는 무역원활화방안을 포함하여 필요이상의 무역 제한적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며; 그리고</p> <p>③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SPS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이상의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위험관리(RM)방안을 선택해야 한다.</p>
경제적 요소 고려	<p>제5조 제3항</p> <p>(shall)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평가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p>	-
부정적 영향 최소화	<p>제5조 제4항</p> <p>(shall)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p>	-
자의적 부당한 구별 회피	<p>제5조 제5항</p> <p>(shall)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p>	<p>제9조 제4항</p> <p>(shall) 각 회원국은 ①자국의 영토와 타 회원국의 영토를 포함하여, 자국의 SPS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 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p> <p>②위험분석서 문서로 제공되어 이해관계자와 다른 회원국이 의견(comment)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p>
개발협력	<p>제5조 제5항</p> <p>(shall)회원국은 이 협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p> <p>(shall)동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협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p>	-
최소한의 무역제한	<p>제5조 제6항</p> <p>(shall)제3조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p>	<p>제9조 제6항</p> <p>(shall) 위험분석을 수행할 때 회원국은:</p> <p>①관련 WTO/SPS 위원회의 지침과 국제 기준·지침·권고를 고려해야 하며;</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p>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p>	<p>②회원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관리(RM)방안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역원활화방안을 포함하여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며; 그리고</p> <p>③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SPS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이지 않은 위험관리(RM)방안을 선택해야 한다.</p>
재검토	<p>제5조 제7항</p> <p>(권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p> <p>(의무, shall)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p>	-
해명	<p>제5조 제8항</p> <p>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may be requested), 동 해명은 동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shall be provided).</p>	-
과학적 근거	<p>제5조 제2항</p> <p>(shall)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한다.</p>	<p>제9조 제1항</p> <p>회원국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는 SPS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제9조 제2항</p> <p>(shall)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관련 국제기준·지침·권고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만일 해당 조치가 국제기준·지침·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SPS 협정 제5조(위험평가)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해당 조치들에 합리적으로 연관된, 문서화되어 있고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 하도록 해야 한다.</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규정의 해석	-	제9조 제3항 (shall)WTO/SPS협정 관련 규정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이 장의 어떤 규정도 ①적절한 보호수준(ALOP)의 설정, ②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승인절차의 설정 및 유지, ③규정에 근거한 SPS 조치의 채택·유지를 방해하도록 해석되지 않는다.
의견제공 기회	-	제9조 제4항 (shall)각 회원국은 ①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하고, ② 위험분석 시 문서로 제공되어 이해관계자와 다른 회원국의 의견(comment)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성적·정량적 과학적 데이터	-	제9조 제5항 (shall) 각 회원국은 자국이 수행하는 각각의 위험평가가 해당 위험 상황에 적절하며,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포함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요구정보에 대한 설명 제공	-	제9조 제7항 (shall) 수입회원국이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수입허용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수출회원국 요청 시, 수입회원국은 위험평가 시 수출회원국에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해야 한다.
평가촉진	-	제9조 제7항 (shall)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일정을 조율하여, 법령과 절차, 정책 및 자원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평가를 촉진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지연요소 통보	-	제9조 제8항 (shall)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은 위험분석 절차 진행 중 발생가능한 모든 지연요소를 수출국에 통보 해야 한다.
합리적 기간 내 이행	-	제9조 제9항 (shall) 만약 수입국이 위험분석의 결과로 무역을 재개하는 SPS 조치를 채택하면, 수입국은 합리적 기간 내 동 조치를 이행 해야 한다.
검토중 수입금지 제한	-	제9조 제10항 (shall) 한 회원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SPS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 제3국 상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면,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

바. 지역화(제7조)

□ TPP/SPS의 지역화는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WTO/SPS의 지역화와는 차이가 있음. TPP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와 관련한 의무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구역화'란 OIE, IPPC에서 언급되는 개념임. 지리적·자연적 경계에 의한 구분을 의미하는 '지역(region 또는 zone)'과 달리, 동일한 생물보안(biosecurity)과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설이나 농장 등을 의미함.

Article 7.7: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 or Disease- 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regionalisation, zoning and compartmentalisation, is an important means to facilitate trade.

○ 지역화 인정 절차와 관련된 수입국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함. 수출국이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언급하지 않고 수입국의 의무만을 규정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제5항 및 제10항).

– 수입국이 지역화 평가를 개시할 때, 수출국이 요청하면 지역화 결정 절차에 대해 즉시(promptly)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규정 되어 있음.

– 수출국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수입국이 평가한 결과가 지역화를 불인정하는 경우, 수입국은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수출국에 제공 할 의무가 있음.

5. When an importing Party commences an assessment of a request for a determination of region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4, that Party shall promptly, on request of the exporting Party, explain its process for making the determination of regional conditions.

10. If the evaluation of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exporting Party does not result in a determination to recognise pest- or disease-free areas, or areas of low pest and disease prevalence, the importing Party shall provide the exporting Party with the rationale for its determination.

- 지역화를 인정받은 지역에 대해 이미 획득한 지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당사국은 지위 회복에 대한 평가에 협력 할 의무가 있음(제11항).
- 지역화를 회복 및 재인정 받기 위한 수출국의 증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당사국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표2-9> WTO/SPS와 TPP/SPS의 ‘지역화’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지역화 인정	<p>제6조 제1항 (shall)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한다.</p> <p>제6조 제2항 (shall)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shall)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 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한다.</p>	<p>제7조 제1항 <u>회원국은 지역화(지역 regionalisation, zoning,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포함) 조건을 인정한다.</u></p>
국제기준 준수	<p>제6조 제1항 (shall)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율,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등을 고려한다.</p>	<p>제7조 제2항 (shall) WTO/SPS 위원회의 관련지침 및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p>
합리적 기간 내 평가 개시	-	<p>제7조 제4항 (shall) 수입회원국이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지역화 결정(determination) 요청을 받고 수출회원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u>합리적인 기간 내 평가를 개시</u>해야 한다.</p>
미발생/저발생 지역 구분	<p>제6조 제2항 (shall)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shall)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 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한다.</p>	<p>제7조 제3항 (권고)회원국은 병해충 미발생·저발생 지역 인정절차에 확신을 갖기 위해병해충 미발생·저발생 지역 인정(recognition)에 협력할 수 있다.</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검사	<p>제6조 제3항</p> <p>(shall)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p> <p>(shall)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 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p>	-
설명	-	<p>제7조 제5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4항에 따른 지역화 평가 개시할 때 수출국이 요청하면 지역화 결정 절차에 대해 즉시 관련 내용 설명해야 한다.</p>
정보제공	-	<p>제7조 제6항</p> <p>(shall) 수출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지역적 조건의 결정(determination)을 위한 해당 평가의 상황에 대하여 해당 수출 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지역화 이행	-	<p>제7조 제7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수출회원국의 특정 지역의 지역화 조건을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하면,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이행해야 한다.</p>
지역화 불인정 근거 제공	-	<p>제7조 제10항</p> <p>(shall) 수출회원국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수입회원국이 평가한 결과가 병해충 미발생·저발생 지역화를 불인정하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수출회원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p>
지위회복	-	<p>제7조 제11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수출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당사국은 지위 회복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협력(cooperate)해야 한다.</p>

사. 투명성

- TPP/SPS의 투명성 규정은 SPS조치를 3가지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통보(notification)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WTO/SPS 협정 보다 통보 요건이 구체화되고 강화됨.
 - 자국이 취할 SPS 조치를 사전에 제안하는 단계(proposed SPS measure)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통지 및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야 함. SPS 조치 안(案)이 논의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SPS 조치(final SPS measure)는 대내적으로 관보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공고하고, 대외적으로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의무가 있음.
 -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SPS 조치(all SPS measur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SPS 조치를 제안하는 회원국은 이해관계자와 다른 회원국에게 해당 SPS 조치안(proposed SPS measure)을 사전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공 기회를 부여해야 함(제13조 제1항).
 -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 SPS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안은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제3항).
 - WTO/SPS 협정에서는, SPS 조치에 대해 국제표준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SPS 조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 등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해당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보 및 공고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WTO/SPS 부속서B 제5항).
 - TPP/SPS chapter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사전에 통보하고 서면 의견(written comment)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투명성 의무를 강화함.
 - 긴급한 상황이거나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안된 SPS 조치에 대해서는 최소 60일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해야 함(제4항).

- 공식저널이나 웹사이트 등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제안된 SPS조치와 법적 근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받은 서면의견이나 그 요약본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제5항).
 -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SPS 조치를 통보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련 근거 및 서면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TPP/SPS에서 새롭게 다뤄진 의무임.
- 제안된 SPS 조치가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요청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상대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6항).
 - WTO/SPS 협정에서는 SPS 조치가 국제표준 등에 존재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이 국제표준 등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WTO/SPS 부속서B 제5항 다목).
 - 사실상 모든 SPS 조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TPP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국이 SPS 조치를 취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논의 등을 거친 최종 SPS 조치(final SPS measure)는 대내적으로 관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되고(제13조 제8항), 대외적으로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함(제9항).
 -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SPS 조치를 통보할 시에는, 시행일과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지지한 서면의견이나 관련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9항).
 - 최종 SPS 조치가 SPS조치안과 상당히 다르게 변경된 경우, 최종 SPS 조치를 공고하는 통지문에 ①변경된 조치의 목적과 근거 ②조치안에 가해진 실질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제10항).
 - 당사국은 SPS 조치의 공포와 발효 사이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제12항).
 -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SPS 조치를 즉시 발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TPP/SPS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본 규정은 수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WTO/SPS 협정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면, TPP SPS에서 규정하는 ‘조치의 공포와 발효 사이 최소 6개월의 기간’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한 의무규정임.

□ 다른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영토 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SPS 조치를 제공해야 함(제13조 제13항).

□ 회원국이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대표부서와 접촉선을 통해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함(제14조 제1항).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국가는 6개월 이내 해당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제14조 제2항).

○ WTO/SPS 협정에서는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특정 조치의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함(부속서B 제6항 가목).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부속서B 제6항 다목).

○ TPP/SPS 협정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통보의무와 검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14조).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고, 검토 이후에도 해당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는 TPP/SPS에서 도입 및 강화된 의무임.

<표2-10> WTO/SPS와 TPP/SPS의 ‘투명성’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SPS 조치안	의견 제공	-	제13조 제1항 회원국은 SPS조치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u>이해관계자와 다른 회원국에게 SPS조치안(proposed SPS measure)에 대한 의견제공(comment)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u>
	국제 기준 고려	-	제13조 제2항 (shall) 투명성 조항 이행에 있어, 회원국은 관련 WTO/SPS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통보	-	제13조 제3항 (shall)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 SPS 조치를 포함,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u>SPS 조치안(proposed SPS measure)을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u>
서면의견 제공	-	제13조 제4항 (shall) 긴급 상황 또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외하고, <u>SPS 조치안(proposed SPS measure)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른 회원국에게 서면의견(written comments)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른 통보일 이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allow)해야 한다.</u> (should)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shall) 회원국은 해당 의견제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shall) 다른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면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해야 한다.
전자수단으로 공개	-	제13조 제5항 (shall) 회원국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u>SPS조치안, 해당 조치의 법적근거, 해당 조치에 대한 국민의 서면의견 또는 서면의견 요약</u> 을 관보나 웹사이트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국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관련 문서 제공	-	제13조 제6항 (shall) 회원국이 제안한 SPS조치안이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위험평가, 관련연구와 전문가 의견 등 문서화된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포함하여 조치안을 개발하는데 고려한 관련 문서를 자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의 무역 제한	-	제13조 제7항 (shall) SPS조치의 채택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요청이 있고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SPS 조치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제기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최종 SPS 조치	논의		하는 과학 및 무역 관련 사안과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이고 덜 무역 제한적인 방안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논의해야 한다.
	공고	-	제13조 제8항 (shall) 각 회원국은 최종 SPS 조치의 통보(notice of final SPS measures)를 관보나 웹사이트 등 가급적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고(publish)해야 한다.
	통보	부속서B 제1항 (shall)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한다.	제13조 제9항 (shall) 각 회원국은 최종 SPS 조치(final SPS measures)를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시행 일과 법적 근거	-	제13조 제9항 (shall) 각 회원국은 최종 SPS 조치의 문서 또는 통보에 해당 조치의 시행일과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서면 의견 · 문서	-	제13조 제9항 (shall) 각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자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보기간 중 수취한 중요한 서면의견과 조치에 관련된 문서를 다른 회원국이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변경 통보	제7조 (shall)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shall)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 제10항 (shall) 최종 SPS 조치기(final SPS measure) 조치안(proposed SPS measure)과 상당히 다르게 변경된 경우, 회원국은 최종 SPS 조치의 통보 또는 SPS 조치의 공고에 다음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①조치의 목적과 근거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②조치안에 가해진 실질적 수정사항
	발효 전 시간 간격	부속서B 제2항 (shall)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 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방법을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한다.	제13조 제12항 (should) 긴급한 상황 또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외하고,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최종 SPS 조치(final SPS measure)의 공고와 발효일 사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제공(provide)해야 한다.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모든 SPS 조치	<p>부속서B 제5항</p> <p>(shall)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p> <p>가. 이해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p> <p>나.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동 규정의 대상 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조기에 행하여 진다.</p> <p>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p> <p>라.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하고 동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p>	<p>제13조 제13항</p> <p>(shall)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 영토 내로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한 모든 SPS 조치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해야 한다.</p>
문의처/접촉선	<p>부속서B 제3항</p> <p>(shall)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one enquiry point)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p> <p>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 또는 제안된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p> <p>나.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p> <p>다.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p> <p>라.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국제 및 지역 기구와 체제 및 이 협정의 대상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약정에의 자기나라 또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구의 회원지위 및 참여, 그리고 동 협정문 및 약정문</p>	<p>제13조 제11항</p> <p>(shall) 다음의 경우 수출국은 제7.6조의 접촉선을 통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수입국에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수출품과 관련된 심각한 SPS 위험 ②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국 동식물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는 긴급한 상황 ③지역 병해충·질병 상태의 심각한 변화 ④식품안전, 병해충·질병과 관련하여 규제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 ⑤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안전, 병해충·질병관리, 방제·박멸 정책·관례의 심각한 변화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긴급조치	<p>즉시 통보</p> <p>부속서B 제6항 (권고) 그러나 회원국에 대해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속서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무) 단, 동 회원국은, 가. 사무국을 통하여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특정규정 및 대상품목을 동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고,</p>	<p>제14조 제1항 <u>(shall) 긴급조치 채택 시 대표부서(primary representative)와 제7.6조의 접촉선을 통해 이를 상대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u> <u>(shall) 긴급조치 채택하는 국가는 통보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답변을 고려해야 한다.</u></p>
	<p>과학적 근거 검토</p> <p>-</p>	<p>제14조 제2항 <u>(shall)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회원국은, 6개월 이내 과학적 근거를 검토(review)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회원국이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u></p>
	<p>정기 검토</p> <p>-</p>	<p>제14조 제2항 <u>(should) 검토(review) 이후에도 긴급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해당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u></p>
	<p>사본 제공</p> <p>부속서B 제6항 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p>	-
	<p>논의</p> <p>부속서B 제6항 다.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하고 동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p>	-
정보교환	<p>제7조 (shall)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속서B 제4항 (shall)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동 사본은 배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와 동일한 가격(가격 지불이 필요한 경우)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한다.</p>	<p>제16조 (권고) 회원국은 SPS 조치에 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의무, shall) 요청받은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한 가능하면 전자적 수단으로, 요청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p>부속서B 제8항</p> <p>(shall)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고의 대상인 문서의 사본, 또는 문서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한다.</p>	
통보언어	<p>부속서B 제7항</p> <p>(shall)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p>	-
책임지는 정부당국	<p>부속서B 제10항</p> <p>(shall)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국내 차원에서의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p>	-
개도국 주의환기	<p>부속서B 제9항</p> <p>(shall)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및 이해당사국체기구에 통보서 사본을 신속히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 관심품목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p>	
일반적인 유보	<p>부속서B 제11항</p> <p>(shall)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가. 이 부속서 제8항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로 초안의 상세사항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문안의 공표, 또는</p> <p>나. 공개시 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의 공개</p>	-

아. 협력적 기술협의(CTC)(제17조) 및 분쟁해결(제18조)

□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SPS 관련 사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CTC(협력적 기술협의·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가 적용됨. 동 절차는 WTO/SPS 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와 매우 유사하지만, CTC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CTC에 제기된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이는 TPP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될 수 있음.

○ 회원국 간 SPS 조치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 권한 있는 행정당국의 행정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당사국이 CTC를 추구한다면, 행정절차와 같은 방법은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음(제17조 제1항). CTC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TPP 제28조(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할 수 있음(제17조 제7항).

— CTC 요청은 서면으로 이유 등을 밝혀야 함.(제17조 제2항)

— 당사국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신국(피제소국)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령을 통지해야 함.(제17조 제3항)

— 당사국간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회신국의 요청 수령 통지로부터 30일 내 회합해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함.(제17조 제4항)

□ TPP/SPS 제18조(분쟁해결)에서는 SPS 관련 사안에 대해 TPP 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TPP 분쟁해결 절차는 WTO/SPS 및 일부 FTA/SPS에 의해 적용되는 WTO 분쟁해결 절차보다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TPP SPS chapter는 TPP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의무가 있음. 다만, 동등성·실사·수입검사는 1년, 위험분석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둠.

○ 과학적 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분쟁에서, 패널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패널은 기술적 전문가 자문단(advisory technical experts group)을 설립하거나, 관련 국제기준 설립 기구와 협의 할 수 있음.

— 12개국 간의 해결절차이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결보다는 당사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타협 등으로 해결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표2-11> WTO/SPS와 TPP/SPS의 'CTC 및 분쟁해결'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C T C	-	<p>제17조 제1항</p> <p><u>(의무, shall)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관심사항을 가지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다른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이용가능한 행정절차를 통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u>(의무, shall) 관련 당사국들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제기한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권고) 당사국은 그러한 행정절차의 지속적 이용이나 양자간 또는 기타 메커니즘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2항에 규정된 협력적 기술협의(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를 이용할 수 있다.</p>
서면 요청	-	<p>제17조 제2항</p> <p>(권고)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청구국(제소국)은 회원국(피제소국)의 주요 대표자에게 청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국(피제소국)과의 CTC를 개시할 수 있다.</p> <p><u>(의무, shall) CTC 청구는 서면으로 사안에 관한 청구국(제소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해당 청구의 사유를 적시해야 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장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u></p>
수령 인정	-	<p>제17조 제3항</p> <p><u>(shall) 당사국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피제소국)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청구를 수락해야 한다.</u></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회합 및 논의	-	<p>제17조 제4항</p> <p><u>(shall) 협의당사국간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당사국은, 가능하면 청구일 부터 180일 이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에 적시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신국(피제소국)이 청구를 수락한 날 부터 30일 이내 회합해야 한다.</u></p> <p><u>(shall) 회합은 직접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해야 한다.</u></p>
참여	-	<p>제17조 제5항</p> <p><u>(shall) 협의당사국(consulting parties)은 협의에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u></p>
비밀 유지	-	<p>제17조 제6항</p> <p><u>(shall) CTC 과정에서 협의당사국의 모든 협의내용과 문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하며, 이 협정 및 WTO 협정 또는 협의당사국이 당사국인 기타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u></p>
선결 조치	-	<p>제17조 제8항</p> <p><u>(shall) 이 장(SPS조치) 관련 사안은 이 조항(CTC)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28장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u></p>
분쟁해결	<p>제11조 제1항</p> <p>(shall)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p>	<p>제18조 제1항</p> <p>(shall)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을 조건으로, 제28장 (분쟁 해결) 이 장에 적용되어야 한다:</p> <p>(shall)① 제7,8조 (동등성), 제7.10조 (감사), 및 제7.11조 (수입검사)에 관하여는, 제28장 (분쟁해결)은 회신국(피제소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해당 회신국(피제소국)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p> <p>(shall)② 제7.9조 (과학 및 위험분석)에 관하여는, 회신국(피제소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후부터 해당 회신국(피제소국)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자문	제11조 제2항 (should)이 협정에 따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should) 이 장에 따른 분쟁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쟁점을 수반하는 분쟁의 경우, 패널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회원국의 권리	제11조 제3항 (shall)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자. 실사(제10조)

□ WTO/SPS 위원회는 수입국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TPP에서는 이러한 권한행사를 위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실사 일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

- 실사는 시스템에 기반해야 하며, 수출국 관할기관의 규제관리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디자인되어야 함(제2항).
 - 실사 대상이 상대국의 시스템에 기반하고 규제관리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본 규정만으로는 수출국 정부의 규제시스템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개별 수출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함.
- 당사국간 실사 관련 비용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사국에 의해 실사 중 발생한 비용은 실사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7항).
- 실사국과 피실사국은 실사 중 획득한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제8항).

<표2-12> WTO/SPS와 TPP/SPS의 ‘실사’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 협정	TPP/SPS 협정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p>제8조</p> <p>(shall)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나라의 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p>	-
비차별 (절차)	<p>부속서C 제1항 가목</p> <p>1. (의무, shall)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p> <p>가. 이러한 절차는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 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완료된다.</p>	-
절차	<p>부속서C 제1항 나목(shall)</p> <p>(처리기간 통보)각 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예상 처리기간이 요청시 신청인에게 통보된다.</p> <p>(하자통보)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p> <p>(경과전달)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의 경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요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p> <p>(진행단계 통보)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절차의 진행단계를 통보한다.</p>	-
정보요구의 범위	<p>부속서C 제1항 다목(shall)</p> <p>정보의 요구는 첨가제 사용의 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p>	-
비밀유지	<p>부속서C 제1항 라목(shall)</p> <p>통제, 검사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된다.</p>	-

키워드	WTO/SPS 협정	TPP/SPS 협정	
건본	부속서C 제1항 마목(shall) 상품의 개별적인 건본의 통제, 검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수수료	부속서C 제1항 바목(shall) 수입상품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국내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 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	
비차별 (적용기준)	부속서C 제1항 사목(shall)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수입품의 표본 선정시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부속서C 제1항 아목(shall) 적용되는 규정에 비추어 통제 및 검사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절차는 동 상품이 관련 규정을 계속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또한,	-	
이의제기	부속서C 제1항 자목(shall) 이러한 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한다.	-	
지원	부속서C 제2항 (shall)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생산 단계에서의 통제를 명시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영토내에서 동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 및 통제당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검사	수입 검사	부속서C 제3항 (shall)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shall) 회원국은 자국의 수입검사 프로 그램이 수입과 관련 있는 위험에 근거하고, 수입검사가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거 자료· 정보 제공	-	제11조 제2항 (shall) 회원국은 수입검사 성격·빈도 결정의 근거자료 및 수입절차 관련 정보를 다른 회원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WTO/SPS 협정	TPP/SPS 협정
기록 유지	-	<p>제11조 제4항</p> <p><u>(shall) 수입회원국은 상품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기법, 품질관리, 표본추출 절차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해야 한다.</u></p> <p><u>(shall) 수입회원국은, 모든 시험이 국제 실험실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내에서 적절하고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u></p> <p><u>(shall) 수입회원국은 시험샘플의 확인, 수집, 표본추출, 운송, 보관 및 해당 시험 샘플에 대해서 사용된 분석기법에 관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류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u></p>
과학적 근거	-	<p>제11조 제5항</p> <p><u>(shall) 수입국의 SPS조치에 불일치 한다는 최종결정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u></p>
수입 금지·제한	<p>부속서C 제1항</p> <p><u>(shall) 수입회원국이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식품첨가제 사용승인제도 또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에 관한 제도로써 동 승인 미취득시 국내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 까지 접근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한다. (->고려해야 한다)</u></p>	<p>제11조 제6항</p> <p><u>(shall) 수입검사 결과에 의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수입업자나 대리인, 수출업자, 제조업자, 수출국 정부 중 하나 이상에 통보해야 한다.</u></p> <p>제11조 제7항</p> <p><u>(shall) 수입회원국이 제6항에 따라 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통보는:</u></p> <p><u>(a)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p> <p><u>(i) 그 수입 금지나 제한의 이유;</u></p> <p><u>(ii)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나 승인; 그리고</u></p> <p><u>(iii) 해당 상품의 지위에 관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한 정보</u></p> <p><u>(b) 해당 상품이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있지 않는 한, 금지 또는 제한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자국의 법, 규정 및 요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u></p> <p><u>(c) 해당 통보가 여타 경로를 통해 제공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해당 통보를 전송해야 한다.</u></p> <p>제11조 제8항</p> <p><u>(shall)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입 회원국은 결정에 대한 검토(review)의</u></p>

키워드	WTO/SPS 협정	TPP/SPS 협정	
		<p>기회를 제공하고, 검토를 위해 제시된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p> <p>(should) 재검토에 관한 요청 및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입회원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불일치 통보	-	<p>제11조 제9항</p> <p>(shall) 수입회원국이 SPS 조치의 불일치가 심각(significant), 지속적(sustained), 반복적(recurring)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 해당 불일치를 통보해야 한다.</p> <p>제11조 제10항</p> <p>(shall) 요청에 따라,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게 SPS 조치에 불일치 하는 것으로 결정된 수출국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실사	실사 권리	-	<p>제10조 제1항</p> <p>(shall) 수출회원국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수입회원국의 SPS 조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각 수입회원국은, 이 조항에 따라, 수출회원국의 책임기관 및 그와 연관된 또는 지정된 검사시스템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p>
	시스템 기반	-	<p>제10조 제2항</p> <p>(shall) 실사는 시스템에 기반하며, 수출국 관할기관의 규제관리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디자인 되어야 한다.</p>
	실사시 고려 사항	-	<p>제10조 제3항</p> <p>(shall) 실사 수행 시, 당사국은 SPS 위원회의 안내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p>
	목적·범위 결정	-	<p>제10조 제4항</p> <p>(shall) 실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입국과 수출국은 근거를 논의하고 실사 목적과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p>
	평가 제공	-	<p>제10조 제5항</p> <p>(shall) 실사국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실사의 사실 확인에 대해서 논평하고 그러한 논평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피실사국에게 제공해야 한다.</p> <p>(shall) 실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 그 실사의 결과를 정리한 서면보고서를 피실사국에게 제공해야 한다.</p>

키워드	WTO/SPS 협정	TPP/SPS 협정
객관적 증거	-	제10조 제6항 (shall) 실사국의 결정과 행위는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피실사국 경험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u>(shall) 객관적 증거와 자료는 피실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u>
		제10조 제7항 (shall) 당사국간 실사관련 비용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사국에 의해 실사 중 발생한 비용은 실사국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제8항 (shall) 실사국과 피실사국은 실사 중 획득한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명	-	제12조 제1항 <u>SPS 요건에 대한 보증이 증명서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자국의 SPS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도 인정한다.</u>
		제12조 제2항 (shall) 수입회원국이 물품 무역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증명서 요건은 SPS 관련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제12조 제3항 (shall) 증명서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입 회원국은 WTO/SPS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기준, 지침,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제4항 (shall) 수입회원국은 증명서 상에서 요구하는 증거와 정보도 수입국 SPS 목적과 관련된 필수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제12조 제5항 <u>(should) 수입국은 수출국 요청 시 증명서에서 요청하는 증거 또는 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u>
		제12조 제7항 (shall) 원활한 무역을 위해 당사국은 전자 증명서 그리고 다른 기술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차. SPS 위원회, 관할기관 및 접촉선

□ TPP/SPS chapter에서는 SPS조치의 효과적인 도입 및 이행을 위해, SPS 사안을 담당할 정부조직인 SPS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 제1항). 또한, 관할기관의 책임과 접촉선(contact point)을 문서로 제공하고 대표부서를 밝히도록 함(제6조).

○ 위원회는 ①SPS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이슈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②각 회원국의 SPS조치와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해 상호 이해를 강화 등을 위해 포럼을 개최해야 함(제3항).

○ 위원회는 첫 회의 때 위임사항(TOR)을 설정해야 하며(제4항),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이 발효된 지 1년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함(제5항).

○ TPP 회원국은 협정이 발효된 지 60일 이내 SPS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기관의 책임과 접촉선을 문서로 제공하고, 대표부서를 밝혀야 함. 해당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함.(제6조)

□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협정 중 7개 협정에서 SPS 위원회 또는 접촉선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 외 7개 협정에서는 SPS 위원회 설치의무 또는 접촉선 정보교환 의무만을 규정하고, 관할 기관이나 책임부서를 지정하지 않음. 한·터키 FTA에서는 SPS 위원회 또는 접촉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TPP/SPS 협정 상 강화된 의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여 관리 및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2-13> ‘SPS위원회 및 접촉선’ 규정 비교

협정문	관리 및 이행 / SPS 위원회 · 접촉선 규정
WTO/SPS	제12조 관리 1. 이 협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위원회가 설치된다.

협정문	관리 및 이행 / SPS 위원회 · 접촉선 규정
	<p>(shall)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정의 목적, 특히 조화와 관련된 목적의 증진을 수행한다.</p> <p>(shall)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p> <p>2.(shall)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p> <p>(shall)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shall)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 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및 통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및 연구를 후원한다.</p> <p>3.(shall) 이 협정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확보 하고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 협약사무국 등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p> <p>4.(shall)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p> <p>(shall)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위원회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shall) 동 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적용하거나 수입상품이 자기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하여 부합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should)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특히 동 표준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제공 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등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p> <p>(should)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 의사를 표명한 후, 자기나라의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2의 절차에 따라 통보 및 해명이 제공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변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무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7. (shall)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p> <p>제13조 이행</p> <p>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p> <p>(shall)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 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p> <p>(shall)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p> <p>(shall)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p> <p>(shall)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p>

협정문	관리 및 이행 / SPS 위원회 · 접촉선 규정
	<p>+ 제3조 제5항 (shall)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p> <p>+ 부속서B 제3항 (shall)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 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one enquiry point)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이하생략)</p>
한·칠레	- (의무)당사국에 SPS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제8.11조)
한·싱가포르	- (의무)양 당사국은 접촉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를 접촉선으로 지정하고 있음.(제7.1조 제4항)
한·EFTA	- (의무)당사국은 기술적 협의 및 정보교환을 위해 SPS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접촉선의 성명 및 주소를 교환해야 함(제2.7조 제2항). 그러나 협정문에서 접촉선을 지정하지는 않음.
한·ASEAN	- (의무)당사국은 SPS조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위해 연락처를 지정해야 함(상품무역협정 제8조 제3항). 그러나 연락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음.
한·인도	- (의무)제2장(상품무역) 제2.28조 제3항에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언급은 없음.
한·EU	- (의무)SPS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합의한 일자에 1년에 한번 회합하도록 하고 있음(제5.10조).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사국의 어느 기관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음.
한·페루	- (의무)SPS위원회의 조정기관으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을 지정하고 있음(제6.7조 제5항).
한·미국	- (의무)SPS 사안을 담당하는 SPS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8.3조). 그러나 담당기관이나 대표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
한·터키	- SPS 위원회 또는 접촉선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한·호주	- (의무)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를 접촉선으로 지정하고 있음(제5.15조 제1항).
한·캐나다	- (의무) SPS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접촉선을 지정하도록 함(제5.5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협정에서 부처나 부서를 지정하지는 않음.

협정문	관리 및 이행 / SPS 위원회 · 접촉선 규정
한·중국	- (의무)당사국은 SPS 위원회 회의 등의 조율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 한국의 접촉선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간임 (제 5.5조 제7항).
한·뉴질랜드	- (의무)SPS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및 당사국 간 정보교환을 위해 접촉선 지정해야 함.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을 접촉선으로 지정하고 있음(제5.4조 제5항).
한·베트남	- (의무)양 당사국은 SPS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정보교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촉선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제5.5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가 접촉선으로 지정됨(제5.5조 제7항).
한·콜롬비아	- (의무)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이 SPS 위원회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5조 제5항).
TPP/SPS	<p>제5조 SPS 위원회</p> <p>1.(의무) 이 장(SPS조치)의 효과적인 도입 및 이행을 위해, 회원국은 SPS 사안을 담당할 정부조직인 SPS 위원회를 설치한다.</p> <p>2.(의무) SPS위원회는 ①이 장의 이행 강화 ②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SPS 문제를 고려 ③SPS 관련 사안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3. a.(의무, shall) 위원회는 WTO/SPS 협정과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SPS 이슈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포럼 개최.</p> <p>b.(의무, shall)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SPS조치와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해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p> <p>c.(의무, shall)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p> <p>d.(의무, shall) 위원회는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특별 업무를 수행할 적절한 수단을 결정</p> <p>e.(권고) 위원회는 당사국 간 SPS 조치의 기술적 지원(TA)과 협력(cooperation)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음.</p> <p>f.(권고) 회원국 간 화제가 되는 SPS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수 있음.</p> <p>g.(권고) 위원회는 WTO/SPS 위원회의 회의와, CODEX, OIE, IPPC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회의의 관련사안과 직위에 대해 상의할 수 있음.</p> <p>4.(의무, shall) 위원회는 첫 회의 때 위임사항(TOR)을 설정해야 하며, 위임사항은 필요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may).</p> <p>5.(의무, shall)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협정이 발효된 지 1년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p> <p>제6조 관할기관과 접촉선</p> <p>(의무, shall)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지 60일 이내 관할기관의 책임과 접촉선을 문서로 제공하고, 대표부서(primary representative)를 밝혀야 한다.</p> <p>(의무, shall) 회원국은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p>

카. 기술지원 및 협력

<표2-14> WTO/SPS와 TPP/SPS의 '기술지원 및 협력'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기술지원	제9조 제1항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
개도국 시장접근 기회 유지/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제9조 제2항 (shall)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
SPS조치 이행추진을 위한 협력	-	제15조 제1항 (의무, shall) 회원국은, 이 장과 합치하여, 상호간의 관심사안인 SPS 문제들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 협력, 공동작업 및 정보교환의 증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권고) 그러한 기회는 무역원활화 방안 및 기술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의무,shall) 회원국은 이 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벽 제거를 위한 협력	-	제15조 제2항 (의무) 회원국은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shall)SPS 사안에 관해 협력해야 하며, (may)SPS 사안에 관한 작업을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타. 용어의 정의

- TPP/SPS의 용어는 WTO/SPS 부속서A에 규정된 용어를 포함하며, OIE 등 국제표준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일부 도입됨.

<표2-15> WTO/SPS와 TPP/SPS의 ‘용어의 정의’ 규정 비교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SPS 조치	<p>부속서A 제1항</p> <p>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p> <p>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p> <p>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p> <p>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p> <p>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p> <p>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 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 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p>	<p>제1조 제1항</p> <p>(shall) WTO/SPS협정 부속서A(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하여, TPP/SPS chapter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조화	<p>부속서A 제2항</p> <p>상이한 회원국에 의한 공동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 인정 및 적용</p>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p>부속서A 제3항</p> <p>가. 식품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물질, 분석 및 표본추출방법, 위생 관행의 규약 및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표준 지침 및 권고</p> <p>나. 동물위생 및 동물성전염병의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후원하에 개발된 표준, 지침 및 권고</p> <p>다.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와의 협조와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의 후원하에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그리고</p> <p>라. 위의 기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적절한 표준, 지침 및 권고로서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것</p>	
위험평가	<p>부속서A 제4항</p> <p>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p>	
SPS보호의 적정수준	<p>부속서A 제5항</p> <p>자기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p>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병해충 안전지역	부속서A 제6항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지역	부속서A 제7항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주무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	
TPP/SPS 에서 추가된 개념	-	<p>제1조 제2항</p> <p><u>추가적으로,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아래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u></p> <p><u>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y):</u> SPS 조치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회원국의 정부조직</p> <p><u>긴급조치(emergency measure):</u>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 또는 위협하여 수입국이 수출국에 취하는 SPS 조치</p> <p><u>수입검사(import check)</u></p> <p><u>수입프로그램(import program)</u></p> <p><u>대표부서(primary representative):</u> SPS 조치 이행에 책임이 있고, 위원회 참여를 관장하는 부서</p> <p><u>위험분석(risk analysis):</u>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p> <p><u>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u> 위험, 위험관련 요소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p> <p><u>위험관리(risk management):</u>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조치 등 적정 통제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p>

파. '특별 및 차등대우', '최종조항'

- WTO/SPS 협정은 회원국이 SPS 조치의 준비 및 적용을 하는 경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함. 또한, 새로운 SPS 조치의 도입 시 단계적 도입이 가능한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의 준수를 위해 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표2-16> WTO/SPS와 TPP/SPS의 '특별 및 차등대우', '최종조항' 규정

키워드	WTO/SPS협정	TPP/SPS협정
개도국·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제10조 제1항 (shall)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 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
개도국에 장기간 부여	제10조 제2항 (should)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이 새로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단계적인 도입의 여지를 허용하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준수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개도국 참여권유	제1조 제4항 (should)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
최종조항	제14조 (권고)	-

5. 소결 및 시사점

- 이상에서 분석한 WTO/SPS 협정, FTA/SPS chapter, TPP/SPS chapter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2-17>과 같음.

<표2-17> WTO/FTA/TPP SPS 규정 비교

	WTO SPS	FTA											TPP SPS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EU ²⁾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캐나다 콜롬비아	
	14개조 부속서3	SPS챕터 12개조	SPS/상품 1개조 ¹⁾	상품챕터 1개조	SPS챕터 1개조	SPS챕터 11개조	SPS챕터 9개조	SPS챕터 4개조	SPS챕터 1개조	SPS/TBT 6개조	SPS챕터 6개조	SPS챕터 5개조	SPS챕터 18개조
적용범위		WTO SPS 협정상 적용범위와 유사											할랄
권리의무		WTO SPS 협정상 권리 및 의무 준용											유사
조화		유사
동등성		유사	유사	+
위험평가	위험평가	유사	준용	위험분석
지역화	지역화	+	+	구역화
투명성		유사	.	.	.	유사	+
분쟁해결	WTO	FTA	FTA	패널구성 부터 제외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TPP
실사	수출국 시설	.1)	시스템 기반

1) 한·싱 FTA는 SPS챕터에 1개 조항, 한·ASEAN FTA는 상품협정에 1개 조항으로 구성

2) 한·EU FTA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

□ FTA/SPS협정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는 대체적으로 WTO/SPS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준용하고 있음.

- 한·싱가폴 FTA, 한·ASEAN FTA 등의 협정문에서는 SPS 관련 사안에 대해 WTO/SPS 협정문을 원용한다는 1개 조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칠레 FTA 협정문 SPS 챕터는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지역화 인정 요청의 거절 시 수입국이 기술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WTO/SPS 협정상 의무를 준용함.

□ TPP/SPS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의무는 WTO/SPS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 중 일부가 보다 강화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됨.

- (적용범위) TPP/SPS 제3조(적용범위)의 주요 쟁점은 할랄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임. 이는 할랄 요건이 TPP/SPS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할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할랄 요건에 관한 정보수집,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설비 및 공정 등의 정비, 할랄 인증 취득에 힘써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등성) TPP/SPS에서는 동등성 인정 요건을 '수입국 SPS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이는 궁극적으로 SPS 조치를 완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위험평가) TPP/SPS 제5조는, WTO/SPS 및 기체결 FTA/SPS chapter에서 다루는 '위험평가'보다 상위 개념인 '위험분석'에 대해 규정하여 그 범위가 확대 됨. 또한 상대적으로 수입국에게 더욱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수입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약화시키고, 인간과 동식물 보호에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역화) TPP/SPS에서 제시된 '구역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 또는 농장 등을 포괄하여, WTO/SPS의 '지역화'보다 범위가 확대됨. 따라서, 지역화 인정 등의 사안에 대해 다수의 분석대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투명성) TPP/SPS 협정에서는 모든 SPS 조치에 대해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보다 강화된 의무를 규정함. 해당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SPS 통보문의 작성·번역·검토 및 질의응답을 담당할 전담인력 및 DB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함.
- TPP/SPS chapter의 의무규정은 WTO/SPS 위원회의 권고, 결정 및 국제표준 등이 반영된 것임. 따라서 TPP/SPS 협정문 규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가 필요함.
- TPP/SPS의 동등성 규정은 WTO/SPS위원회의 결정(G/SPS/19/Rev.2)을 참고하였으며, 지역화 이행 관련 규정은 WTO/SPS위원회의 가이드라인(G/SPS/48)을 참고한 규정임.
- 또한, WTO/SPS에도 CTC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G/SPS/61), 이에 따르면 타방 당사국이 CTC를 요청하는 경우, 동 절차를 이행해야 함.
- TPP/SPS 규정은 RCEP와 FTA 재협상 등 추후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협정문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따라서, 보다 강화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SPS 관련 조직·제도·법률 등 제반사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국제동향 및 국제기준 분석

1. WTO/SPS 위원회 동향분석

가. 통보문 분석

□ SPS 일반통보와 긴급통보 건수와 주제를 통해 동향을 분석해보면, 일반통보는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의 통보비중이 높았고 주로 식품안전에 관한 통보였음. 긴급통보는 필리핀, 알바니아 등에서 통보비중이 높았고 주로 동물질병으로 인한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있었음.

○ 국가별 SPS 조치 누적 일반통보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총 2,810건으로 전체 통보 건수의 20%를 차지함. 브라질은 총 일반통보 1,213건(전체의 9%)으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통보 건수를 기록함.

－ 미국이 일반통보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SPS 일반통보의 2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임.

－ 브라질은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 까지 일반통보 131건(13%)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함(<표 3-2> 참고). 이런 이유로, 작년까지는 누적 일반통보 건수가 3위였지만, 올해 중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섬.

－ WTO/SPS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통보문을 조회해보면, 미국과 브라질 모두 식품안전(Food Safety)에 관한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그 중 최대잔류허용한계치(Maximum residue limits·MRLs)에 관한 통보문이 브라질 85건, 미국 68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국가별 누적 긴급통보는 필리핀(총 185건, 10%)과 알바니아(총 166건, 9%)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함.

－ 필리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 까지 5건의 긴급통보를 했는데, 모두 동물질병(Animal Disease) 특히 조류독감(Avian Influenza)에 관한 통보였음(<표 3-2>, <표 3-3> 참고).

- 알바니아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 까지 6건의 긴급통보를 했는데, 모두 동물질병(Animal Disease)과 관련된 통보였고 그 중 4건은 지역화(Pest or Disease free Regions)와도 관련 있음(<표 3-2>, <표 3-3> 참고).
- 알바니아의 긴급통보문 내용을 살펴보면 돼지열병(African Swan fever)과 소, 물소 등의 전염병인 괴피병(Lumpy Skin disease) 발병 국가의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관한 것임.

<표 3-1> 국가별 SPS 조치 통보 건수(1995~2016.9.15)

순위	국가	일반통보(건)	비중(%)	국가	긴급통보(건)	비중(%)
1	미국	2,810	20	필리핀	185	10
2	브라질	1,213	9	알바니아	166	9
3	중국	1,162	8	뉴질랜드	116	7
4	캐나다	1,069	8	미국	83	5
5	페루	605	4	콜롬비아	76	4
6	한국	527	4	우크라이나	74	4
7	유럽연합	523	4	유럽연합	65	4
8	칠레	497	4	페루	64	4
9	일본	462	3	러시아	62	3
10	뉴질랜드	426	3	사우디아라비아	58	3
11	대만	414	3	아랍에미리트	51	3
12	호주	369	3	태국	46	3
13	멕시코	267	2	칠레	37	2
14(13)	태국	209	2	멕시코	37	2
15	콜롬비아	188	1	호주	32	2

자료: WTO, G/SPS/GEN/804/Rev.9(2016.10.10)

<표 3-2> 국가별 SPS 조치 통보 건수(2015.9.15~2016.9.15)

순위	국가	일반통보(건)	비중(%)	국가	긴급통보(건)	비중(%)
1	브라질	131	13	사우디아라비아	17	26
2	미국	111	11	아랍에미리트	10	15
3	캐나다	104	10	러시아	9	14
4	일본	50	5	알바니아	6	9
5	페루	47	5	필리핀	5	8
6	중국	46	5	카자흐스탄	3	5
7	대만	43	4	뉴질랜드	3	5
8	인도	41	4	우크라이나	2	3
9	한국	32	3	이집트	1	2
10	필리핀	31	3	유럽연합	1	2

자료: WTO, G/SPS/GEN/804/Rev.9(2016.10.10)

□ 일반통보는 식품안전(Food Safety) 관한 통보가 751건으로 74%를 차지했음(<표3-3> 참고). WTO/SPS IMS에서 통보문을 조회해보면, 751건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보 중 최대잔류허용한계치(MRLs)에 대한 통보가 306건이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WTO/SPS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제네바에서 최대잔류허용한계치에 대한 워크숍(Thematic SPS workshop on pesticide maximum residue levels)을 개최함.

－ 워크숍에서는 농약, 살충제 등의 최대잔류허용한계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논의하고,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체계를 제시함. 또한 CODEX의 최대잔류허용한계치 기준과 규정의 실행, 그리고 해당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표 3-3> 통보 목적별 문서 종류별 통보건수 최근 동향 (단위 : 건, %)

통보기간 : 2007.7~2010.6	일반통보	비중	긴급통보	비중
식품안전	1,549	37	129	20
동물건강	407	10	222	35
식물보호	779	19	65	10
동식물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 보호	1,211	29	168	27
병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	252	6	51	8
통보기간 : 2012.9.15.~2013.9.15	일반통보	비중	긴급통보	비중
식품안전	567	37	13	13
동물건강	130	8	43	42
식물보호	181	12	15	15
동식물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 보호	602	39	23	22
병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	68	4	9	9
통보기간 : 2014.9.15.~2015.9.15	일반통보	비중	긴급통보	비중
식품안전	919	64	52	24
동물건강	87	6	90	41
식물보호	191	13	24	11
동식물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 보호	144	10	54	25
병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	98	7	0	0

통보기간 : 2015.9.15.~2016.9.15	일반통보	비중	긴급통보	비중
식품안전	751	74	21	32
동물건강	112	11	42	65
식물보호	180	18	12	18
동식물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 보호	67	7	5	8
병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	58	6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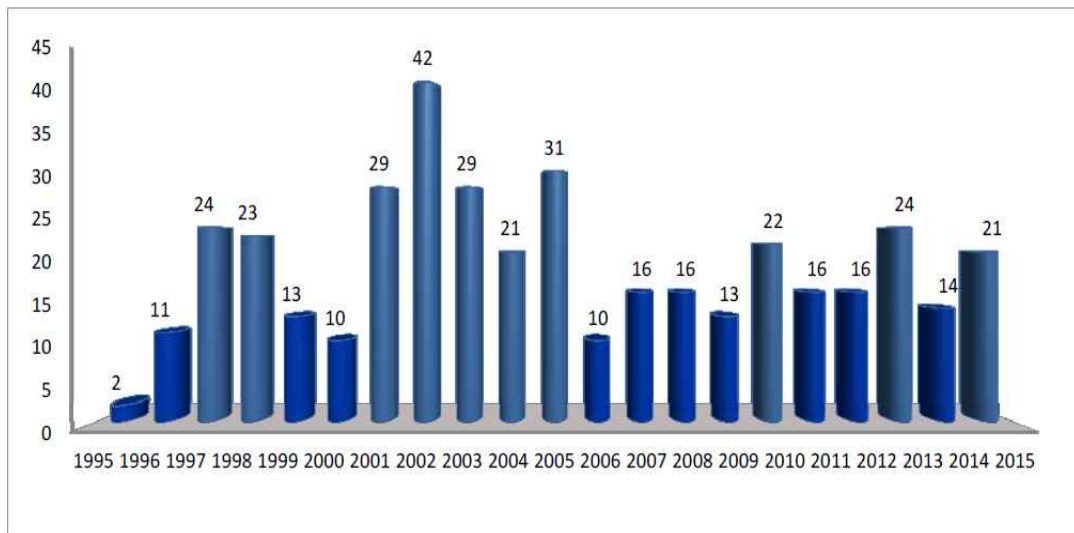
자료: WTO, G/SPS/GEN/804(Rev.3, Rev.6, Rev.8, Rev.9를 재가공)

나. 특정무역현안

□ WTO/SPS 위원회에 통보된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대국은 이에 응해야만 함.

○ 1995년부터 2015년 까지 21년 동안 총 403건의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됐고, 201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21건임(<그림 3-1> 참조).

<그림3-1> WTO/SPS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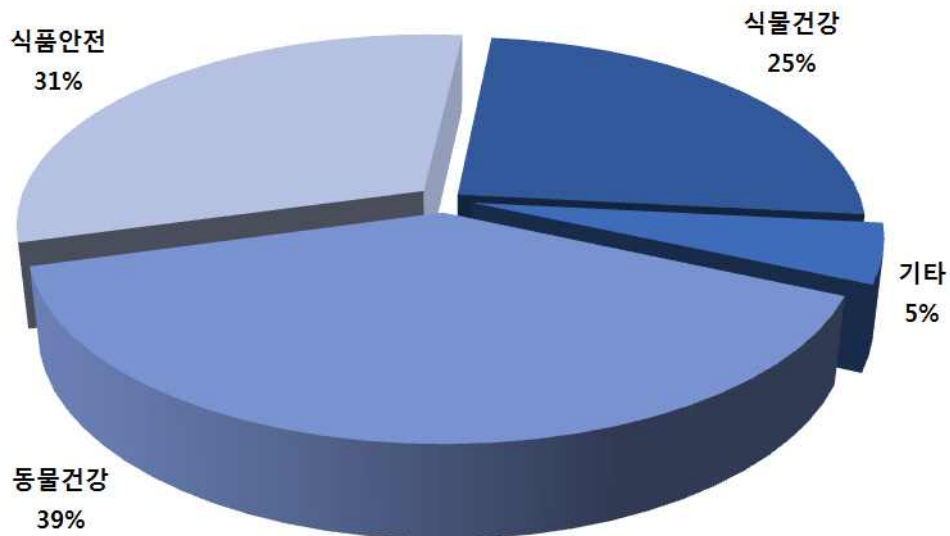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G/SPS/GEN/204/Rev.16

□ 특정무역현안의 주제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면, 동물건강과 동물질병에 관한 사안이 39%로 가장 많았고 주로 전염성 해면상뇌증, 구제역, 조류독감에 관한 것이었음.

○ 지난 21년간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동물건강(Animal Health)에 관련된 사안이 39%로 가장 많았음. 식품안전(Food Safety)에 관련된 사안이 31%, 식물건강(Plant Health)에 관한 사안이 25%이었고, 기타가 5%였음(<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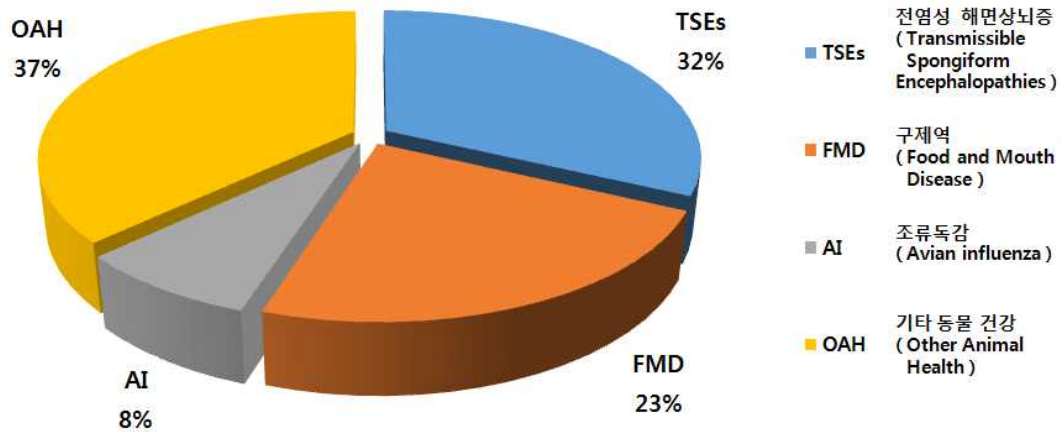
<그림3-2> 주제별 특정무역현안(STCs)(1995-2015)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G/SPS/GEN/204/Rev.16

○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이 제기된 주제인 동물건강 및 동물질병(zoonoses)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염성 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TSEs)에 관한 현안이 32%를 차지함. 구제역(Food and Mouth Disease·FMD)에 관해 제기된 현안은 23%를 차지하며, 조류독감(Avian Influenza·AI)에 관한 현안은 8% 제기됨. 기타 동물건강에 관해 제기된 현안이 37% 임(<그림 3-3> 참고).

<그림3-3> 동물건강 및 동물질병 관련 특정무역현안(STCs)(1995-2015)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G/SPS/GEN/204/Rev.16

□ 한국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일본이 제기한 식품안전(STC359), EU가 제기한 광우병(Bovin Spongiform Encephalopathy·BSE)에 의한 수입 제한(STC193)과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에 의한 수입제한 (STC393)이 있음.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 수입검사증명서 등 추가 검사와 증명서를 요구함.

— 일본은 한국이 SPS 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험 평가 수행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역시 불충분했다고 주장함.

— 따라서 한국의 SPS 조치가 동등성(제4조), 위험분석(제5조 제7항, 제8항), 투명성(제7조) 위반이라고 WTO/DSU에 제소함.

— 2015년 9월 패널이 설치됨(WT/DS495/3).

○ 2014년 한국 정부가 돼지열병(ASF)을 근거로 폴란드산 돼지고기류의 수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2015년 EU가 이의를 제기함.

— EU는 한국 정부가 SPS 협정의 지역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EU는 한국 정부가 SPS 협정의 지역화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것으로 판정된 돼지고기류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은 2014년 돼지열병 문제가 발생하자, 폴란드산 돼지고기류의 수입을 제한함. 한국은 EU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 실사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했고, SPS협정 제6.2조와 6.3조의 의무를 준수함.
- EU는 광우병(BSE) 위험이 있는 소고기의 수입제한은 OIE의 권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이고,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함.
- 광우병(BSE) 위험이 있는 소고기의 수입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EU에 따르면, 광우병(BSE)에 대해 OIE의 국제표준이 잘 정립되어 있음. 또한 OIE는 소고기의 안전한 수입조건에 대해 세부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살코기(deboned meat)와 같은 부위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안전한 부위이므로 추가적인 위험평가나 무역제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 EU는 OIE의 광우병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과학적 위험평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다. 시사점

- WTO/SPS 위원회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제공의무와 투명성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향후 전 세계적으로 SPS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더 강화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WTO/SPS 위원회 동향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위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보면, OIE 등 국제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SPS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례가 상당수임.
-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설비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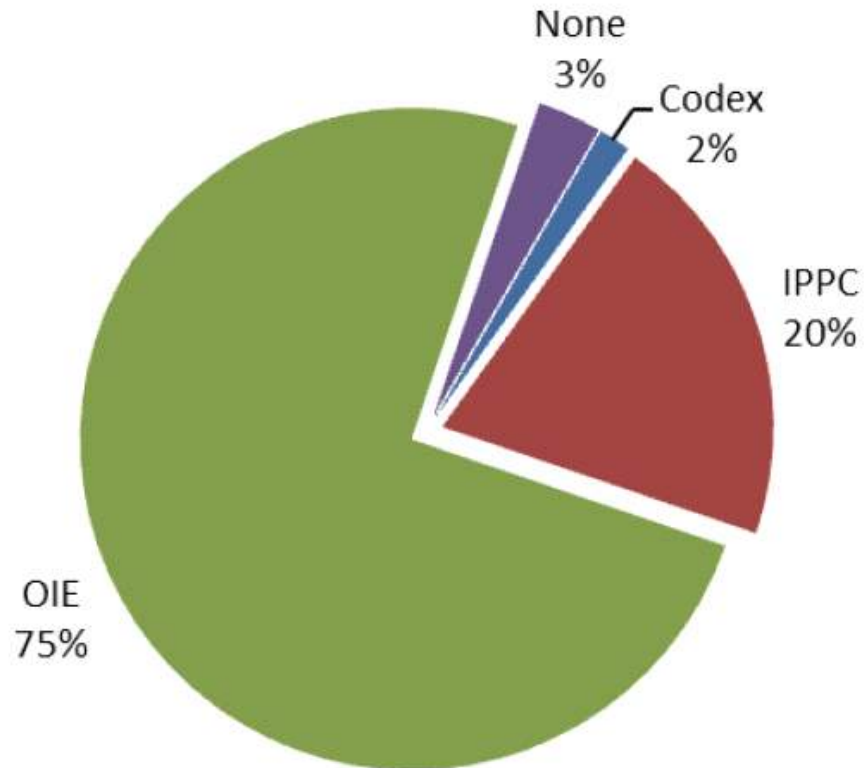
- 둘째, SPS 조치에 대한 사전 통지와 회원국의 의견청취, 협의과정 등 투명성 의무이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
 - SPS 조치에 대해 당사국을 포함한 회원국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덜 무역 제한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은 투명성의 중요한 의무사항임.
 - 1995년 이후 현재까지 WTO/SPS 통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향후 투명성 의무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치러진 미국의 대선으로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SPS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됨.

2. OIE/PPC/CODEX 동향 분석

가. OIE

- 국제표준과 관련 있는 WTO/SPS의 긴급통보 비중을 보면, OIE와 관련된 통보가 75%로 가장 많음.
- 이는 어떤 회원국에서 광우병,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동물질병이 발병하면, 수입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수출국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통보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3-4> 국제표준과 관련된 WTO/SPS 긴급통보(2015.09.15.-2016.09.15.)



자료: G/SPS/GEN/804/Rev.9

□ OIE는 투명성, 위험관리, 수의 서비스(veterinary service)의 강화 및 개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 6차 전략 계획(6th Strategic Plan)으로 정하고 있음.

- 투명성(Transparency) 강화를 위해, OIE에서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전달, 수의 지식의 공유와 수의 전문 인력의 공조, 질병 데이터의 수집과 통보,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개선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선을 위해, OIE는 ①과학적 근거 기반, ②전 세계 질병 통제 및 국제표준 설정, ③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에 대처, ④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목표로 함.
- 수의 서비스(Veterinary Service) 개선을 위해, OIE는 ①전 세계 수의시스템 강화 및 개선, ②수의 시스템 역량의 향상, ③지역 환경을 고려한 수의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OIE에서 전 세계 동물 위생과 검역을 위해 2015년 중점적으로 행한 업무의 키워드는 ① 동물 검역의 국제표준(standard)의 재정비, ② 투명성 강화(transparency), ③ 전문가의 참여(Expertise), ④ 회원국의 연대(solidarity)임.

○ 기존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표준이 추가됨. 새롭게 추가된 국제표준은 주로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한 것임.

–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One Health(하나의 건강)’개념과 더불어, ‘One Welfare(하나의 복지)’ 개념이 도입됨.

– One Welfare는 반려동물, 산업동물 할 것 없이 동물의 복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복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축산물의 윤리적 소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정신적 위로 등 동물복지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함.

○ 질병과 길항미생물저항성(antimicrobial resistance) 예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

– 가성우역(PPR:Peste des Petits Ruminants)의 관리와 근절, 광견병(dog-mediated rabies)의 근절, 그리고 ‘One Health(하나의 건강)’ 측면에서 길항미생물 저항성(항생제 내성문제) 예방이 이에 해당함.

– 가축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인한 내성문제는, 일차적으로 축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이 축산물 소비 경로를 통해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는 전 세계 공중보건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OIE의 새로운 전략인 ‘One Health’의 일환으로, OIE는 전략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음. 광견병,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IE는 WHO, FAO와 삼자협정을 맺고, 이를 범세계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시사점) 동물의 질병은 자연적 또는 수출입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동물의 건강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와 회원국 전체의 연대·결속을 중요시 함.

- 첫째,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여 다른 국가로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함.
- 둘째,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셋째, 회원국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전 회원국의 수의시스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IPPC

- 지난 2016년 4월, '2017년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됨.
- IPPC 총회의 한국 개최 결정은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FAO) 본부인 로마가 아닌 회원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초의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는 식물검역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됨.
 - 우리나라는 그동안 IPPC 기여금 공여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보호 위원회 총회 개최, 아시아 지역 식물검역국제기준 워크숍, 개도국 능력개발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IPPC에서 입지를 강화해옴.
 -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임규옥 연구관은 제8대 IPPC 의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2년간 국제식물보호기구를 이끌어왔으며, 올해 제11차 로마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내년도 한국 총회 개최를 확정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7월 경기도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식물검역 국제기준 검토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개최함.
- IPPC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국내 개최 11회째를 맞는 국제농림 협력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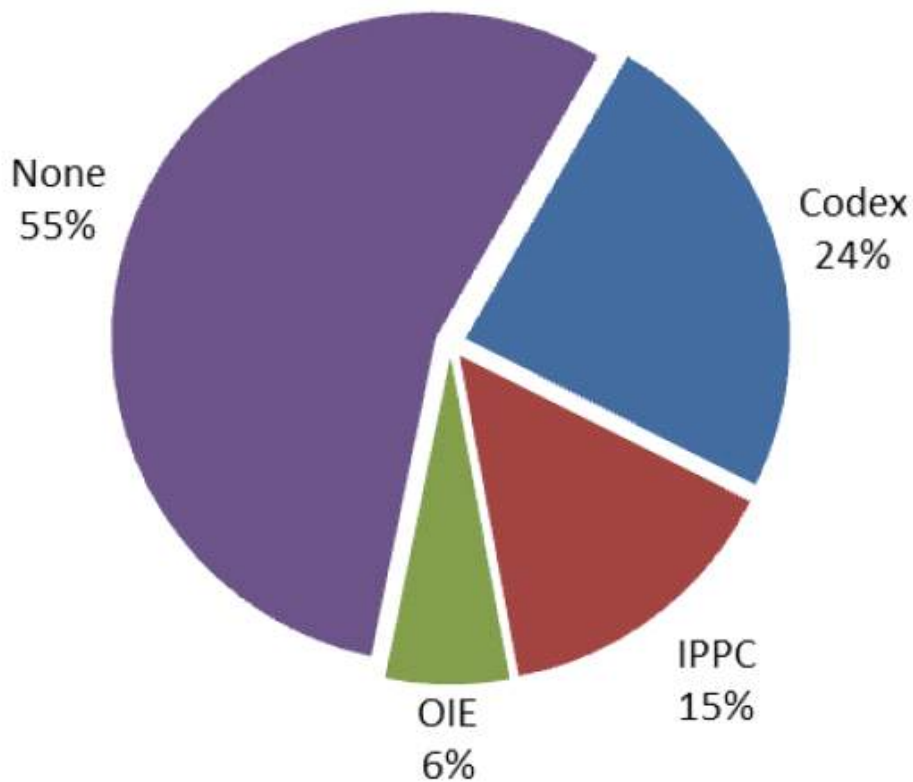
- 이 워크숍에서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지역 개도국 전문가들과 FAO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로 제정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아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 또한, 식물검역 관련 용어와 국가예찰시스템에 대한 식물검역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가적인 식물위생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목재류와 차량 등의 국제적 이동과 해상컨테이너를 통한 식물병해충 이동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함.
- (시사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식물검역분야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판단됨. 특히 내년도 한국 총회 개최로, 국제표준 제정 등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 식물류 교역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CODEX

- 국제표준과 관련 있는 WTO/SPS 일반통보 비중을 보면, CODEX와 관련 있는 통보가 24%로 가장 많음. 일반통보 중 식품안전에 관한 통보 특히 잔류농약에 대한 통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이는 식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WTO 회원국의 우려를 나타냄.
-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 까지의 일반통보 중 식품안전에 관한 통보는 751건으로, 동 기간 전체 일반통보의 74%를 차지함(<표 3-3>참고).
- 식품안전에 관한 통보 중 306건은 최대잔류허용한계치(MRLs)에 관한 통보였음.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WTO/SPS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최대잔류허용한계치에 대한 워크숍(Thematic SPS workshop on pesticide maximum residue levels)을 개최하여, CODEX의 최대잔류허용한계치 기준과 규정의 실행, 그리고 해당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과학적 근거와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CCPR)는 196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이 개최국임.

<그림3-5> 국제표준과 관련된 WTO/SPS 일반통보(2015.09.15.-2016.09.15.)



자료: G/SPS/GEN/804/Rev.9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2016년 세션에서 식품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①살모넬라(Salmonellosis)관리와 ②식품매개 기생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이 지침이 확립되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살모넬라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며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에도 전파됨. 따라서 CODEX는 최근에 육류와 가금육에서 살모넬라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 살모넬라는 매년 수천만건의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수십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 살모넬라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잠재적인 예방을 실시하고 푸드체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식품매개 기생충으로 매년 수천만명이 질환을 앓고,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음. CODEX 가이드라인은 1차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의 식품에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확인한 위험 식품 매개 기생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나라의 김치 등 식품류가 CODEX 규격으로 등재되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사용하는 농약 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채택된 바 있음. 우리나라의 식품이 CODEX 규격으로 등재되거나, 우리나라 식품 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채택되면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한국 김치를 국제김치규격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도 CODEX 규격으로 등재됐음. 또한 2017년에는 5년여 논의 끝에 김 제품 규격 등재를 완료할 계획임.
- 또한 2015년에는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수삼 0.3mg/kg, 건삼 및 홍삼 1.5mg/kg)이 CODEX 기준으로 채택됨.
- (시사점) 우리나라의 식품 등이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면 수출에 용이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이룰 수 있음. 따라서 식품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약기준과 식품분류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OIE/IPPC/CODEX 규정 분석

가. OIE

□ 세계동물보건기구(OIE·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은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보급하는 국제기관임.

○ 1924년 설립되어 1995년 WTO의 설립과 동시에 SPS 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됨.

○ 2003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1) 동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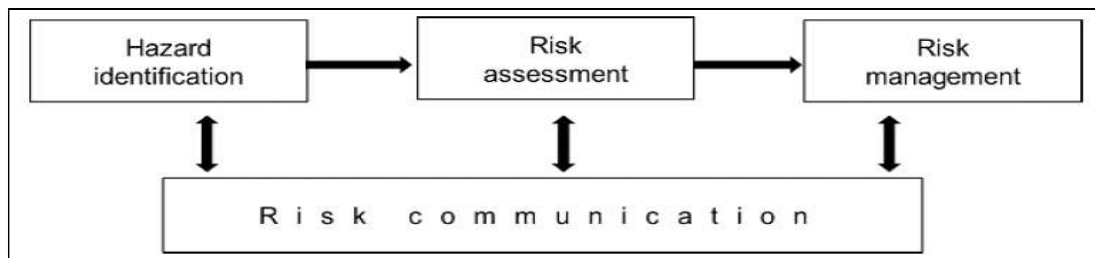
□ 위험평가는 동등성 결정의 선결적 고려사항임(Art. 5.3.4⁶) 당사국 간 동등성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OIE의 자발적인 중재가 가능함(Art. 5.3.8).

○ 수입국은 동등성 인정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을 충족하여 적정한 위험평가를 통해 평가해야 함(Art.5.3.5.9).

2) 위험분석

□ OIE의 위험분석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소통을 포함하는 개념임. CODEX, IPPC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 의무가 강조됨.

<그림3-6> OIE 위험분석 과정



자료: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Vol.1., 2016.

6)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Vol.1., 2016.

3) 지역화

- OIE는 지역(zoning)과 구역(compartmentalization)에 대해 정의하고 (Art.4.3.3), 구역화 적용원칙을 제시하고 있음(Ch.4.4).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인 경계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반면, 구역은 관리방식과 생물안전 (Biosecurity)에 근거함.
- ‘지역(zoning)’은 자연, 인공, 또는 법에 따라 설정되는 경계 등 주로 지형을 기준으로 정의한 특정 동물형군에 적용되는 개념임.
- 반면, ‘구역화(compartmentalization)’는 주로 생물보안과 관련한 관리 및 사육방식에 따라 정의한 특정 동물형군에 적용된 개념임. 구역화의 결정에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 추가적으로 농장의 경영방식, 사회기반 시설(infrastructure factors), 생물보안 계획(biosecurity plan) 등이 고려됨.
- 구역화는 다양한 질병관리 프로그램에서 무질병군(disease free herds/flocks)의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적용된 개념임. 구역화는 위험 경계(risk boundary)를 지리적 연계 이상으로 확대하여, 특정 동물군 간에 효과적인 질병의 격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역학적 요인을 감안함.

4) 투명성

- OIE는 통지와 관련된 사안을 기구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기구를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임(Art.1.1.1, Art.1.1.2).
- 사안에 따라 4가지 통보상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Art.1.1.3). WTO/SPS 또는 TPP/SPS상의 규정에 비해 회원국의 투명성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
- OIE는 SPS 관련 사안에 따라 4가지 통보상황(within 24 hours, weekly, six-month report, annual report)을 제시하고 있음. 질병의 발생 등 급박한 경우는 빠른 통보를 강조하고, 이후 경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고를 의무화 함.
- ① OIE에서 규정한 질병(listed disease)의 감염, ② 종료 보고한 질병의 재발, ③ 새로운 질병의 발생 등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WAHIS(the 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함.

-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이후의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는 주간 보고를 함. 주간 보고는 발생했던 질병이 완전히 제거되어 안정적인 상태에 놓일 때 까지 해야 함.
- OIE에서 규정한 질병의 존재여부 및 다른 회원국의 유행병학적 중요성 (epidemiological significance)에 대한 정보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통보해야 함.
- 기타 다른 회원국에게 중요한 정보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통보함.

나. IPPC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은 식물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1952년 설립된 식량농업기구 (FAO) 산하 기구임.

1) 동등성

□ 동등성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 하며,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술적·생물학적 정보교환에 상호 협조해야 함. 원활한 동등성 결정을 위해, 당사국은 요청에 의해 협의(consultation)를 할 수 있음. (ISPM 24, 2005)

○ IPPC에서 원활한 동등성 결정을 위해 협의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WTO/SPS와 TPP/SPS와 비교하여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 및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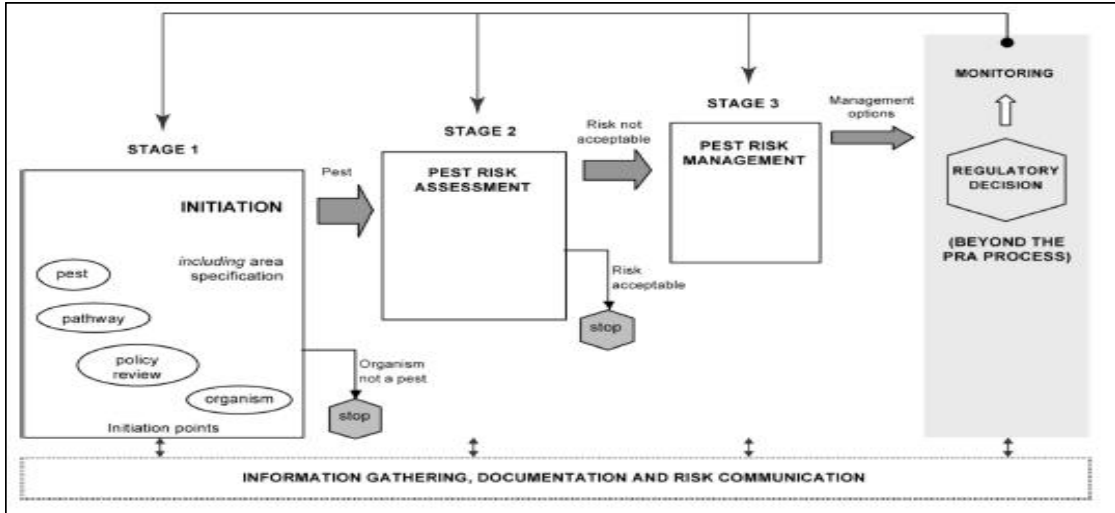
2) 위험분석

□ IPPC의 위험분석(PRA·Pest Risk Analysis)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침. 위험소통은 위험분석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됨. (ISPM 2, 2007)

○ IPPC의 위험분석 과정은 총 3단계로 제시됨(<그림3-2>참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투명성 원칙이 적용됨. WTO/SPS 및 TPP/SPS 규정과 비교해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의무사항에 제시됨.

- LMO(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도 위험분석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림3-7> IPPC 위험분석 과정



자료: ISPM 2, 2007.

3) 투명성

- 심각한 위험, 건강에 긴급한 상황 발생, 지역인정 요건의 변화, SPS 조치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IPPC Art. 7.1.a, Art. 7.6).

다.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임.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식품규격(CODEX)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대표적인 국제기준임.

1) 동등성

- 식품의 수출입 검사(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와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에 대해 양자 또는 다자간 동등성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CAC/GL 34-1999).

- 식품 검사와 인증 시스템에 관련된 동등성 불인정 시, 수입국은 수출국에 관련 사안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CAC/GL 53-2003) (<그림 3-8> 참고). 수입국 입장에서 이는 TPP/SPS chapter에서 동등성 불인정 시 수입국이 그 근거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한 차원 더 강화된 의무인 것으로 판단됨. CODEX의 동 규정은 동등성 결정 절차에서 당사국 간 커뮤니케이션 의무를 부과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WTO/SPS에서는 동등성 불인정 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함. TPP/SPS chapter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동등성 불인정 시 수출국에 문서로 그 근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CODEX는 이러한 TPP/SPS chapter로부터도 한걸음 더 나아가, 동등성 인정 절차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입국이 동등성을 불인정 하는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입국이 동등성을 불인정 하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출국에게 자세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여기까지는 TPP/SPS chapter의 규정과 흡사함.
 - 그러나 CODEX에서는 후속 과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절차를 적시하고 있음. 즉, 수출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수입국 역시 이를 토대로 2차 평가를 해야 함. 만일 2차 동등성 평가에서도 동등성을 불인정 하는 경우, 수입국은 거절의 근거를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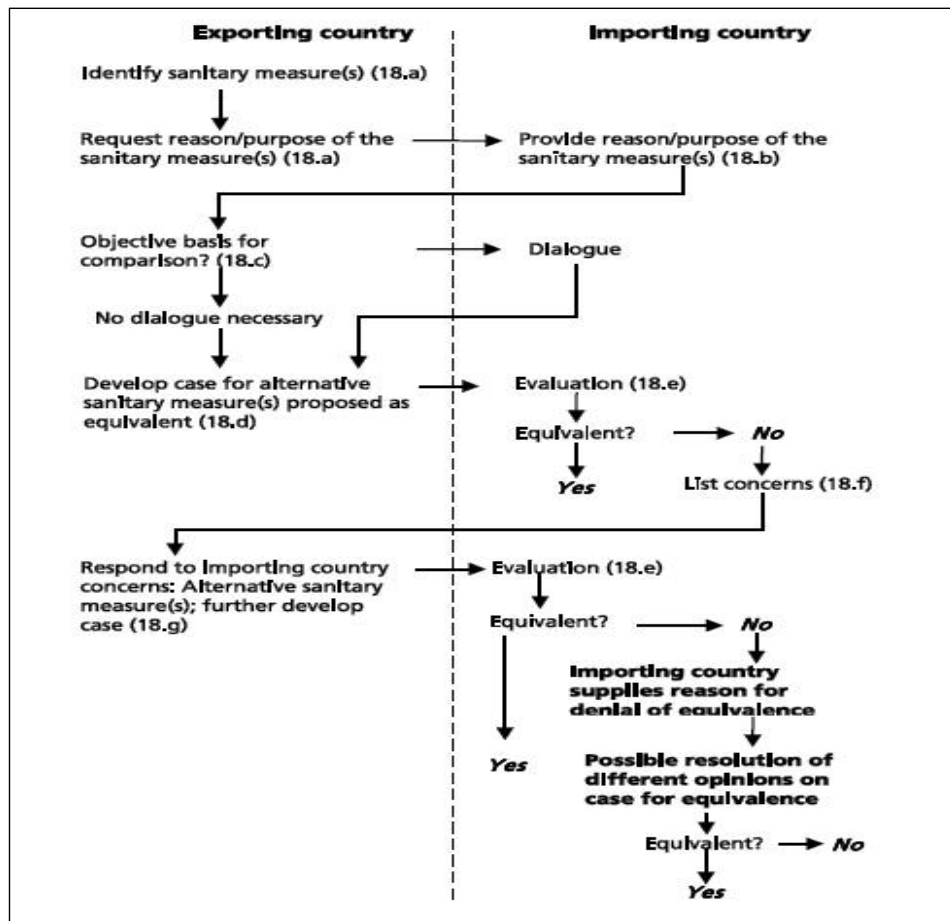
2) 위험분석

- CODEX의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뿐만 아니라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도 포함하는 개념임⁷⁾.
- 위험분석의 3가지 구성요소는 반드시 문서화되어 투명성 요건에 따라 체계화 되어야 함.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문서는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7)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 25th edition. 2016. pp.123-208.

- ‘위험평가’의 경우에도 TPP/SPS chapter에서 규정하듯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될 뿐 아니라, 나아가 ‘위험소통’을 준수할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림3-8> CODEX 동등성 결정 과정



자료: CAC/GL 53-2003

3) 투명성

- 수입국과 수출국의 정보교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절차 및 교환해야 하는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음(CAC/GL 89-2016).
- 식품안전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식품이나 첨가물의 수입국 등에 이메일, 팩스 등의 수단으로 가능한 빠르게 알려야 함(CAC/GL 19-1995).

라. 시사점

-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동식물의 질병이 다른 회원국으로 전파 또는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OIE규정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 즉시 빠른 통보를 해야 하고 질병이 소멸된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 및 통보해야 함.
- 국제표준(OIE/PPC/CODEX)에 규정된 의무사항은 WTO/SPS 위원회의 회의 및 다른 SPS 관련 협정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 또한 RCEP 협상 또는 FTA 재협상 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음.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IV. 우리나라의 SPS조치 관련 대응조직 및 운영 현황 분석

1. 우리나라의 SPS 관련 조직 및 시스템 현황

가. 주요 SPS규정 대응현황

1) 조화

-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위험평가는 OIE기준을, 식물 및 병해충에 대한 검역 및 수입위험평가는 ISPM, IPPC기준을, 식품에 대한 검사는 CODEX기준을 참고하여 실시됨.
- 검역 및 검사관련 업무는 영역별로 OIE, ISPM등의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어, SPS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에서는 조화와 관련된 문제가 없음.
- 단, SPS업무를 주로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서 SPS조치를 수행할 경우,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
-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부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국제기준을 자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음.
- 투명성 조항과 관련하여 SPS조치의 국내전과체계를 보완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을 중심으로 SPS조치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동등성

- 현재 개별적인 국가 및 수입품목에 대한 협정의 형태로 동등성 인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동등성 검증 업무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WTO/SPS조항에서는 상대국의 동등성평가 요청에 대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한해 협의를 실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협정에서 동등성 인정을 다루는 현행 제도는 WTO/SPS조항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TPP/SPS규정에서는 동등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WTO/SPS 규정에 비해 강화되어,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TPP/SPS규정은 수출국 요청이 있을 시 동등성평가를 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별 협정에 의존하며 영역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동등성 평가체계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위험분석

- 동·식물 및 병해충, 수산물, 식품에 대하여서는 SPS관련 국제규범에서 언급하는 '위험분석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이외의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에 맞는 위험분석업무체계가 부재함.
 - 동·식물 및 병해충 위험분석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위험분석업무는 국립수산물질관리원에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에 대한 위험분석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함.
 - 과학적 기준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위험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 현행 제도는 대부분 TPP/SPS규정에 합치됨.
 - TPP/SPS규정에서는 수입검사에 입각한 수입금지 시 수출국이 조치에 대한 검토(review)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현행 제도는 소명 기회를 명시하지 않아 제도의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적절하게 위험분석체계가 구성되어있는 분야는 동·식물 및 병해충과 식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어, 농약 및 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위험평가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농약 및 수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위험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의 위험평가는 식품섭취 시 인체에 대한 위험성에 국한됨.

- 식약처의 위험평가는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생산자, 또는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약 및 수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분석체계로서 기능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분석업무 대상은 직접적인 검역 및 검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로 한정되어, 농약 및 수의약품에 대한 위험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함.
- 현행 동·식물 및 병해충위험분석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동·식물 및 병해충위험분석을 벤치마킹하여 농약 및 수의약품에 대한 위험분석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지역화

- 지역화조건은 현재 국가 간 개별 협정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TPP등에 따른 지역화 평가 진행정보제공, 지역화 불인정 근거 제시 등 지역화 인정절차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 제도는 지역화 결정 절차와 지역화 평가 개시 기간에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WTO/SPS에 정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TPP/SPS규정에서는 수출국의 요청 시 지역화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화 불인정의 근거 제시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역화 인정절차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5) 투명성

- 산업자원부가 SPS조치의 통보처(Notification Authority)로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적 창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 WTO 또는 FTA회원국 또는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SPS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국제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WTO 또는 상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SPS문의처(Inquiry Point)와 SPS통보처(Notification Authority)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가 기관 별로 분화되어 있음.

- SPS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개별 부서에서 작성한 초안을, 해당 품목에 따라 농식품부(농·축산물), 해수부(수산물), 식품(식약처)에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WTO에 통보하는 방식임.
- 현재 WTO에 대한 우리나라의 SPS 통보문 작성 및 통보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SPS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개별 부서에서 작성한 초안을, 사안에 따라 SPS문의처(Inquiry Point)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검토한 후 SPS통보처(Notification Authority)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보문을 WTO로 발송하는 방식임.

<표4-1> 우리나라 SPS 통보문 작성 및 WTO 통보절차

단 계	1단계(통보문 작성 및 제출)	2단계(통보문 검토 및 송부)	3단계(WTO 송부)
소관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SPS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SPS 통보처)
조치 내용	SPS 국내조치 관련 통보문 초안을 작성, 가능한 채택예정일 또는 시행예정일 75일 이전에 제출	통보문 초안을 검토·수정 후 SPS 통보처로 송부	WTO로 통보문 발송

- 현재 외국으로부터의 SPS통보에 대한 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4-2> 우리나라 SPS 통보문 확인 및 상대국 의견 제출절차

단 계	1단계 (번역문 송부)	2단계 (분석·전파·회신)	3단계 (의견 제출)
소관 부서	농림수산물교역 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일반분석·전파 검역본부, 진흥청 등 소관부서 : 대응여부 심층분석 및 회신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SPS 문의처)
조치 내용	SPS 통보문 영한 번역 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송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수출 영향, 제도 개정 등 일반 분석 후 소 관부서 전파 소관부서는 해당 품목 등에 대한 피 해 등 심층분석 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견을 작성 상대국 SPS질의처에 제출

주: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SPS 조치 문의가 접수된 경우임.

□ 현행 규정 하에서는, SPS조치 통보와 관련하여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투명성 조항과 관련된 WTO/SPS조항의 부속서 B에 따르면, 회원국은 SPS조치와 관련한 모든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창구를 운영하여야 함.⁸⁾

－ 하지만 한국은 품목분야별로 문의처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운영이 WTO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됨.

<표4-3> 주요국 SPS 문의처 및 통보처

국가	SPS문의처	SPS통보처	문의처-통보처 일치 여부
대한민국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	· 외무성	· 외무성	○
중국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상무부	×
미국	· 해외농업국	· 해외농업국	○
호주	· 농업수자원부	· 농업수자원부	○
뉴질랜드	· 뉴질랜드 SPS	· 뉴질랜드 SPS	○
EU	· 식품안전총국	· 식품안전총국	○

자료: WTO 웹사이트

○ 현재 SPS통보문 작성 및 WTO통보절차의 1단계(SPS조치 시행 기관의 통보문 초안 작성)에서 2단계(SPS문의처에 통보문 제출)이행이 원활하지 못함.

－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이 SPS조치에 대한 통보의무를 업무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8)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one enquiry point exist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nswers to all reasonable questions from interested Members as well as for the provision of relevant documents

-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은 검역·검사기관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행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SPS문의처에 통보해주지 않는다면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WTO/SPS규정에 따르면 국제표준 및 지침 또는 권고에 일치하지 않거나,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조치는 WTO로 통보되어야만 하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누락사례로 인한 분쟁 소지가 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TPP/SPS규정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모든 SPS조치를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국내 제도 상 투명성 문제가 심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WTO/SPS규정에서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SPS조치의 공포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간격을 둘 것을 규정하였으며, TPP/SPS규정에서는 SPS 조치의 시행 이전 최소 60일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규정함.
- 대부분의 SPS조치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의 SPS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업무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어 통보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6) 실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및 수산물 관련 해외작업장, 가공식품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에 참여함.
-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업무로서 축산물을 도축하는 해외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실시 등 해외작업장 관리를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
- 식약처는 수출작업장의 시설기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수행 여부, 수출국 정부의 작업장 감시·점검 현황과 관련된 평가 및 해외제조업체 등록 업무 수행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육류관리 체계, 수입위생 검역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된 평가 및 수출작업장 등록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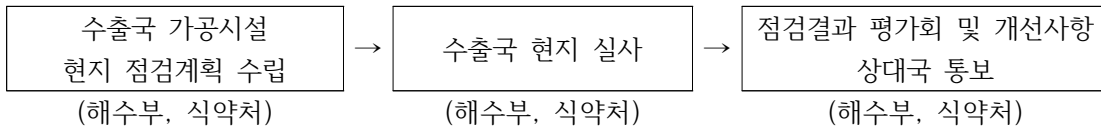
<표4-4>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 기관 간 업무분장

담당 기관	확인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청결, 환기, 조명, 온도 및 수질관리 등 적합 여부 - 작업장 SSOP 및 HACCP 운영 적정 여부 - 잔류물질 및 식중독균 미생물 등 검사 사항 - 정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육의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 및 발급 절차 -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출처: 식품안전관리지침(2016)

- 수입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위생약정에 따른 등록시설과 수산부산물 가공 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식약처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함.
- 위생약정 등록시설의 경우 전 과정에서 해수부와 합동으로 실시함.

<그림 4-1> 위생약정 등록시설 현지 위생점검



출처: 식품안전관리지침(2016)

- 수산부산물 가공시설 현지점검의 경우 현지실사단계까지 식약처 소관으로 수행하며, 점검결과 평가는 해수부와 합동으로 실시함.
- 식약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현지실사업무를 수행함.
- 수입식품 제조업소 중 부적합·위해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된 후 해외 현지실사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평가대상에 따른 기준은 <표4>와 같음.

<표 4-5> 식약처 해외실사업무 판정기준 및 조치사항

평가대상	평가결과	기준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사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경우	적합	평가점수 백분율 환산 기준 85%이상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도
	시정필요	평가점수 백분율 환산 기준 85%미만	정밀검사 실시
	부적합	‘시정필요판정’ 후 개선조치 불이행 또는 미흡,	수입중단 혹은 집중 관리

평가대상	평가결과	기준	조치사항
수입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가 해제되는 경우,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경우가 실사대상이 될 경우	적합	평가점수 백분율 환산 기준 90%이상	-
	시정필요	평가점수 백분율 환산 기준 90%미만 85%이상	정밀검사 실시
	부적합	평가점수 백분율 환산 기준 85%미만	수입중단 혹은 집중관리

출처: 식품안전관리지침(2016)

- '적합'으로 판정된 업소의 경우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유도함.
- '시정필요' 판정의 경우 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60일 이내로(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연장 가능) 개선을 요구하여, 보완내용이 미흡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업소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또는 집중관리조치를 취함.

7) SPS위원회, 관할기관 및 접촉선

□ SPS위원회는 현재 개별 FTA 협정별로 운영되고 있음.

- 개별 FTA 협정을 무역현안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며, SPS위원회는 이에 포함됨.
- 개별 FTA에서는 대체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원회 조정 및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있어, SPS위원회 개최 시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식물 및 병해충에 관련된 SPS사안에 대한 대처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에서 광범위한 SPS사안을 논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인 권한 확대가 요구됨.

나. 현행 SPS대응 정책체계의 장·단점

1) 장점

□ 우리나라의 현행 SPS대응체계는 세분화된 기관 및 심의·협의체들이 각기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각 기관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SPS는 검역, 식품안전, 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양한 전문기관들에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개별 기관들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해 전문화 정도를 높임.

<표 4-6> 우리나라의 SPS 대응기관 체계

담당 이슈	소관부처	산하기관	SPS관련 수행업무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수입되는 동물·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검사 - 예찰 및 역학조사·사후관리 등의 축산물방역업무 - 외래식물 및 병해충 예찰 및 역학조사(농경지) - 수입위험분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의 생산·유통과정의 안전 관리 - 농식품 안전성 조사·관리 및 인증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역학조사(산지)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병해충에 대한 예찰(농경지) - 병해충 방제(농경지)
수산물 검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검역 및 수입위험평가 -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지 위생점검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평가, 허가 및 심사, 위생평가, 시험분석 등
		식품안전정보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배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의 수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HACCP 적용 작업장 인증업무 -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 특정 업무가 복수의 전문영역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검역과 식품안전 관련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축산물 해외작업장 실사업무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할을 분담하였음.

2) 단점

- 현재 SPS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및, SPS관련 심의·협의체의 전문화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각자의 전문영역 간의 업무 연계체계가 미비함.
 - 경우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두 가지 이상의 이슈가 연관되어, 복수의 부처가 한 품목에 대한 SPS조치에 관련될 수 있으나 부처 간의 업무 협력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특정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허용여부 결정의 경우, 검역 관련 이슈와 식품안전 관련 이슈가 동시에 연관될 수 있음. 이 때 부처별 SPS 조치에 대한 조율체계가 없는 현재로서는 농식품부의 통보문과 식약처의 통보문이 별개로 작성됨에 따라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에서 예를 든 해외작업장에 대한 실사업무의 경우는 항상적으로 복수의 이슈가 연관되기 때문에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 대체로 복수의 이슈가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의 경우 별도의 기관별 분담체계가 정의되어있지 않음.
- TPP/SPS조항은 WTO/SPS조항에 비해 SPS조치와 관련된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전문화된 기관들의 업무를 조율하여 신속하게 TPP협정의 규정에 따라 SPS사안에 대해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TPP/SPS조항에서 SPS조치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특정 위험요소에 대해 식품안전, 환경,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위해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관 간 연계가 절실히 요구됨.
 - TPP에서 강화된 SPS조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SPS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국의 SPS무역정책실무위원회나 호주의 BIRA사례에서처럼 별도의 기관 간 SPS 업무조율체계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대응 관련 심의·협의체들이 실무자 단계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SPS 대응 관련법령 체계

가. 개요

□ WTO/SPS협정, TPP/SPS챕터, 기타 개별 FTA/SPS규정의 SPS 조치 규율 관련 조항들의 기본 체계와 주요 내용에 비추어, SPS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법률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 소관 부처도 다수에 걸쳐 있음.

<표4-7> SPS 관련 국내 주요 관계법령 현황

소관 부처	법률명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공동
	농약관리법	
	동물보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인삼사업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공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 부처	법률명	비 고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종자산업법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상기 국내 관계법령들 중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로서 동·식물의 방역·검역·안전 부문에서 수출입 SPS 조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을 들 수 있음.

○ 또한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한 물질인 비료에 관한 위해성 검사 및 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관리법」과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성장에 필요한 사료에 관한 위해성 검사 및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료관리법」도 동·식물 방역·검역·안전 부문의 수출입 SPS 조치에 관하여 부분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법률들이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개선 대상이 되는 주요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들 주요 관계법령들을 중심으로 WTO/SPS협정 및 TPP/SPS챕터에 관한 국내 관계법령 내 SPS 의무화 조치 대응 규정과 그 주요 내용을 검토·분석함.

□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기타 관계부처 소관 관계법령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요 수출입 SPS 조치에 관해서도 간략히 검토·정리함.

-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부문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 가축·축산물·식육(食肉)·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의 부문에 관하여 각각 수출입 SPS 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계법령으로서, 상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식물의 방역·검역·안전 부문의 관계법령과의 비교·검토를 위하여 해당 법률 규정 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로 별도 정리함.

<표4-8> 검토·분석 대상 국내 주요 관계법령 개요

소관 부처	부 분	관계법령	SPS 조치의 주요 목적	적용·규율 대상
농림축산 식품부	동 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	가축, 가축전염병, 특정 위험물질, 가축전염병 특정개체 등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사료의 안정적인 생 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 의 발전	동물 등에 유해한 사료, 유해성 검사, 수입금지 등
	식 물	식물방역법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의 검역,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제	식물, 병해충, 식물검역 대상물품,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등
		비료관리법	비료의 품질 보전, 원활한 수급 (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생산력의 유지·증진, 농업환경 보호	식물에 위해한 비료, 위해성 검사, 수입제한 등
	농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수산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유해물질, 농수산가공품, 수산 특 산물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식품첨가물 등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危害) 방지
가축, 축산물, 식육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가공·유통·검사 등 기준	가축, 축산물, 식육(食肉),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나. WTO/SPS협정-TPP/SPS챕터에 관한 국내 관계법령 SPS 의무화 조치 대응 규정 및 주요 내용

1) 검토·분석 대상 및 범위와 방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SPS협정을 통해 최초로 설정되고, 이후 TPP/SPS챕터를 통해 강화 또는 신설되고 있는 SPS 관련 국제규범의 의무화 조치를, 해당 조항의 표제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화’, ‘동등성’, ‘위험평가/분석’, ‘지역화’, ‘투명성’, ‘검사·증명·승인절차’, ‘기술지원 및 협력’, ‘이행기구/기관’, ‘협의 및 분쟁해결’의 9개 주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4-9> 연구·분석 대상 WTO·TPP SPS 의무화 조치 항목 및 해당 조항

연 번	협정문상 실체적·절차적 의무	WTO/SPS 해당 조항	TPP/SPS 해당 조항
1	조화	제3조	제7.4조
2	동등성	제4조	제7.8조
3	위험평가/분석	제5조	제7.9조
4	지역화	제6조	제7.7조
5	투명성	제7조 제12조 제13조 부속서 B	제7.13조 제7.14조 제7.16조 제7.5조 제7.6조
6	검사·증명·승인절차	제8조 부속서 C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7	기술지원 및 협력	제9조	제7.15조
8	이행기구/기관	제7조 부속서 B 제12조 제13조	제7.5조 제7.6조
9	협의 및 분쟁해결	제11조	제7.17조 제7.18조

- 따라서 이하에서는 SPS 관련 국제규범의 의무화 조치에 해당하는 규정과 내용에 관하여 WTO/SPS협정과 TPP/SPS챕터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분석·정리함.
- 이어서 동물·식물·농산물(가공품)의 방역·검역·안전 부문의 수출입 SPS 조치 관련 국내 주요 관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의 SPS 의무화 조치 대응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 또는 개정 수요와 방안을 도출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로서, 식품·가축·축산물 등의 위생 및 안전 부문의 수출입 SPS 조치 관련 주요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 주요 수출입 SPS 조치 중심으로 추가로 별도 정리함.
- 구체적인 검토·분석 대상 및 범위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WTO/SPS협정과 TPP/SPS챕터의 SPS 조치의 의무화 규정을 크게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과 [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으로 나누고, 해당 조항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각각 비교 검토·분석하여 정리함.
- 국내 관계법령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비·보완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WTO·TPP SPS 의무화 조치 사항에 관한 정확한 검토와 분석 선행 필요.
- 상기 비교 검토·분석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의무화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국내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세부적 대응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으로 분석 및 정리함.
- 상기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을 토대로, 각각의 국내 관계법령 내 해당 조항을 찾아내어 관련 내용과 현황을 개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관계법령 대응체계 현황을 파악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과 각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행정규칙(예규·훈령·고시 등) 등 하위 법령 전수조사.
-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 법률규정 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를 중심으로 별도 정리.
- 상기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과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관계법령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계법령 정비·개정 수요와 방안을 정리 제시함.
- WTO·TPP 및 국내 관계법령 내 각각의 SPS 의무화 조치 관련 해당 조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비교 검토·분석한 내용을 하나의 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볼 수 있게 함.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식물·농산물(가공품)의 방역·검역·안전 부문

(1) 조 화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SPS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에 기초하도록 함(제3조 제1항). ○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SPS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됨(제3조 제2항). ○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들은 SPS 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제7.4조 제1항).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SPS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함(제7.4조 제2항).

<p>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음 (제3조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 하지 아니함. ○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 보호협약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 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 내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함(제3조 제4항).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p>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p>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화에 관한 WTO/SPS협정 제3조 규정의 핵심 내용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또는 위험평가에 따른 적정 보호수준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원국은 자국 SPS 조치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SPS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거나 또는 위험평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적정 보호수준이 없는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 반대의 증거나 근거가 없는 한 WTO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채택·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정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협정에 합치하는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WTO 협정 위반에 따른 협의 및 통상분쟁 제기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일종의 의무준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TPP/SPS챕터의 경우 조화에 해당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4조 규정에 따라 WTO/SPS협정의 제3조 조화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의무사항은 TPP 당사국에도 그대로 적용됨. - “당사국들은 SPS 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SPS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함.”(TPP/SPS 챕터 제4조) ○ 이에 따라 TPP 당사국도 자국의 SPS 조치를 채택·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정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협정에 합치하는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TPP 협정 위반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무준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

- SPS 관련 국제표준·지침·권고를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부서, 조직, 인력 등 확보.
- 국내 SPS 조치와 관련 국제표준·지침·권고의 조화에 관한 상설 및 사안별 점검·검토 기구 및 메커니즘.
 - 범정부 검토 및 실무기구, 협의체, 전문가(자문)그룹의 운영.
- 국제표준·지침·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SPS 조치의 사후 시정·보완을 위한 권한 있는 기구의 설치·운영.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8조(수입위험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제시한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방법

제9조(수입위생조건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위해요소 확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5의 세부 사항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지역화 적용이 고려되는 질병 중 세계동물보건

기구(OIE)가 지역화 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지역화 인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제3조(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별표1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표준검사법(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수입금지 대상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제32조),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제36조) 및 수출검역(제41조)의 경우 세계동물기구(OIE)의 관련 정보, 기준, 방법, 절차, 권고 등을 고려하거나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 분석에 있어서 수입위험관리(제8조) 및 수입위생조건 재검토(제9조)에 관하여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 제시한 관리방법, 관련 규약을 고려하도록 함.
-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에 있어서 위해요소 확인(제3조),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관하여 세계동물기구(OIE)의 관련 정보, 자료, 기준을 고려·적용하도록 함.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검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방법에 따르도록 함.

[식물방역법]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 「식물방역법」의 경우 상기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서식(법 제8조),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갖추어야 할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등 일부 규정을 통해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절차, 방법, 기준, 정보 등과의 조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로 든 상기 규정들 이외 여타 규정들의 문구 자체는 조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식물방역법」 본문을 비롯하여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예규·훈령·고시 등 다수의 관련 행정규칙은 IPPC의 식물검역국제기준(ISPMs)의 관련 내용을 조문에 직접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식물검역국제기준(ISPMs)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유치·개최해오고 있으며, 2016년 7월 현재 국내 개최 11회째를 맞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을 통해 식물검역 관련 용어, 국가예찰시스템, 수출입식물의 국제적 이동, 식물 수출입 과정에서의 식물병해충 이동 경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안에 대한 국내적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해당 내용이 「식물방역법」체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식물방역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방대한 행정규칙으로 구성된,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체제로서, 비록 조화에 관한 명시적인 직접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수출입 관련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IPPC 기준들이 해당 규정 본문을 통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규정들의 문구 자체로는 규정이 특별히 없음.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체계의 경우 SPS 조치의 국제표준 등 조화를 위한 모니터링·검토·평가 및 협의기구 보완 강화 및 「식물방역법」체계 상 부족한 점 검토 보완. ○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 자문 등을 위한 협의체·전문가(자문)그룹의 구성·운영 또는 보완. ○ SPS조치의 국제표준 등 조화를 위한 강제절차의 수립 등.

(2) 동등성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회원국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동등성 인정(제4조 제1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동등성을 인정(제7.8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 ○ 수출당사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동등성 인정(제7.8조 제6항).
<p>-----</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관련 절차 등 동등성 평가를 위한 수입회원국의 접근 허용(제4조 제1항). ○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양자간/다자간 합의를 목적으로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제4조 제2항). 	<p>-----</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SPS 조치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 SPS 조치가 다루고자 하는 위험을 명확히 확인(제7.8조 제2항). ○ 수입당사국이 동등성 평가를 위한 요청을 받고 수출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합리적 기간 내에 동등성 평가를 개시(제7.8조 제3항). ○ 수입당사국이 동등성 평가를 개시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당사국이 즉시 동등성을 결정하기 위한 동등성 과정과 계획을 설명(제7.8조 제4항). ○ 수입당사국이 SPS 조치의 동등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지식, 정보 및 관련 경험, 수출당사국의 규제역량을 고려(제7.8조 제5항). ○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에 대해서

	<p>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제7.8조 제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을 인정하는 결정과 관련된 당사국 들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SPS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장(제7.8조 제8항). ○ 수입당사국이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출당사국에게 그 결정에 관한 근거를 제시(제7.8조 제9항).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법적 측면에서, 문구의 내용과 정도, 수준과 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WTO/SPS협정과 TPP/SPS챕터 모두 수출국의 객관적 입증이 있는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동등성을 인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수출국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과 수준에 대해서 TPP/SPS챕터는 WTO/SPS협정에 비하여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당사국의 조치와 동일한 보호수준의 달성”, “목적 달성하는데 있어서 수입당사국의 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입증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것임. - 또한 TPP/SPS챕터의 경우 동등성을 판단하는데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국제 표준·지침·권고를 고려하고,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임. <hr/>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이 동등성 평가를 위한 수입회원국의 접근 허용, 동등성 인정을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의 개시 정도만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는데 비해, TPP/SPS챕터는 매우 다양한 절차법적 의무사항을 수입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의 목적과 근거 설명, SPS 조치가 다루고자 하는 위험 확인, 합리적 기간 내 동등성 평가 개시, 동등성 과정과 계획 설명,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출당사국에게 그 결정에 관한 근거 제시 등. ○ 따라서 이상의 다양한 절차법적 의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기 위한 주요 인력과 조직, 절차, 의사결정 시스템과 부처간 협력체계 등을 확충하는 것이 의무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들 이라고 할 것임. <hr/> <p>[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을 평가, 판단 및 인정하는 주관(담당)부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 평가·판단·인정업무 수행 및 관리 주관(담당)부서·조직. - 동등성 평가·판단·인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출당사국과의 상호 연락·통보·통신업무 주관 (담당)부서·조직. - 동등성 평가·판단·인정 관련 타 당사국(들)과의 양자간/다자간 협의 주관(담당) 부서·조직. ○ 동등성 평가·판단·인정 기준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동등성 평가·판단·인정 기준과 절차의 수립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체 구축. - 필요한 경우 동등성 평가·판단·인정 기준과 절차의 수립을 위한 민(전문가)-관(정부부처) 협의체 구축. - 기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국제표준·지침·권고, 과학적 근거 등에 관한 의견 수렴절차와 통로. ○ 수출당사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동등성을 인정 또는 불인정 조치의 결정·채택·시행함에 있어서 정부부처 내 control tower.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 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 동등성 인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할 만한 별도의 조항을 찾기 어려움.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법 제34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형태의 「가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9호)과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05호)에서 부분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고시 제4조)

[식물방역법]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 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병해충 위험평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의 경우 수입제한조치에 있어서 취해지는 병해충 위험평가 기준을 통해 타국의 SPS 조치를 병해충 무발생지역 또는 제한지역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분적·간접적으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법 제11조 및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4조).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내 동등성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절차, 방법, 기준, 기관 등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 ○ 동등성의 평가, 판단, 인정에 관한 의견수렴절차 및 협의체 구성·운영. ○ 동등성 인정 또는 불인정 조치에 관한 control tower 수립 등.

(3) 위험평가/분석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SPS 조치에 있어서 적절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제5조 제1항). ○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제5조 제2항). ○ 회원국은 위험평가에 따라 SPS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손실, 피해, 비용효율성 등 경제적 요소를 고려(제5조 제3항). ○ 위험평가에 따라 SPS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국제 무역에 대한 차별적·위장된 제한 및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회피,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의 회피 등 무역원활화 방안 반영(제5조 제4항 내지 제6항). ○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추가정보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제5조 제7항). <hr/>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해명을 제공(제5조 제8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는 관련 국제표준·지침·권고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 SPS 협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에 따라, 조치에 합리적으로 연관된, 문서화되어 있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도록 보장(제7.9조 제2항). ○ 위험분석은 당사국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다른 당사국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제7.9조 제4항). ○ 각각의 위험평가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수행(제7.9조 제5항). ○ 각 당사국은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한 위험관리방안의 고려,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한 위험관리방안의 선택 등 무역원활화방안 반영(제7.9조 제6항). <hr/>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당사국이 위험분석을 함에 있어서,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설명을 제공(제7.9조 제7항). -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으로부터 필요한

	<p>정보를 받는 즉시, 자국의 절차, 정책, 자원,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일정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에게 위험분석 요청의 진척상황, 그러한 절차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연에 관하여 통보(제7.9조 제8항). ○ 위험분석 결과, 수입당사국이 무역을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SPS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제7.9조 제9항). ○ 이미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타 당사국이 SPS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상품의 수입중단 금지(제7.9조 제10항).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실체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과 TPP/SPS챕터 모두 SPS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증거 또는 원칙에 기초한 위험평가/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
- 그러나 WTO/SPS협정이 ① 위험평가(risk assessment)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② 과학적 증거 기타 조건, 피해 및 비용, 상대적 비용 효율성 등 경제적 요소,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 위험평가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주로 “고려해야”(shall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의 강도를 다소 연성화 하고 있는데 비해서, TPP/SPS챕터의 경우 ① 위험평가를 위험평가뿐만 아니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모두 포괄하는 위험분석(risk analysis) 개념으로 확대·강화하고 있고, ② 위험평가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더욱 세부화 하였으며, 동시에 ③ 그러한 고려요소들에 대해서도 주로 “보장해야”(shall ensur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함.
 - 그러나 WTO/SPS협정 상 고려요소들을 제대로 고려·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는 통상분쟁의 원인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WTO 분쟁사례도 있으므로 WTO/SPS 협정 상 고려 요소들이 이 의무적인 것이 아닌,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의무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TPP/SPS챕터에 따르면, SPS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위험평가만이 아닌, 위험분석을 시행해야 하고, 이때 합리적으로 연관된, 문서화되어 있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와 양적·질적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확보·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한 위험관리방안의 선택 등 무역원활화방안도 반영할 의무가 요구되므로 과학·기술분야, 경제학분야, 법학분야의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위험분석을 요구하는 승인 절차, 위험분석에 관한 작업일정을 계획하기 위한 절차·정책·자원·법·규정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임.

[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절차법적 측면에서도, TPP/SPS챕터는 WTO/SPS협정에 비해서 의무화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함.
- WTO/SPS 협정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p>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를 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SPS챗터에 따르면, 위험분석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나 다른 당사국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수출당사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야 하고, 위험분석 진척상황과 지연을 통보해야 하며, 위험분석 결과 무역의 개시·재개 결정을 내린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조치를 취해야 함. ○ 따라서 이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적 의무사항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각 간계부서의 관련 업무를 총괄·조율 및 확인하는 절차적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p>[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분석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 등의 확보·축적·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SPS 관련 과학·기술분야, 정책분야, 경제분야, 법분야의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위험 분석 및 의사결정시스템 확충. ○ 위험분석 승인절차, 작업일정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 기준, 절차, 기한 등을 규정한 매뉴얼 수립. ○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으로 이어지는 위험분석에 관한 절차적 의무사항을 총괄·조율 및 확인·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위험분석을 구성하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범위, 상호 연계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분석 담당·수행주체, 위험분석 실시 내용과 범위, 기준과 절차, 각각의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을 수행하는 부처(서)간/기관간/민관간 공조·협업 프로세스 등.
<p>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p>
<p>[가축전염병 예방법]</p> <p>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 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상기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되, 동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도록 하고(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 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6항).

- 상기 법 제3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형태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31호),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형태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92호)을 각각 제정·시행함.
- 한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47호)은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금지 지역 해제 요청 및 수입위험분석의 절차,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동 고시 제4조).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 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 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 분석만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 ③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실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식물방역법」은 상기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상기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형태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68호)을 제정·시행함.
- 또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등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형태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6호)에서 규정함.
-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의 식물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함(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 상기 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형태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07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병해충 위험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동 요령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
- 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평가의 대상
 -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상기와 같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12호) 제14조 제1항 제1호).
- 다만, 동 규정 상 위험평가 실시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기타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실시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 형태의 시행규칙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12호) 제14조에서 정함.

[비료관리법]

-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 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 「비료관리법」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제1항).
 - 이 경우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비료 및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 유의.
- 기타 위해성기준 및 검사 절차,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27호)에서 정함.
- 한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9조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경우 위해성 검사·품질검사의 면제·생략 등 일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동등성, 검사·증명·승인절차 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의 경우 위험평가/분석의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위험평가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비료관리법」 상 위해 비료의 수입제한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처간 협업·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행 규정으로는 위험분석의 단계와 절차,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TPP/SPS챕터에 따른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으로 이어지는 위험분석에 관한 절차적 의무사항 보완.
- 위험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SPS 관련 정책분야, 법분야 전문가그룹 참여 보강.
- 기타 위험분석과정에서의 공조·협업 프로세스 강화 등.

(4) 지역화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 지역화 개념 인정을 전제로) - 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 (제6조 제1항). - 이때 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즉,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률, 박멸 또는 방제 계획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을 고려. ○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제6조 제2항). - 지역화 인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지역화(regionalization), 지구화(zoning) 및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 (제7.7조 제1항). ○ 지역화의 평가, 인정에 있어서 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제7.7조 제2항). ○ 당사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저발생 지역의 인정을 위하여(즉 지역화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이 취한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저발생 지역의 인정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음(제7.7조 제3항).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 (제6조 제3항). -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 부여.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지역화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출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평가를 개시(제7.7조 제4항). ○ 상기 지역화 인정을 위한 평가를 개시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지역적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를 즉시 설명(7.7조 제5항). ○ 수출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지역적 조건의 결정을 위한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대한 (즉, 지역화 인정 요청에 대한) 평가 상황에 관하여 당해 수출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제7.7조 제6항). ○ 수출당사국에 대해서 지역화 인정 조치를 수입당사국이 채택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수출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제7.7조 제7항). ○ 지역화 결정과 관련된 수출입 당사국들은,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당해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적용될 위해관리 조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음(제7.7조 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를 인정하는 결정과 관련된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SPS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장(제7.7조 제9항). ○ 수출당사국에 대하여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결정의 근거를 수출당사국에게 제공(제7.7조 제10항). ○ 수입당사국이 지역화 결정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당사국들은 그러한 결정이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제7.7조 제11항).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실체법적 측면에서, 이미 WTO/SPS협정은 회원국에게 지역화 개념을 인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도록 함(제6조 제2항).
- TPP/SPS챕터는 일반적인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더욱 세분화하여 지구화(zoning) 및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까지도 도입함.
 - 다만, TPP/SPS챕터의 경우 이러한 지역화·지구화·구역화 개념에 대해서 “인정”(recognise), “고려해야”(shall take into account), “협력할 수 있는”(may cooperate)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표현상으로는 의무화의 정도가 강한 것은 아님.
 - 그러나 아래 절차법적 측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역화 등 인정에 관한 단계별 절차에 있어서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평가의 개시 및 진행, 조치의 시행, 기타 설명,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화, 지구화, 구역화 인정은 사실상 의무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TPP/SPS챕터의 지역화는 기존의 지리적·자연적 경계에 의한 구분을 의미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지구화(zoning)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물보안(biosecurity)과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설이나 농장 등을 의미하는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까지 확대·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 각각의 입장에서 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할 것임.
 - 우선 수입당사국의 입장에서, 수출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역화를 결정·인정하기 위한 평가를 개시해야 하며, 그 절차를 즉시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조치를 이행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러한 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관리하는 유기적·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반대로 수출당사국의 입장에서, 수입당사국에게 지역화 인정 요청과 함께 관련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적인 지역화·지구화를 넘어서 구역화를 인정받기 위한 과학기술적·법적·제도적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므로 개별 지역·시설·농장 단위의 정부·(광역/기초)지자체·민간 협력·공조 및 감시·관리·감독·연락·보고체계뿐만 아니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저발생 지역의 평가·판정·관리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기준과 절차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절차법적 측면에서도, WTO/SPS협정이 수출회원국의 객관적 증거 제시, 수입회원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부여 정도만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해, TPP/SPS챕터는 절차적 의무사항을 다양하게 도입함.
 - 수입당사국의 입장에서,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역화를 결정·인정하기 위한 평가 개시 및 절차의 즉시 설명, 정보 제공, 지역화 인정 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 및 조치의 이행,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의 제공 등

- 수출당사국의 입장에서, 비록 지역화 인정을 위한 요청, 평가의 개시 및 진행과정에서의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은 임의적 사항이지만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지역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절차적 의무사항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통합·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 통합적 이행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임.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

- 지역화·지구화 및 구역화를 인정하기(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요건, 절차 등.
 - 수입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수출당사국 일부 지역·지구·시설·농장에 대한 지역화 판정을 위한, 수출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자국의 일부 지역·지구·시설·농장에 대하여 지역화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요건, 절차 등 확립.
 - 지역화 평가 및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매뉴얼 수립.
 - 지역화 평가·판정업무 담당·관리 인력 및 조직 확충.
- 개별 지역·시설·농장 단위의 정부·(광역/기초)지자체·민간 협력·공조 및 감시·관리·감독·연락·보고 체계 구축.
- 지역화 평가·판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기적 검토 및 통합과 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 이행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 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제11조(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 인정) ①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의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9조(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5의 세부 사항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지역화 적용이 고려되는 질병 중 세계동물보건

기구(OIE)가 지역화 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가 있는 지역화 인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축 위생설문서는 별표 6과 같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수입위험 분석에 있어서, 지역화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31호)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92호)을 통해 각각 규정함.
-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은 “지역”의 개념을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를 인정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절차,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은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 함(제9조).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2조(제한조치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제4조(병해충 위험평가 기준) ① 제2조제1호에 의한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식물방역법」 본문은 상기와 같이 제10조 수입금지 및 제11조 수입제한 조항을 통해 지역화 개념을 간접규정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법률 본문은 간접규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하위 행정규칙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은 무발생지역, 제한지역 등의 개념과 그 인정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 개념을 수용하고, 지역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동 요령 제2조 및 제4조).
- 다만, 특히 TPP/SPS챕터를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된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의 도입 및 적용에 대비한 현행 규정과 기준,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상 ‘지역화’ 개념과 기준의 적합성 여부, 특히 TPP/SPS챕터에 따른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검토 필요.
- 지역화 평가, 인정에 관한 절차, 기준, 의사결정시스템 보완.
- 지역화 평가, 인정에 관한 내부 정보전달 및 공유체계 강화 등.

(5) 투명성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및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내용과 범위, 방식 등은 「부속서 2」(ANNEX B)의 규정에 따름. ○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지역정부기구의 의무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시행하고,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제13조).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SPS 조치에 관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이해관계자 및 다른 당사국들에게 논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제7.13조 제1항). ○ 이 조항(투명성 조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제7.13조 제2항). ○ SPS 조치의 채택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요청이 있고 실현가능하며 적절한 경우, 해당 조치안에 대해서 다른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또는 무역 관심사항 및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이고 덜 무역제한적인 방안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과 논의(제7.13조 제7항).
<p>-----</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SPS 규정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부속서 2」 제1조). ○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 내의 생산자가 수입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방법을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부속서 2」 제2조). ○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Enquiry points)를 설치·운영(「부속서 2」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 규정,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p>-----</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모든 조치뿐만 아니라, 타 당사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안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경우 WTO SPS 통보서 제출시스템을 이용(제7.13조 제3항). ○ 긴급한 경우 또는 조치가 무역원활화를 가져오는 성질의 경우가 아닌 한, SPS 조치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 의견제시를 위한 기간을 최소한 60일,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하며, 다른 당사국의 서면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제7.1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 기간 연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 요청을 고려. ○ 당사국은 통보된 SPS 조치안의 내용, 법적 근거, 해당 조치에 관하여 당사국이 대중

<p>판정, 관련 국제·지역기구에의 참여 및 관련 양자간/다자간 협정문 및 약정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회원국의 요청시 문서의 사본 공급(「부속서 2」 제4조). ○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SPS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해당사회원국이 해당 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고하고, 그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며, 다른 회원국의 의견제시와 논의를 위한 기회와 시간을 허용(「부속서 2」 제5조). ○ 긴급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일반적인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무국을 통해 조치의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해당 조치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요청시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다른 회원국의 서면 의견제시와 논의를 허용하며, 의견과 논의결과를 고려(「부속서 2」 제6조). ○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며, 그 양이 방대한 경우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요약본을 제공(「부속서 2」 제7조 및 제8조). ○ 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제5조 내지 제8조의 통보절차 이행을 위해 국내 차원에서 그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통보처)을 지정(「부속서 2」 제10조). ○ 협정에 따른 정기적인 협의 및 회원국의 SPS 조치의 조화, SPS 조치 및 관련 정보의 통보 접수, 수입·배포 및 이용 제공, 기타 감독·조사·평가 등을 위해 SPS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치·운영(제12조). 	<p>으로부터 받은 서면의견 또는 그 요약을 관보나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함(제7.13조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이 국제표준·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지 않는 SPS 조치를 제안한 경우, 자국 법에 따른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험평가,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등 해당 조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서화된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포함하여, 해당 조치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관련 문서를,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게 제공(제7.13조 제6항). ○ 각 당사국은 최종적인 SPS 조치의 통보를, 가급적 전자적 방식으로, 관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제7.13조 제8항). ○ 각 당사국은 최종적인 SPS 조치의 전문, 발효일,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WTO SPS 통보제출시스템을 통해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제7.13조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또한 자국법에 따른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제시 기간 중 접수한 주요 서면의견서 및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 고려된 관련 문서를 타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함. ○ 최종적인 SPS 조치가 제안되었던 조치안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변경된 경우, 해당 조치의 목적과 근거 및 그 조치가 목적과 근거를 어떻게 진전시켰는지, 제안된 조치안에 가해진 실질적 수정사항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SPS 조치를 통보(제7.13조 제10항). ○ 다음의 경우 수출당사국은 제7.6조(책임 기관 및 연락처)에 규정된 연락처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수입당사국에게 통보(제7.13조 제1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이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SPS 위험을 알고 있는 경우. -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건강 상태의 변화가 현행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 지역화된 병해충 또는 질병 상태의 중대한 변화. - 식품안전, 병해충 또는 질병에 관한 규제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중요한 과학적 발견. - 현행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안전, 병해충 또는 질병 관리, 방제 또는 박멸 정책 또는 관행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경우 또는 조치가 무역원활화를 가져오는 성질의 경우가 아닌 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최종적인 SPS 조치를 공표한 일자와 동 조치가 발효되는 일자 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제공(제7.13조 제12항). ○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에 관한 모든 SPS 조치들을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제7.13조 제13항). ○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제7.6조(책임기관 및 연락처)에 규정된 주요 대표자 및 관련 연락처를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해서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제7.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해당 통보에 대응하여 타 당사국들이 제공한 고려와 정보를 고려. ○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제7.6조(책임기관 및 연락처)에 규정된 주요 대표자 및 관련 연락처를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해서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제7.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해당 통보에 대응하여 타 당사국들이 제공한 고려와 정보를 고려. ○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타 당사국이 이용가능하게 함(제7.1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의 채택 사유가 잔존함으로써 검토 후에도 긴급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긴급조치 채택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조치에 대해서 검토. ○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에 관하여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한 가능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당사국에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제7.16조). ○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지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국들에게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국의 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과 그 각각의 책임기관 내의 연락처(Contact Points)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문서로써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 주요 대표자를 확인(제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관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	---

	<p>으로 갱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챗터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SPS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SPS 위원회를 설치·운영(제7.5조). - 동 위원회는 SPS협정 및 SPS챗터의 이행과 이행과 관련이 있는 SPS 사안들에 관한 당사국들의 이해 증진,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에 관한 상호 이해 제고, SPS 챗터의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기타 당사국 간 발생하는 SPS 사안에 관한 정보의 공유 등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임무 수행.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실체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과 TPP/SPS챗터 모두 SPS 조치의 공지·공표 및 통보, 정보의 제공·교환 및 공유를 투명성 관련 핵심적인 의무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 WTO/SPS협정은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안, 조치의 변경 통보, 조치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규정의 신속한 공표 및 수출회원국의 적응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의 허용, 긴급조치의 통보의무 등을 투명성 관련 실체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기타 절차법적 의무사항은 별도의 「부속서 2」(ANNEX B)를 통해 구체화함.
- TPP/SPS챗터는 본문을 통해 통보·공지 등의 대상과 내용, 범위를 국제표준·지침·권고에 합치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타 당사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SPS 조치안, 최종적인 SPS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에 관한 모든 SPS 조치 및 조치의 변경사항으로 더욱 확대·세분화하고, 긴급조치를 포함하여 SPS 조치안, 최종 조치, 변경사항 등의 통보·공지 등 절차, 방법, 기한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함.
 - SPS 조치안의 경우, 국제표준·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조치안, 당사국들의 서면의견에 대한 답변, 조치안의 내용과 법적 근거, 대중으로부터의 서면의견 또는 그 요약, 국제표준·지침·권고에 합치하지 않는 SPS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관련 문서 등.
 - 최종적인 SPS 조치의 경우, 발효일과 법적 근거가 명시된 조치의 전문이나 통보문, 의견 제시 기간 중 접수한 주요 서면의견서 및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 고려된 관련 문서 등.
 - SPS 조치가 변경된 경우, 목적과 근거, 목적·근거의 진전사항, 실질적 수정사항 등.
 - 긴급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 및 검토 결과, 조치에 관한 정기적 검토 등.
- 따라서 투명성의 경우 실체법적 측면의 의무화 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타국의 SPS 정책·규정·조치의 제안·수립·채택·시행·변경(개정)의 각 단계별로 과학기술·법·정책의 보고·공지·정보공유·협의·자문·의견수렴·검토·확인·통합 등 대내외적 통제·조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 할 것임.
- 한편, WTO/SPS협정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지역정부기구의 의무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시행하고,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중앙부처(부서), 유관 기관, 지방정부(지자체), 관련 비정부기구(민간단체)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차원의 SPS 공동협력·협의·대응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절차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과 TPP/SPS챗터 모두 SPS 조치의 공지·공표 및 통보, 정보의 제공·교환 및 공유를 투명성 관련 핵심적인 의무화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의 대내외적 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TPP/SPS챕터의 경우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의 제공·교환·공유의 절차 및 기한, 방법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및 조율을 위한 control tower 또는 관계부처(부서)·기관 간 업무연락·연계·협의 공동대응체계를 갖추어 상시 검토·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 대외적으로 공지·공표 및 통보·정보제공기한, (서면)의견 제시·접수기한, 검토·답변기한 등.
 - 대내적으로 정보전달·공유기한, (서면)의견 등 수렴기한 검토·확인기한 등.
 -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통합 구축·운영 등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 제공 방식.
 - 기타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제공 대상 SPS 조치 관련 정보, 자료, 증거, 문서, 문안, 설명, 서면의견, 답변 등에 대한 내부적 전달·공유·검토·확인·통합·조정을 위한 control tower 또는 공동검토·확인·협의체 등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체계.
-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적 의무사항으로서, WTO/SPS협정의 경우 문의처(Enquiry points) 및 통보처, TPP/SPS챕터의 경우 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과 그 각각의 책임 기관 내의 연락처(Contact Points)를 각각 지정·운영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가급적 이들 기관을 분야별로 일원화 또는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거나 긴밀한 연계·연락·협조·협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찬가지로 WTO 및 TPP SPS 위원회의 파견·담당·대응 기관·조직·인력·시스템을 연계·공동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

- 우리나라와 타국의 SPS 정책·규정·조치의 제안·수립·채택·시행·변경(개정)의 각 단계별로 과학기술·법·정책의 보고·공지·정보공유·협의·자문·의견수렴·검토·확인·통합 등 대내외적 통제·조정시스템 구비.
- SPS 유관 중앙부처(부서), 기관, 지방정부(지자체), 관련 비정부기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SPS 공동협력·협의·대응체 구성·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SPS 조치의 공지·공표 및 통보, 정보의 제공·교환 및 공유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 대내외적 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의 제공·교환·공유의 절차 및 기한, 방법 등 투명성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율할 수 있는 control tower 또는 관계부처(부서)·기관 간 업무연락·연계·협의 공동대응체계 확충.
 -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통합 구축·운영 등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 자료, 증거, 문서, 문안, 설명, 서면의견, 답변 등에 대한 내부적 전달·공유·검토·확인·통합·조정을 담당할 control tower 운영 또는 공동검토·확인·협의체 등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체계 확립.
- 문의처(Enquiry points), 통보처, 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 연락처(Contact Points)의 분야별 일원화, 연계·통합운영, 또는 긴밀한 연계·연락·협조·협의체계 확립.
- WTO 및 TPP SPS 위원회의 파견·담당·대응 기관·조직·인력·시스템의 연계·공동 또는 통합 운영.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 투명성 분야의 의무화 조치의 핵심 내용은 SPS 조치의 공지·공표 및 통보, 정보의 제공·교환 및 공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임.
 -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과 정보공유를 위한 대내적 투명성과 타 회원국·당사국 또는 SPS 위원회에 대한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의 제공·공지를 위한 대외적 투명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 이런 점에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훈령, 예규, 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은 대내외적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관련 절차적 사항들에서 부분적으로 분산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명성에 관한 통합적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식물방역법]

-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 제3조(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 통보)** ① 수출지원과장은 제2조의 제한조치 범위에 해당 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신속히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금지병해충 또는 금지병해충으로 의심이 가는 병해충을 검출하는 경우 식물검역과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아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위험평가를 요청하고 필요시 지역본부·사무소에 제한조치 이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 ④ 식물검역과장은 수입검역과정 또는 검역동향 분석 과정 등에서 검역병해충의 발견 빈도 또는 밀도가 높아 병해충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 위험분석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위험평가 결과 통보)**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한다.
- ② 식물검역과장은 위험관리과장으로부터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수입제한 조치 및 해제조치 여부를 검토 후 조치한다.
- 제6조(제한 및 해제조치 적용시기) ...**
- ②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이미 수입이 되고 있는 품목을 제한 조치 하는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후 조치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조치)** ① 식물검역과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시 검역본부 각과 및 지역본부·사무소에 통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출지원과 : 해당국 또는 국제기구(WTO/SPS)에 통보
 2. 지역본부 및 사무소 : 제한조치 적용일 이전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역 및 관련 수입업체 등에 대한 홍보
 3. 관련기관 및 협회 보고(통보)
 - 가.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다자협상협력과, 검역정책과, 원예경영과 등) 우선보고 자료는 검역정책과에 송부하여 검역정책과에서 사안에 따라 일괄 배부한다. 다만, 양국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은 우선보고를 생략한다.
 - 나.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수출입과), 산림청(산림병해충과, 해외자원담당관실), 관세청(특수통관과),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 ② 식물검역과장은 수입제한 및 해제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보도자료 배부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에 송부(경미한 사항은 생략),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배부
 2. 인터넷 게시 : 홈페이지, 인트라넷, 지식포털(본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식물방역법」도 특별히 투명성에 관한 통합적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수입제한조치의 경우(법 제11조) 그 하위 행정규칙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을 통해 각종 통보절차 및 주관기관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투명성 관련 내용을 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동 요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특히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7조는 타 회원국 또는 SPS 위원회에의 통보기관을 명시함.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계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투명성 관련 규정의 개별적 보완 또는 통합규정의 신설. ○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투명성 관련 통합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 대내외적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의 제공 및 전달을 위한 수단과 절차. - 공지·공표·통보 및 정보의 제공 및 전달 관련 조직, 인력, 시스템 등.

(6) 검사·증명·승인절차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이 협정에 일치하도록 함(제8조). - 절차의 운영 등은 「부속서 3」(ANNEX C)의 규정에 따름.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p><감사: Aud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수입 당사국의 SPS 조치들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책임기관 및 그와 연관된 또는 지정된 검사시스템을 감사할 권리를 가짐(제7.10조 제1항). - 감사는, 적절한 경우 검사 및 감사 프로그램의 재검토와 설비에 대한 현지 실사를 포함하여, 책임당국의 통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 ○ 감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수출당사국의 책임기관의 규제적 통제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어야 하고,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하여 수행(제7.10조 제2항 및 제3항). <p><수입검사: Import Chec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수입프로그램이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근거하고, 수입검사가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되도록 보장(제7.11조 제1항). ○ 당사국은, 수입과 관련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자국의 수입절차에 관한 정보, 수입검사의 성격과 빈도를 결정하는 근거를, 요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제7.11조 제2항).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을 준수(「부속서 3」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는 부당한 지연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수행. - 각 절차의 표준처리기간 공표, 예상 처리기간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이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신속 검토 및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신청인에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의 경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수입검사를 통해 획득한 경험이나 이 챗터에 관하여 제공된 조치나 논의의 결과, 자국의 수입검사 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제7.11조 제3항). ○ 수입당사국은 상품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기법, 품질관리, 표본추출 절차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게 제공하고, 모든 시험이 국제실험실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내에서 적절하고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시험샘플의 확인, 수집, 표본추출, 운송, 보관 및 해당 시험샘플에 대해서 사용된 분석기법에 관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류를 기록 유지함(제7.11조 제4항). ○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SPS 조치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고, 이용가능한 과학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도록 보장(제7.11조 제5항). <p><증명: Cert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들은 SPS 요건에 관한 보증이 증명서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상이한 시스템이 동일한 SPS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제7.12조 제1항). ○ 수입당사국이 상품무역을 위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당사국은, 자국의 SPS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동 증명 요건이 오로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적용됨을 보장(제7.12조 제2항). ○ 증명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및 국제 표준·기준·권고를 고려(제7.12조 제3항). ○ 수입당사국은 증명서 상 요구하는 증명 및 정보를 자국의 SPS 목적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제7.12조 제4항).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p><감사: Aud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개시 전, 관련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은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사의 목적과 범위, 수출당사국이 평가받아야 할 기준이나 요건, 감사 수행의 일정과 절차를 결정(제7.10조 제4항). ○ 감사국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감사의 사실확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러한 논평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피감사 국가에게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사의 결과를 정리한
---	--

<p>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무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 진행.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설명 및 절차의 진행단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요구는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 - 통제, 검사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비차별적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 - 상품의 개별적인 견본의 통제, 검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 - 수입상품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비차별로 부과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수입품의 표본 선정시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 사용. - 적용되는 규정에 비추어 통제 및 검사 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절차는 동 상품이 관련 규정을 계속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 - 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익제기를 검토하고 동 이익제기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운영. - 승인 미취득시 수입회원국이 국내 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접근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 <p>○ SPS 조치가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를 명시하는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서 동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 및 통제당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부속서 3」 제2조).</p>	<p>서면보고서를 피감사국에게 제공(제7.10조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결과 취해진 감사국가의 결정 또는 조치는, 피감사국가에 대한 감사국가의 지식, 관련 경험, 신뢰를 고려한, 검증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에 지지되어야 하며, 그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는 요청에 따라 피감사국가에 제공(제7.10조 제6항). ○ 감사국가와 피감사국가는 감사과정 중 각자가 획득한 비밀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보장(제7.10조 제7항). <p><수입검사: Import Chec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당사국이 수입검사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근거로 다른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당해 수입당사국은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 수출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출당사국 중 적어도 하나에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통보(제7.11조 제6항). ○ 수입검사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다른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동 통보는 수입금지·제한의 이유, 조치의 법적 근거나 승인, 해당 상품의 지위에 관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제11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통보는, 해당 상품이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있지 않는 한, 금지 또는 제한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자국의 법, 규정 및 요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여타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해당 통보를 전송함. ○ 수입검사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근거로 타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입당사국은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동 재검토를 위해 제시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함(제7.11조 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재검토에 관한 요청 및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에게 제출. ○ 수입당사국이 SPS 조치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되는 불합치 행태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당사국은 해당 불합치를 수출당사국에게 통보(제7.11조 제9항). ○ 요청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SPS 조치에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된 수출당사국의 상품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출당사국에게 제공(제7.11조 제10항). <p><증명: Certification></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당사국은 증명서에 포함되도록 자국이 요청하는 모든 증명 또는 정보에 관한 근거를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게 제공(제7.12조 제5항). ○ 당사국들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하여, 당사국 간에 거래되는 특정 상품에 관한 표본증명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할 것을 합의할 수 있음(제7.12조 제6항). ○ 당사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전자증명 및 기타 기술의 이행을 증진함(제7.12조 제7항).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실체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하는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협정의 준수를 핵심적인 권리·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대상, 내용, 범위, 요건,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속서 3」(ANNEX C)을 통해 구체화함.
 - 이는 결국 국내 방제·검사·승인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화, 동등성, 위험평가/분석, 지역화, 투명성 등의 일반 원칙과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동 조항은 SPS 국내정책·규정·제도·조치 등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행·적용·운영'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협정 준수이행을 요구함을 의미하므로 절차의 시행·적용·운영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총괄·모니터링시스템, 정보와 자료의 연락·통보·공개·공유·검토·확인 등 내부적인 연계·협업체계 등의 구축이 의무이행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TPP/SPS챕터는 WTO/SPS협정의 일반적 방제·검사·승인절차와 정확하게 대응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Audits), 수입검사(Import Checks), 증명(Certification) 조항을 신설하고,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의무화 조치사항을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함.
- 감사(Audits)
 - 목적과 원칙: 수출당사국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수입당사국의 SPS 조치들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 수출당사국의 책임기관의 규제적 통제의 효율성 점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지침·권고를 고려하여 수행.
 - 대상과 내용: 수출당사국의 책임기관 및 그와 연관된 또는 지정된 검사시스템, 적절한 경우 검사 및 감사 프로그램의 재검토와 설비에 대한 현지 실사, 책임당국의 통제프로그램.
- 수입검사(Import Checks)에 있어서 요구되는 실체법적 주요 권리·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프로그램은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근거하고, 수입검사가 부당한 지연 없이 수행되어야 함.
 - 수입과 관련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 수입절차에 관한 정보, 수입검사의 성격과 빈도를 결정하는 근거를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상품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기법, 품질관리, 표본추출 절차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게 제공, 모든 시험을 국제시험실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내에서 적절하고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 시험샘플의 확인, 수집, 표본추출, 운송, 보관 및 해당 시험샘플에 대해서 사용된 분석기법에 관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류를 기록 유지함.
 - SPS 조치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

되고, 이용 가능한 과학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 증명(Certifications)에 있어서 요구되는 실체법적 주요 권리·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SPS 요건에 관한 보증이 증명서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상이한 시스템이 동일한 SPS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수입당사국은 오로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상품무역을 위한 증명을 요구하며, 증명서 상 요구하는 증명 및 정보를 자국의 SPS 목적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함.
 - 수입당사국은 증명서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모든 증명 또는 정보에 관한 근거를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게 제공함.
 - 증명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및 국제표준·기준·권고를 고려함.
- 따라서 감사(Audits)의 경우 해외 현지실사를 포함하여, 감사 및 평가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방법, 절차, 매뉴얼 등 감사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수입검사 및 증명의 경우 절차의 시행·적용·운영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총괄·모니터링시스템, 정보와 자료의 연락·통보·공개·공유·검토·확인 등 내부적인 연계·협업체계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수입검사의 경우 TPP/SPS챕터에 합치하는 과학기술적 검사·분석기법, 시설 및 설비, 검사수행방법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체계적인 유지·보관·관리를 위한 물리적·전자적 기록시스템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임.

[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절차법적 측면에서, SPS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WTO/SPS협정 「부속서 3」(ANNEX C)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 의무사항은 부당한 지연의 회피, 기준·절차·비용 등의 비차별적 적용, 처리기간·처리경과 등의 공표 및 통보, 신청서의 접수·검토·확인 및 답변, 이의제기·시정조치 및 하자치유의 절차와 기회 보장, 기타 최소한의 제한 등임.
- TPP/SPS챕터의 경우 감사, 수입검사, 증명 각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조치 등에 관한 정보, 근거, 증명 등의 공지 및 통보, 논평·재검토 등 접수·답변 등 기회와 절차 보장, 요구하는 정보의 최소범위화 및 최소한의 제한 등임.
-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의무사항에 관한 체계적인 총괄 및 모니터링, 검토·확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TPP/SPS챕터의 수입검사 및 증명의 경우 전통적인 서류·문서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전자적 수단의 개발·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증명 및 기타 기술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

- 절차의 시행·적용·운영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총괄·모니터링시스템, 정보와 자료의 연락·통보·공개·공유·검토·확인 등 내부적인 연계·협업체계 구축.
- 특히, 감사(Audits)의 경우 해외 현지실사를 포함하여, 감사 및 평가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방법, 절차, 매뉴얼 등 감사 역량과 시스템 확충.
- 수입검사 및 증명의 경우 절차의 시행·적용·운영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총괄·모니터링시스템, 정보와 자료의 연락·통보·공개·공유·검토·확인 등 내부적인 연계·협업체계 등 구축.
 - 특히, 수입검사의 경우 TPP/SPS챕터에 합치하는 과학기술적 검사·분석기법, 시설 및 설비, 검사수행방법, 기록의 체계적인 유지·보관·관리를 위한 물리적·전자적 기록시스템을 개발·운영.
 - 수입검사 및 증명의 경우 다양한 전자적 수단의 개발·이용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증명, 기타 기술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 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7조(수입위험평가) ...
③검역본부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⑦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위해요소 확인) ...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 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수출국 답변자료 또는 현지조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전문가, 연구·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위험평가 요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출국 답변자료, 현지조사 결과, 국내 위생조치, 과학적 자료 등에 대한 조사·확인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공동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이하 "해외작업장"으로 한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제7조)과 「지정 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을 통해 현지 감사(현지조사)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

- 하고 있음.
- 특히,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7호)은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방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기타 SPS 국내정책·규정·제도·조치 등의 '시행·적용·운영'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협정 준수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음.

[식물방역법]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 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제13조(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제13조 관련)

1. 검역신청
수출국에서 국외 생산지검역을 받아 식물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수출국가를 포함한다)는 본부장에게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본부장이 판단하여 생산물 검역에 앞서 재배지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배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물 검역
 - 가.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대하여 본부장이 정한 「품목별 서류,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 나. 현장검역하여 규제병해충 흔적이 있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국외 생산지 식물검역관이 실험실에서 직접 검역을 실시한다.
 - 다. 분류동정 결과 금지병해충인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그 밖의 규제병해충인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
4.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및 검역표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검역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여백 또는 이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역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식물방역법」은 일정한 경우 식물 등의 국외 생산지검역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 상기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외 생산지검역에 관한 절차, 방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입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33호) (제13조 및 동 조 관련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타 SPS 국내정책·규정·제도·조치 등의 ‘시행·적용·운영’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협정 준수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

...
 제125조(검정절차 등) ...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
 제127조(검정항목) ...
 제128조(검정방법) ...
 ...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

[농산물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제79조 내지 제87조, 제98조 내지 제100조 규정을 통해 농산물의 검사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15호),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6호) 등을 통해 그 대상, 기준, 방법, 절차, 증명서발급, 결과의 공개,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정함.
- 기타 SPS 국내정책·규정·제도·조치 등의 '시행·적용·운영'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협정 준수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음.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춘 수 있다.
- ...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
 제21조(자가품질검사) ...
 제22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
 ...
 제26조(수거량·검정의뢰 등) ...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
 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사용·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료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은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등의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법 제14조), 특히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형태로 정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8호)). ○ 또한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정을 하여야 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검정 및 검정증명서의 제출, 검정 항목,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9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함(법 제2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가품질검사의 절차,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법 제20조 제2항 내지 제5항,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할 수 있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8조,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9호)). ○ 기타 SPS 국내정책·규정·제도·조치 등의 ‘시행·적용·운영’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협정 준수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음.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 기타 수입검사, 증명에 관한 절차의 시행·적용·운영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등.

(7) 기술지원 및 협력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제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원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제9조 제2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들은, SPS챕터와 합치하여, 상호간의 관심사안인 SPS 문제들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 협력, 공동작업 및 정보교환의 증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그러한 기회들은 무역원활화 방안 및 기술지원을 포함할 수 있음(제7.1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들은 이 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함. ○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SPS 사안들에 관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 SPS 사안들에 관한 작업을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음(제7.15조 제2항).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 ○ 해당 사항 없음.</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 ○ 해당 사항 없음.</p>
<p>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p>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기술지원 및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WTO/SPS협정, TPP/SPS챕터 모두 기술지원, 협정의 이행, 상호 이해증진, 공동작업, 정보교환 등에 관한 일반적 협력의무를 권고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응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나, TPP/SPS챕터의 경우 무역원활화 방안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협력, 공동작업 및 정보교환의 증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상호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이에 대비한 대응기반을 사전에 갖추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내적으로 SPS 조치 관련 과학기술, 법, 정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및 대응 조직의 구성·운영 등.</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해당 사항 없음.</p>	
<p>[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 ○ 대내적으로 SPS 조치 관련 과학기술, 법, 정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및 대응 조직의 구성·운영.</p>	
<p>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p>	
<p>[가축전염병 예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 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p>[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p> </div> <p>○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동물검역 관련)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개발된 수의과학기술의 대외적 기술지원 및 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누락됨.</p>	
<p>[식물방역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p>[식물방역법 시행령]</p> <p>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p> <p>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p> <p>○ 「식물방역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p> <p>○ 「식물방역법 시행령」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개발된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대외적 기술지원 및 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함.</p> <p>- WTO/SPS협정에 따른 대외 기술지원 및 협력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적원조사업(ODA)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p>	
<p>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p>	
<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하위법령 내 기술지원·협력에 관한 일반적 사항 추가 보완 등 검토.</p> <p>- 상기 사항은 비록 WTO/SPS협정 및 TPP/SPS챕터 모두 일반적 협력의무를 권고적 형태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향후 국제적 공적 책무의 책임있는 이행, 관련 예산·인력·조직 등의 안정적·효율적 확보 및 집행 등을 위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p>	

(8) 이행기구/기관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p>○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제7조).</p> <p>- 통보 및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내용과 범위, 방식 등은 「부속서 2」(ANNEX B)의 규정에 따름.</p> <p>○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지역정부기구의 의무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시행하고,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제13조).</p>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p>○ 해당 사항 없음.</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p>○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Enquiry points)를 설치·운영(「부속서 2」 제3조).</p> <p>- SPS 조치 규정,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p>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p>○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지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국들에게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국의 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과 그 각각의 책임기관 내의 연락처(Contact Points)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문서로써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 주요</p>

<p>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 관련 국제·지역기구에의 참여 및 관련 양자간/다자간 협정문 및 약정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제5조 내지 제8조의 통보절차 이행을 위해 국내 차원에서 그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통보처)을 지정(「부속서 2」 제10조). ○ 협정에 따른 정기적인 협의 및 회원국의 SPS 조치의 조화, SPS 조치 및 관련 정보의 통보 접수, 수입·배포 및 이용 제공, 기타 감독·조사·평가 등을 위해 SPS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치·운영(제12조). 	<p>대표자를 확인(제7.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관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 ○ SPS챗터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SPS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SPS 위원회를 설치·운영(제7.5조). - 동 위원회는 SPS협정 및 SPS챗터의 이행과 이행과 관련이 있는 SPS 사안들에 관한 당사국들의 이해 증진,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에 관한 상호 이해 제고, SPS챗터의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 작업반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 결정, 당사국들 간 SPS 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력 프로젝트를 확인 및 개발, 당사국 간 발생하는 SPS 사안에 관한 정보의 공유, WTO SPS 위원회, Codex 위원회, 세계 동물건강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위한 사안들과 입장에 관하여 협의 등 임무 수행.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hr/>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조치의 통보, 관련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및 제출, 조치 및 규정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의무준수, 기타 대외적 연락·응대·답변 등 의무의 이행·준수를 위한 이행기구/기관으로서, WTO/SPS협정의 경우 문의처(Enquiry points) 및 통보처를 설치·운영하고, TPP/SPS챗터의 경우 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과 그 각각의 책임기관 내의 연락처(Contact Points)를 각각 지정·운영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당사국들에게 문서로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기관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 ○ 또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의무의 이행 및 준수 등을 위한 협의·협력·논의·공동작업, 정보 및 자료의 통보·제출·수집·배포·교환·제공·공유, 기타 감독·조사·평가 등을 위해 SPS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SPS 위원회를(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각각 설치·운영함. ○ 따라서 문의처, 통보처, 책임기관, 연락처 등의 국내기관을 가급적 분야별로 일원화 또는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거나 긴밀한 연계·연락·협조·협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찬가지로 WTO 및 TPP SPS 위원회의 파견·담당·대응 기관·조직·인력·시스템을 연계·공동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hr/> <p>[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처, 통보처, 책임기관, 연락처 등의 국내기관을 가급적 분야별로 일원화 또는 연계하여 통합 운영, 긴밀한 연계·연락·협조·협의체계 확립. ○ WTO 및 TPP SPS 위원회의 파견·담당·대응 기관·조직·인력·시스템을 연계·공동 또는 통합 운영.
--

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	
<p>[가축전염병 예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훈령, 예규, 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은 문의처, 통보처, 책임기관, 연락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인 내규에 따라 WTO/SPS 문의처와 통보처를 운영함. 	
<p>[식물방역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p> </div> <p>[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6조(제한 및 해제조치 적용시기) ① 수입제한 및 해제조치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p> <p>제7조(행정조치) ① 식물검역과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시 검역본부 각과 및 지역본부·사무소에 통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p> <p>1. 수출지원과 : 해당국 또는 국제기구(WTO/SPS)에 통보</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식물방역법」도 문의처, 통보처, 책임기관, 연락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내부적인 내규와 합의, 관행에 따라 WTO/SPS 문의처와 통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제한조치의 경우(법 제11조) 요구되는 행정조치로서 타 회원국 또는 WTO SPS 위원회에 대한 통보부서를 명시하고 있음(「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7조). 	
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 내 문의처, 통보처, 책임기관, 연락처 등의 국내기관 및 해당 업무 명시. ○ 기관 간 통합·연계·연락·협조·협의체계 확립 등. 	

(9) 협의 및 분쟁해결

WTO/SPS협정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TPP/SPS챕터의 SPS 조치 의무화 규정 및 주요 내용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 해결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 적용(제11조 제1항). 	<p>[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p> <p><협력적 기술협약: CT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챕터 관련 관심사항, 문제(분쟁) 발생의 경우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행정절차, 양자간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결되지

<p>○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제11조 제3항).</p>	<p>못하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협력적 기술 협의(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CTC)를 이용할 수 있음(제7.17조 제1항).</p> <p><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p> <p>○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을 조건으로, 제28장 (분쟁해결)이 이 장에 적용됨(제7.18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8조 (동등성), 제7.10조 (감사), 및 제7.11조 (수입검사)에 관하여는, 제28장 (분쟁해결)은 피청구당사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당해 피청구 당사국에 대해서 적용됨. - 제7.9조 (과학 및 위험분석)에 관하여는, 피청구당사국에 대해서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후부터 당해 피청구당사국에 대해서 적용됨.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p>○ 이 협정에 따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제11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목적을 위하여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음.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p> <p><협력적 기술협의: CTC></p> <p>○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의 주요 대표자에게 청구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청구국과의 협력적 기술 협의(CTC)를 개시할 수 있음(제7.1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기술협의(CTC) 청구는, 사안에 관한 청구당사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당 청구의 사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동 사안과 관련된 이 장의 조항을 명시하여야 함. <p>○ 청구당사국과 피청구당사국(협의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요청을 수락함(제7.17조 제3항).</p> <p>○ 협의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당사국들은, 가능하면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에 적시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청구당사국이 요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합해야 함(제7.17조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회합은 직접 대면으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행함. <p>○ 협의당사국들은 협력적 기술협의(CTC) 개최에 있어서 관련 무역·규제기관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함(제7.17조 제5항).</p> <p>○ 협력적 기술협의(CTC) 과정에서의 협의 당사국들 간 모든 교신은 물론 협력적 기술 협의(CTC)에 관하여 생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협의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협정, WTO</p>

	<p>협정 또는 협의당사국이 당사국인 기타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음(제7.17조 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회합이 청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달리 합의한 기일 이내에 개최되지 않거나, 또는 제4항에 규정된 회합이 개최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협력적 기술협약(CTC) 절차를 중단하고 제28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음(제7.17조 제7항). ○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른 협력적 기술협약(CTC)를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우선적으로 거치지 않고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제28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음(제7.17조 제8항). <p><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장에 따른 분쟁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쟁점을 수반하는 분쟁의 경우, 패널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제7.1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패널은, 분쟁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이 주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련 국제표준설립기구와 협의할 수 있음.
--	---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 사항

[실체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

- 실체법적 측면에서, WTO/SPS협정은 SPS 조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 및 분쟁해결양해가 적용된다는 일반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기타 주선 등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및 타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함.
- TPP/SPS챕터의 경우 SPS챕터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은 우선 이용가능한 행정절차, 양자간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심사항·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협력적 기술협약(CTC)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TPP 분쟁해결절차에 따름.
 - 협력적 기술협약(CTC)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적 기술협약(CTC)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지 않고서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따라서 SPS챕터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순서는 ① 이용가능한 행정절차, 양자간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메커니즘, ② 협력적 기술협약(CTC) ③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임.
- 따라서 SPS 분야의 협상, 협력적 기술협약(CTC), 분쟁해결 등 분야별 대응 전문 인력, 조직, 기구 및 역량의 양성, 구축, 강화가 요구됨.
 - SPS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 국내 분야별 국내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참여·활용 체계 확충, SPS 관련 관심사항·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상설)·부정기적(사안별) 합동점검·검토기구 등 설치·운영, 기타 민간 의견수렴절차 확보 등.

<p>[절차법적 권리·의무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법적 측면에서, TPP/SPS챗터는 분쟁해결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협력적 기술협약(CTC) 절차를 신설하고, 그 절차 및 방식, 기준과 요건, 기한, 정보제공의 범위 등 절차법적 의무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기술협약(CTC) 개최에 있어서 특히 관련 무역·규제기관의 적절한 참여 보장을 명시. ○ 따라서 SPS 협약·분쟁해결절차를 총괄하거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점검·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약·분쟁해결 과정과 절차에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무역·규제기관의 적절한 참여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할 것임. <p>-----</p> <p>[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기술협약, 분쟁해결을 전담 인력, 조직, 기구 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내부 육성 및 활용. - 협약·분쟁해결절차에 과학기술, 정책, 경제, 법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민간 의견수렴절차 등 시스템 확충. ○ 관심사항, 문제(분쟁)에 관한 정기적(상설) 및 비정기적(사안별) 검토기구. ○ 협력적 기술협약,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적 사항의 총괄·점검기구. ○ 범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대응시스템에 SPS 분과 전문가·대응그룹 별도 설치·운영.
<p>국내 관계법령 대응규정 현황</p>
<p>[가축전염병 예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훈령, 예규, 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은 SPS 조치 관련 분쟁해결절차로서 협약/협력적 기술협약(CTC) 및 분쟁해결에 관한 대응체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p>-----</p> <p>[식물방역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식물방역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훈령, 예규, 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 역시 SPS 조치 관련 분쟁해결절차로서 협약/협력적 기술협약(CTC) 및 분쟁해결에 관한 대응체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p>국내 관계법령 등 정비·보완·개정 수요 및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기술협약, 분쟁해결을 전담 인력, 조직, 기구 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내부 육성 및 활용. - 협약·분쟁해결절차에 과학기술, 정책, 경제, 법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민간 의견수렴절차 등 시스템 확충. ○ 관심사항, 문제(분쟁)에 관한 정기적(상설) 및 비정기적(사안별) 검토기구. ○ 협력적 기술협약,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적 사항의 총괄·점검기구. ○ 범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대응시스템에 SPS 분과 전문가·대응그룹 별도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관련 국제분쟁에 관한 정부부처 내 상호 연락·공유·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가축·축산물의 위생·안전 부문

(1)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 법 제1조).
- 「식품위생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기계, 용기·포장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표시, 공전(公典),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SPS 조치에 관한 주요 권한과 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이들 다양한 분야의 SPS 조치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과 책무 중에서 주요 수출입 SPS 조치에 관한 조항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4-10> 「식품위생법」 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 사항

조치	주요 내용	해당 조항
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위해·유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식품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제15조
위해평가 결과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상기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제15조의2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등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7조
GM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제18조
검사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제19조의4

조치	주요 내용	해당 조항
	수 있음.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음.	제21조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2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제57조
식품안전정보원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일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을 설치·운영함.	제67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 법 제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며(동 법 제2조 제2호), 이들 축산물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름(동 법 제3조).
- 따라서 “축산물”에 관한 SPS 조치 등에 있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표시, 위생관리, 검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해평가, 기타 정보의 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SPS 조치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들 다양한 분야의 SPS 조치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과 책무 중에서 주요 수출입 SPS 조치에 관한 조항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4-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주요 수출입 SPS 조치 사항

조치	주요 내용	해당 조항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제3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제12조의3
수입·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제15조의2
출입·검사·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음.	제19조
위해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이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제33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제37조의2

V. 주요 국가의 SPS 대응사례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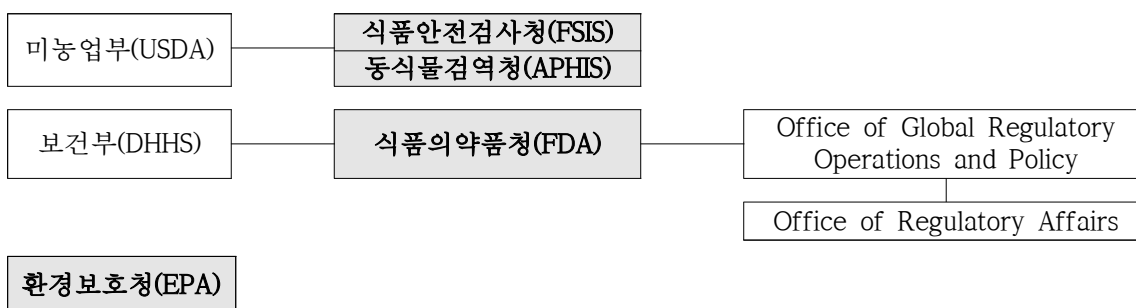
1. 미국

-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권력 분리형 시스템에 기반한 다원화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과학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을 지향함. 또한, 국회에서 제정된 식품안전법령들(food safety statues)은 광범위한 권한을 규제기관에 부여하여 규제조치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건강위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규를 융통성 있게 개정 또는 수정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음.
- 여러 부처의 산하 기관에서 SPS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어느 한 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 이들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규제의 기본 원칙인 “동등성(Equivalence)”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등성(Equivalence)이란 WTO 회원국 간에 1995년에 발효된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SPS Agreement)’의 Article 4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으로, 미국정부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미국산 식품과 동일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다만, “동등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 역시 일정범위 내에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당국 및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SPS 적용 대상이 동물, 식물,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각 영역별로 여러기관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허브(Hub) 조직을 설립하거나, ‘무역정책실무위원회(Trade Policy Sub Committee)’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외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이에 본 소절에서는 SPS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 ① 식품안전 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②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③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④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중심으로 미국 식품안전 및 SPS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의 협력 체계를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SPS 관련 규제 기관

- 미국 연방기관 중 식품 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다양하나 이들 중 연방정부 수준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주무연방규제기구(principal federal regulatory organizations)로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소속의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소속의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있음.

<그림5-1> 식품안전 주무연방규제기구



1) 식품안전검사청

-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농업부 산하 식품안전 관리 기관으로 연방식육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난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과 난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
- 관할 항목은 축산물과 난제품이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생한 식육과 가금육에 대한 대형 식품안전 사고로 인하여 관련 법률들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음.
 - 주로 도축 전후에 식용 동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도축업자 및 가공 공장에 대한 위생 검사, 달걀 가공제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육류제품의 조리 및 포장, 공장위생,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재료 사용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으로 육류를 수출하고 있는 해외 육가공 공장들의 위생 기준이 미국의 육류 위생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식물검역청

- 동식물검역청(APHIS)은 농업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동식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동식물검역청은 동식물 질병의 미국 내 유입 및 미국내 질병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농업무역에 필요한 SPS 기준을 제정, 운용하여, 미국농업의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함

□ APHIS의 주요 임무와 역할

- 동물수의국(Veterinary Services)의 역할
 - 동물수의국은 미국 축산물의 위생, 품질 및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질병을 예방,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축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 동물위생관리시스템 (NAHMS : National Animal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함.
 - 무역규제와 미국 농산물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무역센터(NCIE : National Center for Import and Export)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 제품 무역에 관련국가와의 협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육류제품의 수출위생검사증(Health Certification for Export)을 발급, 수입 축산물에 대한 요구조건 검사를 수행함.
 - Sanitary Issues Management Team을 구성해 축산물 수출입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SPS의 비관세장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함.
- PPQ(Plant Protection Quarantine)Program의 역할
 - 외국에서 발생한 병충해 원인을 조사, 분석한 뒤 천적 등을 방사하여 식물 병충해를 조기에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미국 내 농업자원들을 보호함.
 - Phytosanitary Issues Management Team을 구성해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식물 위생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 외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프로그램(Pre-clearance Program)을 실시하여 해당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 및 평가하고 병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식품의약품청

- 식품의약품청(FDA)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주경계선을 포함한 모든 국경선을 넘는 식품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수입제품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과 소비자 교육 실시 등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안전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관할 항목은 전술한 식품안전검사국에서 관할하는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국내산 및 수입산 식음료제품을 포함함.
 - 규제 대상은 독성 및 유해 물질, 인체에 유해한 식품 첨가제, 오염 또는 유해한 환경에서 가공포장 혹은 보관된 품목에 한함.
 - FDA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사전에 수입업자가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문서 검토내용이 FDA의 전산 시스템인 Import Entry Review와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어 자동 선별 도구인 PREDICT(Predictive Risk Based Evaluation for Dynamic Import Compliance Targeting)를 통해 검역관이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함.
 - 전술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재표기(relabeling), 재처리(reconditioning) 등의 시정조치를 비롯해 입국거부, 몰수 또는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특이점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Section 801에서 수입품이 오염, 오기, 또는 기타 위반인 것으로 "추정되기만(appears)"하면 물리적 검사 없이 수입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점임. 중국에서 수입된 식물성 단백질제품 일부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FDA에서 중국산 식물성 단백질 전량에 대해 DWPE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FDA 식품수입관련 주요 업무 조직

○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 FDA 산하 OGROP(Office of Global Regulatory Operations and Policy)내 조직으로 중장기 전략 기획, 지방조직 관리 감독, 본부조직과 지방조직 관계 조정,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부 간 네트워크 역할을 함. 산하 조직으로 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Office of Resource Management, Office of Enforcement,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Regional&District Office Contacts가 있음.

○ 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 전문화된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소속으로 현장조사(field investigation) 관할하고 현장실험(field laboratory) 업무를 지원함. 산하 부서로 Division of Field Investigation, Division of Field Science, Division of Federal-State Relations, Divisions of Operations and Policy가 있음.

○ Division of Import Operation and Policy

- 전문화된 Office of Regional Operations의 부서로 수입운영정책과 절차 감독, 수입운영지침 마련, Import Alert System 운영관리,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FDA 창구별 수입절차 시행 관리 등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 운영 창구로 볼 수 있음.

4) 환경보호청

□ 식품 안전에 관련한 환경보호국의 역할은 농약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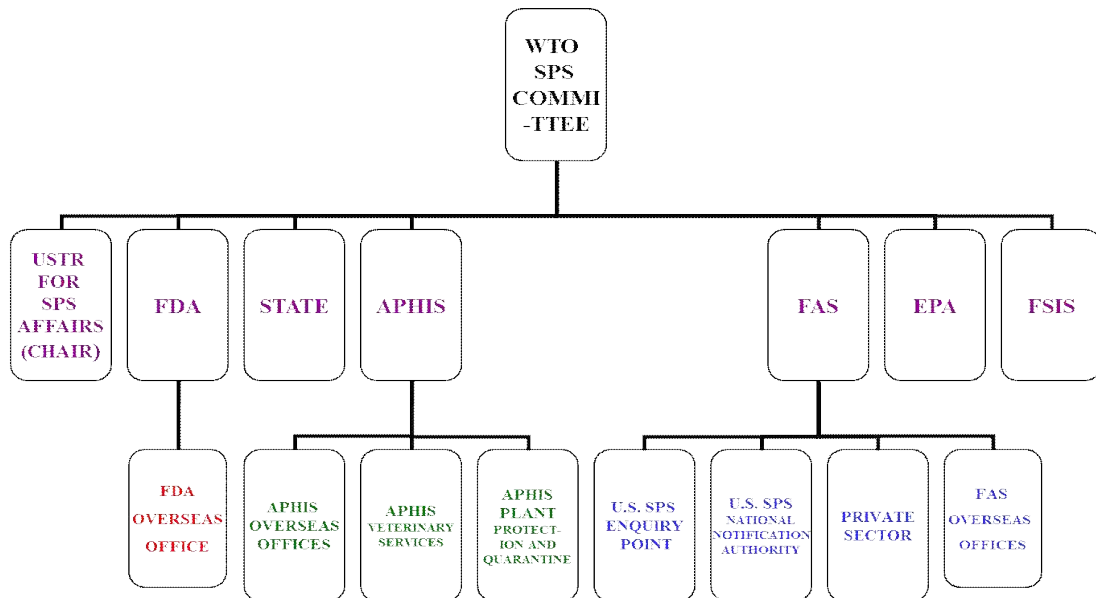
- 주요 업무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이나 사료에 대해 잔류농약의 허용한계량을 지정해 식품의약품청과 농업부 산하 규제기관의 농약 한계량 기준을 제시함.
- 이 밖에 식수의 음용 가능 기준을 설정하고 독성물질 및 폐기물을 모니터링 하는 등 환경 및 먹이사슬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함.

나. 협력 체계

1) 무역정책실무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는 본 소절의 도입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협정과 같은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범부서 조직으로, TBT와 SPS에 대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SPS 분과위원회(TSPC subcommittee for SPS)는 무역 상대국의 SPS 관련 조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실의 확인, 조사, 연구, 분석을 총괄하여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SPS 분과위원회는 전술한 규제 기관인 FSIS, APHIS, FDA, EPA를 비롯해 농업부 산하의 해외농업국(FAS)과 USTR 농무부처(Office of Agricultural Affairs)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관여하고 있음.

<그림5-2> SPS 무역정책실무위원회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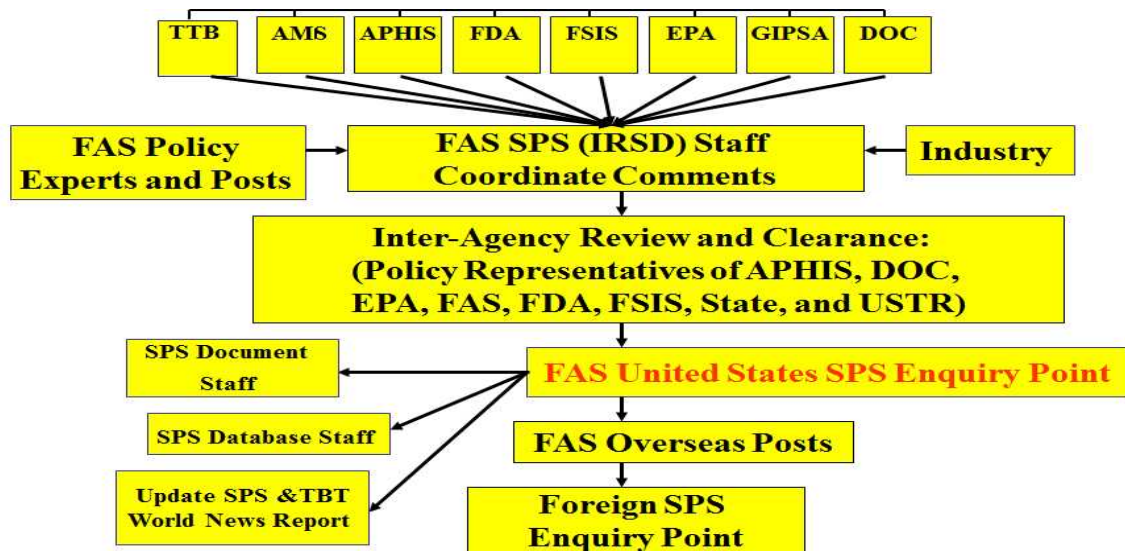
주: USTR(무역대표부), FDA(식품의약품청), STATE(국무부), APHIS(동식물검역청), FAS(해외농업국), EPA(환경보호청), FSIS(식품안전검사청)

자료: Roseanne Freese(2008),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Implementing the WTO SPS Agreement"

2)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농업부 산하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은 SPS 분과 위원회의 중추적인 부서로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와 통보당국(Notification Authority) 역할을 단일 체계로 수행하고 있음.
- SPS 관련 사안에 대한 수집과 통보는 허브(Hub) 조직이 맡고,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인 규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맡는 체계를 구성하여 행정과 연구의 분담을 현실화했음.
 - 예를 들어 외국기업과의 무역이나 외국기관과 통상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SPS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체가 FAS로 일차적인 의견이나 자료를 보내면, FAS는 이를 각 분야별 SPS 담당기관에게 송부하여 회람토록 한 뒤, 의견을 취합함.
 - 나아가 FAS는 SPS에 관련한 국내외적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곳으로써 특정 SPS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가공하여 미국 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외국의 SPS 문의처에 공식 의견을 보내는 역할을 함.

<그림5-3> 외국 SPS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 체계



주 : USTR(무역대표부), FDA(식품의약품청), STATE(국무부), APHIS(동식물수역국), FAS(해외농업국), EPA(환경보호국), FSIS(식품안전검사국), TTB(주류담배과세무역청), AMS(농무부 내 유통마케팅국), GIPSA(곡물검역포장가축청), DOC(상무부)

자료 : Roseanne Freese(2008),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Implementing the WTO SPS Agreement"

3) 불공정(unwarranted)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

- 미국 정부는 타국과의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unwarranted)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빠른 대응과, 당국의 의견을 취합 및 전파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체계를 갖고 있음.
- SPS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 관심은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보다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극복에 비중을 두고 있음. 전술한 무역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 역시 SPS 관련 비관세장벽에 따른 불합리한 자국산 식품 수출 중단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에 비중이 있음.
- **Interagency Center for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 (ICTIME)**는 농업부를 비롯해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이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기관으로 정부부처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연구원, 경제 분석가 등이 참여해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섭 확대를 목적으로 함.
-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무역집행 노력을 위해 설치한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ICTIME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현재는 상무부 산하 기관이나 2017년부터 전술한 SPS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USTR 내에 상설화 될 예정임.
- 또한, **Trade Act of 1974 section 181**에 근거하여 USTR은 대통령과 주요 위원회에 매년 당해의 외국 무역 장벽 이슈, 특히, SPS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무역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외 SPS 사례에 대한 별도의 보고 체계를 가지고 연간 SPS협정 보고서(Report on SPS Measures)를 별도로 작성했으나, 2015년부터는 2010년 이전과 같이 SPS 외에 상대국의 수입, 관세, 서비스 장벽, 투자 및 기타 장벽 이슈를 모두 포함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보고하고 있음.

다. 요약 및 시사점

□ 미국은 SPS 관련 이슈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부서에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음.

○ 미국 SPS 관련 조직은 권력 분리형 다원화 조직을 지향하며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 권력을 분산시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안전법령들을 통해 기관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위 법령을 융통성 있게 개정 또는 수정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각국의 개방경제 정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습관 및 농식품 무역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고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위원회나 허브(Hub) 조직을 설립하여 권력 분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업무 체계의 복잡함을 해결하고 구조적 효율성을 추구함.

○ SPS 관련 문의처와 통보당국을 농업부 산하 해외농업국에 역할을 맡김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중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간 마찰이나 업무처리 지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각부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무역협정과 같은 대외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한국정부도 여러 부서에 분리된 SPS 업무 권한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미국은 자국 농식품의 순수출액 감소 현상에 대응코자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대상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극복에 주력하고 있음.

○ 2009년에 집권한 버락 오바마(O.Barrack) 정부는 시작부터 공격적인 수출정책 기조를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농식품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SPS 협정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여, 부당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그 결과 2013년까지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의 농식품 수출 규모가 급증하였음.

- 2012년에는 ITEC(부처간무역집행처·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설립, 농업부(USDA)를 비롯한 각 부서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모든 무역 대상국에 대해 SPS로 인해 장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2017년부터는 ICTIME(범부처 무역집행처·Interagency Center for Trad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로 개명하여 USTR 산하에서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한국정부도 SPS에 대한 범부처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부처간 SPS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식품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SPS 사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함.

2. 호주

- 호주에서는 SPS 업무를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BIRA : 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이라고 하는데, 이는 검역법(Quarantine Act 1908)에 의거 농림수산부(DAFF) 산하 검역청(AQIS)에서 수행하였으나 2016년 6월 16일에 검역법(Quarantine Act 1908)이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으로 변경되면서 농림수산부(DAFF)와 검역청(AQIS)이 농업수자원부(DAWR)로 통합되었음.
- 농업수자원부(DAWR)의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 업무 지원 기관으로는 BIRA 연락관(Liaison officer), 과학자문단(SAG : Scientific Advisory Group)과 생물보안 감사관(IGB : Inspector General of Biosecurity), 산업자문위원회(ICC : Industry Consultative Committees)가 있음.
- 뿐만 아니라, BIRA와 S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태즈매니아 주 제외), 연방정부, 유관기관 등이 모여 정부기관간 생물보안업무 협약(IGAB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 :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를 설립하였음.
- 이하에서는 BIRA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수자원부(DAWR), BIRA 연락관(Liaison officer), 과학자문단(SAG), 감사관(IGB), 산업자문위원회(ICC),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의 설립근거와 목적, 담당업무 및 협력 체계 등을 소개하고 호주의 SPS 시스템 특징을 검토하여, SPS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호주의 농산물 위생 검역 추진현황과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가. 농업수자원부(DAWR)

- 농업수자원부는 15국 58과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생물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속가능한 농림수산국, 식물생물보안국, 동물생물보안국, 생물보안정책국, 농업자원경제과학국, 수의센터, 식물보호센터로 총 7곳임.

<표5-1> 호주 농업수자원부 부서 및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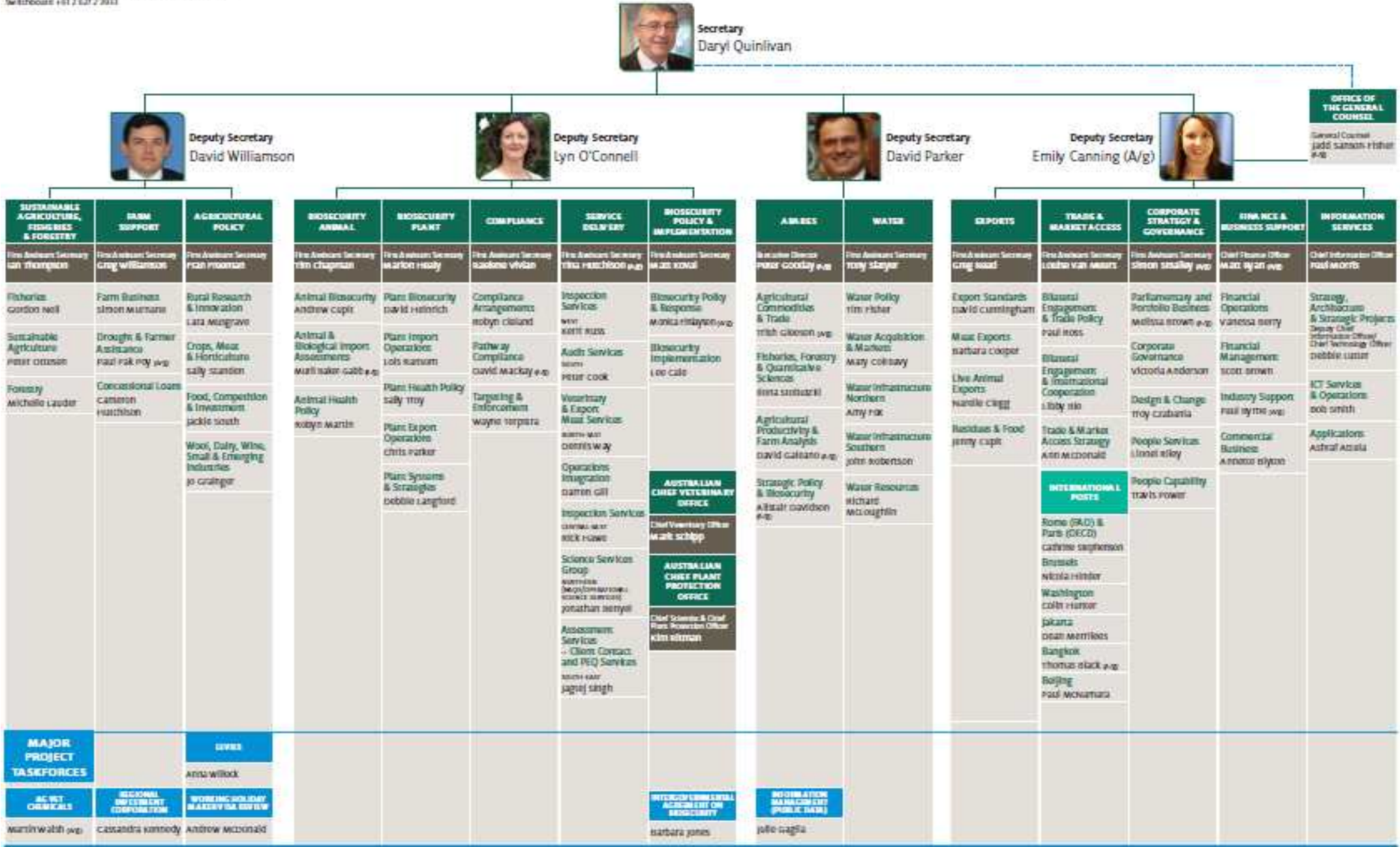
부 서	주요 업무	구 성(과)
지속가능한 농림수산물국	-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연구 - 국내 병충해 조사 및 방제 - 농축산업에 사용되는 농자재(농약, 약품 등) 지원	3개과
농가지원국	- 기후변화, 가뭄, 홍수 등에 대한 피해보상지원 - 농가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실행	3개과
농업정책국	- 농식품 산업 생산성,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	4개과
동물생물보안국	- 동물, 축산물 위생 관리 컨설팅, 조사지원 - 축산물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축산업 연구	3개과
식물생물보안국	- 농산물 등 식물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 - 농산물 생산성,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국내외 병해충 조사와 위험관리	5개과
준법지원국	- 생물보안 및 수입식품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절차 마련	3개과
조사지원국	- 농가에 농산업서비스 지원(농축산물 검사 등)	7개과
생물보안정책국	- 농축수산업 생물보안관련 법률 입법, 개정 및 정책 제안(규제, 행정절차 안내 등 포함)	2개과
수의센터(신설)	- 동물,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축산업 생산성 제고 및 시장 접근성 강화	-
식물보호센터(신설)	- 농산물 등 식물 위생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식물 희귀자원 보존 및 생산역량 강화	-
농업자원경제과학국	- 농수산물 및 식품 수급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경제학 등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 및 연구	4개과
수자원관리국	- 수자원 시스템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방안 연구	5개과
수출관리국	-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 - 농축산물 해외시장 진출전략 연구	4개과
통상국	- 양자간, 복수 다자간 연계를 통한 농산업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 시장 접근성 강화	3개과
경영전략 및 관리국	-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 생물보안기관 관리자 등에게 생물보안 관련 최신 정보 및 자문 제공	5개과
금융지원국	- 재무관리, 경영전략 관련 자문 제공	4개과
공보국	- 부처 내부 전산 시스템 관리 - ICT를 활용한 대외 홍보 활동 수행	3개과

자료 :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www.agriculture.gov.au)

<그림5-4> 호주 농업수산부 조직도(2016년 10월 현재)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ORGANISATIONAL CHART

Effective 5 September 2015 | Next review October 2016
 Switchboard +61 7 627 2 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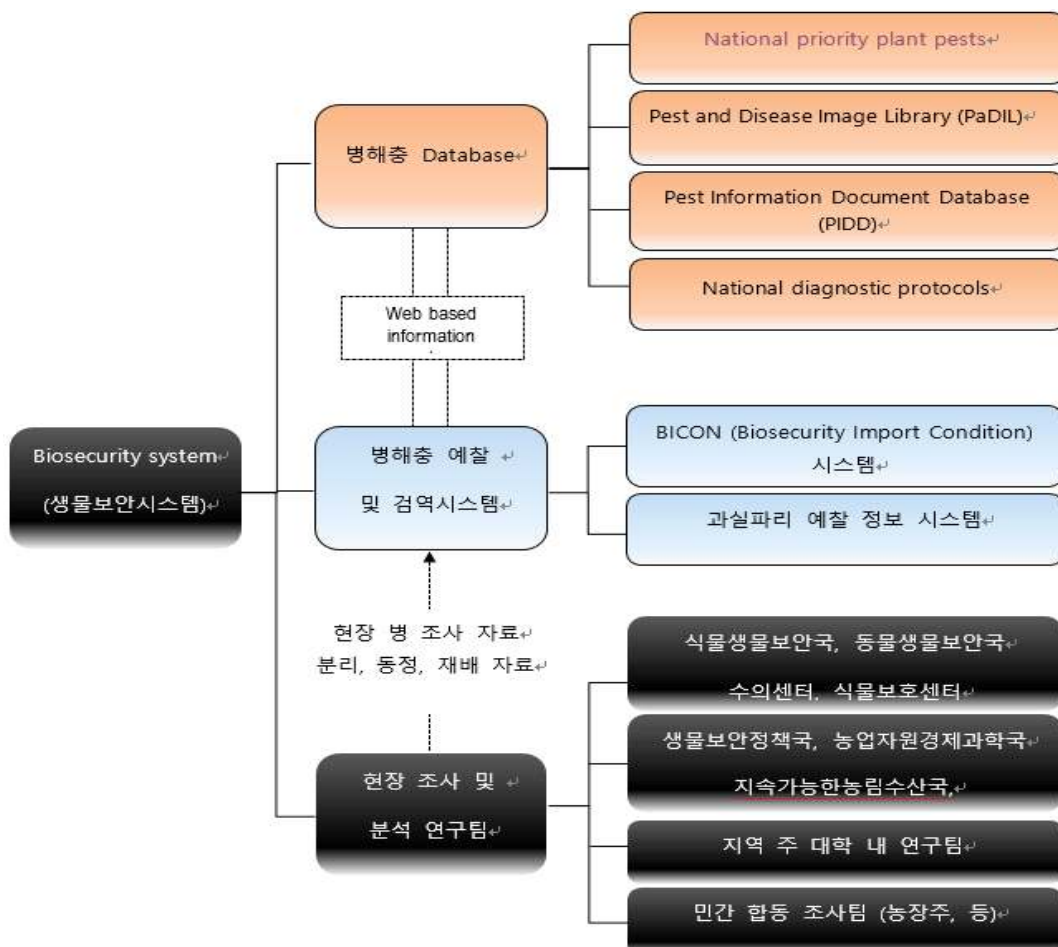
자료 :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www.agriculture.gov.au)

□ 농업수자원부(DAWR)는 WTO SPS 협정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에 의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생물보안 시스템(Biosecurity System)을 운영하면서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 업무(BIRA)를 수행하고 있음.

○ 농업수자원부는 호주 농산업 분야에서 무역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국민과 동식물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의 생산성, 경쟁력,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주정부 및 연방정부, 민간 전문가, 학계 등과 연계하여 생물보안 시스템(Biosecurity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생물보안시스템에 활용되는 전산 정보 시스템과 현장 조사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 되어 있음.

<그림5-5> 호주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 체계



자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을 통하여 호주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한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은 과거에 호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물건이거나 또는 호주에 수입된적 없는 국가나 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입품의 위해요인 평가 방식에는 법률에 근거한 위해요인 평가 방식인 (Regulated risk assessment)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BIRA), 다른 하나는 비(非)법률적 위해요인 평가로(Non-regulated risk assessment),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 검역 정책과 수입요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BIRA) : WTO SPS 협정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근거하여 호주로 수입되는 물건의 생물보안성 위해요인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호 적합 수준(ALOP :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과 그렇지 않은 수준으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SPS 조치와 같은 생물보안 위해요인 관리 조치(Risk management measures)가 이뤄짐.
 - BIRA는 외국에서 호주로 수입 요청(Import Proposal)이 있을 경우, 특정 수입품이 BIRA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농업수자원부 장관이 직접 위해요인 분석을 지시할 경우 실시됨.

2) BIRA 연락관(Liaison officer), 과학자문단(SAG) 및 감사관(IGB)

□ BIRA 연락관 제도

- BIRA 연락관의 역할은 BIRA 신청자, 농축산업 관계자, 농가, 주정부와 연방정부, 전문가 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BIRA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상호협력 및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BIRA 사건당 1명의 연락관이 배당되며, 연락관 임무는 BIRA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담당함. 공무원은 생물보안과 관련된 위해요인 분석, 과학과 규제, 동식물 병해충, 산업현황과 공정, 기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함.
 - 주요 업무로는 BIRA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BIRA 관련 회의일정 조정 및 안내, 주무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BIRA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등이 있음.

○ BIRA 연락관 업무는 아래와 같음.

- BIRA 이해관계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BIRA에서 언급될 이슈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이해관계자들과 주무부처에 BIRA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BIRA 절차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지원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주무부처간 대면상담 또는 화상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주최해야 하며, BIRA 절차가 끝난 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학자문단(SAG)

○ 과학자문단(SAG : Scientific Advisory Group)은 농업수자원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임. BIRA가 실시되면 장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과학자문단에게 BIRA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요청함.

- 자문단은 주 정부, 연방정부,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산업계, 연구소, 학계, 사설 컨설팅 기업, 일반인 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구성함.
- 농업수자원부 장관은 전문가 선발 시, 수입업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 유무, 과학분야 연구실적, BIRA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국제 동향 관련 지식, 생물보안 위해요소 관련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자문단은 자문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특정양식에 맞추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최종 BIRA 보고서 작성 시 자문단의 평가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함.

○ BIRA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농업수자원부 장관은 자문단에게 보고서 감수를 요청하며, 자문단은 보고서를 감수하여 과학기술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

□ 생물보안 감사관(IGB)

- 생물보안 감사관(IGB : Inspector General of Biosecurity)은 BIRA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바로 잡는 역할을 담당함.
- 이해관계자들이 BIRA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면 감사관은 현재까지 진행된 BIRA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
 - － 감사 요청은 BIRA 잠정 보고서(Provisional BIRA report) 인쇄일로부터 30일내에 해야하며,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관은 BIRA의 진행절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함. 과학적인 사안, 자문단 평가, 주무부처평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감사관은 감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감사를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 감사관은 감사 요청서를 검토하여 문제에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신청 내용이 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수자원부 장관에게 감사 신청인이 누군지 통보해야함.
 - － 결과 보고서에는 중대한 하자 존재여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감사관 지적사항을 기록해야 함. 보고서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공지전 감사를 요청한 사람과 농업수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함.

3) 산업자문위원회(ICC)

- 산업자문위원회(ICC : Industry Consultative Committees)는 농업수 자원부와 농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위원회임.
- 농업수자원부에서 정책 입안,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할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 조사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1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음.

- 생물분야 자문위원회, 농산물 수출 자문위원회, 원예작물 수출자문위원회, 물류자문위원회, 낙농제품 수출 자문위원회, 축산물 수출 자문위원회, 말 산업 자문위원회, 식품수출 자문위원회, 비적색육 산업 자문위원회, 농산물 후방산업 자문 위원회, 수산물 수출자문위원회, 호주-뉴질랜드 생물보안협력 자문단이 있음.

4)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

□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 :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는 정부간 생물보안 업무 협약(IGAB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를 근거로 설립되었음.

-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는 정부간 생물보안업무 협약(IGAB)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동식물 병해충과 관련된 생물보안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물 검역 위원회(Animal Health Committee), 식물 검역 위원회(Plant Health Committee), 해양생물위원회(Marine Pest Setoral Committee)로 구성되어있음.
- 설립목적은 생물보안업무와 관련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농산업 분야별 위원회와 협력 강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확대임.
- 농업수자원부 장관이 의장이고, 위원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농업, 산업, 환경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며, 위원회 정기 총회는 1년에 2번(2월, 8월)에 개최되고 사무국 예산 지원은 농업수자원부에서 담당함.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가 생물보안 비상대책단(National Biosecurity Emergency Preparedness Expert Group)과 국가 생물보안 정보관리단(National Biosecurity Information Governance Expert Group)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농업부 장관 포럼(Agriculture Minister's Forum)과 농업부 고위 공무원 위원회(Agriculture Senior Officials Committee)를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간 생물보안업무 협약(IGAB)를 바탕으로 한 생물보안 비상사태 관련 부처간 합동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부간 생물보안업무 협약(IGAB)은 2012년 1월에 중앙정부와 주정부(태즈매니아 주 제외), 연방정부가 모여 체결한 협약이며, 이는 1995년 1월에 발효된 정부간 호주 동식물 검역조치에 대한 양해각서(MOU 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Measures, 태즈매니아 주 포함)에 기초하고 있음.
- 협약 목적은 정부간 생물보안 업무 협력, 국가 생물보안 시스템 활성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임.
- 정부간 생물보안업무 협약(IGAB) 이후 체결된 최초 업무 협약은 국가 환경 생물보안 대응 협약으로 (NEBRA : National Environmental Biosecurity Response Agreement),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물보안 관련 긴급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예산비용 분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5-6> 호주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 위원 명단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BC) Membership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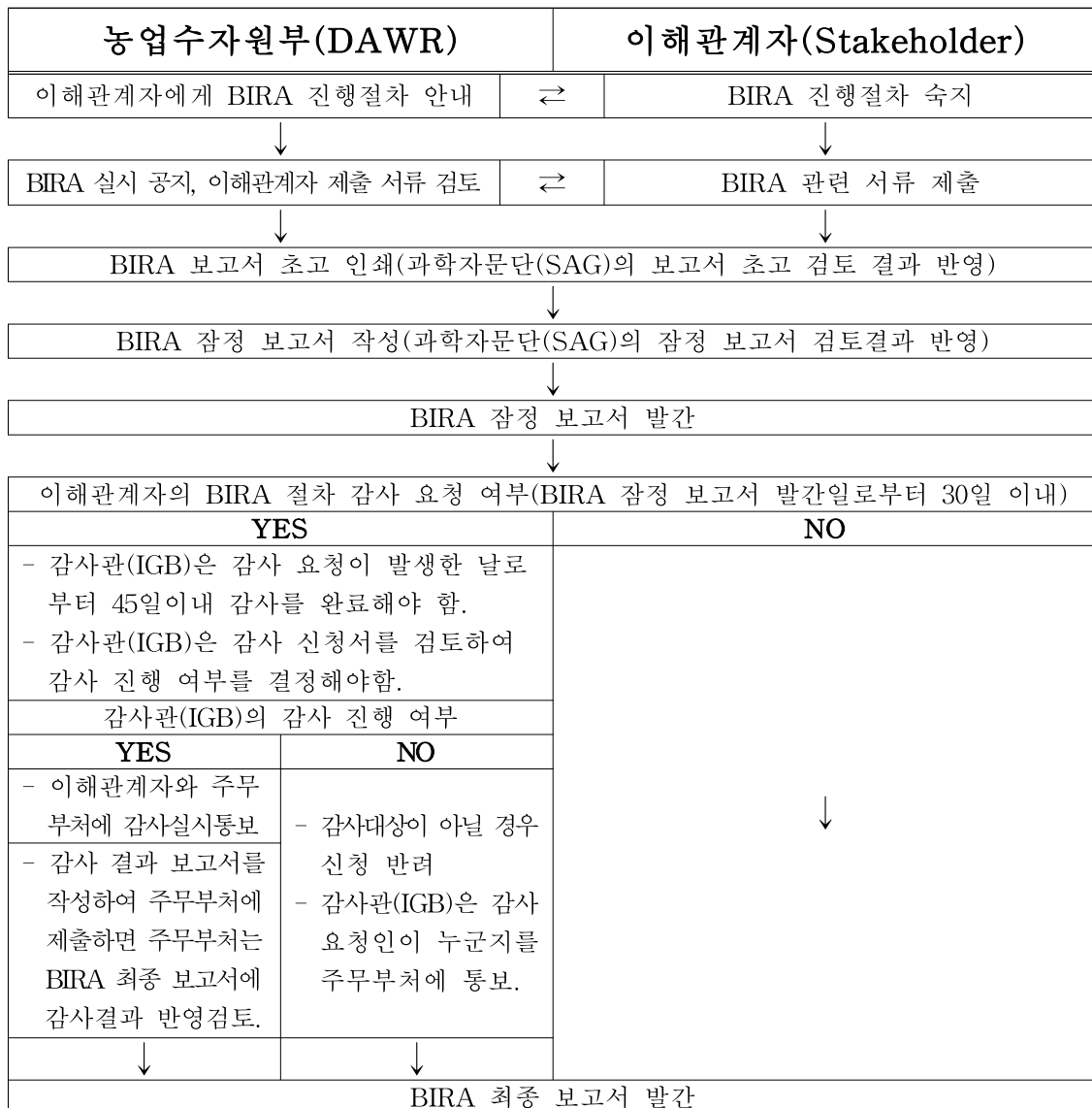
Name	Role	Department
Mr Daryl Quinlivan	Chair Secretary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Ms Lyn O'Connell	Deputy Secretary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Mr Dean Knudson	Deputy Secretary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Mr Daniel Iglesias	Director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 Directorat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Dr Bruce Christie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New South Wales
Mr Robert Quirk	Director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 New South Wales
Dr Michelle Rodan	Director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and Fisheries, Northern Territory
Mr Will Zacharin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s, South Australia
Dr Lloyd Klumpp	General Manager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Parks, Water and Environment, Tasmania
Dr Jim Thompson	Chief Biosecurity Officer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Queensland
Ms Cassandra Meagher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Jobs, Transport and Resources, Victoria
Mr Kevin Chennell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자료 : 호주 농업수자원부 BIRA Guidelines 2016(www.agriculture.gov.au)

5) BIRA 협력 체계

- BIRA에 농업수자원부, 이해관계자(Stakeholder), 과학자문단(SAG), 감사관(IGB), BIRA 연락관이 참여하며, 과학자문단은 BIRA에 대한 자문을, 감사관은 진행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연락관은 주무부처와 이해관계자, 자문단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함.
- BIRA를 진행하면서 지역적, 산업적 특성 반영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와 산업자문위원회(ICC)를 활용함.

<표5-2> 생물보안 위해요인 분석(BIRA) 진행 과정 및 협력 체계 도식



자료 : 호주 농업수자원부 BIRA Guidelines 2016(www.agriculture.gov.au), 서울대학교 재구성

나. SPS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현황

□ WTO SPS 협정에는 문의처(NEP : National Enquiry Point)와 통보당국(NNA :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을 개설하여 SPS 조치 관련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WTO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Transparency)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문의처와 통보당국 2가지 기능을 통합한 'SPS Contact Point'를 농업수자원부 통상국에 설치하여 SPS조치 관련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WTO에 통보하고 있음.

－ SPS Contact Point는 위에서 언급한 SPS 협정에서 규정한 역할외에도 뉴스레터 발송을 통하여 SPS와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들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5-7> 호주 농업수자원부 뉴스레터 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Subscription Centre

Support Home My Account

Advanced Search
Search

Find details on our Newsletters and Subscriptions

Subscriptions

Newsletter List (Select from below)

- ACACA
- Animal Health Scanning Report
- ATMAC
- Great Artesian Basin Coordinating Cttee
- Biosecurity Matters
- Biosecurity Legislation
- Bringing Cats and Dogs to Australia
- Drought & Rural Assistance Program
- Emergency Animal Diseases Bulletin
- Import Industry Advice Notices
-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 Locust Bulletin
- Agricultural Trade Matters
- Thailand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s
- Vetcommuniqué
- WTO Ag-related TBT Notifications
- WTO SPS Notifications
- AAV email list
- Maritime Vessel Pathway
- Water Matters
- Agvet chemicals regulation reform update
- Live Animal Export Advisory Notices
- Plant Exports-Registered Establishments
- Plant Exports - Grain
- Plant Exports - Hay and Straw
- Plant Exports - Horticulture
- Plant Exports- Fresh Fruit and Vegetable

자료 :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www.agriculture.gov.au)

다. 요약 및 시사점

- 호주는 농업수자원부내 7개의 SPS 관련부서와 BIRA 연락관, 과학자문단(SAG), 감사관(IGB)이 협력하여 SPS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연락관 제도(Liaison Officer)를 활용하여 주무부처와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을 돕고 BIRA 관련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
 -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점이 인상적임.
- 정부간 생물보안 업무협약(IGAB)에 기반한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를 설립하여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물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SPS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 특정 부처에 업무가 집중되면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갖고 있는 특성을 즉각 반영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국가 생물보안위원회(NBC) 및 산업자문위원회(ICC)와 같은 허브(Hub)조직을 설립하여 지역별, 기관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였음.
- SPS 관련 문의처와 통보당국의 기능을 통합한 'SPS Contact Point'를 농업수자원부 통상국에 설치하여, 기능 분산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 비효율성 줄이고 관련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통능력을 강화하였음.
- 우리나라도 호주와 같이 각 부처별로 분리된 SPS 업무 권한과 기능을 동식물 위생 관련 SPS 조치가 집중 관리되는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집중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예산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함.
 - 비상 상황시 우리나라에서도 학계, 민간 전문가 집단 및 농민들을 포함한 민간 조사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연락관 제도를 활용하여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농식품부를 주축으로한 국가 생물보안 위원회(NBC)와 같은 범부처 허브(HUB) 조직을 설립하여, 부처간 SPS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능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임.

3. 뉴질랜드

- 뉴질랜드 SPS 업무는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에 근거하여 농림부(MAF)와 동식물 검역본부(Biosecurity NZ)에서 담당하다가 두 기관이 2012년에 1차산업부(MPI :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로 통폐합되면서 1차산업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2003년 8월에 생물보안 업무 소관부처를 농림부(MAF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2004년에는 동식물 검역본부(Biosecurity NZ)를 신설하여 농림부의 생물보안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각 산업분야와 협력하여 생물보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검역본부 설립 후 농림부(MAF)는 생물보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생물보안 관련 민감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 후 보고, 생물보안 시스템 운영방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였음.
- 2012년에 동식물 검역본부와 농림부가 1차산업부(MPI)로 통폐합되면서 생물보안법 및 생물보안 업무 소관 부처가 1차산업부로 변경되었음. 1차산업부는 항구 등 국경지역에 검사관을 파견하여 생물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차산업부(MPI)의 생물보안 업무 지원 기관으로는 고위 공무원 자문단(Senior officer team), 생물보안 자문위원회(BMAC : Biosecurity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가 있음.
- 이하에서는 생물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차산업부(MPI), 생물보안 자문위원회, 고위 공무원 자문단의 설립근거와 목적, 담당업무 및 협력체계 등을 소개하고, SPS 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뉴질랜드의 농산물 위생 검역 추진현황과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가. 1차산업부(MPI)

□ 2012년에 농림부(MAF)와 동식물 검역본부(Biosecurity NZ)가 1차산업부(MPI)로 통합되면서 1차산업부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소관부처로 지정되었음. 1차산업부는 총6국으로 이뤄져 있음.

○ 1차산업부는 방제, 검역에 관한 조직과 법령, 정책에 관한 조직으로 나뉘짐. 이행조치국과 규제지원국에서 방제와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부서에서는 법령과 정책 입안을 담당하고 있음.

<표5-3>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 부서 및 주요업무(2016년 11월 기준)

부서	주요 업무	조직 분류
이행조치국 (Operations)	- 뉴질랜드 국경 또는 무역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예방 및 대응 - 동식물 검역기관 기획, 조정, 운영관리 등	방제, 검역
규제지원국 (Regulations and Assurance)	- 수출입 국내기준 설정 - 생물보안시스템 구조 개발 - 기타 1차산업 관련 규제 담당 (식품안전, 동물복지 및 어류자원 관리 등)	
운영지원국 (Corporate Services Branch)	- 1차산업부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임. 재정, 인사, 회계 등 담당.	법령, 정책
차관실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 각 부서별 업무 전략과 계획수립, 위험평가, 내부 감사, 법적사안 검토, 정보공개업무 등	
1차산업 협력국 (Sector Partnerships and Programs)	- 1차산업개발 및 협력프로그램 기획 - 마오리족과의 1차산업 협력 및 1차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오리족과의 분쟁해결지원 등	
정책통상국 (Trade and Policy)	- 1차산업 관련 정책 개발, 분석, 자문 - 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무역 및 통상 활성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자원관리, 뉴질랜드 주요 산업분야의 정책적 이슈 관리 및 대응 - SPS Contact Point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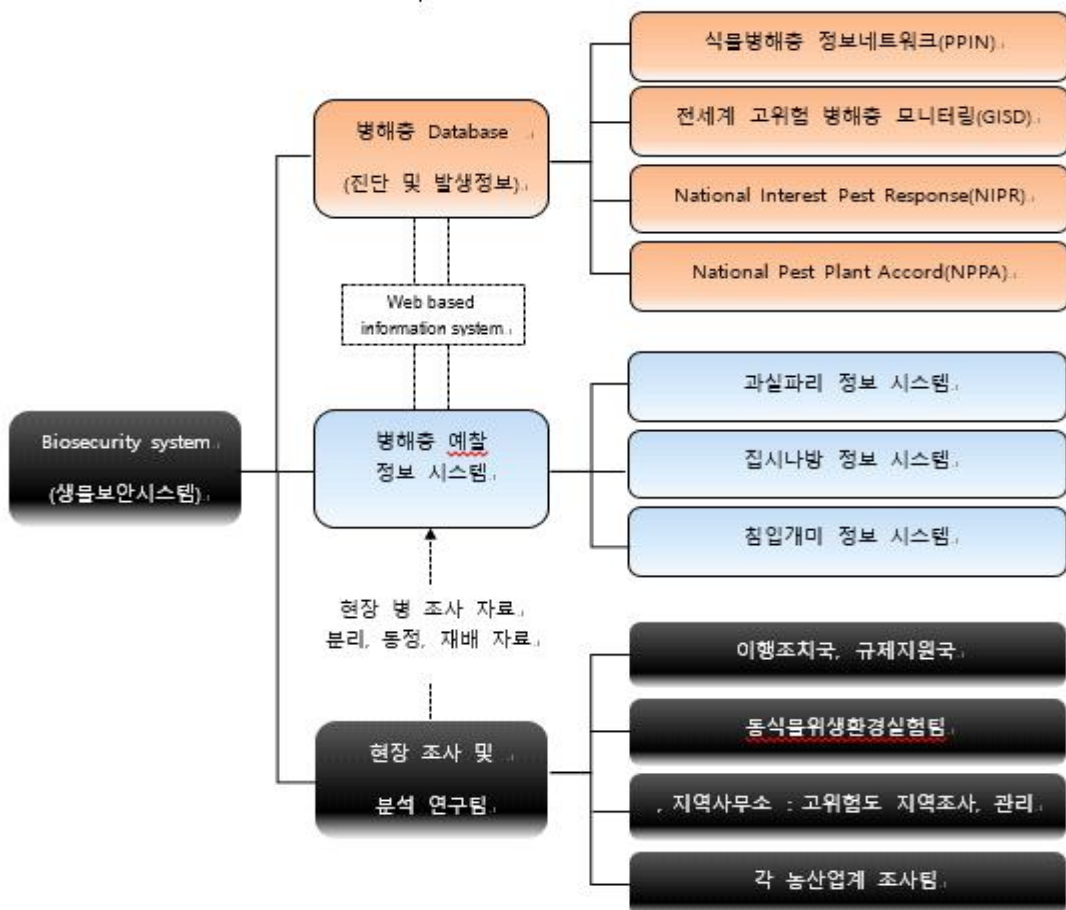
자료 : 뉴질랜드 1차산업부(www.mpi.gov.nz)

□ 1차산업부(MPI)는 WTO SPS 협정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에 의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생물보안 시스템(Biosecurity System)을 운영하면서 생물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차산업부는 뉴질랜드 농산업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유입으로부터 자국민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자 유관기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 연계하여 생물보안 시스템(Biosecurity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뉴질랜드 생물보안법에 근거한 생물보안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 되어 있음.

<그림5-8> 뉴질랜드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 체계



자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보안법에 근거한 생물보안 활동은 크게 국경간 위해요인 관리(Border Risk Management), 예방 및 대응(Readiness and Response), 병충해 관리(Pest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음.
- 국경간 위해요인 관리(Border Risk Management)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관리를 말하며 생물보안법에서는 이러한 요인 관리를 위하여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생물보안 담당기관의 원활한 병충해 예방 및 대응(Readiness and Response) 활동 수행을 위하여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강제 이동, 병충해 피해 물품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음.9)
- 뉴질랜드 국내에 병충해가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병충해 관리, 진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물보안 조사 분석 활동은 1차산업부 이행조치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그림5-9> 뉴질랜드 1차산업부 이행조치국 산하 부서 주요 기능과 업무



자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9) 수입 제품 중 유해생물이 포함·부착된 제품, 자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위험 관리(제17조 내지 제19조), 위해 제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 제품을 생물안전 통제구역 등에 유기 금지(제16A조 내지 제16C조), 생물안전 대비·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에 사유 재산의 출입, 이동 통제, 감염된 재산 파괴 등 권한 부여(제9조 내지 제11조) 특정 병해충의 박멸 관리를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병해충 관리계획 및 유해생물체의 확산 방지·관리를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경로관리계획 수립·이행(제79조 내지 제100H조), 병해충 관리를 위한 지역의회의 소규모 관리 프로그램 선언·보장(제100V조 내지 제100W조).

- 대외무역규모 확대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생물보안 시스템과 생물보안법 규정만으로는 병충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최근 생물보안법 일부 개정을 통한 ‘정부-산업계 생물보안 예방 및 대응 협정 (GIA : Government Industry Agreement for Biosecurity Readiness and Response)’이 체결되었음.
- ‘정부-산업계 생물보안 예방 및 대응 협정(GIA)’은 병충해 예방 및 대응, 병충해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협정임.
- 주요 내용은 생물보안 업무 수행 여부와 범위, 책임소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산업맞춤형 생물보안 시스템 개발,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생물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수행할 때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업무상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임.
- 협정이 실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에 발생한 퀸즈랜드(Queensland) 초파리 사건이 있음.¹⁰⁾

<그림5-10> 퀸즈랜드 초파리 및 초파리 발생 지역(Auckland Grey Lynn)



자료 : 뉴질랜드 1차산업부(www.mpi.gov.nz)

10) 2015년 2월, 호주 퀸즈랜드에서 서식하는 초파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 근교 그레이 린 (Grey Lynn)지역에서 발견되었음. 1차산업부와 원예사업계는 GIA 협정에 의거하여 반경 1.5km내 모든 지역의 청과물 이동을 제한하고, 과수나무에 초파리 트랩을 설치하여 초파리를 박멸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초파리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였음. 그 결과 동년 3월에 모든 초파리를 박멸할 수 있었으며, 12월에 완전 박멸을 선포하였음.

- GIA 협정은 1차산업부와 1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 가입 여부는 자율적임.
- GIA 가입 단체로는 Kiwifruit Vine health, Pipfruit New Zealand, New Zealand Pork, New Zealand Equine Health Association, Onions New Zealand, New Zealand Forest Owners Association, New Zealand Avocado Grower's Association, New Zealand Citrus Growers Inc, NZ KiwiBerry Growers Inc, TomatoesNZ Inc가 있음.

<그림5-11> GIA 협정 가입 홈페이지



자료 : 뉴질랜드 1차산업부(www.mpi.gov.nz)

2) 생물보안 자문 위원회(BMAC : Biosecurity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 생물보안 자문 위원회(BMAC)는 2005년에 설립된 기구로 1차산업부(MPI)의 생물보안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자문위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지방정부 고위직 공무원,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1차산업부 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장관의 재량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음. 장관은 자문위원 해임 시 그 사유를 반드시 알릴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자문위원이 사임할 경우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 안건을 지정함.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1차산업부와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1차산업부 장관에게 위원회 활동을 보고함.
- 부위원장은 유사시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문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함. 원장이 1차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가질 때 동석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문위원은 특정산업분야나 특정이익을 고려하여 자문을 해서는 안되고, 특정 생물보안 사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다른 위원과 주무 부처의 감수를 받아야 함. 자문에 대한 논쟁 소지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 개최는 1차산업부 장관과 자문위원 동의하에 12개월 단위로 작성된 연간 업무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생물보안 관련 긴급사안 발생 시 장관 재량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위원회 자문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생물보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물보안 시스템의 효율성과 역량,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정책과 규제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생물보안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생물보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전망함. 또한 1차산업 전반에 걸친 보건 이슈, 사회문화적 이익, 지속가능한 성장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3) 고위 공무원 지도자문단(Senior Leadership Team)

- 고위 공무원 지도자문단은 1차산업부(MPI)의 업무 추진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고 기구로,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고위 공무원 자문단 중 생물보안(Biosecurity)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인원은 총 3명으로, 차관실 최고운영관리관(Chief Operation Officer), 규제지원국의 규제정책관(Deputy Director General - Regulation and Assurance), 정책통상국의 대중통상정책관(Deputy Director General - China relations)임.

- 최근 중국의 무역 규모와 농산물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통상 전담팀을 별도로 두고 SPS를 비롯한 각종 통상 사안에 대응하고 있음.

나. SPS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현황

□ WTO SPS 협정에는 문의처(NEP : National Enquiry Point)와 통보당국(NNA :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을 개설하여 SPS 조치 관련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WTO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Transparency)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통보당국(NNA)와 문의처(NEP)를 통합한 SPS Contact Point 운영해왔음. 과거 농림부(MAF)에서 Contact Point를 운영하다가 2012년에 농림부가 1차산업부로 통합되면서 1차산업부(MPI) 정책통상국 업무로 편입되었음.

<그림5-12> 뉴질랜드 1차산업부 SPS Contact Point 안내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PI) of New Zealand.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for Home, Menu, Login, and Contac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Relevant organisations and agreements" and explains that many of New Zea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are trade-based. It specifically mentions th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and provides the SPS Contact Point email address: NewZealandSPS@mpi.govt.nz. A "Find out more" section lists several downloadable documents: "The SPS Agreement" (PDF, 117 KB), "The WTO's website", "SPS Contact Point procedural manual" (PDF, 1.9 MB), "Guide to writing SPS notifications (includes notification templates)" (DOCX, 5 MB), and "Joint MPI/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ublication – Balance in Trade" (PDF, 665 KB).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trade categories such as "World Trade Organization notifications",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Consult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General importing requirements", "Import health standards", "Food imports", "Fees & charges – general", "Agricultural compounds & veterinary medicines", and "Biological products & organisms".

자료 : 뉴질랜드 1차산업부(www.mpi.govt.nz)

다. 요약 및 시사점

- 뉴질랜드는 1차산업부내 이행조치국을 주축으로 한 6개부서와 고위 공무원 지도자문단(SLT), 생물보안 자문 위원회(BMAC)를 활용하여 생물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물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처럼 검역업무를 부처별로 분산하여 수행하지 않고 1차산업부에서 총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 하지만 무역환경 변화와 기술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호주와 유사한 생물보안 자문위원회(BMAC) 및 고위 공무원 지도자문단(SLT)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지역별, 기관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였음. 또한 각 농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와의 업무 협약(GIA)을 체결하여 검역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 SPS 관련 문의처와 통보당국의 기능을 통합한 'SPS Contact Point'를 1차 산업부 정책통상국에 설치하여, 기능 분산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 비효율성 줄이고 관련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같이 각 부처별로 분리된 SPS 업무 권한과 기능을 동식물 위생 관련 SPS 조치가 집중 관리되는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집중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예산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함.
- 농식품부를 주축으로한 생물보안 자문위원회(BMAC)와 고위 공무원 지도자문단(SLT) 같은 조직을 설립, 활성화하여, 부처간 SPS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할 것임.
- 또한 각 농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와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역 업무에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할 것임.

4. EU

- EU는 1990년대 중·후반 이래 ‘광우병 사태’(1996년), ‘다이옥신 사태’(1999년) 등의 굵직한 농식품 관련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SPS 등 농식품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틀을 거의 새로 짜다시피 하는 개혁을 지속 해왔음.
- EU 집행위원회가 2000년에 발간한 ‘식품안전백서’의 진단과 처방에 기반 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 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독립기구인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옴.
- 이에 본 소절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정비되거나 탄생한 조직, 혹은 시스템인 ① 보건·식품안전총국(Health and Food Safety Directorate. General, DG Santé), ②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 ③ 유럽식품안전청, ④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긴급 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등을 중심으로 SPS와 관련된 EU 시스템의 특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보건·식품안전총국

- EU의 SPS 관련 조치는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각 기관이나 회원국이 현장에서 이를 추진·관리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 보건·식품안전총국은 집행위원회 내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임.
- 농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표시제 등에 관한 법령을 비롯하여, 수입 농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규제, 동식물의 질병 관련 업무, 사육동물의 취급에 관한 법령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법령 체계를 관할하고 있음.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의 집행 및 개선, 회원국이나 제3국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의 감시, 국제기구나 식품거래 파트너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후술할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긴급 경보시스템' 역시 여기서 운영하며, WTO/SPS의 투명성 관련 문의처(NEP)와 통보처(NNA)도 이 곳임.
- 특히 보건·식품안전총국에서 운영하는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에 등록하면 동물 검역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인증 사항 등 SPS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관련정보에 대한 통지(WTO/SPS 관련 통보문 포함)를 하루 두 번씩 제공하는데, 이러한 WTO/SPS 통보문은 자체 시스템 및 DB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동으로 회람되므로 적시에 산업계 의견 수렴이 가능함.
- 이밖에도 역외 국가로 수출되거나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사항 역시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가 공지되는 시점마다 제공하고 있음.

<그림5-13> EU TRACES 홈페이지의 뉴스레터(2016.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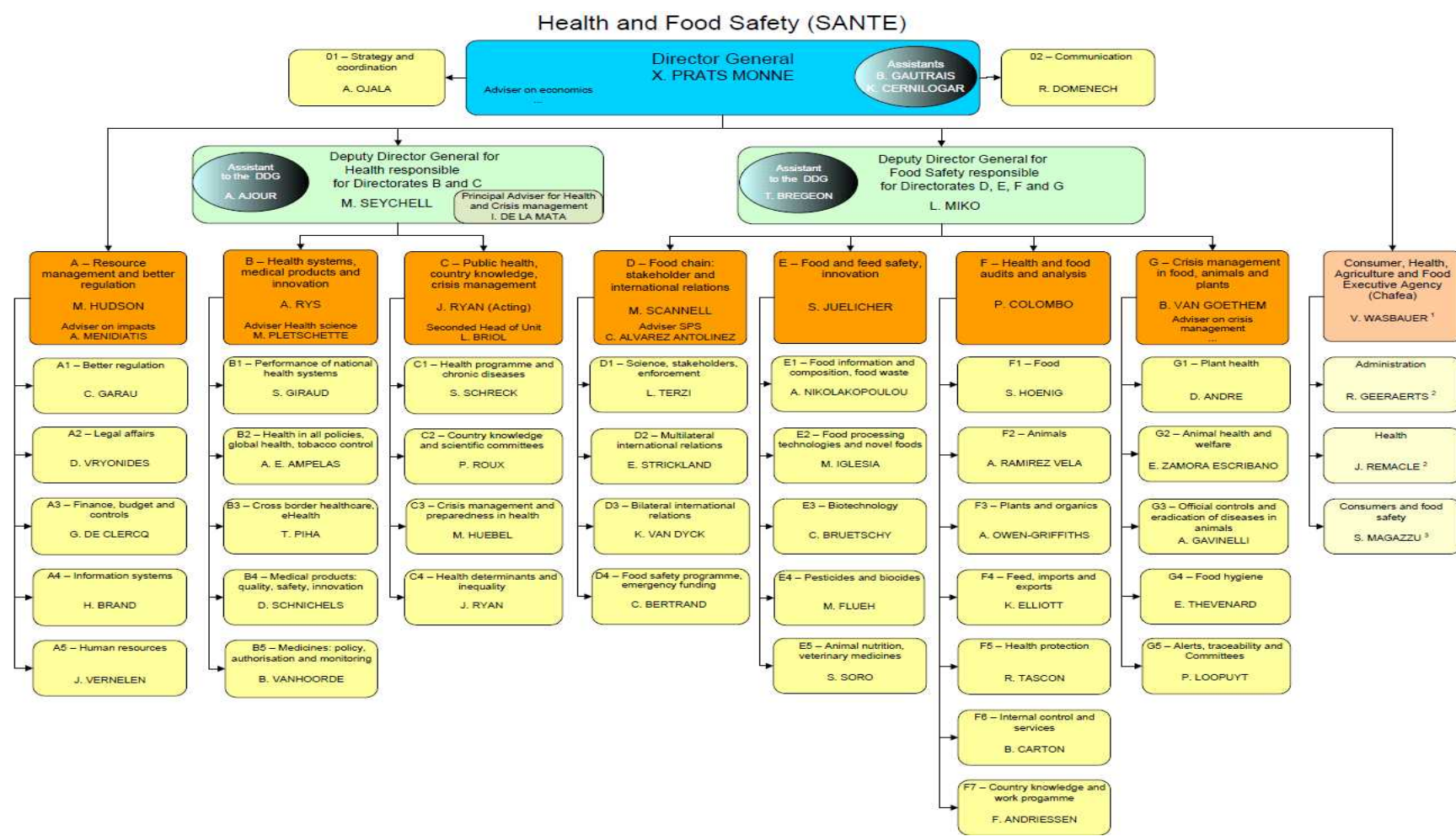
TRACES (21-06-2016)

TRACES Newsletter - Issue n°1/2016

The image shows the first issue of the TRACES newsletter from June 2016. It features the European Commission logo and the title 'NEWSLETTER'.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n 'Editorial' by Dr. Didier Carton, a 'What is TRACES?' section, and a list of 'In this edition' items. The 'In this edition' list includes 'News from TRA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acts & figures', 'Coming up', 'Join TRACES', and 'Contact'. There are also buttons for 'Subscribe', 'Previous editions', and 'Send to a friend'.

- 중국에는 두 명의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으며, 이 중 '식품안전(Food safety)'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 명이 SPS 관련 4개 부서를 담당함.
- 가장 직접적으로는 '건강 및 식품의 검사와 분석(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부서 및 '식품, 동물 및 식물 부문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in food, animals and plants)' 부서가 SPS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도 '식품체인: 관련 주체 및 국제관계(Food chain: stakehol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식품 및 사료의 안전, 혁신(Food and feed safety, innovation)' 부서 등이 분야별로 SP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그림-2 참조).
 - 이 중 '건강 및 식품의 검사와 분석' 부서는 과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던 식품수의국이 보건·식품안전총국의 내부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생겼음.
- 특히 SPS 관련 각 부서가 대부분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조직되어 있음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식품, 동물 및 식물 부문의 위기관리' 부서는 '식물 건강', '동물 건강 및 복지'와 더불어 '식품 위생(Food hygiene)'을 한 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및 사료의 안전, 혁신' 부서 역시 '식품정보'나 '식품 가공' 등의 이슈와 더불어 '동물영양, 수의약품(Animal nutrition, veterinary medicines) 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세부분야별 전문성이 감안되고 존중되는 한편으로, 이들 분야 각 업무 간의 상호연관성이나 관련 문제의 중첩성, 전이성 등이 고려되고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됨.
- 국제관계 및 이해주체들과 관련된 이슈를 한 부서(식품체인: 관련 주체 및 국제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이슈를 '푸드 체인'의 일관된 관점으로 보는 구조 역시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의 조직적 특성임.
 - 즉, '푸드 체인'의 틀에서 가치사슬 차원으로는 생산-가공-소비 측면을 아우를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수출입 농식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

<그림5-14>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 조직도(2016년 8월 현재)



나. 식품수의국

- 상술한 바와 같이 보건·식품안전총국의 한 부서로 재편된 ‘식품수의국’은 EU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역할과 EU 역내의 식품안전,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보건 관련 규제 등의 준수를 점검하는 기능을 함.
- 2014년에 발표되어 올해까지 적용되고 있는 업무계획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식품, 식품첨가물, 유기농업 및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5-15> EU 식품수의국의 최근 3개년 업무계획

구분	2014	2015	2016
횡적인 우선순위 (cross-cutting)	위기상황준비		
	HACCP		
	실험실		
	유기농업/지리적 표시		
	양식		
	합성제품		
			수입관리 조화
			기금류
기타 횡적인 공식 활동	식품 첨가물		
	도축 후 이력추적		
일반적인 후속조치	일반적인 후속 검사		
	국가 검사 시스템		
동물성식품/포유류	위생 패키지 : 식육/유		
		젤라틴 & MSM	
	혈액 생산품		
	분쇄 지방		
동물성식품/조류 및 어류	위생 패키지 : 가금육 및 관련 제품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국가 관리 프로그램		
	위생 패키지 : 조개류		
	위생 패키지 : 수산 생산품		
식물성 식품	마케팅과 농약 사용;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	
	농약 : 지속적인 사용 지침 하에서의 국가 액션 플랜		

자료: 판노성(2014)

- 즉, 이들 업무영역에 대하여 회원국의 관리계획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농식품위생 관련 이슈 발생 시 통합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책에는 직원 훈련계획, 수입식품과 사료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 수립 등이 모두 포함됨.
- 2000년 '식품안전백서'의 발간 및 보건·식품안전총국 내부로의 조직 재편 이후, 단편적인 시설 검사 수준을 넘어 국가식품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검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었음.
- 농식품안전 담당자 훈련의 경우, 회원국 관련 기관의 역할을 독려할 뿐 아니라 EU 식품수의국 차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는 회원국의 담당관들이 국경에서의 농식품 안전검사, 동물원성 감염통제 및 미생물기준 적용, 사료 법령, 식물 건강 통제 등 EU의 최신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일관된 형태로 농식품안전 관련 제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삼음.
- 특히 이러한 훈련은 EU가 아닌 비회원국 담당관들 역시도 교육 대상으로 함. 이를 통해 EU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리 수준이 제고되면 EU 검역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음은 물론, 비회원국이 EU의 법규를 잘 몰라서 생기는 다양한 무역장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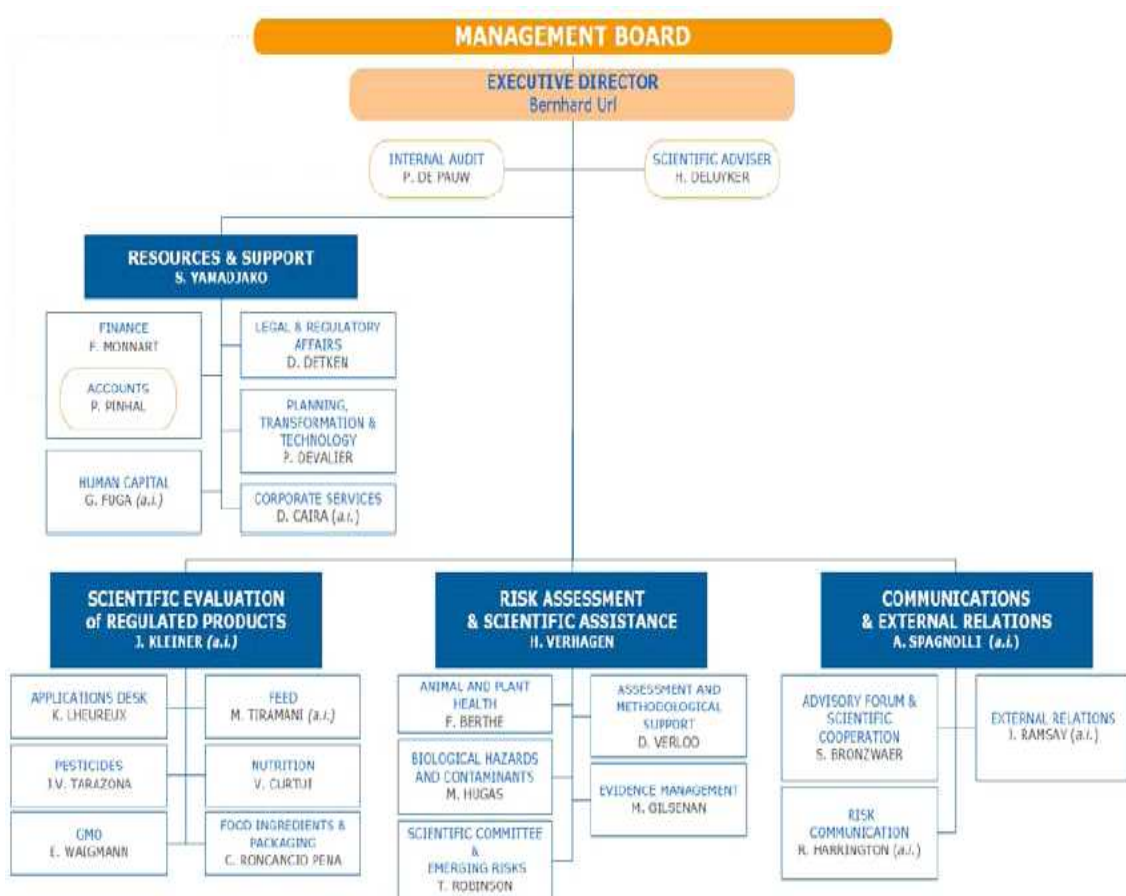
다. 유럽식품안전청

-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백서에 근거를 두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하여 2002년 2월에 설립된 기관임.
- 농식품안전 문제에 관하여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scientific body)로 설립된 만큼, 예산은 EU의 지원을 받지만 집행 위원회나 유럽의회 및 각 회원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됨.
- 유럽식품안전청이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를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집행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위해요인 관리(risk management)를 책임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11)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2016)에 따르면, 2006년~2008년 사이 약 8,000명의 담당관들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 중 약 1/3이 비회원국 대상이었다고 함. 또한 2009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2009년 한해에만도 35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1,100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과학적 평가 및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 회원국 내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 등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음.
 - 또한 유럽의회나 회원국들의 전문적인 질의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대중들에게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
- 특히 본 기관의 조직도를 보면 과학적 방법론의 사용, 위해요인 평가, 커뮤니케이션 등에 기울이는 노력이 잘 드러남.
- 총 3개의 사업부서가 있으며, 이들 부서는 각각 규제제품의 과학적 평가 (Scientific Evaluation of Regulated Products), 위해요인 평가 및 과학적 지원(Risk assessment & Scientific Assistance),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대외관계(Communications & External Relations)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 참조).

<그림5-16>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도



자료: EU EFSA Annual Report 2015

-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대외관계’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문포럼은 관련된 전문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미디어 전문가 등도 참여하여 유럽식품안전청의 업무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는 한편으로 대중에게로의 설명 방식까지 논의 되는 체계인 것으로 파악됨.

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긴급 경보시스템

- 본 시스템은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의해 운영되며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EU 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 및 사료 전반에 대하여 위해요인 발생 시 상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1992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2002년 EU 규정인 Regulation(EC) 178/2002에 의해 확대·강화됨.
- 본 시스템에 의하여 위해요인 발생 시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통지를 발령함.
 - －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 농식품이나 사료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 즉시 조치가 필요할 때 발령됨. 일차적으로 시장 회수 등의 조치를 시작한 회원국이 발령하여 곧 이어 각 회원국간 정보가 공유됨.
 - －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 문제 제품의 유통범위가 협소하거나, 위해의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때 발령됨.
 - － 통관거부(Border Rejection) : EU 회원국의 국경 통관 검사 중 위해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발령됨. 이는 같은 제품에 대한 다른 국경에서의 통제를 강화함은 물론, 이러한 물품이 다시 다른 국경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최신의 발령 내용은 물론 지금까지 발령한 통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그림-5 참조).
 - － 발령일, 발령국, 경보 유형, 제품 유형, 원산지 등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음. 다만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예: 회사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그림5-17> EU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경보시스템 관련 포털 사이트

Classification	Date of case	Reference	Notifying country	Subject	Product Category	Type	Risk decision
1. alert	26/08/2016	2016.1188	Switzerland	Listeria monocytogenes (1100 CFU/g) in gorgonzola cheese from Italy	milk and milk products	food	serious
2. alert	26/08/2016	2016.1184	Germany	too high content of gluten (137 mg/kg - ppm) in organic gluten-free rice rings with choco glazing from Germany	cereals and bakery products	food	serious
3. information for attention	26/08/2016	2016.1181	France	Listeria monocytogenes (3200 CFU/g) in gorgonzola from Italy	milk and milk products	food	serious
4. alert	26/08/2016	2016.1183	France	undeclared sulphite (27 mg/kg - ppm) in organic mustard from France	soups, broths, sauces and condiments	food	serious
5. alert	26/08/2016	2016.1189	Italy	undeclared soya in breadstik grissini from Italy	cereals and bakery products	food	serious

마. 요약 및 시사점

- EU SPS 관련 조치는 역내에서 1990년대 중·후반 경에 발생하였던 농식품 관련 주요 사건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철저히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 EU가 사회적인 큰 파장 이후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이 구축한 SPS 관련 시스템 및 조직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교훈을 찾아내 EU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우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 위에, 푸드 체인의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점을 들 수 있음.
- 가령 ‘사료’를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이 다시 사람이 먹는 ‘식품’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 및 과정에 따른 생산품들의 연속성과 연관성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행정이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농식품의 수출·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나아가 이런 시각을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실체화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식품수의국을 중심으로 회원국/비회원국의 농식품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 사실도 인상적으로 다가옴.
- 또한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중시하며, 대내외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에 힘쓰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사실 위험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 왜냐하면 평가된 위험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와 대중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위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장의 정책 집행자나 대중이 의구심을 가지는 위해요인 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집단에 포착되어 평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이런 차원에서 유럽식품안전청의 3개 사업부서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과 대외관계' 부서란 사실과 그 산하의 자문포럼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점은 우리 역시 배워야 할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5. 중국

- 중국은 농림축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식품 안전과 동식물 검역 등의 SPS 조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화됨.
- 중국은 자국의 SPS 조치에 대해 대외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SPS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정책 개선 및 법안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SP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두 중심축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농업부(農業部)를 중심으로 중국의 시스템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 중국의 검사·검역 업무는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中華人民共和國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이 총괄하며,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함.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은 ①수출입 위생 검역, ②수출입 동식물 검역 및 인증허가, ③식품 표준 및 시험법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998년 국무원 행정기관 개혁과정에서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과 농업부 동식물 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통합하여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설립됨. 이후 2001년 4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을 통합하여 수출입상품 검사, 동식물 검역, 출입국 위생검역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이 설립됨.

-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의 부서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 검사를 책임짐.

<표5-4>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행정기관	주요 업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검사감독 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에 의거 수출입상품(동식물제품 포함) 및 그 포장, 운반도구 검사 및 관리감독 •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실시 검사검역 출입국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법정 검사 및 관리감독
	동식물 검역감독 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의거 ①출입국 및 휴대·탁송 동식물과 그 산품, 기타 검역물, ②포장운반동식물 및 그 산품, 기타 검역물의 포장운반 용기, 포장물, ③전염병지역에 온 운송도구, ④법률, 법규, 국제조약, WTO협약규정 또는 무역계약에서 검역을 실시하기로 한 기타 화물과 물품에 대한 검역 및 관리감독
	위생검역 감독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하여 출입국인원, 교통수단, 상자, 화물, 짐, 우편물 등에 대한 위생검역, 전염병모니터링, 위생감독 및 위생처리. 전염병의 유입·유출 방지
	수출입식품 안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에 의거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의 안전, 위생, 품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감독.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그 생산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업무 실시 • 수입식품(음료, 주류 포함),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 공구 및 설비 검사검역과 관리감독
지방출입국 검사검역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검사검역 직능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총 35개의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설치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수직적 관리
중국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인증인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에 설립하였으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기관 •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행정관리기관으로서 인증인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 수출입 인증인가와 수출입 안전품질 허가 및 출입국 검사검역 실험실 등록인증, 수출입 식품 위생등록등기, 섭외 검사검역, 감정과 인증기구(중의 합자, 합작기구를 포함)의 기술 능력 심사,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 등록등기의 심사와 등록 등 업무 책임
중국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기관 •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표준화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 국가표준화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제도의 초안 작성, 수정과 시행을 책임지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협조하에 WTO/TBT 협정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 책임

자료: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또한, 모든 TBT 및 SPS 관련 사안의 통보 및 질의응답 주체를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은 TBT와 SPS 관련 사안을 전문 관리하는 '국가통보상담센터(國家通報咨詢中心)'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내에 'WTO/TBT국가통보상담센터'와 'WTO/SPS 국가통보상담센터'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중국 WTO/TBT-SPS 통보상담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양 센터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수집, 통보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지역별(주로 규모가 큰 성의 경우)로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모델에 따라 전담 부처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5-18> 중국 WTO/TBT-SPS 통보상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 중국 WTO/TBT-SPS 통보상담네트워크(<http://www.tbt-sps.gov.cn/>)

나. 농업부

-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농업부(農業部)를 중심으로 SPS 관련 정책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특히 OIE 규정에 부합하게 SPS 정책을 개선하여, 2007년 OIE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함.
-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WTO 가입 이후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전략의 일환임. 중국산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과 동식물 검역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 정책과 조직 등을 정비함.
- 농업부는 2001년부터 <전국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항목 실시방안>으로 5개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를 지정하여 관리함. 또한,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 표준체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평가제도'도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지역화 정책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농업부는 OIE의 1998년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2002년 7월 <국가 전염병 비발생지역 조건> (農牧發[2002]16호)을 제정하였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08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관련 표준인 <중국국가표준 GB/T 22330.1~14-2008 제1~14 부분>을 제정하였음.
- 또한, 농업부는 2007년에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평가관리방법>,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관리 기술규범(시안)>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유사한 기관인 중국동물위생역학센터(CAHEC)에 '전국동물위생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2008년에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평가세칙(의견수렴안)>을 제정함.

<그림5-19> 중국 동물 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 현황



자료: 농업통상위원회 중국 섬서성·사천성 농업조사, NH 농협, 2013.

□ 농업부는 「동물방역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해 2010년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업무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지역화 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심축이 됨.

○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업무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은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확대, 동물전염병 방제능력 강화, 동물위생 및 축산물 품질 안전수준 향상, 동물 및 동물류 제품의 무역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업무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

◆ 1단계(2010~2014년) 목표

-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계획’의 제정 및 실시
- 전국적으로 지역, 유형, 단계, 전염병 종류를 구분하여 지역화관리 실시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및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 추진
- 조건을 구비한 성·시부터 지역화관리 추진 독려. 현행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와 각 성·시의 비발생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국가평가검수 실시. 조건을 구비한 지역과 기업을 선정하여 농장단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 시범사업 전개
-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에 대한 OIE 등 국제기구의 평가·인가 추진

◆ 2단계(2015~2019년) 목표

- 중국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의 장기적·효율적 메커니즘 완비
- 단계적으로 중장기 동물전염병 방제계획 실시 추진
-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와 각 성·시의 비발생지역 건설 경험 보급 확대. 인접한 동일 유형의 비발생지역 통합. 시범구를 성 전역으로 확대하고 점차 성을 경계로 한 비발생지역을 건설하여 최종적으로 전국 차원의 특정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 실현
- 대형 국가급 종축·종금장,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장, 용두기업 등을 농장단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건설 범위에 포함시켜 축산물의 품질안전 수준 제고

다. 시사점

-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에서는 검사·검역 업무와 TBT-SPS 관련사안의 통보 및 질의응답 업무를 총괄함.
- 농업부(農業部)는 주도적으로 SPS 관련 정책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특히, OIE 규정에 부합하게 SPS 관련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SPS 관련 검사·검역 업무와 통보 및 질의응답 업무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에서 총괄하고, 자국의 SPS 조치가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법률 정비와 중장기 로드맵 제시는 농업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처럼 SP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조직 또는 부서에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생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의 농업부 처럼, 국내 SPS 조치가 국제표준 등에 부합하게 개선되고 운영되기 위해 관련 법률, 제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원화된 중심축이 필요함.

6. 일본

- 일본 동식물 위생 검역 업무는 농림수산성(MAFF)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동물 검역부문의 동물 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National Veterinary Assay Laboratory)와, 식물 검역부문의 식물 검역소(Plant Protection Station)가 있음.
- 동물 검역의 경우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에, 식물 검역은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그 외 일본으로 들어오는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검역소는 일본 전국에 31개소가 있음.
- 그 중 수입농축산물 및 식품검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나리타 공항, 동경, 나고야, 오사카, 간사이 공항, 후쿠오카 총 6개소이며, 수입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사분석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동경과 고베 2곳임.
- 일본 내에 화물이 도착하면 FAINS 온라인 시스템을(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 통하여 수입 신고가 접수 되며, 자동 심사 후 각 검역소에 수입식품신고서 정보를 발신하게 됨. 검역소에 수입 물품 신고가 도착하면, 검역소에서 즉시 통관 품목과 추가 검사 품목을 구분함.
- 이하에서는 동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성(MAFF),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국가 수의 과학 연구소의 설립근거와 목적, 담당업무 및 협력체계 등을 소개하고, SPS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일본의 동식물 위생 검역 추진현황과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가. 담당기관

1)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 농림수산성(MAFF)은 일본 농림수산성설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1978년 7월 5일에 설치되었으며,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23,337명임.

- 소관업무는 안정적인 농식품공급, 농림수산업 발전, 농림어업 종사자 후생 증진, 농산어촌 개발 및 진흥, 산림생산력 증진 및 보호,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임.
- 주요 간부는 대신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2인, 사무차관 1인, 심의관 1인이며, 전체 조직은 1관방 6부 5국 63과로 구성되어 있음. 특별기관으로 농림물자규격조사회, 농림수산기술회의,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가 있음.

<표5-5> 일본 농림수산성(MAFF) 부서 및 주요업무

부서	주요 업무
대신관방	- 농림수산성 운영 및 예산 업무 수행
- 총무과, 정책과, 비서관, 문서과, 예산과, 경리과, 후생과, 지방과, 평가개선과, 식료 안전보장과, 환경정책과	
국제부	- 세계 농업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 - 국제농업정책 및 농업통상 사안 대응 - 해외투자 관련 사안 대응
-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검사부	- 부처 내부 감사 및 조정 업무 수행
- 조정과, 검사과	
소비안전국	- 농축산물 및 식품 위생 검역 업무 수행 - 식품 안전 관련 업무 수행 - 농식품 표시규격 관리 및 소비정책 개발 등
- 총무과, 표시규격과, 농산안전관리과, 소비·안전정책과, 축·수산안전관리과, 식물방역과, 동물위생과	
식료산업국	- 농식품 관련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 농산업과 비농업계열간의 연계정책 개발 - 식품도소매 정책 개발 및 집행 등
- 총무과, 기획과, 신사업창출과, 산업연계과, 바이오매스순환자원과, 식품소매서비스과, 식품제조도매과	
생산국	- 농가 생산성 관리 및 농산물 생산 현황 파악 등
- 총무과	
농산부	- 농산물 생산, 유통, 수출입 관련 업무 수행 - 농촌지도 및 농기술 보급 등 수행
- 농산기획과, 곡물과, 무역업무과, 원예작물과, 지역작물과, 기술보급과, 농업환경대책과	
축산부	- 축산업 진흥 정책 개발 및 축산업 애로사항 해결 - 경마관련 사업 수행 등
- 축산기획과, 축산진흥과, 유제품과, 식육계란과, 경마감독과	
경영국	- 농지정책 및 농가경영체 관리 - 협동조합 및 농가 지원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 총무과, 보험과, 여성과, 농지정책과, 경영정책과, 협동조직과, 금융조정과	
농촌진흥국	- 농촌 개발 및 농촌 진흥을 위한 민원 해결 - 농촌개발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등
- 총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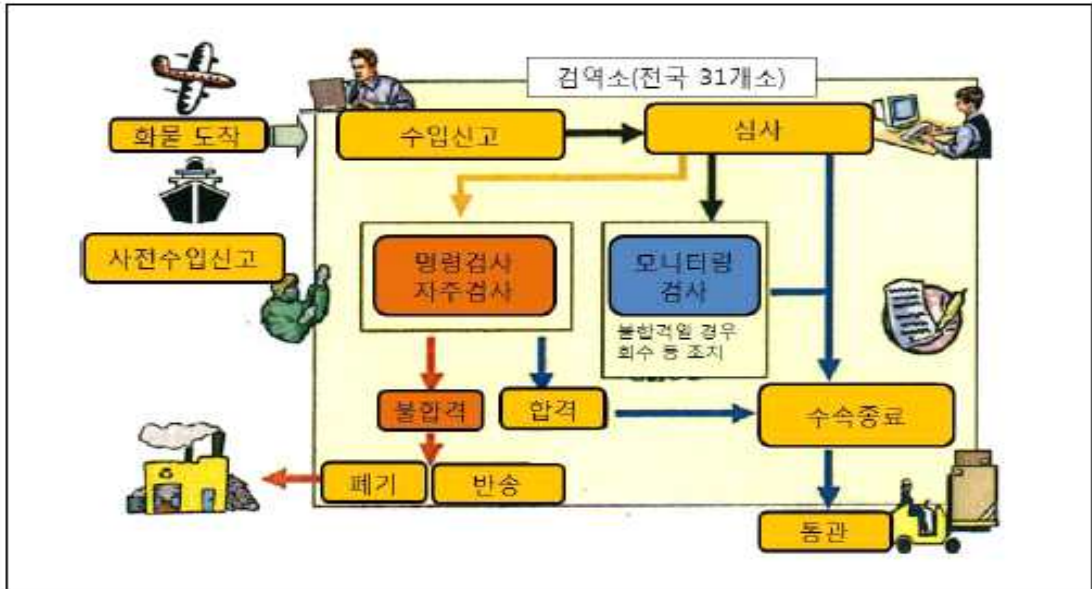
부 서	주요 업무
농촌정책부 - 농촌계획과, 도농교류과, 중산간지역진흥과,, 농촌환경과	- 농촌개발정책 개발 및 도입 - 농촌 환경 및 도농 교류 사업 기획 및 집행 등
정비부 - 설계과, 토지개발기획과, 방재과, 수자원과, 농지자원과	- 수자원 및 농토목 관련 업무 집행(저수지 등) - 농가에 재난 발생 시 지원 및 대응 등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www.maff.go.jp)

□ 농림수산업성(MAFF)은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 및 전국 각지에 설치된 31개의 검역소를 활용하여 동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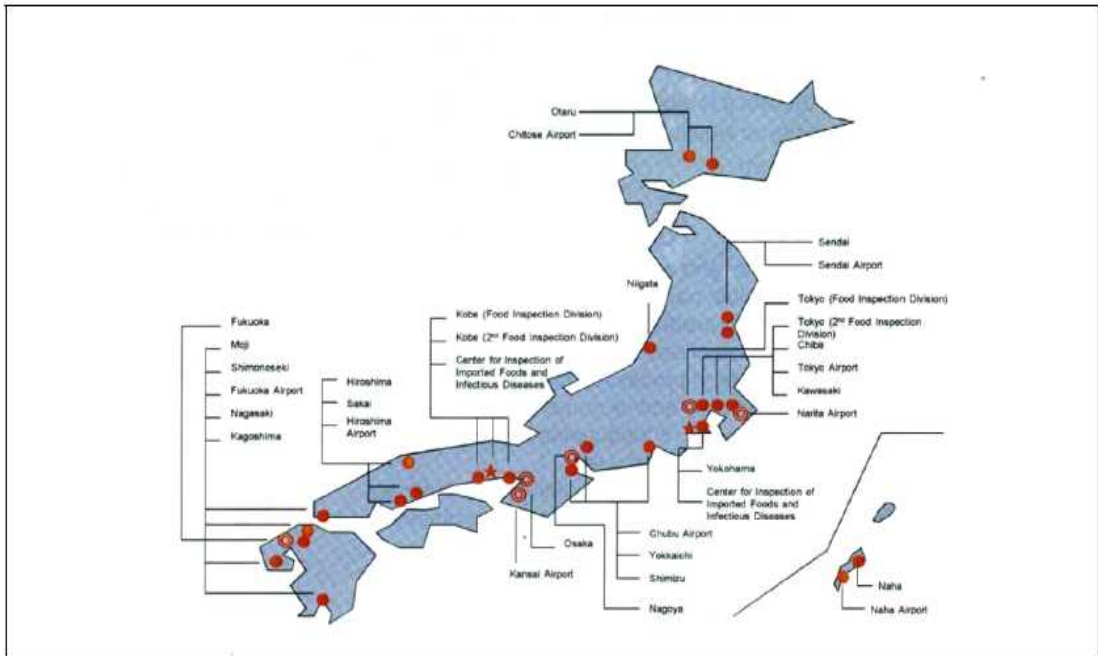
- WTO SPS 협정과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과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에 기초하여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성은 일본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위생 검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외국산 농축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로부터 자국민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있음.
 - 그 외 일본으로 들어오는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검역소는 일본 전국에 31개소가 있으며, 그중 수입농축산물 및 식품검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나리타 공항, 동경, 나고야, 오사카, 간사이 공항, 후쿠오카 총 6개소이며, 수입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사분석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동경과 고베 2곳임.
 - 일본 내에 화물이 도착하면 FAINS 온라인 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을 통하여 수입 신고가 접수되며, 자동 심사 후 각 검역소에 수입식품신고서 정보를 발신하게 됨. 검역소에 수입 물품 신고가 도착하면, 검역소에서 즉시 통관 품목과 추가 검사 품목을 구분함.
 - 별도 검사가 필요 없는 품목은 즉시 통관되며, 명령검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샘플 채취 후 검역소의 검역센터 및 민간 지정 검사 센터로 보내져 검사를 실시함. 검사 후 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수속이 종료되어 통관이 이뤄지며, 불합격의 경우 폐기나 반송절차가 실시됨.

<그림5-20>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검역 체계 일반 절차도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그림5-21>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수입 신고 처리 검역소 현황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동식물 검역 활동은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 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National Veterinary Assay Laboratory)와, 식물 검역소(Plant Protection Station)에서 이뤄지고 있음.

2) 동물 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는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에 근거하여 동물 검역소를 주축으로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음.

□ 동물 검역소는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소관으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전국 31개 지역 검역소 중 요코하마 본부를 필두로 16개 공항, 13개 항구에 설치되어 있음(붙임 1 참조).

○ 동물 검역 업무 일반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농림수산성에서 동물위생과 공무원¹²⁾에게 31개 검역소에서 검역을 시행한 수입 물품중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수출 국가의 통상 부처에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지해줘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 일본 정부의 문의를 접수한 수출 국가는 해당사안과 관련된 질의사항 및 세부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본정부에 제출하면 됨. 이 때, 공문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일본 동물 검역 담당 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보충해줄 것을 요청해야함.

— 공문이 완성되면 일본측 담당공무원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공문 발송 국가에 보내주고 대상국가가 어딘지 공개 해야함.

— 일본측 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금지 조치 대상 물건을 동물 검역소 및 수의 과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금지 조치 물품과 관련하여 위해분석 시스템¹³⁾을 통한 위해요인 평가 및 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해야 하며, 위해요인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위해요인 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위해요인 평가실(The Risk assessment

12) '동물 보건 담당 공무원'은 농림수산성 내 동물검역소, 동물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함.

13) 위해분석 시스템은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위해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위해평가**는 과학적인 지식 및 견해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위해관리**는 위해평가에 근거하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지도를 실시하는 업무를 일컬음. **위해커뮤니케이션**은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의 모든 과정 중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연구자, 기타 관계자 간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말함.

office)14)에서 수행하며, 위해요인 평가실에서 위해요인 평가15)가 완료되면 위해요인 평가 결과 요약본을 해당 국가에 발송하고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해야함.

- 위해요인 평가에 근거하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지도는 농림수산성 해당 부처에서 직접 실시 하며,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수행 중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연구자, 기타 관계자간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 업무는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이 같이 수행함.
- 위해요인 평가 결과 대상 물품이 국내 반입에 적합할 경우 대상 물품의 수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중 수입에 필요한 조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일본측 공무원은 동물 보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지하고 관련 조건을 즉시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림5-22> 일본 농축산물 및 식품 위해분석 시스템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r)

14) 위해요인 평가실은 위해분석 시스템 중 위해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위해요인 평가 기획 및 조정, 위해요인 평가결과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결과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식품안전위원회에 위해요인 평가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하고 있음. 위해평가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6년에 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본 시스템에는 임시 표준, 일률적인 표준, 금지 물질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여기서 임시로 정한 표준과 일률적인 표준은 SPS협정의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와 과학적 증거에 따라 제정한 것이 아님.

일본은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 잔류 물질을 원칙적으로 0.01ppm을 기준으로 규제함. 미국, EU 등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잔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함. EU의 경우 안전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0.001ppm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농식품 유통이 금지되고, 뉴질랜드 및 독일은 0.1ppm, 미국의 경우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운영상 0.01-0.1ppm이 적용되고 있음. 「합리적, 합법적 수입관리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98p.

15) 위해요인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특정 물품 수입시 일본 국내 동물 위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때 (when the acceptance may cause a considerable impact on animal health situations in Japan, e.g. application of new concepts on animal health), 2단계는 특정 물품 수입이 일본 국내 동물 보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때(when the acceptance may cause a moderate impact on animal health situations in Japan, e.g. application of existing systems, 3단계는 특정 물품 수입이 일본 국내 동물 보건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때(when the acceptance may cause an insignificant impact on animal health situations in Japan)로 분류됨.

3) 식물 검역소(Plant Protection Station 또는 Plant Quarantine Office)

□ 식물 검역은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식물 검역소를 주축으로 31개 지역의 검역소와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음. 식물 검역소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및 기타 식물에 대한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성 산하 기관임.

○ 메이지 유신 시대에 해외에서 수입된 농산물에서 발생하면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 생산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1914년에 식물방역법(Plant Quarantine Law)가 최초로 제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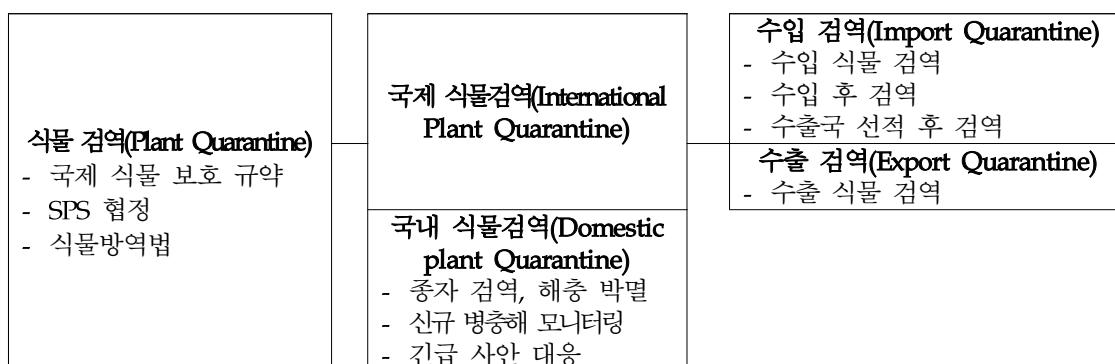
－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성 내 식물방역과에서 식물검역소가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중이며, 식물 검역 서비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로부터 일본 농가를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식물 검역시스템은 국내(Domestic), 국외(Internation) 식물 검역으로 나누며 국외 식물검역은 수입검역(Import Quarantine)과 수출검역(Export Quarantine)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물 검역시스템은 국제 식물 보호 규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과 WTO의 SPS 협정문, 일본 국내법인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Law)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국내 식물 검역 업무는 주로 종자 검역, 농산물 병충해 분석 및 박멸, 외국에서 발생한 병충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하여 사전 예방, 긴급 사안발생 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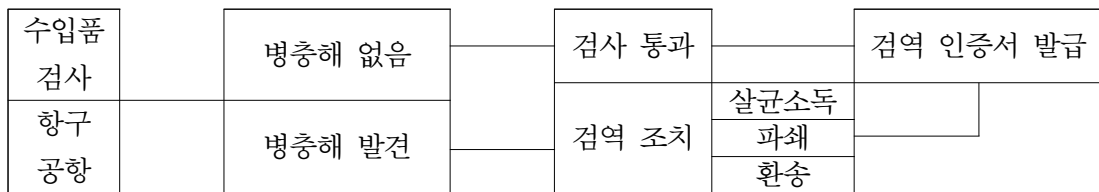
<그림5-23> 일본 농산물 및 식물 검역 시스템 분류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www.pps.go.jp)

- 일본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또는 식물은 31개 지역의 검역소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국내로 반입되며,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파쇄, 환송 또는 살균 소독 등 조치가 취해짐.
- 수입 금지 식물은 첫째, 일본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병충해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일본에 수입될 경우 농림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둘째, 토양, 셋째, 토양이 묻어 있는 식물임.
- 목재와 차(茶) 종류 같이 고도로 가공된 물품은 검역 대상이 아니며, 이들 외 절화, 종자, 과채, 두류 등은 검역대상에 해당됨.

<그림5-24> 일본 농산물 및 식물 검역 시스템 분류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검역소(www.pps.go.jp)

4)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National Veterinary Assay Laboratory, NVAL)

□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는(NVAL) 농림수산물부 산하기관으로, 수의 약품 관리, 동물 검역 지원, 식품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부 산하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는 의약품법(Pharmaceutical Affairs Law)에 의거하여 동물에게 사용되는 수의 약품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후생노동성(MHLW)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약품을 유통·관리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5국 15과로 이루어져 있고, 수의약품 조사와 동물 실험, 화학물질 잔류검사를 전담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과, 인사과, 기술지도과, 품질보증과, 수의약품 조사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국과 회계국 : 연구소 전체 행정과 회계 및 재정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제1분석국 : 제1질병과, 제2질병과, 생물보안 검사과, 응용미생물과, 수산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 가금류질병과, 동물실험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분석국 : 항생약품과, 일반약품과, 약품분석과, 화학물질 잔류검사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업무로는 수의약품 품질 보증, 과학기술적인 검역 및 분석, 식품안전 분석 및 긴급 사안 관리 등이 있음.
- 수의약품 품질 보증을 위하여 수의약품 품질 기준 마련, 표준 제품 공급 체계 구축, 수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과학 기술적 요구사항 안내, 품질점검(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분석, 장관령에 의한 항생제품 품질 점검, 공급단계에서의 검수 및 샘플 테스트 등), 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추적 시스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수의약품 승인에 필요한 과학기술적인 검역 및 분석을 수행함. 특제품이 기준 (GLP, GCP, GMP¹⁶⁾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수의약품 재심사 여부 확인, 수의약품 등 제품 승인에 필요한 과학기술적인 분석과 컨설팅 제공하며, 문제가 된 사례 등을 소개하여 관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식품안전분석 및 긴급 사안 대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의약품 사용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수행, 야생동물로부터 세균의 항생제 저항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외부 바이러스 및 질병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마련, 수의약품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나. SPS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현황

- WTO SPS 협정에는 문의처(NEP : National Enquiry Point)와 통보당국(NNA :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을 개설하여 SPS 조치 관련 문의 사항을 처리하고 WTO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Transparency)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16) GCP : Good Clinical Practices
 GLP : Good Laboratory Practices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일본 외무성은 통보당국(NNA)와 문의처(NEP)를 통합한 SPS Contact Point를 운영하고 있음. SPS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이 외국 당국과 직접 접촉하기 보다 일차적으로 외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통하여 관련 정보가 오고가고 있음.
- 농산업과 관련된 투명성 이슈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내 소비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소비안전과 내 국제기획반, SPS반, 국제식품규격반이 사안에 따라 세부 역할을 분담하여 WTO와 세계 각국의 SPS 관련 조치에 대응하고 있음.
 - 그 외 국제부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등에서도 SPS 투명성 관련 사안에 관여 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 요약 및 시사점

- 일본은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및 국립 수의 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전국 각지에 설치된 31개의 검역소를 활용하여 수입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서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고 각 지역에 설치된 검역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고 및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
- SPS 관련 문의처와 통보당국의 기능을 통합한 'SPS Contact Point'를 외무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업 관련 투명성 이슈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내 소비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른국가와 대조적으로 SPS 기능을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에서 분산하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이라는 것이 인상적임.

VI. 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가. 조화

<19 U.S. Code Chapter 13 -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관련 조항
<p>제2578조 미국의 국제기준설정 활동에의 참가 통지</p> <p>(a) 총 칙 대통령은 각각의 국제기준설정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의 기준설정행위를 일반인에게 공고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b) 통 지 각 해의 6월 1일 이전에 각각의 국제기준설정기구에 관하여 본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그 기구와 관련하여 본 조 제c항에서 명시한 정보를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는 본 항에 의하여 종전 공고일로부터 공고되는 해의 6월 1일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첫 번째 통지는 그 공고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한다.</p> <p>(c) 필요한 정보 본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과 같다. (1) 국제기준설정기구가 고려 대상으로 계획하였거나 고려 중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기준 (2) 상기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각 위생 또는 식물위생기준에 관한 다음의 사항 (A) 고려 중이거나 고려대상으로 계획한 기준의 설명 (B) 기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미국이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C) 미국의 참가에 관한 의제 (D)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을 대표할 책임이 있는 기관</p> <p>(d) 공공 의견 본 조 제c항 제2호 (D)의 규정에 명시된 기관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기준과 관련하여 공공 의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준 심사에 참가하고 그 기구가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을 제안할 때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p>
요약 및 평가
<p>제257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에 의한 SPS 관련 국제기준의 공지에 관한 책임 있는 기관 지정 - 상기 책임 있는 기관의 SPS 관련 국제기준의 공지 - 국제기준설정 활동에의 참가 통지 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 -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한 공공의 의견 개선 기회 제공 및 기준 심사 시 그 의견 고려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관련 국제기준과 관련한 국내의 책임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의무 부여 -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한 SPS 관련 국제기준의 공지 및 국제기구에 참가 통지에 기재될 정보 목록 제시 - 공공의 의견 수집 및 국제기준 고려 시 반영 근거 마련

나. 동등성

<p><21 U.S. Code Chapter 10-가금류 및 가금육제품 검역(Poultry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p>
<p>관련 조항</p>
<p>제466조 수입</p> <p>(d) 적용 가능한 국내기준과 절차: 집행</p> <p>(2)</p> <p>(A) 농업부장관은 수출국이 동 장관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위험평가 방법에 일치하여 동 장관에게 수출국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에 따른 위생 보호 수준에 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나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1)에서 기술한 수출국의 기준을 미국의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p> <p>(B) 농업부장관은 아래에 대한 권한이 있다.</p> <p>(i)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출국의 기준이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의 범위에 달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p> <p>(ii)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에게 상기 결정에 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요약 및 평가</p>
<p>제46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농업부장관의 권한 및 인정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근거 및 다른 증거 토대 • 동등성 인정에 대한 재량권 - 수출국 요청 시 동등성 미 인정의 근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으로 제공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동등성 인정의 재량권을 농업부장관에게 부여 - 동등성 미 인정 수출국의 근거 요청에 응답 가능성 제시

다. 위험평가·위험분석

<7 CFR 319: 해외검역공고(Foreign Quarantine Notices)>
관련 조항
<p>제319.56-4조 특정 과실 및 채소의 수입 승인</p> <p>(c) 본 조에서 수입이 허가된 과실 및 채소</p> <p>(1) 이전에 인가된 과실 및 채소</p> <p>허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2007년 8월 17일 제정된 특별 규칙에 의해 본 부에 따라 수입이 인가되었고, 본 조 (b)와 § 319.56-3의 일반적 요건에서 기술한 한 가지 또는 이상의 지정된 식물위생조치만이 적용되는 과실 및 채소는 본 조 (d)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2007년 8월 17일 이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미국에 계속 수입될 수 있다.</p> <p>(2) 기타 과실 및 채소</p> <p>상기 조항 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실 및 채소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수입이 인가된다.</p> <p>(i) 병해충 위험분석. 특정 국가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특정 과실 및 채소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평가되고 공개적으로 통지된다.</p> <p>(A) 병해충 위험분석의 이용 가능성</p> <p>동식물검역소는 특정 과실 또는 채소의 수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한 병해충 위험 분석의 이용 가능성을 알리는 공고를 60일 동안 공보에 게시한다.</p> <p>(B) 위험의 결정: 고려 요소</p> <p>동식물검역소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본 조 (b)에서 기술한 한 가지 또는 이상의 지정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된 과실 및 채소를 통해 식물 병해충이나 유해 잡초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정하였고, 전 항에서 언급된 공보를 통해 공지하였다. 소장은 본 항에서 기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국가나 다른 원산지 내의 과실 또는 채소와 관련된 각각의 검역 병해충에 의한 위험이 다음 요소들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의해 완화됨을 위험 분석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p> <p>(1) 검사</p> <p>검역 병해충은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내의 물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병해충은 검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다.</p> <p>(2) 병해충 미발생</p> <p>일정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내에 있는 과실 또는 채소가 어떠한 병해충과도 관련이 없다고 알려지거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내의 물품이 병해충과 관련 있지만 그 병해충 미 발생에 관한 제319.56-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다.</p> <p>(3) 처리의 효율성</p> <p>검역 병해충은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의 과일 또는 채소와 관련이 있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적합한 수확 후 처리 방법을 적용하면 해충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p>

<p>(4) 수출 전 검사</p> <p>검역 병해충이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상품과 관련 있으나 그 상품이 수출 전 조사 대상이고, 당해 상품이 그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병해충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된다.</p>
<p>요약 및 평가</p>
<p>제319.56-4조</p> <p>-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일 및 채소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의 요건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위험분석 실시 가능성 공지 • 위험결정 시 위험 완화 요소 제시 <p>(1) 검사를 통한 병해충 발견 가능성</p> <p>(2) 병해충 미발생 지역 고려</p> <p>(3) 적합한 수확 방법 적용 가능성</p> <p>(4) 수출 전 검사를 통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p> <p>* 평가</p> <p>-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일 및 채소 수입 시 위험 완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p> <p>- 병해충 미발생 지역(지역화)을 위험 완화 요건으로 확립</p>

라. 지역화

<p><7 CFR 319: 해외검역공고(Foreign Quarantine Notices)></p>
<p>관련 조항</p>
<p>제319.56-5조 병해충 미 발생지역</p> <p>본 장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과일 및 채소는 그러한 과일 또는 채소가 특정 해충이나 해충이 없는 지역에서 재배된 경우 미국으로 수입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출 지역에 과일이나 채소에 해가 되는 모든 검역 해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일이나 채소를 수입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달리, 수출지역에 과일이나 채소에 해가 되는 한 가지 또는 이상의 검역 해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에 해가 되는 나머지 검역 병해충에 의해 발생될 위험이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에 포함된 특정 식물 위생조치에 의해 완화되는 경우 과일과 채소를 수입 할 수 있다.</p> <p>(a) 병해충 미발생 지역에 대한 국제기준의 적용</p> <p>동식물검역소(APHIS)는 병해충 미 발생지역이 해충 방제에 관한 국제 기준 제4호 “해충</p>

<p>방제를 위한 요건”에서 확립된 해충 방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 국제 기준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본 장 §300.5에 편입되었다.</p> <p>(b) 조사 규칙 동식물검역소는 병해충 검출 시 취해진 조치에 관한 규칙 병해충 미 발생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조사 규칙을 승인하여야 한다. 동식물검역소는 병해충 미 발생지역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p> <p>(c) 병해충 미발생의 결정 (1) 본 장의 목적 상 어느 지역에서 특정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동식물검역소장(Administrator)은 그 지역이 본 조 (a)와 (b)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결정하고 60일 간 공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다음 공보에 그의 결정을 공지하게 된다. 적절한 경우 동식물검역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해충 미 발생 지역에서 과실 또는 채소의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i) 공고를 통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되지 않을 경우 (ii) 공고를 통한 이견이 그 공고의 전반적 결론과 위해에 대한 부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p> <p>(d) 병해충 미 발생지역의 인가 취소 특정 병해충 미 발생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동식물검역소는 그 지역의 병해충 미 발생 지역의 지위가 철회되었으며, 그 병해충에 대한 숙주가 되는 작물을 수입할 경우 당해 병해충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적용됨을 알리는 공보를 게시하게 된다. 그 병해충에 대한 처리가 가용치 않을 경우 숙주 작물의 수입은 금지된다. 인가 취소된 지역이 재인가를 받으려면 본 조 (a)와 (b)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요약 및 평가</p>
<p>제319.56-5조</p> <p>- 병해충 미발생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검역소(APHIDS)가 병해충 미발생 지역에 대한 국제기준(IPPC)을 준수할 것을 요구 • 동식물검역소를 통한 병해충 미발생 지역 결정, 동 지역의 지위 증명에 관한 감사 실시 • 동식물검역소장이 병해충 미발생 지역의 기준 충족 여부 결정, 공지 • 동식물검역소에 의한 병해충 미발생 지역의 인가 취소 및 공지 <p>* 평가</p> <p>- 동식물검역소에 의한 병해충 미발생 지역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결정, 인가 및 인가 취소의 공지 권한 일원화</p>

다. 투명성

7 U.S. Code Chapter 109 -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관련 조항
<p>제412조 식물의 이동, 식물 제품, 생물학적 통제 대상 유기체 규제, 유해 잡초, 기타 물품의 이동 및 운송 수단에 대한 규제</p> <p>(d) 통지</p> <p>장관은 본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 수입 요청 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는 통지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 통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통지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규제를 공포하기 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p> <p>(2) 통지는 다음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위험평가가 필요한 수입 요청에 대한 공고</p> <p>(B) 현 상태에 기초하여 과학적 정보 지원 요청에 대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p> <p>(C) 수입 요청에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절차</p> <p>(D) 비공식 규칙을 제정하기 전 관련 과학 및 경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지침</p> <p>(E) 개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 완화 조치 또는 완화 조치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본 조항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안된 위험 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위험평가 과정에서 가정과 불확실성의 가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p>
요약 및 평가
<p>제4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요청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설명하는 통지에 공공 의견을 구하는 방법 명시 -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고려사항 명시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의 이동, 식물 제품, 생물학적 통제 대상 유기체 규제, 유해 잡초, 기타 물품의 이동 및 운송 수단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 요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공지할 것을 의무화 함

바. 긴급조치

<7 U.S. Code Chapter 109 - 동물건강보호(Animal Health Protect)>
관련 조항
<p>제8306조 압수, 검역, 처리</p> <p>(b) 특별 긴급조치</p> <p>(1) 총칙</p> <p>미국 내 가축의 병해충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농업부장관이 특별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병해충 또는 질병이 미국 내 가축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농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A) 농업부장관이 그러한 조치가 병해충 또는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물, 물품, 시설 또는 운송수단의 압류, 처리, (살 처분을 포함하여) 이들을 절멸시키기 위한 구제 조치 또는 기타의 처분</p> <p>(B) 농업부장관이 그러한 조치가 병해충 또는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물, 물품, 시설 또는 운송 수단의 미국 내 이동 또는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p> <p>(2) 국가적 조치</p> <p>(A) 총칙</p> <p>농업부장관은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병해충이나 질병을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데 부적절함을 알게 될 때에만 다음의 자들과 검토 및 협의 후 본 조에 따른 조치를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다.</p> <p>(i) 주지사 또는 해당 주의 동물보건 담당관</p> <p>(ii) 인디언 부족의 관할 하에 있는 동물, 물품, 시설 또는 운송 수단의 경우 그 인디언 부족의 수장</p> <p>(B) 상기 (A)에 따라 한 주에서 특정 조치가 취해지기 전 (C)에 따른 통지</p> <p>농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i) 주지사, 국가의 적절한 동물보건 담당관 또는 인디언 부족의 수장에 대한 제안된 조치의 통지</p> <p>(ii) 제안된 조치의 공개 발표</p> <p>(iii)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연방관보에의 게시</p> <p>(I) 사실조사 결과</p> <p>(II) 제안된 조치에 관한 설명</p> <p>(III)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유 설명</p> <p>(C) 조치 후 통지</p> <p>상기 (A)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 (B)(iii)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연방관보에 게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농업부장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단, 조치 시작 후 10일(영업일 기준)까지는 정보를 게시 할 수 없다.</p>

요약 및 평가
<p>제830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병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긴급사태 발생 시 농업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동물, 물품, 시설, 운송수단의 압류, 처리(살 처분 포함) • 상기 물품, 수단 등의 이동 및 사용 제한 - 농업부장관의 주지사 및 인디언 부족장과의 협의 및 조치 - 특정 조치 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동물보건 담당관, 인디언 부족장에 대한 조치 통지 • 조치에 관한 설명의 연방관보에의 게시 - 특정 조치 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무부장관에 의한 신속한 정보 발표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의한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관련자 및 기관과 협의, 조치에 관한 사안의 통지·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7 U.S. Code Chapter 109 -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관련 조항
<p>제415조 특별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당국</p> <p>(a) 선언 권한</p> <p>농업부장관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새로운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의 존재로 인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 식물 해충 또는 유해물 잡초가 미국의 식물이나 식물을 위협하는 경우, 농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물, 생물학적 방제 생물체, 식물 생산품, 기타 물품 또는 장관이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에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운반 수단을 보유, 점유, 격리, 취급, 기타 규제 수단을 적용,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식물, 생물학적 방제 생물, 식물 제품, 기타 물품 또는 농업부장관이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에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운반 수단을 격리, 처리, 또는 다른 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농업부장관이 식물 해충 또는 유해한 잡초 또는 식물, 생물학적 방제 생물, 식물 생산품, 기타 물품 또는 농업부장관이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에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운반 수단을 발견한 주 또는 주의 일부를 격리할 수 있다. (4) 생물학적 방제 생물, 식물 제품, 기타 물품 또는 장관이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의 보급을 막거나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관련 운송 수단의 주 내에서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p>(b) 긴급사태 확정에 필요한 사실</p> <p>농업부장관은 주지사 또는 영향을 받는 다른 주의 관련 공무원과 검토 및 협의를 거친 후,</p>

국가가 취한 조치가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를 근절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통지 절차

(1) 총칙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의거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 농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해당 주의 주지사 또는 기타 적절한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공지하며 연방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A) 장관의 조사 결과

(B) 장관이 취하려는 조치

(C) 그 조치의 이유

(D) 가능한 경우 예상 긴급사태 기간의 예상치

(2) 시간에 따른 조치

조치를 취하기 전 연방 관보에 공표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치는 개시 후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d) 최소 침해 조치의 적용

새롭거나 미국 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유해한 식물 해충이나 유해 잡초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식물, 생물학적 방제 생물, 식물 제품, 식물 해충, 유해 잡초, 물품 또는 운송 수단은 폐기되거나, 수출되거나, 원산지의 선적지로 반송되거나, 폐기, 수출 또는 선적으로 반환되도록 명해져서는 아니 된다.

(e) 보상 지급

농업부장관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장관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농업부장관이 본 항에 의거하여 지불해야 할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며 사법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장관 이외의 정부 당국자에 의해 60일을 초과하여 검토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요약 및 평가

제7715조

- 긴급사태 발생 시 농업부장관에 의한 긴급조치
 - 관련 식물, 식물 제품, 운반수단, 이들이 발견된 주 격리
 - 조치 전 통지의 내용의 공지
 - 조사 결과, 계획된 조치, 조치 이유, 예상 조치 기간
 - 최소 침해조치 적용
 - 조치 후 보상 지급
- * 평가
- 농업부장관의 광범위한 긴급조치 권한 인정: 긴급사태 발생 시 문제된 식물 및 운반수단 등이 발견된 주까지 격리
 - 긴급조치 발동 전 조치, 조치 이유, 예상 기간 등 공지: 투명성 확보
 - 최소 침해 조치방법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성의 원칙 적용
 - 사후 구제수단 마련: 긴급조치 결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

사. 이행기구·기관

<15 CFR 2002.2 - 무역정책실무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관련 조항
<p>제2002.2조 무역정책실무위원회</p> <p>(a) 1971년 12월 11일, 36 FR 23620(15 CFR 2002.2 및 2002.3)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무역실무위원회(TSC)와 무역정보위원회(TIC)는 폐지되고 무역정책위원회(TPC)의 하부 조직으로서 설립된 무역정책검토그룹(TPRG)과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소의 특별 대표가 지명한 의장과 농업, 상무, 국방, 내무부, 노동, 국무, 재무장관, 국제경제정책이사회 장,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 의장이 각 부서에서 지정한 고위 무역정책 실무가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장과 위원회 위원장은 정규 회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교체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각 기관의 당국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 대표는 수시로 의장이 아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의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대표는 위원회의 의결권 없는 위원이어야 한다.</p> <p>(b) 위원회는 특별 대표 또는 피지명인이 다른 기관에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역 협정 프로그램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해당 프로그램 감시, 본 조 제b항 (2) 내지 (8)에 따라 접수된 정보 검토, 그러한 정보 요약문을 행동 권고안과 함께 특별 대표 또는 그를 통해 TPRG 또는 TPC에 전달, 또는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책 및 조치의 승인 (2) 농업부, 상무부, 국방부, 내무부, 국무부, 재무부, 무역협상 특별대표 사무소, 특별대표 대리로부터 정보 및 조언의 수집.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무역 협정 및 무역 협정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그리고 무역법(The Trade Act) Title V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 및 조언의 수집 (3) 이해 당사자들이 무역법 제131조에 따라 출간된 목록에 있는 특정 물품, 그렇게 열거 되어야 하는 모든 물품, 미국이 요구해야 하는 양허 또는 제안된 무역 협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특별 대표, 특별 대표 대리 또는 위원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한 기회 제공 (4) 모든 이해 당사자가 구술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조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고려되는 조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특별 대표, 특별 대표 대리 또는 위원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한 기회 제공 (5) 폐지 (6) 이해 당사자가 무역 협정 프로그램 및 관련 문제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특별 대표, 특별 대표 대리 또는 위원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한 기회 제공 (7) 특별 대표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를 특별 대표 또는 특별 대표 대리에게 제출

<p>(8) 제2003.3조에서 규정한 제301부 위원회(The Section 301 Committee)가 행한 공청회 및 검토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된 권고 보고서의 검토. 그에 대한 권고안을 특별 대표에게 제출</p> <p>(9) 상황이 허락되는 경우, 제2002.3조에 규정된 제301부 검토 종결</p> <p>(10)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라 물품에 부여된 면세 대우 요청 접수 및 검토, 이 규정 Part 2007에 따른 요청 및 검토 처리</p> <p>(11) 공청회의 실시 및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른 기능의 수행에 관한 규정 발부</p> <p>(12) 특별 대표 또는 간혹 특별 대표 대리가 지시할 수 있는 기타 기능 수행</p>
<p>요약 및 평가</p>
<p>제200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SC는 농업부, 상무부, 국방부, 내무부, 노동부, 국무부, 재무부, 국제경제정책이사회, 국제무역위원회 장과 각 부서에서 지정한 고위 무역정책 실무자로 구성 - 무역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폭 넓은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프로그램 감시, TPRG 및 TPC에 관련 정보 전달 • 상기 각 부로부터 정보 및 의견 수집 • 양허 등 무역협정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국제무역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검토 등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SC를 미국의 모든 주요 부처의 장과 주요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포괄적이고 부처 상호 간 유기적·통합적 무역 정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상기 각 부처로부터 정보 및 의견을 수집하는 등 일원화된 관련 정보 수집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각종 공청회 및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여 무역 관련 정책 결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2. 호주

가. 조화

<생물안전수입위험분석지침(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Guidelines 2016)>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BIRA는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WTO/SPS협약 및 기타 국제 의무에 따라 수행되는 위험평가임 - 호주는 IPPC와 OIE가 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위험분석 방법론과 위험관리 조치를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한 기준이 호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련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호주는 WTO/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고 위험분석에 의해 뒷받침되는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행사함 -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공중 보건 위험에 비례하고 국제적 교통 및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방식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 예방,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됨. 호주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이며 위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공중보건 보호에 관한 규정의 표준과 가치를 지지함 - BIRA 절차는 WTO/SPS협약 및 OIE 및 IPPC가 정한 국제표준에 관한 호주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한 지역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함 - 농수자원부는 호주의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해충 및 질병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함. 다양한 질병이나 병해충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나 해충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 하위 집단 및 관리 방법을 인정하는 것은 OIE 및 IPPC가 정한 표준과 일치함
요약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C, OIE가 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 그리고 필요 시 WTO/SPS협정 근거 - 국제보건규정지지 - 지역화에 관한 국제적 기준 고려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C, OIE, 국제보건규정 등 관련 국제적 기준을 광범위하게 근거로 제시하며 이들에 관한 사항을 지지하고 있음 - 상기 기준에 호주의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반영됨

나. 위험평가·위험분석

<생물안전수입위험분석지침(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Guidelines 2016)>
관련 조항
-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잠정적인 SPS조치가 적용된 경우, BIRA 보고서는 그러한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해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임
평가
- 과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잠정조치 적용 시 WTO/SPS 협정 제5조 제7항 상의 제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2015)>
관련 조항
<p>제167조 생물안전국장(Director of Biosecurity, 이하 “국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생물안전 수입위험분석(이하, “BIRA”라 함)을 수행할 수 있다.</p> <p>(1) 생물안전국장은 특정 상품 또는 특정 부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BIRA를 수행 할 수 있다.</p> <p>(2) 국장은 BIRA를 수행하면서 호주에 관한 적정보호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3) 국장은 BIRA가 수행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p> <p>(4) 상기 제3항은 제168(1)조에 따라 국장에게 위임된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p> <p>제168조 농수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은 국장에게 BIRA를 개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p> <p>(1) 장관은 BIRA가 시작되어야한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부류와 관련하여 BIRA를 개시할 것을 국장에게 지시 할 수 있다.</p> <p>(2) 상기 제1항 상의 지시는 다음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p> <p>(a) 서면, 그리고</p> <p>(b) 지시에 관한 이유의 적시</p> <p>(3) 상기 제1항에 의거 한 지시는 그것이 발한 후 15일 이내에 하원에 상정되어야한다.</p> <p>(4) 상기 제1항 상의 지시는 법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5) 상기 제1항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BIRA 실시, 조사 또는 결과에 관하여 연방 정부 자체 또는 연방정부가 위임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p> <p>제169조 BIRA의 실시 절차</p> <p>(1) BIRA는 다음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p> <p>(a) 규칙(regulations)에서 규정된 절차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p> <p>(b) 가능한 경우 본 조 제2항 상 국장이 제시한 지침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p>

하여야 한다.

(2) 국장은 서면으로 BIRA 실시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을 만들 수 있다.

(3) 상기 2항에 의거한 지침은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4) 상기 2항에 의거한 지침은 법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국장은 물품 또는 그 물품 부류와 관련하여 BIRA를 수행 할 목적으로, 인간생물안전국장(Director of Human Biosecurity)에게 물품 또는 그 물품 부류와 관련된 인체 건강 위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0조 보고서

(1) 규정(regulations)은 BIRA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국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a) BIRA 보고서 초안

(b) 잠정 BIRA 보고서

(c) 최종 BIRA 보고서

(2) 상기 제1항 상의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a) 규칙(regulations)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b) 규칙(regulations)에 부합하여 출간되어야 한다.

요약 및 평가

제167조

- 생물안전국장의 BIRA 수행 권한 및 책임
 - BIRA 수행 시 호주의 적정보호수준 적용 가능

제168조

- 농수자원부장관의 BIRA 개시에 관한 지시
 - 지시 대상: 생물안전국장
 - 지시 후 15일 내 하원 상정
- BIRA 지시 형태: 서면
- BIRA 실시, 조사 등에 관한 연방정부 지시로부터 생물안전국장 면제

제169조

- 생물안전국장에게 BIRA 실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 제작 권한 부여
- 상기 지침의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

제170조

- 생물안전국장에게 BIRA보고서 초안, 잠정 BIRA보고서, 최종 BIRA보고서 작성 요구
- * 평가
- BIRA 수행에 관한 권한을 생물안전국장에게 부여
- BIRA 실시, 조사 등과 관련하여 생물안전국장이 연방정부 지시로부터 면제됨으로써 막강한 권한 부여
- BIRA 실시 근거, 관련 지침 제정, 지침의 공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BIRA 실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생물안전규칙(Biosecurity Regulation 2016)>

관련 조항

Division 1- BIRA 실행절차

제24조 BIRA 실시 의사 통지 및 쟁점 보고서

국장이 특정 재화 또는 특정 부류의 재화와 관련하여 BIRA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 국장이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i) 국장은 물품 또는 특정 부류의 물품과 관련하여 BIRA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사실

(ii) BIRA 수행 시 주어질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기회

(b) 국장은 BIRA와 관련된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25조 BIRA 보고서 초안

(1) 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항에 따라 수행된 BIRA에 관하여 제30조에 따라 BIRA 보고서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b)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다음을 게시하여야 한다.

(i) BIRA 보고서 초안

(ii) 정해진 기간 내 물품 및 특정 부류의 물품과 연관된 생물안전성 수준 평가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는 대중에의 초청장

(2) 상기 (1)(b)(ii)에 의거하여 발행된 초청장에 명시된 기간은 초청장 게시 당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장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BIRA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공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장은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제26조 잠정 BIRA 보고서

(1) BIRA 보고서 초안에 관한 제출 기간 종료 후, 국장은 제30조에 따라 잠정 BIRA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국장은 잠정 BIRA 보고서를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BIRA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받은 모든 정보

(b) BIRA 초안 보고서와 관련하여 접수 된 모든 제출물

(c) 국장이 과학적 자문단에게 제29조를 근거로 BIRA 측면에 대해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 하도록 요청한 경우, 과학적 자문단이 국장에게 제시하는 의견 및 결과

(3) 국장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잠정 BIRA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27조 최종 BIRA 보고서

(1) 국장은 본 항에 따라 수행 된 BIRA와 관련하여 제30조에 따라 제31조에서 허용된 시간 내에 최종 BIRA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2) (a) 감독관(Inspector-General)에게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간이 끝난 경우, 그리고

(b) (i) 어떠한 검토 요청도 없었거나

(ii) 검토 요청이 있었음에도 감독관이 검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국장은 검토를 요청한 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BIRA와 관련하여 잠정 BIRA 보고서를 최종 BIRA 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 (3) 감독관이 BIRA 수행 과정을 검토 한 경우, 국장은 최종 BIRA 보고서를 준비 할 때 감독관이 최종 BIRA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8조 추가 정보, 연구, 전문가 자문

국장이 BIRA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 정보, 연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장은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언을 제공할 적절한 사람을 요청해야 한다.

제29조 과학적 자문 단체

- (1) 국장은 서면으로 과학적 자문 단체의 구성원으로 외부인을 지명해야 한다.
- (2) 국장은 BIRA를 수행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BIRA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과학적 자문단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3) 과학적 자문 단체가 BIRA의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을 경우, 그 단체는 시험을 마친 후 국장이 요청한 형태로 국장에게 의견 및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BIRA 보고서의 내용

- (1) 물품 또는 특정 물품 부류와 관련하여 국장이 작성한 BIRA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a) 물품 또는 물품 클래스에 포함 된 물품이 호주 영토로 수입 될 경우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한 BIRA의 조사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 (b)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되는 정보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물품 또는 그 물품 부류와 관련된 인체 건강 위해에 관한 진술서가 법 제169(5)조에 근거하여 인간생물안전국장에 의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진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d) 물품 또는 그 부류에 포함된 물품에 관한 생물안전위험의 수준을 호주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 (e) 국장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2) BIRA 보고서에 명시된 결과 및 조건은 물품 또는 그 부류에 포함된 물품이 호주 영토로 진입하거나 하역되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3) 본조 제4항에 따라 BIRA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 및 모든 조건이 호주 영토와 관련하여 적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 (4) 호주 영토의 일부에만 특정한 결과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BIRA 보고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조사 결과 및 조건이 적용되는 호주 영토의 일부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 (b) 호주 영토의 해당 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 및 조건을 식별해야 한다.

제31조 BIRA 보고서 작성 기한

- (1) BIRA에 관한 최종 BIRA 보고서는 제24조에 따라 BIRA 관련 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 (2) 상기한 30개월 기산 시 다음의 기간은 무시될 수 있다.
 - (a) 제34조에 따라 감독관에게 BIRA 수행 절차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감독관이 국장에게 요청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기 시작한 기간 그리고 아래의 경우의 종료 기간
 - (i) 감독관이 국장에게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통보할 경우
 - (ii) 감독관이 제38조에 따라 국장에게 최종 BIRA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 (b) 본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지된 통보에 따라 시간의 기산이 중지된 시작 기간, 그리고 제7항에 근거하여 공지된 통보에 따라 시간 기산이 재개되는 날의 종료 기간
- (3) 국장이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기간 내 BIRA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을 이유로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본조 제4항에 따라 통지서를 게시할 수 있다.
 - (a) BIRA와 관련하여 제28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국장의 요청, 또는
 - (b) 국내적 또는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안전성에 관한 상황 발생
- (4) BIRA와 관련하여 상기 제3항에 따른 게시된 통지서는 다음을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a) BIRA의 확인
 - (b) 국장이 상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 된 기간 내에 BIRA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할 가능성이 없다는 진술
 - (d) 본 조의 시간 계산이 통지가 게시된 일자 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이후 일자에 중지될 것이라는 진술
- (5) 국장이 BIRA와 관련하여 본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발표할 경우, 본 조상의 시간 계산은 통지에 따라 중단된다.
- (6) 국장은 다음의 경우 BIRA와 관련하여 본조 제3항에 따라 발표된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 (a) 국장이 제28조 또는 제29조에 근거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왔을 경우, 또는
 - (b) 국장이 제28조 또는 제29조에 근거한 요청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 (c) 국가적 또는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안전성에 관한 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BIRA 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 (7) 국장이 BIRA와 관련하여 제3항에 근거한 게시된 고지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국장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 (a) BIRA의 확인
 - (b) 통지를 통지 철회의 이유에 관한 진술
 - (c) 본 조에서의 시간 계산은 통지가 게시되거나 통지에 지정된 날짜에 재개된다는 내용의 진술
- (8) 국장이 BIRA와 관련하여 상기 제7항에 의거하여 통지를 게시하는 경우, 본 조의 시간 계산은 통지에 따라 재개된다.

제32조 BIRA의 종료

- (1) 국장은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BIRA가 완료되기 전 이를 종료할 수 있다.
 - (a) BIRA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정책의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또는
 - (b) 다른 이유로 BIRA를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2) 국장이 BIRA를 종료할 경우 그는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a) BIRA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 (b) 종료 사유

제34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감독관에게 BIRA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인정할 경우, BIRA에 관한 잠정 BIRA 보고서가 제26조 제3항에 따라 게시된 후 30일 이내 BIRA 수행 절차를 검토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a) 그 절차가 Division 1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 (b) 그 절차를 눈에 띄게 벗어난 경우
 - (c) Division 1에 의해 요구된 절차에 따라 BIRA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검토를 요청하는 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 (2) 상기 제1항 상의 요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서면 작성
 - (b) 요청에 대한 이유의 적시

제35조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검토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34조에 따라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그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을 모두 행하여야 한다.
 - (a)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그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요청서에 명시된 사유를 고려하여 감독관이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a) 감독관이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BIRA의 수행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3) 요청서에 명시된 사유를 고려하여 감독관이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모두 행하여야 한다.
 - (a) 결정을 내린 자와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b) 그 결정을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BIRA 절차의 검토 완료 기한

- (1) 감독관이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할 경우, 감독관은 그가 BIRA 수행 과정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접수한 후 45일 이내(본조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제외)에 검토를 완료하고 국장에게 최종 BIRA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45일의 기간에는 국장이 제37조 제1항에 따라 BIRA 검토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 BIRA 검토보고서 초안

- (1) 감독관은 BIRA 수행 과정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 (BIRA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BIRA 검토보고서 초안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시하여야 한다.
 - (a) 검토 대상 및 결과
 - (b) 결과의 근거가 되는 정보 및 기타 자료
 - (c) 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
- (3) 국장은 BIRA 검토 보고서 초안 또는 보고서에 관한 BIRA 관련 추가 정보에 대한 감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 최종 BIRA 검토보고서

- (1) 감독관은 BIRA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서(최종 BIRA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물 안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감독관은 최종 BIRA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시된 의견이나 추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 (3) 최종 BIRA 검토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 (a) 검토의 대상 및 결과
 - (b) 결과의 근거가 되는 정보 및 기타 자료
 - (c) 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
- (4) BIRA 최종 검토 보고서가 국장에게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의 사항이 모두 실행되어야 한다.
 - (a) 국장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최종 BIRA 검토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 (b) 감독관은 서면으로 최종 BIRA 검토보고서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검토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 이 Division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BIRA 검토 보고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 및 평가

제25조 내지 제29조

- 생물안전국장에 의한 BIRA 보고서 초안, 잠정 BIRA 보고서, 최종 BIRA 보고서 작성
 - 모든 보고서를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 또는 보고서로 발표
 - 잠정 BIRA 보고서 작성시 과학적 자문단이 제시하는 의견 및 결과 고려

제30조 내지 제31조

- BIRA 보고서 내용 및 보고서 작성 기한

제32조

- BIRA 완료 전 근거 불충분 및 기타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사유

제34조,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관에 대한 BIRA 검토 요청 절차 및 감독관이 검토 요청을 고려하는 경우 제37조, 제38조 - 생물안전국장의 BIRA 보고서에 대한 감독관의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및 그 내용 - 생물안전국장의 BIRA 보고서에 대한 감독관의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그 내용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안전법에서 규정한 BIRA 실시 절차를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BIRA 보고서의 단계별 작성 및 전문가 자문 및 연구를 통한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을 기함 - BIRA 보고서 기재 내용 및 작성 기한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 - 생물안전국장이 작성한 BIRA 보고서를 감독관이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수입위험분석의 체계성·공정성을 담보함 - 모든 보고서는 농수자원부 웹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함

다. 지역화

<p><생물안전수입위험분석지침(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Guidelines 2016)></p>
<p>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 절차는 WTO/SPS협약 및 OIE 및 IPPC가 정한 국제표준에 관한 호주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한 지역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함 - 농수자원부는 호주의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해충 및 질병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함. 다양한 질병이나 병해충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나 해충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 하위 집단 및 관리 방법을 인정하는 것은 OIE 및 IPPC가 정한 표준과 일치함 - 농수자원부는 주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적 질병 및 해충의 전염상태 및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농수자원부는 BIRA 과정의 초기에 확인된 질병과 해충이 지역적 해충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 및 정부 당국에 사전에 질병 및 해충 목록을 제공함 - 호주에 존재하고 있지만 IPPC가 정의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식물 해충은 국제무역에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수출국이 자국 영토 또는 영토의 일부에 병해충 확산률이 낮거나 병해충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농수자원부에 제출해야 함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 적용 시 OIE, IPPC, WTO/SPS협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함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2015)>
관련 조항
<p>제5조 정의</p> <p>‘생물안전성 위험(biosecurity risk)’은 다음을 의미한다.</p> <p>(a) 질병이나 해충이 다음을 발생시킬 가능성</p> <p style="padding-left: 20px;">(i) 호주 영토나 영토 일부에의 유입, 또는</p> <p style="padding-left: 20px;">(ii) 호주 영토나 영토 일부에의 정착 또는 확산</p> <p>(b)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잠재성</p> <p style="padding-left: 20px;">(i)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질병 또는 해충</p> <p style="padding-left: 20px;">(ii) 환경에 해를 입히는 질병이나 해충</p> <p style="padding-left: 20px;">(iii) 질병 또는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 결과</p>
평가
- 정의 조항을 통해 질병이나 해충이 영토에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가능성의 많고 적음 혹은 없음(지역화)을 고려하고 있음

라. 투명성

<생물안전수입위험분석지침(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Guidelines 2016)>
관련 내용
<p>- 생물안전국장(Director of Biosecurity)은 정책결정을 통해 무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호주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자원부는 상기 정책결정의 내용을 제안자, 등록된 이해관계자 및 WTO사무국에 통지함 • 정책 결정 및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는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함 <p>-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BIRA 절차의 중요한 부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는 특정 BIRA에 관심 있는 자를 포함하며 외국 정부, 업계 단체, 주 및 연방정부, 기타 연방기관, 연구기관, 환경단체, 농민, 수입업자, 수출업체 및 일반 투자자, 일반 대중 포함 • BIRA 절차 전반에 걸친 협의는 공식 및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험분석과 관련된 기술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는 웹사이트, 생물안전 권고 통지 및 등록된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된 정보의 게시, 대화, 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농수자원부는 등록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농수자원부의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자원부는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우려 사항, 질문 및 과학 정보를 환영함. 추가 의견은 BIRA 연락관(BIRA Liaison Officer)을 통해 또는 BIRA를 수행하는 관련 분야(식물 관련 생물안전성 또는 동물 관련 생물안전성)로 제시될 수 있음 <p>- 각 BIRA에 한 명의 연락관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가 진행될 때 BIRA 문의에 대한 최초 연락 지점 ◦ BIRA 절차 전반에 걸쳐 국내 이해 관계자들, BIRA 프로젝트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 간 통로 역할 ◦ 이해 관계자와 BIRA 프로젝트팀 간의 양 방향 정보 공유 원활화 ◦ 이해 관계자와의 정보 공유, 협의 및 BIRA 절차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책임 •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양방향 의사소통 및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BIRA가 수행되는 방법, 시기, 이유, 중요성을 포함하여 BIRA 절차 및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움 ◦ BIRA의 문의에 대한 첫 번째 연락 지점이며, BIRA 관련자들과 국내 이해 관계자들 간 통로 역할. 다음의 구체적 역할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이해 관계자에게 BIRA가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의 통지 -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BIRA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고지 - BIRA 절차 전반에 걸친 정보 명확화를 포함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제공 - 제출 가능 시간을 포함하여 BIRA의 시간 전달 - 국내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정보를 부서에 제공 - BIRA 절차의 결과 전달 - 필요할 때마다 대면 회의와 전화 회의 소집 및 조정 - BIRA 완료 후 첫 번째 수입까지 지원의 지속적 제공
<p>요약 및 평가</p>
<p>- 생물안전국장의 정책결정 내용을 농수자원부가 WTO 사무국, 이해관계자 등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및 이후 발생 사안을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 <p>- BIRA 절차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자원부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 • BIRA 연락관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질문 등을 전달 • BIRA 연락관은 BIRA 문의에 대한 최초 연락지점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 절차에 연락관을 운영함으로써 BIRA 실무진과 이해관계자들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의 통로 마련 - BIRA 연락관을 최초의 contact point로 운영함을 규정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함 - BIRA 연락관에게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BIRA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

<생물안전규칙(Biosecurity Regulation 2016)>

관련 조항

제24조 BIRA 실시 의사 통지 및 쟁점 보고서

국장이 특정 재화 또는 특정 부류의 재화와 관련하여 BIRA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 국장은 농수자원부(the Agriculture Department)의 웹사이트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i) 국장은 물품 또는 특정 부류의 물품과 관련하여 BIRA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사실

(ii) BIRA 수행 시 주어질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기회

(b) 국장은 BIRA와 관련된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25조 BIRA 보고서 초안

(1) 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b)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다음을 게시하여야 한다.

(i) BIRA 보고서 초안

(ii) 정해진 기간 내 물품 및 특정 부류의 물품과 연관된 생물안전성 수준 평가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는 대중에의 초청장

제26조 잠정 BIRA 보고서

(3) 국장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잠정 BIRA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27조 최종 BIRA 보고서

(1) 국장은 본 항에 따라 수행 된 BIRA와 관련하여 제30조에 따라 제31조에서 허용된 시간 내에 최종 BIRA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2) (a) 감독관(Inspector-General)에게 BIRA 수행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간이 끝난 경우, 그리고

(b) (i) 어떠한 검토 요청도 없었거나

(ii) 검토 요청이 있었음에도 감독관이 검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국장은 검토를 요청한 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BIRA와 관련하여 잠정 BIRA 보고서를 최종 BIRA 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제31조 BIRA 보고서 작성 기한

(1) BIRA에 관한 최종 BIRA 보고서는 제24조에 따라 BIRA 관련 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32조 BIRA의 종료

(2) 국장이 BIRA를 종료할 경우 그는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a) BIRA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b) 종료 사유

<p>제38조 최종 BIRA 검토보고서</p> <p>(4) BIRA 최종 검토 보고서가 국장에게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의 사항이 모두 실행되어야 한다.</p> <p>(a) 국장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최종 BIRA 검토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p> <p>(b) 감독관은 서면으로 최종 BIRA 검토보고서가 농림수산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검토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평가
<p>- BIRA 실시 의사통지 및 쟁점보고서, 단계별 BIRA 보고서, 보고서 작성 기한, BIRA 종료, 최종 BIRA 검토보고서를 모두 농수자원부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p>

마. 기술지원 및 협력

<p><생물안전수입위험분석지침(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Guidelines 2016)></p>
관련 내용
<p>- 과학적 자문단체의 임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를 수행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국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과학적 자문 단체에 BIRA의 모든 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의견 및 결과를 제공해야 함 • 자문 단체가 요구한 의견 및 사실관계는 최종 BIRA 보고서 작성 시 감독관이 검토해야 함 • 최종 의사 결정 기관이 아니며 농수자원부에 권고만 할 수 있음 • 초안 및 임시 BIRA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해야 함. 자문단체는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기술적 제출물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의 여부 ◦ 질병이나 해충의 침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모든 관련 문제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의 여부 ◦ 초안 및 잠정 BIRA 보고서의 결론이 제시된 자료에 기초해 볼 때 과학적으로 합리적 인지의 여부 <p>- 과학적 자문단체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장은 위험분석에 경험이 있는 단체에 3명의 상임 이사를 임명함. 여기에는 의장, 경제학자 및 위험 분석에 경험 있는 사람이 포함됨 • 상임위원 이외의 자문 단체 구성은 수행할 BIRA에 따라 결정됨 • 위원 선정은 BIRA에서 분석되는 물품 또는 물품 부류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위원에 대한 제안은 새로운 BIRA가 시작되기 전에 주 및 연방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됨 • 해외 전문가도 자문단체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 모든 구성원은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함 • 국장은 자문단체의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음
<p>요약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A 수행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나 생물안전국장이 과학적 자문단체의 검토 및 의견 제시 요청 가능 - 과학적 자문단체가 요구한 의견 및 사실관계는 최종 BIRA 보고서 작성 시 감독관이 검토 - 과학적 자문단체는 농수자원부에 권고만 가능 - 과학적 자문단체는 경제학자, 위험분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며 해외전문가도 임명 가능 - 생물안전국장이 자문단체 구성에 최종 결정권 보유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안전국장이 자문단체 구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언제라도 자문단체에 검토 및 의견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객관적 위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문위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해외 전문가 임명 가능 명시)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함

<p><생물안전규칙(Biosecurity Regulation 2016)></p>
<p>관련 조항</p>
<p>제29조 과학적 자문 단체</p> <p>(1) 국장은 서면으로 과학적 자문 단체의 구성원으로 외부인을 지명해야 한다.</p> <p>(2) 국장은 BIRA를 수행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BIRA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과학적 자문단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p> <p>(3) 과학적 자문 단체가 BIRA의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을 경우, 그 단체는 시험을 마친 후 국장이 요청한 형태로 국장에게 의견 및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p>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안전국장과 과학적 자문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의 근거 마련

3. EU

가. 조화

<Regulation(EU) 2016/429 -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
관련 내용
<p>전문</p> <p>EU가 당사국인 WTO/SPS 협정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사용을 규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WTO 회원을 서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국제표준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EU가 취한 조치의 기초로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WTO/SPS 협약의 당사국들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표준을 제공한다면 관련 표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p> <p>동물 건강과 관련하여 WTO/SPS 협정은 국제무역을 위한 동물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참조한다. 무역질서를 왜곡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의 동물건강 조치는 OIE 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p> <p>동물 또는 공중 보건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과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특정 상황에서,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2000년 2월 2일자 위원회 통보에서 EU가 해석한 WTO/SPS 협정 제5조 제7항은 본 협정의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잠정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련 회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다 객관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고 그 조치를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p> <p>OIE는 ‘육상 및 수생 동물 건강 코드’(‘OIE 코드’)의 체계 내에서의 구획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을 도입했다. 이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채택된 EU의 법령에서 이 개념은 특정 EU법에서 규정된 특정 동물 종 및 질병, 즉 조류 인플루엔자 및 수생 동물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본 규칙은 다른 동물 종과 질병에 구획화 체계를 사용할 가능성을 확립해야 한다. 구획화의 인정과 승인 및 그와 관련된 요건에 대한 상세한 조건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제290조 TFEU에 따라 행동을 채택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럽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p> <p>전염성 동물 질병의 도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는 그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동물과 제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 및 제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부 시장의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관련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WTO/SPS 협약 및 OIE 국제 표준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한다.</p>

<p>이 규칙에서 규정된 EU로의 입국을 위한 동물 건강 요건이 준수되고 OIE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유입되는 모든 동물, 동물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에 모든 동물 건강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제3국 또는 원산지 관할 당국이 발부한 동물 건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건강의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 규칙으로부터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p>
<p>요약 및 평가</p>
<p>- WTO/SPS 협정, OIE의 기준 참조 및 적용 - 사전주의 원칙 확인</p> <p>* 평가</p> <p>- OIE, WTO/SPS협정 등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함</p>

<p><Council Directive 2000/29/EC - 식물검역지침></p>
<p>관련 조항</p>
<p>제1조</p> <p>1. 이 지침은 식물 또는 식물 제품에 유해한 생물체의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의 유입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한 다음과 연관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d)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하에서 회원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및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모델 또는 그와 동일한 전자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p> <p>4. 회원국은 본 지침이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과 위원회 간 긴밀하고 신속하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적어도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 및 접촉에 대한 책임 있는 단일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IPPC에 따라 설립된 공식 식물보호기구는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p> <p>제13a조</p> <p style="text-align: center;">.....</p> <p>3. 제13조 제1항 (ii) 상의 공식 '식물 위생 증명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식물 위생 증명서'는 협약 당사국 여부에 관계없이 IPPC 조항을 준수하면서 제3의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 법령에 따라 공동체의 공식 언어 중 적어도 하나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회원국 식물보호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식물, 식물 제품 또는 기타 물품이 발송된 제3국을 떠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작성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IPPC의 형식에 관계없이 IPPC의 부속서에 명시된 모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요약 및 평가
<p>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C가 제시하는 ‘식물위생증명서’ 및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적용 - IPPC에 의해 설립된 식물보호기구를 통한 회원국 간 협력 <p>제13a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C 회원국 여부와 무관하게 ‘식물 위생 증명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식물 위생 증명서’ 활용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식물위생증명서’ 및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반영함

나. 동등성

<Council Directive 2000/29/EC - 식물검역지침>
관련 조항
<p>제15조</p> <p>2. 제1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제3국이 공동체로 수출하기 위해 채택한 식물위생조치는, 그 제3국이 당해 조치가 공동체의 적절한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동체에 증명하고 제21조에 따라 검사를 목적으로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얻은 결론에 의해 확인될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 특히 부속서 IV의 식물위생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p> <p>제3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특정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p> <p>3. 제1항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제3국이 그 국가가 자신의 조치가 공동체의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그리고 방역에 관한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해 이것이 확인된 경우, 공동체로 수출하기 위해 채택한 식물위생조치는 본 지침에서 정한 식물 위생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p>
요약 및 평가
<p>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이 수출을 위해 채택한 식물위생조치가 공동체의 적절한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달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동체의 기준과 동일함을 인정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성 인정 시 전문가의 평가를 필수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동등성 인정에 엄격함을 기하고 있음

다. 위험평가·위험분석

<Council Directive 2000/29/EC - 식물검역지침>
관련 조항
<p>제15조</p> <p>1. 위험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문의 또는 적절하다면 위원회의 권한 하에 수행된 조사에 의해 그리고 식물, 식물 제품 또는 기타 관련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제2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되어야 한다.</p> <p>각각의 승인은 보호 지역 또는 농업 및 생태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특정 지역에서 관련 제품에 의해 유해 생물을 전파할 위험을 고려하게 된 조건에 따라 공동체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상기 조항들로부터 파생된 특정 의무로부터 명시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p> <p>위험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문의 또는 경우에 따라 식물, 식물 제품 또는 기타 관련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p>
요약 및 평가
<p>제15조</p> <p>- 이용 가능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에 기초한 위험평가</p> <p>* 평가</p> <p>- 위험평가 기준의 원론적 확인</p>
<Regulation(EU) 2016/429 -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
<p>전문</p> <p>이 규칙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는 위험평가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야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78/2002 제22조 (1)에 의해 제정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의견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p>
<Regulation(EU) 2016/429 -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
관련 조항
<p>제36조 질병이 없는 회원국과 지역</p> <p>1. 회원국은 관련 동물 종에 대하여 제9조 (1)(b) 및 (c)에서 언급된 질병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질병 미발생의 승인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영토 전체 또는 한 군데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다음 조건 중 최소 한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p> <p>(a) 질병 미발생에 대한 신청서에 포함된 일련의 질병 중 어떠한 것도 관련 국가의 영역, 관련 구역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역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p> <p>(b) 질병의 요인이 제39조 (a)(ii)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체 영토 또는 신청서상의 관련 구역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p>

- (c) 매개체에 의해서만 전염되는 질병과 관련하여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39조 (a)(ii)상의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체 영역, 관련 구역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역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진 경우
- (d) 다음에 의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 (i)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규칙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부합하는 근절 프로그램
 - (ii) 과거 데이터 및 감시 데이터
- 2. 질병 미발생 상태에 대한 회원국의 신청서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질병 미발생 상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 제9조 제1항 (a)에 나열된 질병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질병이 없는 상태의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영토 또는 그 하나 이상의 지역에 대해 비 예방접종 지위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a)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다음에 의해 입증된 경우
 - (i)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규칙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부합하는 근절 프로그램
 - (ii) 과거 데이터 및 감시 데이터
 - (b) 이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방 접종 없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
-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여러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또는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회원국이 질병 미발생의 지위 또는 비백신 지위에 관한 신청을 개정안에 따라 개정할 것을 승인해야 한다.

제37조 구획

- 1.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9조 제1항의 (a)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한 구획 중 질병 미발생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국의 영역에 명시된 질병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구획 중 질병 미발생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a) 일련의 질병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의 유입이 그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현재 구획이 이루어진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경우
 - (b) 신청서 상의 구획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질병 미발생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하나의 공통된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따르는 경우
 - (c) 신청서 상의 구획이 다음에 따라 동물 및 동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주무 당국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 2. 회원국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b) 및 (c)에 언급된 질병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 대한 인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a)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 또는 그에 포함되는 질병의 유입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구획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경우
 - (b) 다음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충족되는 경우
 - (i) 제36조 제1항 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ii) 신청서가 적용되는 구획 시설들이 각자의 활동을 시작 또는 재개했으며, 그 구획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안된 공통의 생물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 (c) 신청서가 적용되는 구획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의 질병 미발생 지위를 보장 하도록 고안된 하나의 공통된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따를 경우
 - (d) 신청서에 포함된 구획이 동물 및 제품의 이동을 목적으로 다음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될 경우
 - (i) 육상 동물 및 제품을 보관하는 구획에 관한 제99조 및 제100조
 - (ii) 양식 동물 및 제품을 보관하는 구획에 관한 제183조 및 제184조
3. 회원국이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에는 상기 조항들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이행 행위를 통해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필요하다면 개정을 조건으로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를 인정한다.
 - (b) 위원회는 제9조 제1항 (a), (b) 및 (c)에 언급된 질병 중 어느 질병에 관하여 질병 미발생 구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행 행위는 제266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5. 위원회는 본조에 포함된 조치를 보완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제264조에 따라 다음 모두에 대하여 위임된 조치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 (a) 제9조 제1항 (a), (b) 및 (c)에 언급된 질병 목록에 근거하여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 다음에 관한 요건
 - (i) 질병의 자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결과 및 기타 증거
 - (ii) 생물안전조치
 - (b)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에 관한 주무 당국의 승인을 위한 세부 규정
 - (c) 2개 이상 회원국 영토에 위치한 구획에 관한 규칙
- 제38조 질병 미발생 회원국, 구역 또는 구획 목록
 각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질병 미발생의 지위 또는 질병 미발생 지대 구획의 최신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상기 목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의 인터넷 기반 정보 페이지를 인터넷 페이지에 연결함으로써 회원국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작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 제39조 회원국과 특정 지역의 질병 미발생 지위에 관한 권한 위임
 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제26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해야 한다.
- (a) 다음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질병 특성에 근거한 회원국 및 그 지역의 질병 미발생 지위에 대한 세부 규칙
 - (i) 제36조 제1항 (a)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등록된 종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회원국들이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 (ii) 제36조 제1항 (a)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병 인자 또는 매개체가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이에 적용되는 기준

- (iii) 제36조 제1항 (a)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문제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및 적용되는 조건
- (iv)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결과 및 기타 증거
- (v) 생물안전조치
- (vi) 질병 미발생 회원국 및 그 지역의 예방 접종을 위한 제한 및 조건
- (vii) 제한 구역('완충 지대')에서의 근절 프로그램에 기초한 질병 미발생 구역 또는 구역을 분리하는 구역의 설립
- (viii) 둘 이상의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한 구역
- (b)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승인이 본조 (a)에 따라 채택된 규칙 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상세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1항 (b) 및 (c)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질병에 대한 질병 미발생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승인 요건의 미충족
- (c) 본조 (b)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행 조치를 채택하지 않고 회원국이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질병 미발생 지위의 선언을 입증하도록 제공하는 정보

제40조 이행권한

제36조 내지 제39조 그리고 다음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집행조치를 통해 회원국이 영토, 구역 및 구획에 관한 질병 미발생 지위의 선언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a) 해당 회원국 전체 영토 또는 그 구역 및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의 인정을 위한 신청서
 - (b) 회원국과 질병 미발생 회원국 또는 그 지역 및 구획에 관한 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
- 이행 행위는 제266조 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41조 질병 미발생 지위의 유지

1. 회원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국 영토 또는 그 구역 또는 구획에 대해서 질병 미발생 지위를 유지한다.
 - (a)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질병 미발생 지위의 조건 및 본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규칙이 계속 이행되는 경우
 - (b) 제27조에 규정된 요건을 고려한 감시가 해당 영토, 구역 또는 구획이 질병 미발생 지위를 승인 받은 것과 관련한 질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취해지는 경우
 - (c) 해당 지역, 구역 또는 구획에 질병 미발생 지위를 승인 받은 것과 관련된 질병에 관한 종의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이 이동하는 경우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 (d) 기타 생물안전 조치가 질병 미발생 지위로 승인 받은 것과 관련한 질병의 도입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질병 미발생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질병 미발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음 조건에 관하여 제26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해야 한다.
 - (a) 제1항 (b)에 규정된 감시
 - (b) 제1항 (d)에 규정된 생물안전조치

제42조 질병 미발생 지위의 정지, 철회 및 회복

1. 회원국이 질병 미발생 회원국 또는 지역 또는 그 구획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위반되었다고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즉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질병에 대해 더 높은 건강 상태를 가진 다른 회원국, 지역 또는 구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일련의 질병과 관련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관련 종의 이동을 즉각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 (b) 질병 미발생 지위가 인정되거나 승인된 질병의 확산 방지와 관련 있는 경우 즉시 제 III부 Title II에 규정된 질병 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2. 추가 조사를 통해 다음이 확인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 (a) 의심되는 위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또는
 - (b) 의심되는 위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해당 회원국이 질병 미발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다시 충족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3. 관련 회원국에 의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질병 미발생 지위를 부여한 질병의 발발이 있었거나 제41조 (1)에 언급된 질병 미발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기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회원국은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집행 행위를 통해 제36조 제4항에 따라 부여된 회원국 또는 지역의 질병 미발생 지위의 승인 또는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질병 미발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제37조 제4항에 따라 부여된 구획의 질병 미발생 지위에 대한 인가를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한다.
이행 행위는 제266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5. 본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급속히 퍼지고 동물이나 공중보건, 경제 또는 사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극도의 긴급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제266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각 적용 가능한 이행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질병 미발생 지위의 정지, 철회 및 회복을 위한 규칙을 보충하는 조항에 관하여 제264조에 따라 위임된 조치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요약 및 평가

제36조

- 질병 미발생 국가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제37조

- 질병 미발생 구획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한 요건

제41조

- 질병 미발생 지위의 유지 조건

* 평가

- OIE가 제시하는 기준(구획화)을 도입하고 TPP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지역화의 기준을 가장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질병 미발생 국가 지위 부여 요건 및 이에 대한 철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지역화

<Council Directive 2000/29/EC - 식물검역지침>
관련 조항
제2조 1. 이 지침의 목적 상 (h)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공동체 내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이 지침에서 언급되었으며 공동체 내부에서 최소한 한 개의 지역에 정착된 하나 이상의 유해 생물이 스스로 정착하기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않은 구역 - 이러한 생물체가 지역 사회에서 풍토병이 되어 있거나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해 생물체가 특정 작물에 대해 정착할 위험이 있는 구역
평가
- 일반적인 지역화 규정과는 달리 향후 병원체가 정착할 수 있는 위험도 부각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마. 검사·증명·승인절차

<Council Directive 2000/29/EC - 식물검역지침>
제13a조 3. 제13조 제1항 (ii)에 규정된 공식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는 공동체의 공식 언어 중 적어도 하나로, 그리고 체약국인지와 관계없이 IPPC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수출 또는 재수출 국가의 국내법 및 규칙에 일치하여 발급되었어야 한다. 제1조 제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식물보호 단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바. 긴급조치

<Regulation(EU) 2016/429 -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
관련 조항
제237조 유럽연합 입국을 위한 동물건강증명서, 선언서 및 기타 서류 1. 회원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반하는 동물, 동물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할 경우에만 이들이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a) 제4항 (a)에 따른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 또는 원산지의 관할 기관이 발행한 동물건강증명서 (b) 제4항 (b)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선언문 또는 기타 서류

2. 회원국은 제1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건강증명서가 제149조 제3항 또는 제216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인증 조건과 제149조 제4항 또는 제216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준수하여 제3국의 공인 수의사에 의해 확인되고 서명되지 않는 한 동물, 동물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의 탁송물이 유럽연합 내 반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건강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추적 프로그램 (Trace) 의해 생산, 취급 및 전달되는 전자 동물건강증명서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 동물건강증명서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a) 본조 제1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건강증명서가 제238조 제1항과 제238조 제3항 따라 채택된 규칙에 부합하여 포함시킬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b) 동물, 동물 제품 및 동물 기원의 제품 탁송물의 추적을 보장하고 그러한 위탁물을 전자 동물건강증명서에 연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에 관하여 제264조에 따라 위임된 행동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 (a) 동물, 번식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의 탁송물에 관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 (a) 및 이들 탁송물의 동물건강증명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동물건강증명서 요건의 변경. 단, 위 탁송물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내 동물건강 또는 공중 보건에 미미한 위험을 제기할 경우에 한한다.
 - (i) 동물, 동물 제품 또는 동물 기원의 제품의 종과 범주
 - (ii) 동물, 번식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의 보관 방법과 생산 유형
 - (iii) 사용 의도
 - (iv) 제3국, 원산지 또는 통과 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안적인 위험 완화조치, 또는 유럽연합 내 반입된 후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 내 동물 건강 및 공중 보건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대안적인 위험 완화조치
 - (v) 동물건강증명서 이외의 방법으로 입증된 제3국 또는 관련 영토에 의한 유럽연합 내 반입 요건의 준수 보장 부여
 - (b) 동물, 번식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이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 내 반입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선언 또는 기타 문서를 첨부될 것을 유럽연합에 반입되는 위 대상물에 대해 요구하는 규정

제238조 동물건강증명서 항목

1. 제237조 제1항 (a)에 규정된 동물건강증명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다음의 명칭과 주소
 - (i) 출생시설 및 출생지
 - (ii) 최종목적시설 및 최종목적지
 - (iii) 필요한 경우 관련 동물의 휴식을 위한 시설
 - (b) 동물, 성장 제품 또는 관련 동물 기원 제품에 대한 설명
 - (c) 동물, 성장 제품 또는 동물 기원 제품의 수 또는 양
 - (d) 적용 가능한 경우 동물, 성장 제품 또는 동물 기원 제품의 확인서 및 등록증
 - (e) 동물, 성장 제품 및 동물 기원 제품이 제229조와 제234조 제1항, 그리고 제234조 제2항과 제239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규정된 유럽연합으로의 반입에 필요한 동물 건강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p>2. 제237조 제1항 (a)에 규정된 동물건강증명서는 다른 유럽연합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p> <p>3. 위원회는 이행조치를 통해 다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a)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제237조 제1항 (a)에 규정된 동물건강증명서에 포함될 정보</p> <p>(b) 제237조 제1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언 또는 기타 서류에 포함될 정보</p> <p>(c) 제2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건강증명서, 선언 및 기타 서류에 대한 모델 양식</p> <p>4. 특정 종 또는 부류의 동물, 생장 제품 또는 동물 기원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라 채택된 행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수립하기 전까지, 각 회원국들은 각 국내 규정이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경우 관련된 위험을 평가 한 후 그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요약 및 평가</p>
<p>제2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건강증명서 등 유럽연합으로의 반입이 허용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 전자 동물건강증명서 요건 <p>제23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건강증명서 항목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내 동물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함 - 전자 동물건강증명서 허용 및 항목에 관한 근거 규정 제시

<p><Regulation(EU) 2016/429 -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p>
<p>관련 조항</p>
<p>제260조 권한 있는 당국이 취할 긴급 조치</p> <p>1.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3국 또는 영토에서 기인하는 동물 또는 제품 또는 그러한 동물 및 제품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예시된 질병이나 신종 질병에 의한 감염 또는 오염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재료를 인지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긴급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즉시 취해야 한다.</p> <p>(a)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긴급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관련 동물 및 제품의 파괴 (ii) 동물 검역 및 제품 격리 (iii) 감시 및 추적 조치 (iv) 적절한 경우 제3부 제2편 제1장(제53조 내지 제71조)에서 언급된 모든 질병 통제 조치 (v) 질병이나 위험이 유럽연합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비상조치

- (b)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된 동물 및 제품에 관한 위험도와 그 동물 및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 상기 (a)에 따라 취한 응급조치를 지체 없이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261조 위원회의 긴급 조치

1. 예시된 질병, 신종 질병 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제3국 또는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심각한 동물 또는 공중 보건 상의 이유가 존재할 경우, 위원회는 이행 행위를 통해 그리고 자체 주도적으로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비상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 (a) 동물 및 제품 탁송물, 그 탁송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연합 역내 질병과 위험을 전파할 수 있는 운송수단 및 기타 재료의 유럽연합 내 반입 중지
 - (b) 동물 및 제품, 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연합 역내 질병과 위험을 전파할 수 있는 운송수단 및 기타 재료의 유럽연합 내 반입 요건 수립
 - (c) 그러한 질병이나 위험이 유럽연합 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적절한 비상 질병 통제 조치

이행 행위는 제266조 (2)에서 규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3. 심각한 위험이 발생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관련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제266조 (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각 적용 가능한 이행 행위를 채택해야 한다.

요약 및 평가

제260조

- 동물과 관련한 각종 질병의 유럽연합 내 확산을 막기 위한 회원국의 긴급조치
 - 관련 동물 및 제품의 파괴·격리
 - 감시 및 추적
 - 기타 비상조치

제261조

- 동물과 관련한 각종 질병의 유럽연합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조치
 - 관련 동물 및 운반수단 유럽 내 반입 금지
 - 상기 대상물의 반입 요건 수립
 - 기타 비상적 질병 통제 조치

* 평가

- 긴급사태 발생 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취해야 할 긴급조치와 유럽위원회가 EU 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하는 긴급조치를 구분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조치 구분 규정
- 관련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운송수단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격리 및 반입 통제의 대상물을 매우 폭 넓게 규정

4. 뉴질랜드

가. 위험평가·위험분석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관련 조항
<p>제24E조 선박위험관리기준의 개념</p> <p>(1)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은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p> <p>(a) 선박이 뉴질랜드 영토에 진입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도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p> <p>(b) 수입 보건 기준에 의해 이미 다루어지거나 적용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p> <p>(2)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을 따른다.</p> <p>(a) 그 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 또는 유형을 명기해야 한다.</p> <p>(b) 그 기준이 적용되는 행위의 종류 또는 유형을 명기해야 한다.</p> <p>(3)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p> <p>(a) 그 기준이 기준에 명시된 위험에 적용된다는 것</p> <p>(b) 그 기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적용된다는 것</p> <p>(c) 그 기준이 모든 위험에 적용된다는 것</p> <p>(4)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의 선박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p> <p>(a) 뉴질랜드 영역으로 진입하는 선박</p> <p>(b) 뉴질랜드에 도달하는 선박</p> <p>(c) 배타적경제수역에 도달하는 선박</p> <p>(d) 그들이 뉴질랜드 영역에 머무는 동안</p> <p>(5)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p> <p>(a) 적용 조치</p> <p>(b) 조치에 관하여 제공된 증거나 정보</p> <p>(c) 달성될 결과에 관한 진술 및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p> <p>(6) 선박위험관리기준은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p> <p>(a) 총독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p> <p>(b) 선박의 뉴질랜드 도착 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p> <p>(c)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과 방법</p> <p>제24F조 초안 작성 및 권고</p> <p>(1) 최고기술책임자(Chief Technical Officer)는 선박의 부류 또는 유형과 관련된 위험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선박위험관리기준 제정 절차를 시작한다.</p>

- (2) 최고기술책임자가 이 기준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자는 제안된 기준을 초안할 수 있다.
- (3) 최고기술책임자는 기준 초안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 (a) 천연 자원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부서의 장
 - (b) 최고기술책임자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자들
- (4) 총독에게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고기술책임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협의한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b)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된 부류 또는 유형의 선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 당해 선박이 뉴질랜드 영역으로 생물체를 수입할 가능성
 - (ii) 선박을 통해 뉴질랜드 영역으로 수입될 수 있는 생물체의 성질
 - (iii) 선박을 통해 뉴질랜드 영역으로 수입될 수 있는 생물체가 인체 건강, 뉴질랜드 환경 및 뉴질랜드 경제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
 - (iv) 국제 협약에 따라 뉴질랜드의 의무
 - (c)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되고 그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된 부류 또는 유형의 기술 및 선박과 관련하여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된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 그 요건들이 선박을 통해 수입될 수 있는 생물체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는 정도
 - (ii) 그 요건들이 선박을 통해 수입될 수 있는 생물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는 정도
 - (d)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되고 그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된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i)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요건의 직접 비용
 - (ii) 영국 여왕(the Crown)에 대한 요건의 직접 비용
 - (iii) 요건 이행과 관련된 다른 경제적 요인
 - (iv) 요건 이행과 관련된 기술 및 운영 요소
 - (e) 본 부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최고기술책임자가 고려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5) 최고기술책임자는 총독이 기준을 발할 것을 총독에게 권고한다.

제24G조 발행

- (1) 총독은 제24F조 제5항에 근거한 최고기술책임자의 권고를 받은 후 그 기준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총독이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그 기준이 발효되는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b) 그 기간 내에 기준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4H조 수정, 철회, 정지 및 회복

- (1) 제24F조와 제24G조는 이들 조항이 필요한 수정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도의 범위 내

에서 다음을 적용한다.

(a) 선박위험관리기준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

(b) 선박위험관리기준의 철회 제안

(2) 그러나 최고기술책임자가 기준을 개정하거나 긴급히 철회해야하거나 개정안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는 제24F조 제3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 다음 제4항과 제5항은 최고기술책임자가 선박위험관리기준의 요건이 더 이상 본 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상황이나 지식이 변경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신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최고기술책임자는 총독에게 기준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5) 총독은 최고기술책임자의 권고를 받은 후 기준을 정지할 수 있다.

(6) 제7항과 제8항은 최고기술책임자가 정지된 선박위험관리기준의 요건이 더 이상 본 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상황이나 지식이 변경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신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 최고기술책임자는 총독에게 기준의 회복을 권고할 수 있다.

(8) 최고기술책임자의 권고를 받은 후 총독은 기준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24I조 공고

(1) 총독은 현재의 선박위험관리기준을 기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2) 상기 등록부는 다음을 통해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a) 정규 근무 시간 중 총독 관저

(b) Ministry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제24J조 준수

선박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검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i)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는 승인된 양식의 선언을 검사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ii) 검사관에게 승인된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 및 평가

제24E조

- 선박위험관리기준의 개념, 기준의 규정 사항,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제24F조

- 최고기술책임자에 의한 기준 초안 작성

- 최고기술책임자의 기준 개발 과정에서의 임무

• 협의

• 위험평가 시 고려사항

제24H조

- 선박위험관리기준의 수정, 철회, 정지, 회복 요건

* 평가

- 위험물질의 주요 운송 수단인 선박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EEZ를 포함한 뉴질랜드 역내 반입에 대한 매우 엄격한 통제 기준을 마련함
- 선박의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 주체, 제정 시 고려 요소, 기준의 수정, 철회, 정지, 회복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투명성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관련 조항
<p>제144조 생물안전성 긴급사태 선언</p> <p>(1) 장관의 권고에 따라, 총독은 다음과 같은 모든 유효한 정보를 고려한 후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할 경우 만족한다면, 생물보안성 긴급사태를 포고령의 형태로 선언할 수 있다.</p> <p>(i) 뉴질랜드에 정착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 심각한 환경적 손실 또는 이 모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뉴질랜드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체)가 발생했을 가능성</p> <p>(ii) 뉴질랜드의 일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 심각한 환경적 손실, 또는 이 모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가 뉴질랜드의 일부에 정착되었다는 사실</p> <p>(iii)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유통이 제한적이거나 풍부하다고 생각되었던 생물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 중대한 환경적 손실 또는 이 모두를 일으킬 잠재성이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 또는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었다는 사실</p> <p>(iv) 해충이 그에 대한 국가 해충관리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그러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p> <p>(2) 장관은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총독이 생물안전성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을 권고하기 전 긴급사태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대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협의하여 한다.</p> <p>(3) 생물안전성에 관한 긴급사태는 그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명시하고 긴급사태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p> <p>(4) 생물안전성에 관한 긴급사태의 선언은 그것이 선포될 때 또는 이를 선언하는 포고령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발효된다.</p> <p>(5) 장관은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내에 선언을 공지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시해야 한다.</p> <p>(6) 장관의 권고에 따라 총독은 본 조항에 따라 선언문을 개정, 연장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상기 제5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개정, 연장 또는 취소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p> <p>제150조 생물안전성 긴급사태 규정</p> <p>(1) 장관의 권고에 따라 총독은 생물안전성 긴급사태 선언이 시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과 관련한 생물체의 박멸 또는 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2) 장관은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총독으로 하여금 본 조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 전 이해관계를 대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협의하여 한다. 그리고 장관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할 때 관련 기관의 박멸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한 총독이 이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해서는 아니 된다.</p>
<p>요약 및 평가</p>
<p>제144조 - 생물안전성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의 주체, 절차 규정</p> <p>제150조 - 긴급사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 제정 - 규정의 제정 전 협의</p> <p>* 평가 - 생물안전성에 관한 긴급사태 선언의 내용 요건을 매우 구체적을 명시함</p>

5. 중국

가. 지역화

<p><동물방역법(动物防疫法)></p>
<p>제24조 본 법에서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이란, 천연적인 장벽이나 인공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이내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법정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수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역을 의미한다.</p>
<p><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평가관리방법(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는 '전국동물위생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 무발생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성(省)급 인민정부는 농업부에 무발생지역의 평가를 신청하며, 농업부는 평가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무발생지역 적합 여부를 판정함
<p><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화관리업무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动物疫病区区域化管理工作的意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5년간 중국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장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계획을 시행 - 2010년부터 5년간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동물전염병에 대한 지역별, 유형별, 단계별, 종류별 지역화관리를 전국적으로 시행 - 국가의 평가를 통해 인가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조직의 평가를 통해 국제인가 획득 추진
<p><국가의 중장기 동물질병방지계획(2012-2020년)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国家中长期动物疫病防治规划(2012-2020年)的通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010-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계획의 제정 및 실시 • 전국적으로 지역, 유형, 단계, 종류별로 동물전염병을 구분하여 지역화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관리 동물전염병 종류: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뉴캐슬병, 조류백혈병, 부르셀라병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면적인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건설 추진 - 2단계(2015-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의 장기적·효율적 메커니즘 완비 • 단계적으로 중장기 동물전염병 방지계획 실시

나. 긴급조치

<중화인민공화국입출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제4조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동식물전염 상황이 중국에 전파 가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무원은 해당 국경구역에 대하여 통제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는 동식물 전염지구에서 온 운수장비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해안을 봉쇄한다.
2.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구를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다.
3. 관련된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은 병충해로 오염된 본 조례 제2조에 상술한 입출국 물품에 대하여 긴급 검역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식물 전염 상황 위험 정보를 접수한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문을 지정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와 국가 동식물 검역국에 보고한다. 우전(郵電)운수 부문은 중대한 동식물 전염 보고와 검역 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전달이 되도록 한다.

6. 일본

가. 검사·증명·승인절차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
관련 조항
<p>제6조 수입제한</p> <p>1. 수입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고 농림수산성조례에 규정된 식물검역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을 제외한다.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및 그 용기 포장은 수출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며 그 검사 결과 검역 해충이 묻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그렇게 믿는 취지를 기재 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식물 및 그 용기 포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i) 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 된 식물 및 그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특히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신중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p> <p>(ii)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 포장으로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될 사항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식물방역소 전자계산기(입출력 장치를 포함한다)에 전송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 된 파일에 기록 된 것</p> <p>2.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송된 식물에 대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그 재배지에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 의해 그 재배지에서 행한 검사 결과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역 해충이 묻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그렇게 믿는 취지를 기재한 검사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항 단서(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p>제37조</p> <p>1.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또한 그 검역 결과 감시 대상 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다.</p> <p>(i) 동물, 동물의 시체 또는 뼈, 고기, 달걀, 피부 및 가죽, 머리카락 또는 기타, 그리고 그 용기 및 포장</p> <p>(ii) 곡물 짚(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료 이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것) 및 사료용 사료</p>

- (iii) 앞의 두 항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감시 대상 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동물 침구 재료 또는 기타 유사한 물품
- 2. 전 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 동물의 검역 검사에 관한 정부 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경우
 - (ii)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 검역 물에 대해 전 항의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될 사항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동물검역소의 전자계산기(입출력 장치를 포함한다)에 전송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경우

나. 긴급조치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
제4장 긴급방제
제17조 방제
<p>1. 새롭게 국내에 침입 해, 혹은 이미 국내의 일부에 존재하는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만연하고 유용한 식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에 의해 유용한 식물의 수출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방제를 실시한다. 단, 산림 병해충 등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농림수산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위해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방제를 실시 구역 및 기간 (ii)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의 종류 (iii) 방제의 내용 (iv)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방제의 내용
<p>1. 농림수산대신은 전 조 제1항의 방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 할 것 (ii)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 또는 용기 포장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것 (iii)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 또는 용기 포장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식물 또는 용기 포장의 살균, 제거,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

(iv)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될 우려가 있는 농기구 운반 용구 등의 물품 또는 창고 등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

2. 전조 제1항의 경우 긴급 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농림수산대신은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전 항 제3호의 명령을 하거나 식물 방역관에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부착하거나 또는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 또는 용기 포장의 살균, 제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지시

1. 제17조 제1항 상의 방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은 지방공공단체, 농업인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에 대해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협력 지침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방제가 이루어질 때 국가는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20조 손실보상

1. 국가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 한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 금액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한 명의 농업인을 포함한 세 명의 사정관을 그 지역에서 선정하고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처분은 그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상의 총액이 국회가 승인 한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되어야한다.
6.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에 의하여 그러한 금액을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전항의 소송에서 국가 정부는 피고가 된다.

제21조 보고의무

도도부 현 지사는 새롭게 국내에 침입한, 혹은 이미 국내의 일부에 존재하는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 만연하고 여타 식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I. SPS 대응역량 강화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1995년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SPS 조치 시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SPS 조치 시행의 과학기술적 문제와 통상마찰 문제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SPS 조치의 합리적 이행 문제가 통상현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WTO 체제와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두고 SPS 규율의 명확화와 이에 대한 이행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규모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SPS 관련 분쟁증가의 가능성뿐 아니라 SPS 제도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특히 2015년 10월 합의된 TPP SPS 협정문은 기존에 WTO SPS 협정에 비해 동등성, 위험평가, 지역화, 투명성 등 SPS 조치 관련 핵심적 사항에 대해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회원국의 이행 의무가 보다 강화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TPP 발효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SPS 규범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SPS 시스템은 현행 WTO SPS 협정 이행뿐만 아니라 향후 WTO Plus적인 강화된 SPS 이행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흡한 수준임.
-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호주, EU, 일본 등 검역선진국에 비해 SPS 관련 인력과 조직, 관련 부서간 조율 및 조정 체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절차 등 기초 인프라가 미비한 측면에서 비롯됨.

-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추세에서 우리나라가 SPS 조치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최소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SPS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 SPS 조직과 인력 보강 및 법규 정비 등 SPS 인프라 시스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WTO SPS 협정 PLUS 적인 규율 강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SPS 조치와 관련하여 효율적 국내전파 및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농축산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내 SPS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조속한 시일내 SPS 관련 조직·제도·법률 등 제반사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제적인 SPS 규범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PS 이행 체제의 점검을 통해 최대한 빨리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 선진국 수준의 예산, 장비, 인력, 조직, 법규 정비 등의 기반 확충 노력이 요구됨.

2. SPS 대응역량 강화 추진 방향

가. SPS 인적·물적 기반 투자 확대

- SPS 조치는 무역제한조치가 아닌 국민 건강 및 동식물 보호, 식품 안전 등을 위한 조치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제규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함.
- SPS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 동식물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농식품 무역관련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 및 물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식품 무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외래병해충 및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SPS 조치의 도입과 유지는 불가피하게 무역상대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해당사국과의 무역분쟁의 성패는 무엇보다 과학적 증빙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SPS 관련 전문 인력과 과학적 기반 확충은 필수적임.

- 특히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SPS 조치를 시행하고, SPS 조치해제를 요구하는 수출국에게 효과적 방어 논리 및 우리의 수출 관심 상품에 효과적 공세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 기술적 능력과 통상협상적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SPS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우선 해당 전공자를 보다 다양하게 선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력채용 방식에 탄력성을 두고, 품목별,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도 WTO SPS 협정의 이행경험이 있고, 나름 선진적인 동식물검역(SPS) 관련 전문인력과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는 있지만,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인적·물적 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향후 WTO 협정 이행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FTA 협정 체결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날 SPS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방어와 공세를 할 수 있는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적, 물적 기반 확충이 요구됨.
 - SPS조치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분석 및 통상 대응을 위한 관련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과학적 위험평가 분석을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의 보강은 물론, 다양한 품목, 분야에서 분쟁 사안이 돌출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대비와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무역상대국과의 분쟁발생 및 분쟁해결 대비 SPS 관련 법률 및 경제분석 전문가 확충 노력이 필요

나. SPS 관련 국제기준, 국내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강화

- SPS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국내 조치와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만일 국제기준과 불일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제공 작업을 통해 설득논리의 마련과 통상마찰 축소 노력이 요구됨.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위생 및 검역 관련 규정과 제도와의 조화와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함.
- 위생 및 검역문제는 과학기술적 문제와 통상 문제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위험분석 및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객관적 위험평가분석 및 평가모델의 정립이 필요함.
- 또한 관련 상대국의 위생 및 검역 관련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규, 제도, 기준의 영문화 작업이 필요함.
- 무역상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위생, 환경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 도입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농식품에 대한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능력 증진차원에서 사전에 과학기술적 객관적 근거 및 합리적 논리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농식품에 대한 상대국의 기술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및 주장 논리 마련이 필요함.

다. 주요 수출국별(지역별) SPS 관련 체계적 정보 수집 및 위험평가 관리 체제 구축

- 주요 농산물 수출국별(지역별), 수입품목별,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위험평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예방조치 혹은 잠정 조치 도입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국제적인 지역화, 동등성 인정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방적 검토(Precautionary Considerations : 이하 사전 예방원칙 이라함) 및 소비자 관심(Consumer concerns)사항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동식물위생 검역 및 식품안전 위협이 있을 때에는 적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입농식품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임.

- 예컨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품목별/수입업자별 1년 단위의 수입허가(import permit) 요구, 고위험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험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위해 농식품 수출국가에 대한 샘플링 조사 확대 등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대규모 수입국으로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동, 멜라민 함유 사료 및 식품수입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입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바 농식품 분야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위한 주요 수출국별, 수입품목별, 수입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 및 위험관리 체제구축이 필요함.
- 물론 아직 국제적으로 사전예방원칙의 개념 및 적용조건 등이 정립되지 않아 SPS협정 등 국제법과의 일부 충돌가능성,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수출국들의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들의 농축산물 및 식품관련 SPS 및 TBT 조치 도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객관적 자료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전예방원칙 도입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주요 수출국별, 지역별, 수입품목별,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위험관리 체제구축은 향후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화 수용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라. SPS 관련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

- SPS 관련 국제적 회의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신속히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국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우리의 입장과 이해가 SPS 관련 국제규범 제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SPS 관련 규범제정 및 개정, 그리고 이행 관련 사항이 논의되는 국제 회의와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SPS 규범관련 국제적 동향과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대응체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마. SPS 관련 무역분쟁 대비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

-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무역 분쟁의 30% 이상이 농식품 관련 SPS 혹은 TBT 관련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주요국들은 자국 국민과 동식물 위생 및 건강을 위해 농식품 관련 SPS/TBT 조치의 도입과 운영상황을 통보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SPS/TBT 조치에 대해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SPS/TBT 조치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이들 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진 대부분의 무역 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임.
-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농식품 관련 SPS/TBT 조치와 관련한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 구축이 요구됨.
- 무엇보다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칠레, 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 이행 심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로 인해 상대국의 농산물 수출 감소시, 이해 당사국은 SPS 국제규범 준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공세적으로 우리에게 통상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에서 SPS 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SPS 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SPS 협정의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인 위험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증진시키면서 외래 질병 및 병해충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국제 SPS 협상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들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SPS 관련 무역분쟁 대비 대응체계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 가능 농산물의 해외 시장개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역 상대국의 SPS 조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도 효과적일 것임.
- SPS 관련 통상 대응 능력 강화는 또한 사전적으로 WTO 혹은 FTA 분쟁 해결절차로 회부되기 전에 SPS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

바. SPS 규범 이행 관련 조직의 확충과 SPS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투명성 증진 등 SPS 관련 국제규범 의무이행 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우리나라 SPS 담당 부서와 인력만으로는 의무 이행 준수가 불가능한 바, SPS 관련 부처 및 기관별로 대내외 협력과 규범 문제를 담당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SPS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SPS 규범 이행 측면에 가장 큰 문제는 대외적인 SPS 투명성 증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데, 주로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미흡, 내·외부 투명성 및 의견수렴 활동의 미흡, 대응 인력의 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됨.
 - WTO SPS 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SPS 조치의 투명성 이행 차원의 적절한 기한내 SPS조치 통보문 작성, 통보문의 번역, 검토 및 관련 질의와 응답 의무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
 - 우리나라 SPS조치에 대한 상대국 정부와의 의견 교환과 협력, 이해 당사자 등 대중으로부터의 의견 회신 및 타국 SPS조치에 대해 정보전파와 대응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
 - 상대국으로부터의 질의나 반대의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부족, SPS조치 통보문, 관련 법적 근거, 검토 의견, 과학적 근거자료 등의 제공(웹사이트 게시 포함)을 위한 전담 관리 인력 매우 부족
- 따라서 우리나라 SPS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 SPS 규범의 핵심적 의무 사항이며, 최근 SPS 규범 중 가장 의무가 강화 추세에

있는 투명성 이행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충, 그리고 관련조직과 기관의 유기적 연계 및 긴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현재 SPS 조치의 투명성 이행 의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식품부 내 검역정책과 SPS 담당업무(2인) 조직을 WTO, IPPC, OIE, CODEX, FTA 등의 농식품 관련 SPS 조치관련 규범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독립부서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가칭, SPS 규범이행과)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내 식물검역부와 동물질병관리부의 경우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여 각자 전문 영역에서의 SPS 관련 국제적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농식품부 관련 부서(가칭, SPS 규범이행과)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각 분야별 SPS 통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진청, 산림청 등 국내 방역부서와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대내외 SPS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의견 교환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사. SPS 관련 국제규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 SPS 조치 관련 국제 규범 강화 움직임과 함께 위에 언급한 주요 SPS 대응역량 강화 방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총괄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신설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SPS 관련 핵심조항(동등성, 위험평가, 지역화, 투명성 등)에 대한 국제 이행 규범의 강화 추세에서 대내외적 SPS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안정적인 조직과 업무절차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이는 현행 WTO SPS Plus적인 투명성 강화 동향 뿐 아니라 위험분석, 동등성 평가, 지역화 평가, 신속한 협의 등 직·간접적으로 투명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3. SPS 조직체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 개선방향

□ 현재 국내 조직체계는 WTO를 중심으로 한 SPS 규범 이행 강화 추세에서 우선적으로 '투명성' 관련 부문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SPS 조치 투명성 이행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투명성 문제는 현재 WTO SPS규정 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SPS 관련 국내제도 개선 및 조직 확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SPS 조치 관련 국내기관을 총괄 지휘 및 조정하면서 국제기구나 국제협정(WTO/PPC/OIE/CODEX/FTA)의 SPS 관련 규범 이행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독립팀(혹은 과)를 농식품부에 신설하고(가칭, SPS규범이행팀(과)), 이러한 농식품부내 신설되는 SPS규범 이행팀(과)의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센터(가칭, SPS지원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이 필요함(그림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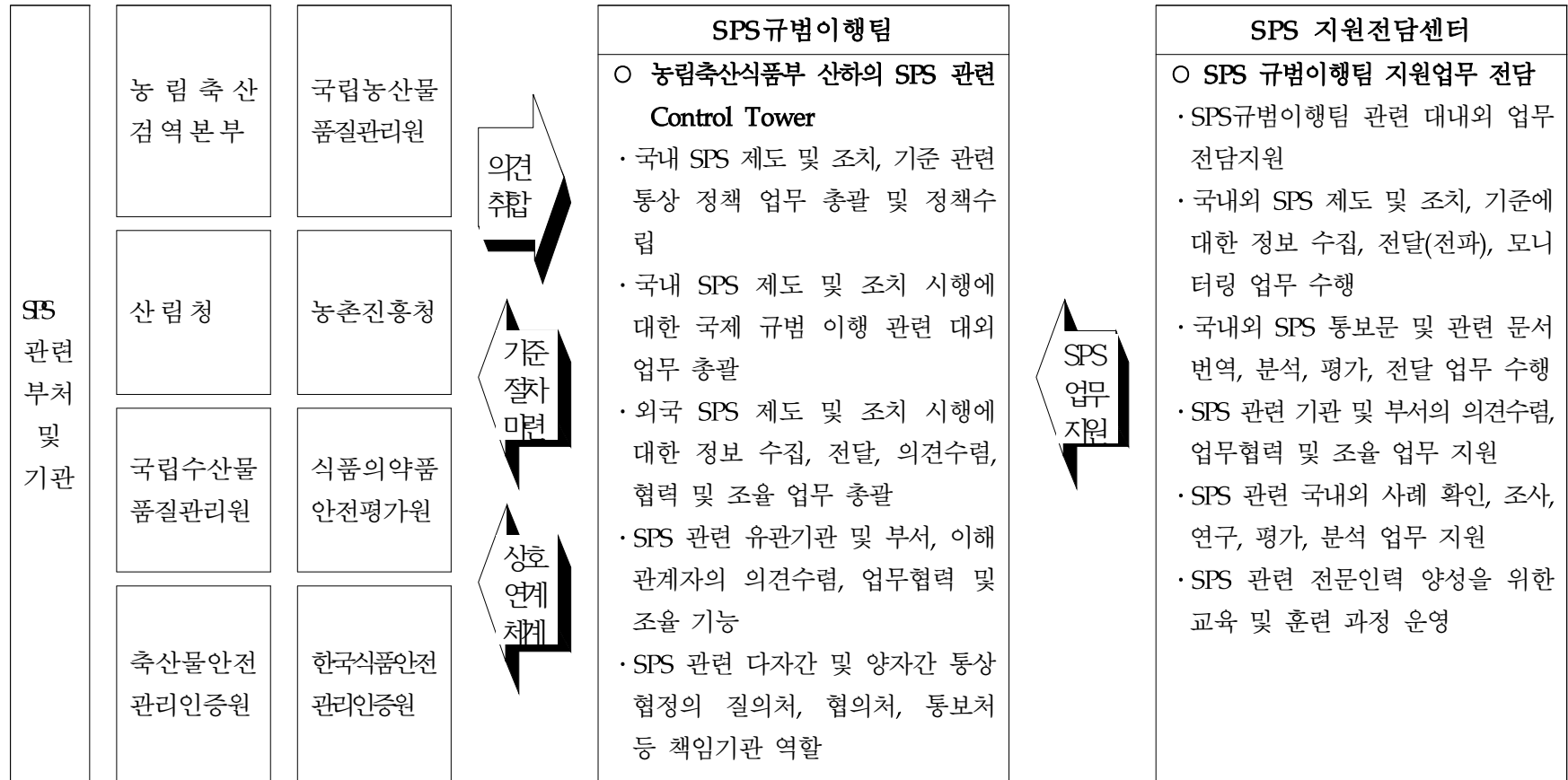
○ SPS 규범이행팀(과)의 역할과 기능

- 국내외 SPS 제도 및 조치, 기준 관련 통상정책 업무 총괄 및 정책 수립
- 국내 SPS 제도 및 조치 시행에 대한 국제규범 이행 관련 대외업무 총괄
- 외국 SPS 제도 및 조치 시행에 대한 정보수집, 전달, 의견수렴, 협력 및 조율 업무 총괄
- SPS관련 유관 기관 및 부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업무협력 및 조율 기능
- SPS관련 다자 및 양자간 통상협정의 질의처, 협의처, 통보처 등 책임기관 역할

○ SPS 지원전담 센터의 역할과 기능

- SPS 규범이행팀(과) 관련 대내외 업무 전담지원
- 국내외 SPS 제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정보 수집, 전달(전과), 모니터링 업무 수행
- 국내외 SPS 통보문 및 관련 문서 번역, 분석, 평가, 전달 업무 수행
- SPS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수렴, 업무협력 및 조율 업무 지원
- SPS 관련 국내외 사례 확인, 조사, 연구, 평가, 분석 업무 지원
- SPS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운영

<그림 7-1> SPS규범이행팀(과)과 SPS 지원전담센터 운영(안)



□ 위와 같은 SPS 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농식품부내 SPS규범이행팀 신설과 함께 SPS 지원전담센터 설치를 통한 SPS 유관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조율 체계의 운영은 투명성 이외에 동등성, 지역화, 협력적 기술 협의 등 기타 SPS 관련 규범 조항에 대한 원활한 이행뿐만 아니라 SPS 조치 관련 무역분쟁 발생시 통상이익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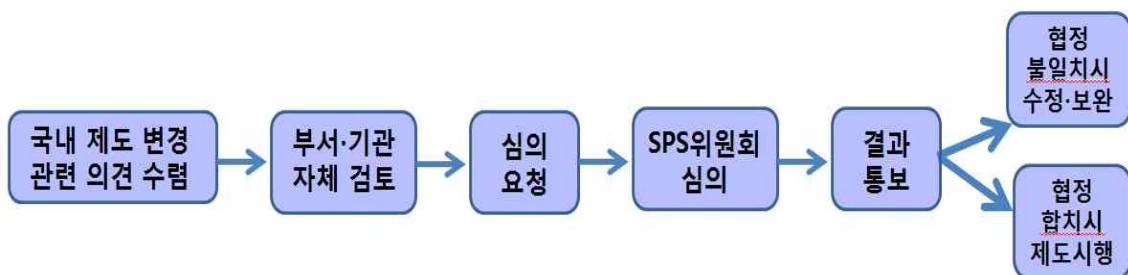
○ 앞서 분석된 TPP/SPS 협정과 같이 향후 SPS 조치와 관련된 국제규범은 무역원활화와 투명성 증진이라는 명목하에 보다 강화된 글로벌 이행 규범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SPS조치 관련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조 및 정책조율 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이때 무엇보다 빠른 시일내 WTO SPS 협정의 투명성 관련 규율 강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 SPS 조치의 통보, 정보제공, 협의의무(7조와 부속서 B)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통상마찰 최소화에 기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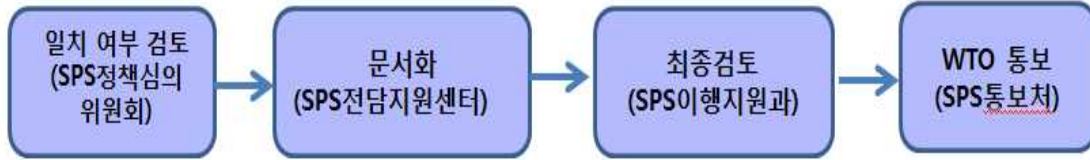
○ 특히 SPS 관련 국내 제도 도입이나 변경 시 전문 부서의 사전검토와 의견조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 매뉴얼은 <그림 7-2>와 같음.

<그림 7-2> SPS 관련 국내제도 도입 혹은 변경 시 사전검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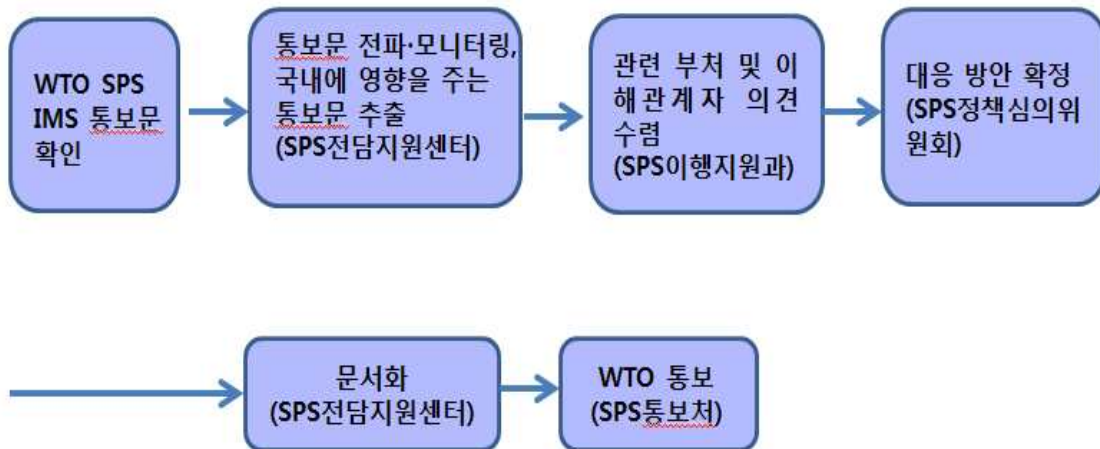
○ 한편 SPS 투명성 규범에 대한 효과적 의무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국내 SPS 조치의 WTO 통보절차 매뉴얼은 <그림 7-3>와 같음.

<그림 7-3> 국내제도 도입 혹은 변경시 WTO 통보 절차



- 또한, 다른 교역대상국이 통보하는 SPS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리의 농업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외국 통보문에 대한 국내 대응 절차 매뉴얼은 <그림 7-4>와 같음.

<그림 7-4> 외국 통보문에 대한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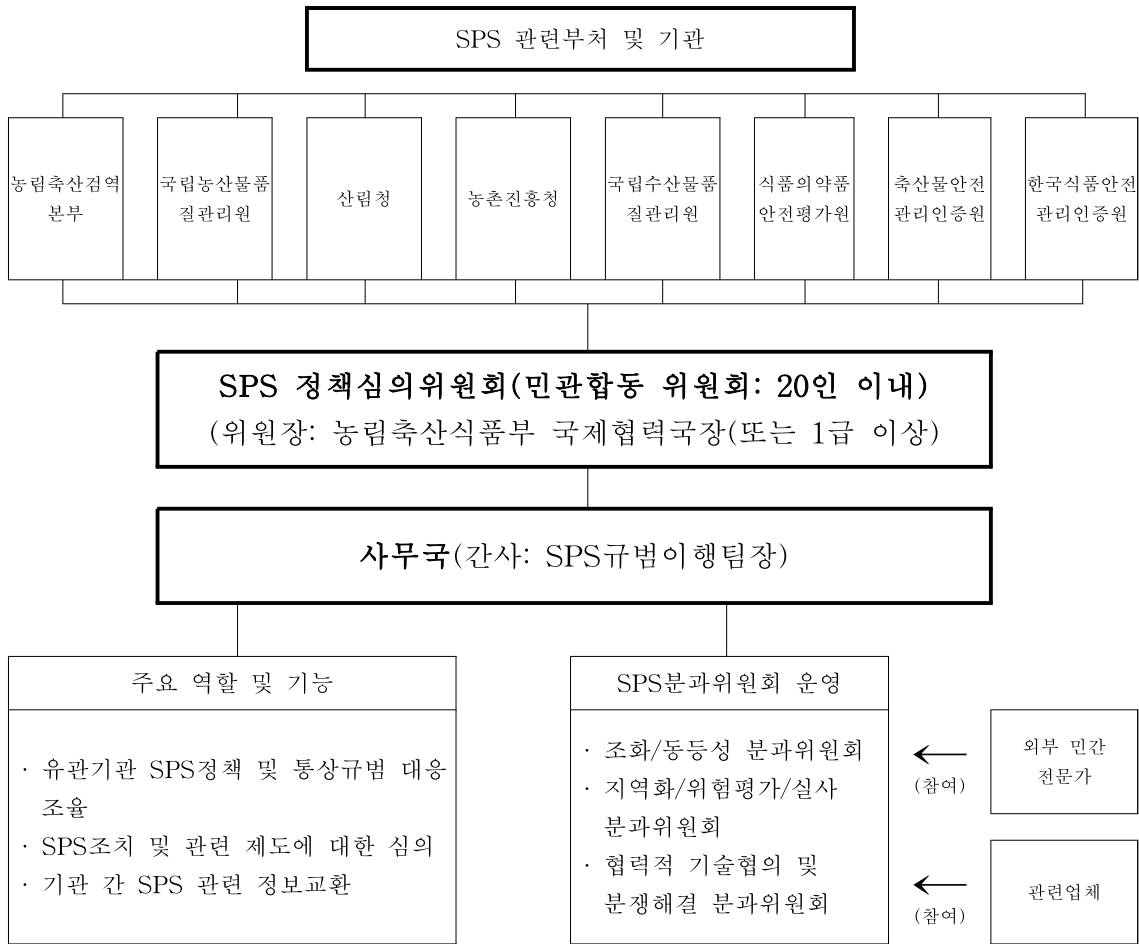
- 아울러 효과적인 SPS 조치 관련 유관기관 간의 통합된 정보교환 및 정책조율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SPS 관련 국내 부처 및 기관간의 정책조율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구속력 있는 법적근거 하에 SPS 조치와 관련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SPS 정책심의위원회(SPS Policy Steering Committee: SPSC)을 구성하여 SPS 규범 관련 원활한 의무 이행과 국내외 투명성 증진조치에 대한 최종 정책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 산하에 SPS 관련 주요 이슈별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를 설치하여 SPS 관련 조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확인, 조사, 연구,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때 농식품부내에 설치되는 SPS 규범이행팀(혹은 SPS규범이행과)은 유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SPS 관련 주요 이슈별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운영의 실무 책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이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에 근거한 SPS 유관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조율 체계의 수립과 운영은 향후 무역원활화와 투명성 증진이라는 명목하에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SPS 관련 국제규범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의 위원장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또는 1급 이상)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SPS조치 관련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의 관련업무 책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함.**
- 또한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의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은 농식품부내에 설치되는 SPS 규범이행팀(혹은 SPS규범이행과)이 담당함.
 - 이때 SPS 규범이행팀장(혹은 SPS규범이행과장)은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의 간사 역할과 함께 SPS 관련 주요 이슈별 문제를 논의하는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의 실무 책임을 맡도록 하고, SPS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는 SPS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SPS 관련 이슈별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SPS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정책심의협의체로 구성될 ‘SPS정책심의위원회(SPSC)’와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 산하 SPS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역할과 기능) 국내 SPS 관련 부처 및 기관의 SPS 업무 협조 및 정책조율, SPS 통상규범 관련 이행 및 대응방안 조율, 대내외적인 SPS 투명성 증진을 위한 업무정보교환 및 협력, 국내외 SPS조치 관련 정보 취합 및 배포와 관련된 정책조율 기능을 수행해 나감.

- SPS 정책심의위원회(SPSC): SPS 관련 유관 부처와 기관의 정책 최종 조율
- SPS 사무국(SPS 규범이행팀): SPS 정책심의위원회 보좌 및 SPS 분과위원회 총괄, 유관기관 업무조율 기능
- SPS 분과위원회(SPSC subcommittee): SPS 관련 이슈별 실무협의 기능

<그림 7-5> SPS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VIII.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개선 방안

1. 현행 국내 관계법령체계 종합정리 및 주요 시사점

가. SPS 관련 통합적 대응 메커니즘의 부재

□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검토·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동·식물의 방역·검역 및 안전, 식품의 위생 및 안전, 농수산물(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 등 각 부문에 걸쳐 SPS 관계법령이 다수 산재해 있으며, 그 대응 부서/기관과 기능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및 산하 관련 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대응 부서/기관은 각각의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당 분야의 SPS 조치에 관한 권한 및 책무, 대내외 정보전달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 기타 관련 정부부처-기관 간 및 정부-민간 간 협의·협력체계 등 SPS 대응 체계를 부분적·산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8-1> 우리나라의 SPS 대응 관계법령 및 부서/기관/기능체계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식물) 「식물방역법」, 「비료관리법」 (농산물/농산가공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
SPS 조치 조항	→	가축방역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등	→
SPS 조치 조항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	→
SPS 조치 조항	→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등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 SPS 대응·담당 부서/기관 및 기능의 통합·연계, 조정 시스템 부재 ○ SPS 대응·담당 부서/기관 간 보고·협의·협력 및 SPS 조치·절차 관련 정보 공유·검토 시스템 결여	→
			○ 관계법령 정비 ○ 통합 법률 신규 입법 ○ 통합 SPS 위원회 설치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PS 문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이슈로서 다수의 대응 부서/기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부서/기관 간 협의·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임.

- 이처럼 SPS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지만, WTO, TPP, FTA 등 국제통상규범체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대외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산물·동식물·식(료)품 등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대외적 SPS 조치에 관하여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연방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협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표8-1> 미국의 SPS 대응 연방정부 부서/기관/기능체계 개요

부서/기관	SPS 대응 권한·기능·역할	
무역대표부 (US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 무역장벽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을 총괄 통합·조정함.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서 타 연방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특히 SPS 정책에 관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기관 간 SPS 정책을 통합 조정함. 	
농무부 (US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서 외국의 SPS 조치 문제에 관한 대외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농무부 산하 아래의 3개 기관이 다음과 같은 권한·책무·기능·역할·업무를 수행함. 	
	해외농업국 (F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 무역장벽 문제의 통합 조정·집행 등 대외 농업 정책을 주관함. -SPS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SPS 대응 자금을 지원함. -무역원활화 창구(trade facilitation desk)를 설치·운영함으로써 SPS 조치에 관한 대응을 포함하여 대외 수출 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를 제공 지원함. -SPS 이슈에 관한 여러 관계부처 간 및 민-관 간 협의·협력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 멤버로 참여함. -국내 SPS 조치의 변경·제정 등에 있어서 정부부처 간 실무팀을 구성하고 통합 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함.
	동식물검역청 (Animal and Plant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과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교역의 증대를 도모함. -SPS 조치의 과학기반 기준을 연구·개발·발전시킴으로써

	Inspection Service)	SPS 조치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함.
	식품안전검사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미국 농무부 소속 공공보건기관으로서, 각종 식료품의 공급·표지부착·포장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책임기관임. -따라서 SPS에 관한 대외 무역장벽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 중의 하나임.
환경보호청(EPA)		-살충제, 농약, 화학물질 등에 관한 SPS 조치를 규율함.
식품의약품청 (FDA)		-국내생산 및 수입 식품의 안전에 관한 SPS 조치를 규율함.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농산물의 대외 수출에 있어서 SPS 무역장벽 문제를 주관함.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SPS 조치 및 정책 등 대외 무역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최종 책임기관임. -SPS 조치에 관한 정부부처 간 협의·협력체의 일원으로 참여함.

*SPS 이슈에 관해서는 특히 대외 무역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상기 관계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 관계법령체계 상 각 부문별 SPS 조치에 관한 권한 및 책무 등이 각각의 소관·담당 부서 및 대응기관별로 기계적으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계 및 협의·협력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개별 관계법령 규정은 각 소관·담당부서 또는 대응기관 간 일반적 협조 요청 권한이나 협조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SPS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전달 및 의사결정 체계, 정부부처-기관 간 및 정부-민간 간 협의·협력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음.
- 이는 소관·담당부서 및 대응기관을 통한 대내외적 협상·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등에 있어서 체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기계적으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 및 소관·담당 부서-대응기관 체계로는 관계부서/기관 간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인 협의와 협력, 종합적인 의견수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대내외적 의사 결정과 대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전달, 대내외적 투명성 등 SPS 대응 능력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음.

□ SPS 통보·접수 및 대내외적 대응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각 분야별 SPS 조치의 강화·신설·변경, 관련 법률·법령·규정·요건·절차·기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전달·공유, 소관·담당부서 및 대응기관 간 공동 확인 및 검토, 대응조치의 통합·조정 및 조율 등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계법령 규정은 상기 사항들을 총괄하는 적절한 구심체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담당부서와 대응기관 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예컨대, 각 소관·담당부서 또는 대응기관이 개별적으로 관할하는 SPS 조치, 관계법령·규정·요건·절차·기준 등의 제·개정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 SPS 의무화 조항 합치성 여부, 통보 대상의 결정 및 통보문 작성 등에 관한 통합적인 검토·확인·조정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이로 인해 대외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타국의 SPS 조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경우에 따라서는 SPS 조치에 관한 통보문 작성·제출, SPS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에 있어서 중복 또는 누락 상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절차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의 대내외적 통보·전달 및 대응조치의 검토·확인·조정 등에 관한 절차체계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닌, 내부적인 결정이나 지침 또는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SPS 조치의 대내외적 투명성·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SPS 통보문 작성 및 통보·접수, 국내적 검토 및 대응조치 마련, 의견서 작성·통보 등에 관한 절차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규범의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규정의 미흡

□ 현행 관계법령체계에 따르면, 동·식물의 방역·검역 및 안전, 식품의 위생 및 안전, 농수산물(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 등 각 부문별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SPS 조치의 국제규범 이행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데 필요한 기본 근거법률이 마땅치 않은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가 기 가입한 WTO/SPS협정 및 FTA/SPS 규정뿐만 아니라, RCEP의 SPS chapter는 TPP/SPS chapter와 유사한 의무사항을 규정 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재협상 시 TPP/SPS chapter의 의무규정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되는 등,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국제표준과의 조화, 동등성, 위험평가/분석 및 과학적 근거, 지역화, 투명성, 검사·증명·승인절차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 걸쳐 있는 SPS 의무화 조치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적으로 분화된 현재의 관계법령체계로는 이러한 통합적·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대응규정들 역시 국제규범의 의무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동·식물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산물(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가축·축산물 등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WTO/SPS협정, TPP/SPS챕터, FTA/SPS규정의 의무화 조치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모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확인·검토작업을 통해 각각의 관계법령 규정을 적절히 정비·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합 법률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SPS 의무화 조치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간극 또는 불비를 입법적으로 메우고 보완해야 할 것임.

<표8-2> SPS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규정 현황 요약(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계법령 의무화항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 화	일부 직접 규정	법률에서 일부 간접 형태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행정규칙의 규정 본문에서 세부 사항 반영		해당 없음	

관계법령 의무화항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동등성	일부 간접 규정	법률에서 일부 간접 규정 / 각종 고시·예규·훈령 등에서 기준· 절차 등 설정	해당 없음		
위험평가/분석	절차, 방법, 기준 등 일반 사항 규정	법률에서 절차, 방법, 기준 등 일반 사항 규정 / 각종 고시·예규· 훈령 등에서 구체화	일부 품목(LMO농 수산물) 제한적 규정	절차, 방법, 기준 등 일반 사항 규정	해당 없음
지역화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방법, 기준 등 규정	법률에서 간접 형태로 지역화 개념 수용·규정 / 하위 행정규칙을 통해 세부 사항 규정	해당 없음		
투명성	부분적 분산 규정	수입제한조치 통보절차와 주관기관 명시	해당 없음		
검사/증명/승인절차	현지감사(조사) 방법, 절차, 기준 등 상세 규정	국의 생산지검역 방법, 절차, 기준 등 규정	검사·검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규정	구체적 규정 없음	검정(증명서)· 검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규정
기술지원/협력	구체적 규정 없음	구체적 규정 없음	해당 없음		
이행기구/기관	규정	수입제한조치 통보절차와 주관기관 명시	해당 없음		
협의/분쟁해결	구체적 규정 없음	구체적 규정 없음	해당 없음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도 위해평가, 안전성 심사, 수입·판매 금지, 검사, 관련 위원회 및 SPS 조치 시행기관 등 수출입 SPS 조치 관련 일반적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계법령과 마찬가지로 WTO, TPP, FTA의 SPS 의무화 조치에 관한 통합적 대응 메커니즘과 국내법적 대응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SPS 조치의 대내외 통보·전달·공유 등 투명성 제고, 해외 실사절차의 공동 시행 및 조율, 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협정의 준수, 이행기구/기관의 통합·조정·조율,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공동 대응 등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부서/기관 간 공동 협의·협력대응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2.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개선 방안

가. 입법형식의 검토

- 이상과 같이, 현행 관계법령체계로는 국제규범의 SPS 의무화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므로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해야 할 것임.
-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체계 정비·개선방안으로는 ① 기존 관계법령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고시·예규·훈령 등 행정규칙) 내 SPS 의무화 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정비·개정 및 보완하는 방안과, ② 지금까지 살펴본 SPS 의무화 조치에 관한 사항들과 대응조치들을 통합하는 별도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① 기존 관계법령의 정비·개정·보완 방안의 경우, 동·식물의 방역·검역·안전 및 농산물(가공품)의 검역·안전 부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외에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등이 정비·개정 대상 법률이 될 것이며, 이들 관계법령 내에 WTO/SPS 협정, TPP/SPS 챕터, FTA/ SPS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화 조치 규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기타 식품의 위생 및 안전, 수산생물과 수산물(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 부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소관 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개정·보완 작업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임.
- ② 별도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는 방안의 경우, SPS 국제규범 및 의무화 조치에 관한 별도의 국내적 이행입법을 통해 SPS 조치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들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SPS 의무화 조치 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만, 대외 무역관계에 있어서 수출입 SPS 조치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SPS 조치 관련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SPS 조치의 통합·검토·확인·조정 에 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SPS 대응 체계의 통합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기존 관계법령의 정비·개정 방안의 경우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서는 개정·정비 작업이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작업이 비교적 수월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반면에, 정비·개정 대상 법률·조항·내용의 선정 작업 및 세부적인 정비·개정 작업의 어려움, 해당 법률 내 여타 규정들 및 타 부처/부서/기관 소관 관계법령 규정들과의 관계정립 및 조화 문제, 다수의 관계부처/부서/기관들 간의 협업·공조체계 구축의 곤란함 등이 주요 단점이라 할 수 있음.
-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신규 제정하는 방안의 경우 가장 커다란 장점은 SPS 조치에 관한 통합적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데 있음. 반면에, 신법

을 제정하는데 따른 입법 부담과 비용의 증가 및 입법절차상 애로, 기존의 타 관계법률과의 관계 및 위상 정립 문제, 신규 입법의 필요성·당위성·불가피성·타당성·정당성의 제시 및 설득, 추가적인 입법로드맵의 수립 필요성, 입법과정에서 장기간 소요 등이 주요 단점이라 할 수 있음.

<표8-3>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형식의 비교·검토

형 식	주요 장점	주요 단점	주요 과제 및 쟁점
기존 관계법령 정비·개정 방안	정비·개정 작업의 상대적 수월성 및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정비 대상 법률의 선정 및 세부적인 개정·정비 작업의 복잡성 ○ 규정 상호간 및 법률 상호간의 관계 및 조화 문제 ○ 타 관계부처/부서/기관 간 협업·공조체계 확보의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법률의 선정 ○ 대상 법률 내 개정 대상 규정의 파악 및 개정 범위 설정
별도의 법률 신규 제정 방안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를 직접적 이고 명확하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담과 비용의 증가 및 입법절차상 애로 ○ 기존의 타 관계 법률과의 관계 및 위상 정립 문제 ○ 신규 입법의 필요성·당위성·불가피성·타당성·정당성의 제시 및 설득 ○ 추가적인 입법로드맵의 수립 필요성 ○ 입법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 ○ 기존의 타 관계법령과의 관계 및 위상 정립

□ 따라서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개선을 위한 입법 형식은 결국 입법정책적 판단과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검토 분석 결과, 기존 관계법령의 정비·개정 방안보다는 별도의 법률 신규 제정 방안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며 실효적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관계법령체계는 SPS 대응체계를 각 영역·부문별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분화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SPS 대응체계의 부조화를 극복하고 통합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리함.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부서/기관 간 SPS 조치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조정·조율할 수 있는 협의·협력·조정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SPS 대응체계 확립이 필수적임.

- 개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존 관계법령체계로는 다양한 부문의 SPS 대응조치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관되는 사안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조치의 수립·시행·관리주체가 분산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는 대응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근거법률과 대응주체의 불명확, 정책수단 간 연계 부족, 국제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조치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기존 관계법령들 내 관련 규정 모두를 개별적으로 정비·개정하는 작업은 매우 산만하고 복잡하며 과도한 입법부담을 지움으로써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법률규정 및 관계법령 상호간의 연계성·체계성 및 조화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것임.

<표8-4> 기존 관계법령 정비·개정 방안의 경우 정비·개정·보완 수요

관계법령 의무화항목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조 화	법률에서 국제표준 등과의 조화의무 직접 명시 /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	법률에서 국제표준 등과의 조화의무에 관한 선언적 규정 명시 검토
동등성	법률에서 동등성 인정의무 직접 명시 /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	법률에서 동등성 인정의무 직접 명시
위험평가/분석	위험평가/분석에 있어서 국제협정 준수 의무 명시	위험평가/분석에 있어서 국제협정 준수 의무 명시
지역화	더욱 구체화·세분화된 지역화 개념을 직접적으로 수용 및 준수 의무 명시	해당없음 (기 적용)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chapter) 신설 규정	투명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chapter) 신설 규정
검사/증명/승인절차	절차의 협정 준수 의무 명시	절차의 협정 준수 의무 명시
기술지원/협력	필요시 대외 기술지원·협력의무 명시	필요시 대외 기술지원·협력의무 명시
협의/분쟁해결	협의/분쟁해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기반 근거규정 명시	협의/분쟁해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기반 근거규정 명시

□ 따라서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SPS 의무화 조치에 관한 사항들과 대응조치들을 통합하는 별도의 법률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에서 별도 정리 및 제시하고자 함.

나. (가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국제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안) 주요 내용

(가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국제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식물 등의 위생과 안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조치 등”이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2」(정의) 제1조에 따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2.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과 관련되는 국제협정을 말한다.
3. “동식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
 - 나.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의 「식물」
 -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

4. “위험분석”이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장을 말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란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등”이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동물보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7. “수산생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수산생물·수산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수산생물·수산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 등과 규정을 말한다.
8. “식품 등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위생조치 등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 등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위생조치 등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에 따른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위생조치 등 기술 및 정책의 보급과 국제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책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생 및 식물위생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6조(위생 및 식물위생 정책심의위원회) ①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에의 합치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생조치 등 관련 국제표준·지침·권고에의 합치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동식물 등의 수출입과 방역·검역·안전에 관련된 법령·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위생조치 등의 동등성 검토 및 인정에 관한 사항
6. 위험분석 기술·기준·절차·방법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저발생 지역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위생조치 등 관련 대내외 정책과 업무의 개발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위생조치 등 관련 대내외 정보의 취합·조사·연구·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위생조치 등 관련 대내외 정보의 교육·홍보 및 민간활동·대중 참여 지원 등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위생조치 등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 상대국의 위생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위생조치 등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위생조치 등 관련 기술과 정책의 국제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또는 각 소속부처를 대표하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2. 위생조치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위생조치 등 관련 사안의 사전·사후 연구·조사·분석·확인 및 사안별 실무 협의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종합·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조치 등 관련 사안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제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③ 사무국의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위생조치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 이행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이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련된 연구·교육·지원기관 또는 단체를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와 사무국의 위생조치 등 분야 대내외 업무의 지원
2. 위생조치 등 분야 국내외 법·규정·제도·조치·기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달(전파) 및 모니터링
3. 위생조치 등 관련 국내외 통보문 및 관련 문서의 수집, 번역, 분석, 평가 및 전달(전파)
4. 위생조치 등 관련 행정기관 및 부서 간 의견수렴, 업무협력, 실무협의 및 조정
5. 위생조치 등 분야의 국내외 사례 확인·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6. 위생조치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평가 및 관리

제3장 동식물 등의 수출입 및 안전관리

제10조(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의 원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에 따른 국제표준·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위험분석 기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분석 실시 과정에서의 위험정보를 상호 교환 및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제표준·지침·권고 및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의 내용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험분석 기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지침, 위험정보의 상호 교환 및 공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위생조치 등에 관한 법령·규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위생조치 등 및 위험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생조치 등 및 위험분석 등에 관한 법령·규정·요건 및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처) ①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2」 제10조에 따른 통보처(이하 “통보처”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② 통보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문의처) ①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2」 제3조에 따른 문의처(이하 “문의처”라 한다)와 그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및 농산물·농산가공품의 방역·검역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소관 위생조치 등
2.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소관 위생조치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소관 위생조치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관분야

② 문의처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문의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6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기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6조에 따른 연락처를 각각 두며, 각 연락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의처, 책임기관 및 연락처는 그 소관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절차의 준수) ① 제11조에 따른 통보처 및 제12조에 따른 문의처·책임기관·연락처는 그 소관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에 따른 절차와 기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보처·문의처·책임기관 및 연락처의 관련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한의 검토·확인 및 준수, 일정의 조율, 통보문 및 의견서 등의 공유 및 검토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생조치 등 관련 국내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사전검토절차 및 세계무역기구에의 통보절차, 외국으로부터의 통보문 접수 및 대응절차 등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제3항에 따른 간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생조치 등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치 등에 관한 대내외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수집·공급,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이행 및 합치,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 상대국의 위생조치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대내외 위생조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위생조치 등 종합관리정보망(이하 “종합관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위생조치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유지·개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상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등

제17조(연구·개발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치 등에 관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을 포함한 위생조치 등에 관한 기술과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을 포함한 위생조치 등에 관한 대내외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계·연구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기관·단체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식물 등의 수입에 관한 위험분석을 포함한 위생조치 등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위생조치 등 분야 국제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기관·단체 등의 지원, 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종합·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IX. 결론

- 1995년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SPS 조치 시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SPS 조치 시행의 과학기술적 문제와 통상마찰 문제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SPS 조치의 합리적 이행 문제가 통상현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와 투명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SPS 규율의 명확화와 이에 대한 이행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규모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SPS 관련 분쟁증가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SPS 제도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특히 2015년 10월 합의된 TPP SPS 협정문은 기존에 WTO SPS 협정에 비해 동등성, 위험평가, 지역화, 투명성 등 SPS 조치 관련 핵심적 사항에 대해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회원국의 이행 의무가 보다 강화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TPP 발효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SPS 규범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SPS 시스템은 현행 WTO SPS 협정 이행뿐만 아니라 향후 WTO Plus적인 강화된 SPS 이행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흡한 수준임.
-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호주, EU, 일본 등 검역선진국에 비해 SPS 관련 인력과 조직, 관련 부서간 조율 및 조정 체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절차 등 기초 인프라가 미비한 측면에서 비롯됨.
- 따라서 SPS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최소화 하고 다른 나라의 SPS 조치에 대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PS 조직과 인력 보강 및 법규 정비 등 SPS 인프라 시스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WTO SPS 협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향후 WTO SPS Plus적인 강화된 SPS 규범 이행의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 SPS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SPS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SPS 대응역량 강화 추진방향, SPS 조직체계·역할분담·업무절차 개선방향, 관계법령 개선방향을 제안함.
- SPS 관련 국제규범의 이행의무 강화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국가의 SPS 조치에 우리의 농업통상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SPS 관련 대응능력 확충과 기초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강화, 주요 수출국별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SPS 조치와 그것의 이행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협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과학 분야와 통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 산하 SPS 분과위원회(subcommittee for SPS)에서 SPS 와 관련된 조사, 분석, 연구, 통보문 작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효율적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호주는 농업수자원부(DAFF) 산하에 과학자문단(SAG)을 두어 BIRA 보고서 작성 시 자문단의 평가결과를 인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과 근거 확보에 힘쓰고 있음.
- SPS 관련 국제기준, 지침, 권고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SPS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이러한 작업은 SPS 관련 통상마찰을 예방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SPS 관련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SPS 관련 국제회의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힘쓰고 SPS 관련 국제 규범의 제정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마지막으로 **관련조직 확충과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SPS 관련 국제규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기관에 관련된 SPS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각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 관련 규범 이행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독립팀(혹은 과)를 농식품부에 신설하고(가칭, SPS규범이행팀(과)), 이러한 농식품부내 신설되는 SPS규범이행팀(과)의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센터(가칭, SPS 지원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조직으로 SPS 관련 업무를 총괄할 Control Tower 역할을 할 SPS규범이행팀(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동 조직은 국내외 SPS 제도 및 조치, 기준 관련 통상정책 업무 총괄 및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SPS규범이행팀(과) 관련 대내외 업무 전담지원, 국내외 SPS 통보문 및 관련 문서 번역, 분석, 평가, 전달 업무 수행 등 SPS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SPS 지원전담센터가 설치될 필요 있음.
 - SPS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체계 정비·개선 방안으로 SPS 의무 사항과 대응방안을 통합하는 별도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여 SPS 관련 사안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관계법령을 정비·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정비·개정 대상 법률·조항·내용의 선정 작업 및 세부적인 정비·개정 작업의 어려움이 있는 등 다수의 곤란함이 있음.

참 고 문 헌

- 곽노성(2014),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세계농업」 2014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2016), 「EU 정책브리핑」, 애드컴서울.
- 강민지(201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두수(2010), 「EU 공동시장법」, 한국학술정보.
- 김두수(2014), 「EU법」, 한국학술정보.
- 김승호(2007),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법영사.
- 농림축산검역본부(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92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2016),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 기능 강화 방안」
- 농협(2013), 「농업통상위원회 중국 섬서성·사천성 농업조사」, NH농협 농업통상위원회.
- 박용용(2006), 「WTO 협정」, 법문사.
- 송주호 외(20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평가」, R6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1), 「위해평가 지침서」
-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유재원 외(2008), 「수입식품 검사·검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 기능 재설계」, 한국정책과학회.
- 이주윤(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임정빈 외(2011), 「한·중 FTA 협상대응 농업분야 비관세조치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 임정빈 외(2015), 「WTO/SPS 투명성 강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형진 외(2012),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 농업부(2010),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가속화에 관한 농업부 의견 農業部關於加快推進動物疫病區域化管理工作的意見」
- 최병선(2009),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 최승환(2014), 「국제경제법」(제4판), 법영사.
- 최승환(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 최정순(2009), 'WTO SPS 분쟁해결 사례와 향후 SPS 정책방향',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 최혜선(2013),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3호.
- 카메와다 미츠오 외, 박원숙 역(2014), 「식품의 안전과 기업전략」, 식품음료신문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13), 「新 국제경제법」(보정판), 박영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KRE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 호주 농업·수자원부(MAFF), 'Bira Guidelines(2015, 2016)'
- CODEX(20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to Support the Trade in Food'(CAC/GL89-2016), WTO, FAO.
- CODEX(2016),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25th ed.), WHO, FAO.

CODEX(2016), 'REPORT OF THE 48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Chongqing, China, 25 - 30 April 2016.

CODEX(2012),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5th ed.), WTO, FAO.

Daniel C.K. Chow & Thomas J. Schoenbaum(2008), 「International Trade Law」, Aspen Publishers.

IPPC(2016), 'Eleven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CPM-11 Report)'

IPPC(2015), '2015-2016 Procedure Manual Standard Setting', FAO.

OIE(2016), 'Final Report 2016: 84 GS/FR'

OIE(2016),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Vol.1 General Provision, OIE.

OIE(2015), 'Annual Report 2015'

OIE(2012), 'Checklist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ompartmentalisation'.

Raj Bhala(2008),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disciplinary Theory and Practice'(3rd ed.), LexisNexis.

Roseanne Freese(2008),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Implementing the WTO SPS Agreement'

Sidley Austin LLP(2016), 'SPS Measures and the TPP - Removing Barriers to Agricultural Exports' (<http://www.sidley.com/en/news/2016-02-24-international-trade-update>)

USTR(2016), 'The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USTR(2014), '2014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참 고 사 이 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농림축산식품부 SPS지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koreasps.kr/>)
뉴질랜드 1차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pi.govt.nz/>)
대한민국 TBT 네트워크 'KnowTBT' 홈페이지 (<http://www.tbt.kr/>)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내 TPP 페이지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홈페이지 - FTA 강국, KOREA (<http://fta.go.kr/main/>)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http://www.snu.cals.ac.kr>)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http://www.wto.org/>)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중국 WTO/TBT-SPS 통보상담 홈페이지 (<http://www.tbt-sps.gov.cn>)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 및 외식정보 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atfis.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http://ntb.kita.net/main.screen>)
호주 농업·수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agriculture.gov.au/>)
EU 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
EU 위원회 홈페이지 내 SPS 페이지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wto/index_en.htm)
EU 위원회 통상총국(DG TRADE) (<http://ec.europa.eu/trade/>)
EU 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http://ec.europa.eu/dgs/health_food-safety/index_en.htm)
EU 위원회 전문가그룹(Commission Expert Group)
EUR-Lex (<http://eur-lex.europa.eu/>)
TRACE(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http://ec.europa.eu/food/animal/diseases/traces/about/index_en.htm)
UN 무역개발협의회 (<http://www.unctad.org/>)
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regulatory-compliance/compliance-guides-index/sanitation-performance-standards/sanitation-compliance-guide>)
USDA 해외농업국(FAS) 홈페이지 (<https://www.fas.usda.gov/>)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
WTO SPS 정보관리시스템(IMS) (<http://spsims.wto.org/>)
WTO SPS 통보문제출시스템(NSS) (https://nss.wto.org/Index_en.htm)